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연구책임자 **박 창 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 혜 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이 유 진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이 송 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컨설팅사업단장)
김 미 애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현장교육지원전문가)
김 경 태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현장교육지원전문가)
주 수 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
김 영 연 (한살림 서울교육팀장)

연구협력진

이부미(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기태(前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現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한종화(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인혜(현대열린어린이집 원장)

박태규(한양제일유치원 이사장)

연구협력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수탁보고 2020-01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발행일 2020년 2월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전화 044) 320-1000
팩스 044) 320-3198
인쇄처 (주)승림디자인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58-9300000-000180-01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히 둡니다.

제 출 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귀하

본 보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와 함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저출산 및 유아교육·보육, 돌봄 정책의 핵심 화두가 되었으며,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을 통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에 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여 국공립유치원은 질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높여 유아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즉,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등의 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 유치원(유아학교)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등의 국공립유치원 운영 다양화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현장과 공유하여 유아교육 국가책임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으로 참여해주신 다양한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작성에 많은 자문과 지원을 주신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 주무관님, 장학관(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2
3. 연구방법	24
4. 용어의 정의	27
5. 연구의 한계점	28
II. 연구의 배경	29
1.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개요와 방향	29
2.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과정	29
3. 선행연구	31
4. 사례조사	31
III.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39
1. 2020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안내서	39
2. 2020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운영 안내서	82
3.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안내서	187
IV. 국공립 다양화 정책에 관한 시·도별 의견 수렴 결과	209
1. 조사 개요	209
2. 조사 결과	209
3. 소결	222

V. 정책 제언 **225**

1. 국공립 다양화 운영 정책 방향 및 과제 225
2.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및 컨설팅 관련 정책 방향과 과제 229

참고문헌 **231**

부록 **235**

1. 공영형 유치원 만들기 서식 235
 - 1.1 공모 관련 서식 235
 - 1.2 선정 관련 서식 237
 - 1.3 업무협력 약정서 관련 서식 238
 - 1.4 공영형 유치원 재선정 심사 관련 서식 241
 - 1.5 예산 지원 관련 서식(예시) 242
 - 1.6 법인 설립 인가 신청 관련 서식 244
 - 1.7 설립자 변경 신청 관련 서식 247
 - 1.8 평가 관련 서식 249
 - 1.9 공영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관련 서식 250
 - 1.10 컨설팅 관련 서식 251
 2. 협동조합형 유치원 만들기 서식 252
 - 2.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서류 양식 252
 - 2.2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양식 262
 - 2.3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 필요 서류 양식 264
 - 2.4 유치원 설립 신청 시 필요 서류 양식 265
 - 2.5 유치원 설립·인가 시 필요 서류 양식 267
 - 2.6 기타 270
 3. 매입형 유치원 만들기 서식 271
-



표 목차

〈표 Ⅰ-3- 1〉 국공립 다양화 관련 유치원 사례 조사	24
〈표 Ⅰ-3- 2〉 협의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일정 및 내용	25
〈표 Ⅰ-3- 3〉 전문가 자문회의	26
〈표 Ⅰ-3- 4〉 서면자문	26
〈표 Ⅰ-3- 5〉 전문가 워크숍	27
〈표 Ⅲ-1- 1〉 시·도교육청 자율 추진 사례	42
〈표 Ⅲ-1- 2〉 공영형 유치원과 일반 사립유치원 비교	43
〈표 Ⅲ-1- 3〉 공영형 유치원 선정 기본 항목	50
〈표 Ⅲ-1- 4〉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	56
〈표 Ⅲ-1- 5〉 공영형 유치원 평가지표 예시	61
〈표 Ⅲ-1- 6〉 특수학급 운영 관련 법령 및 내용	64
〈표 Ⅲ-1- 7〉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예시	70
〈표 Ⅲ-1- 8〉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72
〈표 Ⅲ-1- 9〉 운영 주체에 따른 법인 이사회 운영	74
〈표 Ⅲ-1-10〉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위한 핵심가치	79
〈표 Ⅲ-2- 1〉 조합원의 유형	84
〈표 Ⅲ-2- 2〉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장점	86
〈표 Ⅲ-2- 3〉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화성시 동탄)	88
〈표 Ⅲ-2- 4〉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특징	93
〈표 Ⅲ-2- 5〉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94
〈표 Ⅲ-2- 6〉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	97
〈표 Ⅲ-2- 7〉 국내 협동조합의 역사	98
〈표 Ⅲ-2- 8〉 ICA가 선언한 협동조합의 가치 및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	98
〈표 Ⅲ-2- 9〉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7원칙	99
〈표 Ⅲ-2-10〉 협동조합형 유치원 만들기 한눈에 보기	101
〈표 Ⅲ-2-1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102
〈표 Ⅲ-2-12〉 정관을 만들 때 참고 사항	104
〈표 Ⅲ-2-13〉 정관, 규약, 규정의 차이점	105
〈표 Ⅲ-2-14〉 설립 인가 신청 필요 서류 목록	107
〈표 Ⅲ-2-15〉 협동조합 설립 시 상담 가능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목록(예시)	108
〈표 Ⅲ-2-16〉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109

〈표 Ⅲ-2-17〉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110
〈표 Ⅲ-2-18〉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 근거	111
〈표 Ⅲ-2-19〉 2017~2020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12
〈표 Ⅲ-2-20〉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13
〈표 Ⅲ-2-21〉 유치원 설립 인가 전·후 유의사항(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113
〈표 Ⅲ-2-22〉 유치원 설립계획서 구비서류(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15
〈표 Ⅲ-2-23〉 유치원 교사의 기본 조건(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16
〈표 Ⅲ-2-24〉 유치원 시설 설비 기준(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17
〈표 Ⅲ-2-25〉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서류(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19
〈표 Ⅲ-2-26〉 유치원 규칙(유아교육법 제10조)	120
〈표 Ⅲ-2-27〉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120
〈표 Ⅲ-2-28〉 유치원 교원의 자격 기준	121
〈표 Ⅲ-2-29〉 사무직원 배치기준(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23
〈표 Ⅲ-2-30〉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	125
〈표 Ⅲ-2-31〉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예시)	127
〈표 Ⅲ-2-32〉 폐쇄 신청 시 제출 서류	128
〈표 Ⅲ-2-33〉 폐쇄 승인 후 제출 서류	129
〈표 Ⅲ-2-34〉 기관 폐쇄 후 행정 사항(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30
〈표 Ⅲ-2-35〉 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이사회) 및 제33조(이사회 의결사항)	133
〈표 Ⅲ-2-36〉 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감사의 직무) 및 제43조(감사의 대표권)	135
〈표 Ⅲ-2-37〉 총회(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136
〈표 Ⅲ-2-38〉 총회 의결사항(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136
〈표 Ⅲ-2-39〉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 28조)	137
〈표 Ⅲ-2-40〉 원천징수대상 및 소득 종류	145
〈표 Ⅲ-2-4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145
〈표 Ⅲ-2-42〉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147
〈표 Ⅲ-2-43〉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경영 공시)	147
〈표 Ⅲ-2-44〉 위반 시 처벌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제3항3호)	149
〈표 Ⅲ-2-45〉 조합원 교육 내용(예시)	151
〈표 Ⅲ-2-46〉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사항	157
〈표 Ⅲ-2-47〉 교직원 교육: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교사 성장 체계(예시)	160
〈표 Ⅲ-2-48〉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누리집	177
〈표 Ⅲ-2-49〉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자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누리집	178
〈표 Ⅲ-2-50〉 민관협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6)	179

〈표 Ⅲ-2-51〉 설립 희망 대상자 교육의 활동 내용 및 추진 방법	179
〈표 Ⅲ-2-5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교육 예시	180
〈표 Ⅲ-2-53〉 유치원 준비 모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내용 및 추진방법	180
〈표 Ⅲ-2-54〉 컨설팅의 분야와 주제(예시)	181
〈표 Ⅲ-2-55〉 실제 컨설팅 진행 사례(경기‘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182
〈표 Ⅲ-2-56〉 서울더불어키움형과 협동조합형 유치원 비교	186
〈표 Ⅲ-3- 1〉 우선 선정 대상 기준 예시	190
〈표 Ⅲ-3- 2〉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 항목(정량, 정성 평가) 예시	191
〈표 Ⅲ-3- 3〉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정성 평가 내용(예시)	192
〈표 Ⅲ-3- 4〉 평가방법 (영역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배점 범위 내에서 절대평가 점수 부여)	192
〈표 Ⅲ-3- 5〉 매입형 유치원 선정 일정표 예시	196
〈표 Ⅲ-3- 6〉 매입형 유치원 부서별 추진 로드맵(1기: 9월 개원, 2기: 3월 개원)	200
〈표 Ⅲ-3- 7〉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 구성 예시	204
〈표 Ⅲ-3- 8〉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 주요 검토 사항	205
〈표 Ⅲ-3- 9〉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단 선정 기준 주요 검토 사항	206



그림 목차

[그림 Ⅰ-2- 1]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예시: 2020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선정·설립·운영 표지 예시	23
[그림 Ⅱ-2- 1]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과정	30
[그림 Ⅲ-1- 1]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선임 절차(안)	45
[그림 Ⅲ-1- 2] 공영형 유치원 선정 및 결과 보고 절차	45
[그림 Ⅲ-1- 3] 시·도별 지원 내용 심사 후 최종 선정	46
[그림 Ⅲ-1- 4]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흐름도	48
[그림 Ⅲ-1- 5] 학교 법인 절차도	74
[그림 Ⅲ-1- 6] 추진 절차(안)	79
[그림 Ⅲ-2-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공동산아이유치원(서울시 노원)	87
[그림 Ⅲ-2- 2] 공동산아이유치원의 ‘꿈꾸는 바자회’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예시	87
[그림 Ⅲ-2- 3]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사회적 가치	90
[그림 Ⅲ-2- 4] 영국 협동조합학교인 톨튼 중고등학교 구성원 참여 제도와 실제	96
[그림 Ⅲ-2- 5] 협동조합의 7원칙	99
[그림 Ⅲ-2- 6] 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역할(예시)	103
[그림 Ⅲ-2- 7] 유치원 인가정원 결정 절차	112
[그림 Ⅲ-2- 8]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	114
[그림 Ⅲ-2- 9] 업무 처리 절차	115
[그림 Ⅲ-2-10] 업무 처리 절차	118
[그림 Ⅲ-2-11] 개원 보고 절차	124
[그림 Ⅲ-2-12]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	126
[그림 Ⅲ-2-13] 유치원의 폐쇄 절차	128
[그림 Ⅲ-2-14]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방향	153
[그림 Ⅲ-2-15]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기구 조직도	156
[그림 Ⅲ-2-16] 협력적 교사회가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	159
[그림 Ⅲ-2-17]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따른 지원(예시)	183
[그림 Ⅲ-2-18]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에 따른 지원(예시)	184
[그림 Ⅲ-3- 1]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절차	194
[그림 Ⅲ-3- 2] 매입형 유치원 선정 및 선정 이후 절차 (예시)	199
[그림 Ⅲ-3- 3] 표본 설계안(예시)	203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와 함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저출산 및 유아교육·보육, 돌봄 정책의 핵심 화두가 되었음. 정부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을 통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이에 2019년에는 유치원의 공공성 정책의 현장 정착과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심화 연구 및 정책개발, 사례조사,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지원, 정책 홍보 등이 필요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계획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운영 모델들¹⁾ 중,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모델 실행을 위한 선정, 설립,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정책의 전달 체계를 중심으로 컨설팅 사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것임.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운영 모델 지침서 및 매뉴얼 개발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운영 모델 심층 사례 분석 및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 다양한 유치원 운영 모델을 홍보, 확산하기 위한 컨설팅 체제 구축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운영 모델 매뉴얼 확산 및 보급

다. 연구방법

- 사례조사 및 심층 면담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전문가 워크숍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 2019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김진석, 2019)에는 공영형, 지원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유치원 모델 등이 제안되었음.

라. 용어의 정의

- 본 연구에서 ‘국공립 다양화’는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을 의미함.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목적은 국공립유치원 또는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사립유치원을 만들어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공영형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을 포괄함.

마. 연구의 한계점

- 본 보고서는 국공립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유치원 선정, 설립, 운영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보고서임. 애초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10월)에는 국공립유치원 운영 다양화 모델로 장기임대형 유치원 모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보고서와 운영 매뉴얼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 본 연구에서 진행한 컨설팅 전문가 워크숍의 경우, 1-2차는 진행을 하였으나, 코로나 19의 발발로 3차 워크숍은 진행하지 못하였음. 이에 국공립 다양화 매뉴얼 3종을 배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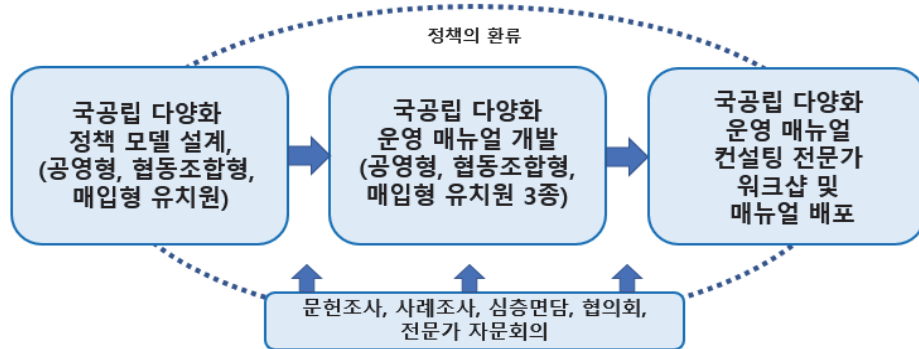
2. 연구의 배경

가.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개요와 방향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에서 제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임.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함.
-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설립, 운영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현장의 정착을 돕고,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을 홍보하고 확산하며, 정책의 유연한 시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과정

-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음.



- 2020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선정, 설립, 운영 안내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2020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안내서	2020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운영 안내서
2020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안내서 고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2020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운영 안내서 고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안내서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안내서 고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다. 선행연구

- 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김진석(2019)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운영 다양화 모델을 제시하였고, 공영형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 성과,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사립유치원 운영 모델의 다양화의 일환으로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사립유치원의 퇴로 마련 방안 등이 제안됨.
- 임재홍, 강남훈, 김용석, 김진석, 박창현(2015)의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준공영형 사립 교육기관 모델을 제시하였고, 사립 교육기관이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음.
 - 법인화형, 기부채납형 등의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이 제시됨.

라. 사례조사

- 사례조사의 목적은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작성을 위해 매뉴얼에 담길 내용, 설립·선정·운영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함임.
- 관련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방문하여 설립 및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원장, 교사, 부모)과 기관 사례조사를 실시함.
- 국공립다양화 매뉴얼 작성을 위해 A 유치원(서울 협동조합형 유치원), B 유치원(강원 공영형 유치원), C 유치원(광주 공영형 유치원), D 유치원(대구 공영형 유치원), E 사회적협동조합(경기 동탄 협동조합형 준비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3.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가. 2020 공영형 선정·운영 안내서

1) 공영형 유치원의 개요

□ 공영형 유치원이란?

- 공영형 유치원이란,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에 준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임.
 -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법인에 개방이사를 배치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사립유치원 운영 혁신 모델임.

- 재단·사회복지·학교 법인·비영리법인 등 법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함.

-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에 준하는 운영과 재정지원을 받지만, 교육과정 등 유치원 운영은 해당 사립유치원의 건학이념 틀에서 이루어져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공영형 유치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 모집하고,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운영을 강조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임.

□ 공영형 유치원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영형 유치원이 도입되었음. 공영형 유치원은 유아교육 격차 해소,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 선택권 확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함.

□ 공영형 유치원의 핵심가치

-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통해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과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장점을 살려 부모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유치원 운영 혁신 모델임.
- 공영형 유치원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공공성(보편성, 투명성, 참여성)’, ‘자율성(교육혁신, 운영의 자율성)’, ‘교육의 질적 혁신(유아·놀이 중심의 교육 구현)’임.

□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 추진 방향: 국가시책사업 내 ‘선택 과제’로 분류하여 사업 참여 희망 시·도교육청에 한하여 유치원을 선정·운영하도록 함.
- 추진 계획: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공공성이 강화된 우수 사립유치원을 선정·지원하여 공영형 유치원의 기본 가치 실현 및 공공 유아교육 모델 정착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함.
 - 공영형 유치원 지원 개선 및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선정기준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마련함.

2) 공영형 유치원 선정 및 재선정

□ 공영형 유치원의 선정 개요

-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단·사회복지·학교법인·비영리법인 사립유치원으로 3년 이상 운영할 의지가 있는 유치원
- 운영 기간: 유치원 현장 정착 및 교육 정책의 신뢰성 등을 고려, 3년 이상 운영 원칙

(‘20.3월~’23.2월)

- 재정 지원: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80% 수준의 인건비 및 공립에 준하는 운영 경비 지원, 선정 유치원 수 및 유치원별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함(지원 방식: 누리과 정지원금 + 정부보조금).
- 유치원 운영에 따른 실제 운영비 중 수익자부담경비(학부모 부담금) 제외 분을 일부 지원함.
- 지원 조건
 - 학부모 부담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경감할 의지가 있는 유치원
 - 법인에 개방 이사 2인 이상 선임 가능 유치원
 - 저소득층 유아 입학 및 특수학급 운영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 유치원
 - 기존 법인의 경우, 임기 만료 이사를 개방 이사 2인 이상으로 선임하여 단계적으로 조건을 충족함.

□ 공영형 유치원의 선정 절차

-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일정에 따라 선정을 추진하고, 결과 보고를 하는 절차에 따름.
- 실행 계획 수립 및 선정 공고 → 설명회 개최 및 신청 접수 → 선정 유치원 사전 협의 → 최종 선정 및 결과 보고 → 결과 확인 및 지원
- 신청 자격: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사인 유치원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과 경비 조달 방법을 적시하여 제출
- 신청 서류: 법인 유치원은 이사 동의서, 사인 유치원은 설립자의 법인 설립 공증서, 유치원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재산평가 감정서, 수익형 재산을 입증할 서류 제출
- 사전 심의: 심층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 등록: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를 통과한 신청 유치원은 제출 서류를 3개월 안에 국가에 제출
- 법인 인가: 법원의 법인 설립이 되면 관할 교육청은 제반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방이사를 복수로 추천하여 유치원에서 선임함.

□ 공영형 유치원의 선정 및 재선정 기준

- 공영형 유치원 선정 기준 주요 사항: 직전 연도 정원 충족률 70% 이상(권고), 시·도별 정원 배치 기준 준수, 설립자 및 원장 1인 1기관 운영, 중대한 행정처분 유무 등
- 선정 기본 항목: ‘정원충족률’, ‘교육환경 적절성’, ‘학부모 부담금 책정의 적절성’, ‘설립자 및 원장 1인 1기관 운영’, ‘행정처벌 여부’, ‘적정 규모’, ‘적정 운영 여부’, ‘법인 운영’

총 8가지를 모두 충족 시 참여 가능

□ 공영형 유치원의 선정 취소 및 운영 종료

○ 공영형 유치원의 약정 종료 및 해지

- 업무 협력 약정이 종료되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영형유치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이 종료되거나 연장되며, 약정이 종료될 경우 유치원 운영은 법인의 정관 및 방침에 따름.
- 약정 해지 사유 발생 시 해지 사유 확정일로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유치원 귀책사유 경중에 따라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 예산에 대하여 정산 및 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 처리함.

○ 선정 취소 사유

- 중대한 회계 부정 및 교육청 미승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등의 경우
- 유아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 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할 시

○ 운영 포기

-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유치원도 희망에 의하여 공영형 유치원 운영 포기가 가능함.
-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포기한 경우 선정 취소일로부터 3년간 공영형 유치원 신청이 제한됨.

□ 공영형 유치원의 재선정

○ 재약정(약정 연장) 절차

- 예산 여건 및 재약정 요구 등에 따라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청과 법인이 협의하여 필요 이행 사항 조치 후 연장

3) 공영형 유치원의 운영 및 관리

□ 공영형 유치원의 운영 개요

-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운영 기간: 유치원 현장(유아, 부모, 교직원 등)의 정착 및 교육 정책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함.

- 기본 원칙: 공영형 유치원의 핵심 가치 구현 중심으로 선정된 유치원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며, 국공립유치원의 운영 기준에 준하여 적용함. 또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 학부모 부담(10만 원 이하) 완화가 가능한 유치원 선정 권장하여야 하며, 유아·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을 기본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교육복지 강화

- 저소득층 유아를 우선 모집함. 다만, 이에 따라 정원 미충족 시 잔여 인원은 일반 가정 유아 선정 가능함.
-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등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함.
- 장애유아를 고려한 특수학급을 운영 가능함.

□ 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치원은 유아 및 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 장학 지원을 요청하도록 함.
 - 개정 누리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함.
 - 유치원 실정 및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부모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 1일 4~5시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시간 내 특성화 운영 금지
-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침.

□ 방과후 과정 운영

-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교실 운영을 권장함.
- 방과후 과정의 경우, 토요일은 유치원 실정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되,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함.
- 특성화 프로그램의 경우,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운영함.

□ 재정 관리

- 예산 지원
 - 교육청은 유치원의 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함.
- 예산 교부 및 자금 관리

-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회계>, <세입 세출 외 현금 회계>, <카드 거래> 등 유치원 명의로 통장 3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함.

○ 예산 집행

- 예산 집행은 유치원 기관 카드 사용 또는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출납은 지양함.
- 법인 전입금은 교육청 지원 예산과 별도로 유치원에서 계획 수립 후 집행함.

□ 교직원 관리

- 유치원별 자체 공개 임용 절차를 통해 교원 수급 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개 채용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위원 정수는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해당 범위에서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에게 안내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

□ 시설 관리 및 기타

- 교육환경 개선 계획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시하되, 유치원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함.

□ 법인 설립 및 설립자 변경

-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이미 운영 중인 유치원은 법인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 가능
- 설립자 변경 시 신청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유치원 변경 인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변경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함.
- 법인 이사회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이사 중에서 2명 이상을 개방 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 학교 법인 설립 절차도: 발기인 구성 및 재산 등 출연 → 정관의 작성 및 기관(이사회) 구성 → 정관 및 기관 구성 확인 결의 → 법인 설립 허가 신청 → 법인 설립 허가 → 법인 설립 허가 후 3주일 내 →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 → 유치원 설립자 변경

□ 설립자 변경

- 설립자 변경 시 신청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유치원 변경 인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변

경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함.

4) 공영형 유치원 평가 및 질 관리

□ 공영형 유치원의 운영 평가 및 협의

○ 정기 평가

-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 합동으로 유치원 대상 평가를 주기별 및 수시 실시
- 정기 평가는 '분기 평가'와 '연간 평가'로 나누어 실시

○ 연간 평가: 연간 1회, 익년도 3월에 실시함.

○ 종합 평가 실시

- 약정 기간 중 매년 실시한 평가를 토대로 약정 기간 종료 전 종합적·전반적으로 평가를 실시함.
-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원장은 반드시 출석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회일에 출석 또는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함.

□ 공영형 유치원 컨설팅 및 질 관리

○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운영

-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영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모든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함.
-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공영형 유치원 컨설팅 운영

○ 컨설팅 및 연수

- 사전 컨설팅: 월 1회 이상 컨설팅을 실시하며 공영형 유치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기 시작 전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포함), 재정·회계 운영 분야 전반에 대하여 유치원과 협의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함.
- 추진 절차: 컨설팅단 구성, 위원 연수 및 워크숍 실시 → 컨설팅 실시 → 공영형 유치원 운영
- 사후 컨설팅: 운영 지원 컨설팅, 재무 회계 소그룹 교육, 정보 공시 안내

- 연수 및 장학 강화: 시·도 단위 정기·수시 연수 및 장학 실시
- 우수 사례 공유: 교육과정, 유치원 운영 등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공유·확산

○ 지도·감독

- 학부모 평가단: 학부모 평가단 운영 권장
- 공영형 유치원 운영 협의회 운영 가능
- 운영 점검 및 평가: 시·도교육청이 정한 시기에 따라 정기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현황 등 점검
- 시·도교육청은 관리 책임 및 유치원의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선정된 유치원과 약정 체결 후 사업 운영

나. 2020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운영 안내서

1)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개요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란?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개념

- 학부모조합원(소비자조합원), 교직원조합원(직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자원봉사자 조합원 중 부모와 교직원조합원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특성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접 유치원의 설립·운영하는 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주체가 되어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함.
- 부모들과 교직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 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름.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재원은 출자금과 조합비로 구성함.

- 출자금의 경우, 주로 유치원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는데 사용함.
- 출좌 1좌의 금액은 균일하며, 모든 조합원이 1좌 이상을 출자함. 조합원 1인의 출좌자수가 총 출좌좌수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유아교육계에 주는 함의

- ‘사유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립유치원의 현실에서 ‘공유한다’, ‘함께 한다’, ‘함께 키운다’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함.
-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자치 실현
- 유아교육의 ‘공공성’ 의미를 재구조화하여, 정부 역할과 시민 및 공동체 역할을 일체화함.

□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 추진 방향

○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18. 10)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 제시,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을 재천명함.
-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 모델 제시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정부의 역할과 시민 공동체의 역할을 일체화하고, 시민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새로운 유치원 혁신 모델임.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장점

- ※ 공동체성 확보, 양육 주체의 당사자성 확보(인권과 참여), 참여보육과 협력적 교사회, 유치원의 교육내용 등을 병행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유치원 운영의 개방성과 자율성, 절차의 민주성,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설립 주체의 법인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 주체와 사회적 가치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 주체

- 교직원과 부모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경우
 - * 강점과 약점: 교직원과 부모가 협력하여 유치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외부와의 연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력의 구조가 깨지면 원장 또는 부모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경우
 - * 강점과 약점: 부모들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가 장점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설립 초기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교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경우
 - * 강점과 약점: 유치원 운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모의 자발적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지역사회 연대가 중심이 되는 경우
 - * 강점과 약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의 참여로 지역사회 내 연계가 원활할 수 있으나 교직원과 부모조합원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욕아, 참여와 신뢰, 유아 중심성, 교육의 자율성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의 연대 및 기여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님.

2) 협동조합 알아보기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함. 우리에게 친숙한 서울우유, 썬키스트, FC 바르셀로나도 모두 유명한 협동조합임.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의미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3) 협동조합형 유치원 만들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인가

-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후, 인가증을 취득한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과정을 밟음.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 검토 및 결과 통보 → 법인등기 → 사업자 등록 → 유치원 설치 및 운영
- 조합원 자격을 갖춘, 뜻이 맞는 5인 이상을 모집하여 공식적인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협동조합 설립과 인가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준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및 인가

-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의 기본사항: 설립경영자의 자격확인, 교사 및 교지의 소유 여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여부, 유자격 교원 확보, 유치원 명칭 선정, 개원 시기의 적절성, 학급 수 및 학급당 정원의 적정성
-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인가 준비: 유치원 설립·인가의 경우, 서울 및 경기도는 지원청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다른 시·도는 본청에서 소관하는 경우도 있음.

-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유아배치 계획 수립·확정[교육청]→ ② 설립 가능 권역 확인[설립자]→ ③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승인[설립자→교육청]→ ④ 설립계획서 제출·승인[설립자→교육청]→ ⑤ 설립인가 신청·통보[설립자→교육청]→ ⑥ 유치원 개원 보고

- 유치원 인가 후 개원 준비: 교직원 채용 및 교육, 채용 후 원장 및 교직원 교육, 사무직원 배치, 유치원 환경 구성. 신입 부모 오리엔테이션

- 협동조합형 유치원 개원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음.

교원임용보고[유치원]→교육(지원)청[각 해당부서]→개원결과보고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폐원

- 협동조합의 해산은 협동조합이 그 활동을 정지한 이후 소멸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고 이에 따라 청산 절차에 들어감.

- 협동조합이 해산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절차를 통해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게 될 때 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게 됨.

-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 해산사유의 발생 → 해산총회 개최 및 해산 의결, 청산인 선임 → 청산계획의 총회 승인 → 청산종결등기 → 청산 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

- 유치원의 폐쇄 절차: 유치원 폐원 신청 → 검토 및 현지 확인 → 폐쇄 승인 → 폐쇄 보고

4)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하기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하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이타적 동기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함.

- 협동조합유치원의 운영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체인 유치원 운영과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으로 나뉨.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기구 조직은 이사회, 감사, 총회, 위원회로 구성됨.

□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하기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유치원의 정보와 공간 개방을 통한 민주적 공동체 원리의 생활화
- 교육 3주체(유아, 교사, 학부모)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인권 실현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추구하는 인간상
 -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수용해도 무방하며, 협동조합형 유치원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어린이 상을 구성할 수도 있음. 이때, 유아는 성장할 힘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유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유아가 행복권, 능력, 관계적 능동성이 있는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 유아·놀이 중심 교육 지향, 공동체 교육 지향생활형, 비형식적 학습 지향, 통합교육 지향, 생태교육 지향
- 협동조합형 유치원 수준의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되, 유치원 부모들의 생활환경과 유아들의 유치원 환경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함. 마을 수준의 교육과정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문화 만들기

- 부모, 교사, 유아들이 만들어갈 교육의 구성 원리들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문화를 형성하는 구성틀임. 부모 참여 및 양성평등교육, 통합교육, 민주적 의사소통, 다양한 모임과 회의 문화, 놀이를 보장하는 생활, 자연으로의 나들이, 건강한 먹거리 등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삶과 교육이 부모 참여와 교사들의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됨.

5) 협동조합형 유치원 지원하기

□ 민-관-학 협력체계 구성하기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의 단체 및 정부 지원 단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 단체가 필요함.
- 정부 파트너에는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있으며 민간 파트너에는 관련 분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있음. 학교 파트너에는 유치원 네트워크 및 학계, 지역 단위 협동조합형 유치원 TF가 있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당면하게 될 운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함.
- 설립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 신용보증 기금 등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한 비용의 일부를 대출할 수 있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설립 이후에도 안정적인 협동조합형 유치원 개원 이후,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지원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안내서

1) 매입형 유치원의 개요

□ 매입형 유치원이란?

○ 매입형 유치원의 개념

- 매입형 유치원이란,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폐원)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의미함.

○ 매입은 교사, 교지 등을 대상으로 함.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은 승계되지 않음.

□ 매입형 유치원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 유아교육 공공성 및 국가 책무성 강화

-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수준을 40%까지 확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공립유치원 확대 지원

○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의 행정 비용 절감

- 매입형 유치원 도입 시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건축물 신설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매입형 유치원 도입 시 주변 사립유치원 반발 등의 정책 갈등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2) 매입형 유치원 선정

□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

○ 원칙: 공모를 통하여 매입 대상 유치원을 선정함.

○ 선정 대상: 선정 공고일 현재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휴·폐원 유치원 제외)

○ 선정 기본 요건

- 설립자 소유의 부지, 단독 건물의 사립유치원
- 인가 학급 기준 00학급 이상 또는 연면적 00㎡으로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 제외 대상

- 일방적 폐원(통보) 및 모집 중지 등 유아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
-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유치원
-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치원

- 감사 등 각종 지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

○ 선정 기준

-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단설유치원 미설치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 우선 설립 등

○ 선정 평가 항목

- 선정 평가 항목 중,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점수 비중을 지역별 특성에 알맞게 60(70) : 40(30)등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선정 방법: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 득점 순으로 교육부에 추천함.

- ※ 지역 내 국공립유치원 선호도, 유아 수 추이, 유치원 충원율, 시설 안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절차

- 실행 계획 수립 및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 구성 → 공고 및 접수 → 선정대상 평가 → 교육부 선정 자문위 → 최종 선정 및 교부금 확정 교부

□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이후 절차

- 자체투자심사 → 정밀안전점검, 예정교부신청, 교명제정심의, 감정평가 → 입법예고, 본 예산신청, 예정교부확보, 공심의 제출 → 공심의 통과, 법제심의, 조례안건 및 공유관리 제출, 공유재산의결, 설치조례반영 → 폐원인가, 매매계약, 공립개원

□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취소 및 중도 포기

○ 매입형 유치원 선정 취소

- 최종 확정 이후라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유아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매입형 유치원 확정은 취소될 수 있음.

○ 매입형 유치원 중도 포기

- 설립자가 재산 상태 변경 또는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지할 필요가 있음.
- 중도 포기 시, 매입 선정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대상 유치원에서 부담하고 차후 매입형 유치원에 신청할 수 없음.

3) 매입형 유치원 선정 추진 체계

□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 추진 체계(예시)

○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

- 원활한 매입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 구성

- 기능별 추진 위원회, 선정 평가단, 집행 부서, 실무팀(TF)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음.
 - * 추진 위원회: 사업 전체를 총괄 점검하고, 선정·평가안을 심의함.
 - * 선정 평가단: 결정된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담당하며, 선정 평가단은 공모 이후 별도로 구성함.
 - * 집행 부서: 각 부서별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현안 보고함.
 - * 실무팀(TF): 선정 및 배점 기준 등의 선정 안을 재정비하거나, 관련 안을 검토하고 환류하는 역할을 담당함.

□ 매입형 유치원의 추진 위원회 운영

○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선정 기준안 및 평가안 심의 및 추진 상황 점검

□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및 재정비 실무팀(TF) 운영

○ 매입형 유치원 실무팀(TF)의 역할과 기능

-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안) 및 평가단 구성(안) 등 도출

○ 매입형 유치원 실무팀(TF)의 구성

- 내부 공무원, 외부 전문가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

○ 매입형 유치원 실무팀(TF) 검토내용

- 현행 매입형 유치원 선정 및 배점 기준

□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평가단 구성

○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단의 기능

- 결정된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

○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단 구성

- 내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

○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단의 역할

- 대상 유치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인 평가안을 추진위원회에 안건 상정

4. 시·도별 의견 수렴 결과

- **농산어촌을 포함하는 지역의 경우**, 인구절벽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겪고 있으며 원아 수 급감이 진행되고 있음. 농어촌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은 원아 수 유지가 어려워 휴원 및 폐원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정책도 중요하나, 원아 수 감소를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임.
 - 정책고려사항: 사립유치원의 퇴로 정책인,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매입형 유치원 등의 정책을 시도 사정에 알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광역시 및 시도 구도심의 경우**, 원아 수 자연 감소의 문제를 겪는 지역들은 국공립유치원 정원도 다 차지 않는 실정임. 인천의 경우에도 유치원 적령 원아 수가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합산 정원을 고민하는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정책고려사항:
 - 추후 유보 통합 논의 가속화 될 수 있음(유치원+어린이집 포함한 유아 배치 고려)
 - 국공립 통합합 정책 및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 정책 논의 필요
 - 택지개발지역은 과밀, 구도심은 인구절벽으로 유치원 재구조화 정책 필요
 - 양질의 국공립+사립유치원 상생 발전을 방안을 위해 교육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는 정책 필요
 - 유아 대 교사 비율 낮추기, 공공성 높은 우수 유치원 인센티브 및 지원 사업 등
- **‘공영형 유치원’ 확산이 어려운 이유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임. 교육부의 공영형 유치원 3년 약정이 종료되면, 시·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시·도교육청이 꺼리는 경향이 있음. 또한 현장에서는 공영형 유치원 등의 정책 아이템보다 퇴로 이후 전환 업종, 당장 시행해야 하는 에듀파인 현장 적용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함.
 - 정책고려사항
 - 공영형 유치원 유형 개발로 잔존 유치원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 전략 필요
 - 예시: 공영형 1유형(법인), 2유형(사인+기존법인), 3유형(협동조합형) 등
 - 유형에 따른 재정차등지원, 1유형으로 유도
 - * 공영형 유치원 정책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중, 정책우선순위임(박창현 외, 2019).
 - 공영형 유치원 정책은 추후 건강한 사립학교의 기본틀을 세우고, 의무교육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안착과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성과평가 등 추후 연구 진행, 공영형 유치원 단계적 실행 방안 구축 필요

□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고용 승계, 비품 매입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명확한 매뉴얼이 없어 조합원 뿐만 아니라 담당자 또한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인력을 늘린다면 본청이 아닌 각 지원청에 추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 정책고려사항:

• 매입형 유치원 교원고용승계 및 비품 매입은 매뉴얼에 불허함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 홍보가 필요함.

- 매뉴얼 배포 이후,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홍보를 통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 연수 및 홍보(교육청, 지원청 단위)

• 인력 지원, 교육청(유아과/학교설립과 등)내 칸막이를 극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TF 등 구성 필요, 교육청 및 지자체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마련 필요

□ 공립과 사립의 차이점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인구감소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유아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돌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 마련 필요. 각 지역의 특성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모델의 유치원과 돌봄 운영 정책이 필요함(박창현, 김근진, 2018).

5. 정책 제언 및 과제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및 과제

□ 공영형 유치원 정책 방향 및 과제

□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방향 및 과제

□ 매입형 유치원 정책 방향 및 과제

□ 해당 매뉴얼 및 컨설팅 정책 및 과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와 함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저출산 및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화두가 되었음. 정부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을 통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 제시하였음.
 - 정부는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을 재천명하고, 앞으로 유치원은 유아가 다니는 ‘첫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운영위원회 기제 강화, 사립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공영형 유치원 확대,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을 제시하였음.
 -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유아교육의 국가책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공립 40% 조기달성 정책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에 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육아정책연구소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박창현 외)」를 통해 이러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였고, 공공성이 강화된 모두가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공공 유치원(유아학교) 운영 모델(안)을 제시하였음.
- 이에 2019년에는 유치원의 공공성 정책의 현장 정착과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심화연구 및 정책개발, 사례조사,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지원, 정책 홍보 등이 필요하였음.
 - 공영형 유치원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 연구 및 공영형 유치원 사례조사를 통한 안내서 개발이 필요하였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 모델은 유치원 초기 인큐베이팅 및 유치원 확산 방안 연구, 매뉴얼 개발, 관련 협의체 등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 담당자 연수 등의 시·도교육청 지원, 정책 홍보, 현장지원이 필요하였음.
 - 매입형 유치원 모델은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였음.
-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계획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

지원 운영 모델들²⁾ 중,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모델 실행을 위한 선정, 설립,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정책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컨설팅 사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것임.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운영 모델 안내서 개발

-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운영 모델을 안내하는 지침서 및 매뉴얼을 개발함.
- 시·도교육청, 유치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운영 모델 심층 사례 분석 및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의 심층사례를 분석하여 지침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음.

다.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운영 모델을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한 컨설팅 체제 구축

- 본 연구에서는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운영 모델을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한 컨설팅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매뉴얼을 만들고 인력풀과 네트워크 구축함.

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운영 모델 매뉴얼 확산 및 보급

- 2020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선정, 설립, 운영 안내서를 만들고 확산, 보급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운영 모델의 내실화를 추진함.
- 2020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선정, 설립, 운영 안내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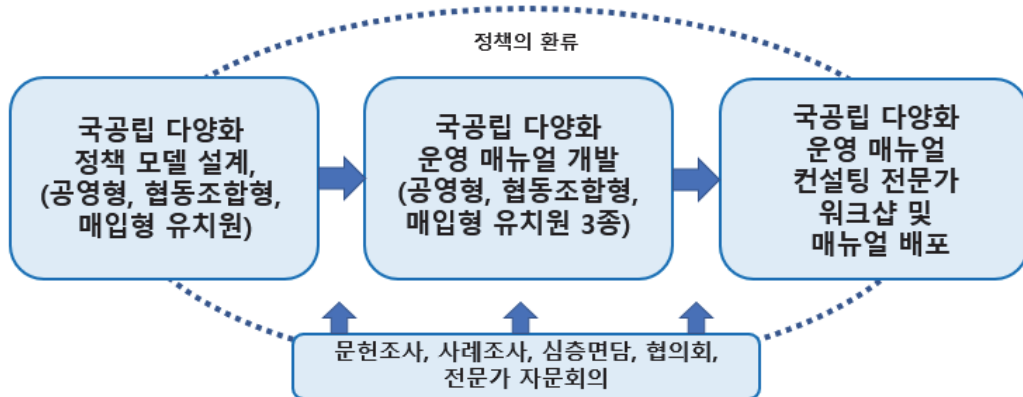
2) 2019년 공공성 강화 유치원 모델에는 공영형, 지원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유치원 모델 등이 제안되었음.

[그림 I-2-1]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예시: 2020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선정·설립·운영 표지 예시

2020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안내서	2020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운영 안내서
2020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안내서  교육부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eoul Metropolitan Research Center for Educational Policy	2020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운영 안내서  교육부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eoul Metropolitan Research Center for Educational Policy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안내서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안내서  교육부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eoul Metropolitan Research Center for Educational Policy	

3. 연구방법

-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음.



가. 사례조사 및 심층 면담

- 사례조사의 목적은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작성을 위해 매뉴얼에 담길 내용, 설립·운영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함임.
- 관련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방문하여 설립 및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원장, 교사, 부모)과 기관 사례조사를 실시함.

〈표 I-3-1〉 국공립 다양화 관련 유치원 사례 조사

기관명	방문일자
A 유치원(서울 협동조합형 유치원)	'19. 7. 9, '19. 12. 12
B 유치원(강원 공영형 유치원)	'19. 7. 24
C 유치원(광주 공영형 유치원)	'19. 7. 25, '19. 1. 22
D 유치원(대구 공영형 유치원)	'19. 11. 28
E 사회적협동조합(경기 동탄 협동조합형 준비 유치원)	'19. 7. 29

나. 협의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17개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매뉴얼 구성 협의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국공립 다양화 운영 모델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 관련 정책 담당자들과 수시로 협의회를 만들어 관련 쟁점을 논의하였음.
- 협의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회의(서면검토 포함) 등을 수시로 마련하여 해당 매뉴얼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고, 구성된 내용들을 관련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침.

〈표 I-3-2〉 협의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일정 및 내용

일자	자문진	주요 내용
'19. 4. 10	교육부 업무 담당자	연구방향 논의
'19. 5. 23	교육부 업무 담당자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집중 수정
'19. 8. 14	교육부 업무 담당자	연구방향 논의
'19. 8. 29	교육부 업무 담당자	연구 및 정책세미나 개최 논의
'19. 10. 15	교육부 업무 담당자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검토
'19. 10. 29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및 업무 담당자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수정보완
'19. 11.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A 유치원 원장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의견수렴
'19. 12. 2	전라북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국공립 확충 및 유치원 운영모델 다양화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9. 12.16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등 업무담당자	국공립 확충 및 유치원 운영모델 다양화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9. 12. 12	교육부 업무 담당자, A 유치원 원장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및 연구 관련 의견수렴
'19. 12. 16	경기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 관련 의견수렴
'19. 12. 18	경상북도 교육청 담당자	국공립 확충 및 유치원 운영모델 다양화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9. 12. 19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및 업무 담당자, 교육부 업무 담당자	협동조합형 유치원 관련 의견수렴
'19. 12. 23	인천시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의견수렴

〈표 I-3-3〉 전문가 자문회의

일자	자문진	주요 내용
‘19. 4. 10	공공운수노조 보육노조 위원	공영형,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사례 자문
‘19. 4. 24	교육부 업무 담당자 서울여성가족재단 실장, 유치원 원장 및 이사장 각 1인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모델 도입 방향 논의
‘19. 5. 13	A 어린이집 원장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내용 자문
‘19. 5. 20	서울 00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9. 5. 24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보좌관	공영형, 협동조합형 정책 자문
‘19. 5. 28	교육부 업무 담당자, 서울여성가족재단 실장, 00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총괄팀장, A 어린이집 원장,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현장지도전문가, 전 푸르니 B 어린이집 원장	공영형 유치원 정책 및 업무 매뉴얼 검토
‘19. 9. 17	00유치원연합회 임원 00유아교육정책연구회 전문가	공영형,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및 정책 관련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19. 9. 25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담당자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19. 12. 6	A 대학교 교수	
‘19. 12. 26	B 대학교 교수	공영형 유치원 매뉴얼 검토 및 의견수렴
‘20. 2. 17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한살림, 협동조합연합회 업무 담당자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결과 검토
‘20. 2. 24	B 대학교 교수	공영형 유치원 정책 관련 의견수렴

〈표 I-3-4〉 서면자문

일자	자문진	주요 내용
‘20. 1. 6-10	전남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기교육청, 대구교육청, 광주교육청, 부산교육청 업무 담당자	국공립 확충 및 유치원 운영모델 다양화 정책 의견수렴
‘20. 1. 28-31	충청북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담당자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검토 및 의견수렴
‘20. 2. 4-11	대전교육청, 울산교육청, 광주교육청, 경남교육청 업무 담당자	
‘20. 2. 10-13	부산시교육청 담당자	
‘20. 2. 14-21	공영형 유치원 운영 원장 8인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	국공립 다양화(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정책제언 검토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원장 및 이사장 각 1인	
	C 대학교 교수, 사립유치원 노조 사무처장	

다. 컨설팅 전문가 워크숍

-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정책을 실행하는 17개 시·도교육청과 177개 교육(지원)청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 추후 국공립 다양화 정책 수요가 있는 곳에 상시 또는 찾아가는 컨설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함.
- 코로나 19로 인해 3차 워크숍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국공립 다양화 매뉴얼 3종 세트 및 pdf 파일을 전문가들에게 배포하였음. 매뉴얼은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및 관련 부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배포하였음.

〈표 I-3-5〉 전문가 워크숍

일자	자문진	주요 내용
'19. 5. 21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부 과장, 사무관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19. 8. 29-8. 30	교육부 담당자,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1-2차 워크숍] 국공립 다양화(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연수
'20. 2.4-2.6 (계획)	177개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약 250명 예상)	[3차 워크숍]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매입형·공영형·협동조합형) 권역별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4. 용어의 정의

- 본 연구에서 ‘국공립 다양화’는 ‘국공립 다양화 정책’을 의미하며, 이 정책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또는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사립 유치원을 만들어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을 의미함.

5. 연구의 한계점

- 본 보고서는 국공립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유치원 선정, 설립, 운영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보고서임. 애초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10월)에는 국공립 다양화 모델로 장기임대형 유치원 모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보고서와 운영 매뉴얼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단기적으로 장기임대형 유치원이 현장 적용성이 크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부처와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의 설정, 설립,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음.
- 본 연구에서 진행한 컨설팅 전문가 워크샵의 경우, 1-2차는 진행을 하였으나, 코로나 19의 발발로 3차 워크샵은 진행하지는 못하였음. 이에 국공립 다양화 매뉴얼 3종을 배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음. 이후 코로나 19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정착과 확산, 홍보를 위한 비대면 워크샵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II. 연구의 배경

1.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개요와 방향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18년 10월)에서 제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중 하나임.
 - 이 방안에서 정부는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을 재천명하였으며,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운영위원회 강화,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방안에는 유아교육의 국가 책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국공립 40% 조기달성 정책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함.
 -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설립, 운영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현장의 정착을 돕고,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확산하며, 정책의 유연한 시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모델을 지역에 알맞게 현실화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며,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인구의 장기적 감소와 인구 이동을 고려하여,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조절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되, 퇴로 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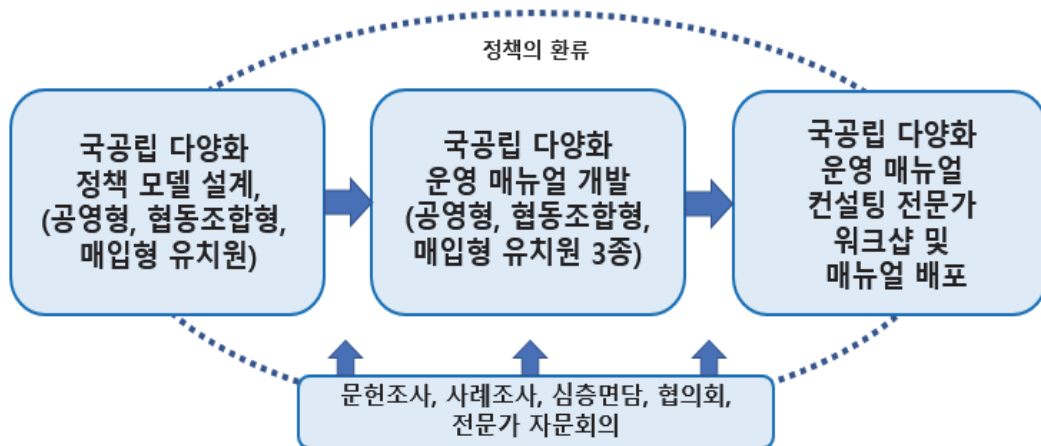
2.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과정

- 정부가 계획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10월)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김진석, 2019)에서 제시된 정책 모델, 시·도교육청 공영형, 매입형 유치원 운영 계획(서울·경남·부산시 교육청

등), 서울시교육청 공영형 유치원 운영 매뉴얼(2018) 등을 반영하여 공영형, 매입형 유치원 관련 국공립 다양화 정책 모델을 설계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매뉴얼의 경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10월)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김진석, 2019)를 기초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및 설립 가이드북(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2013;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사립유치원행정업무 길라잡이(경기도교육청, 2019a) 등과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운영 경험을 종합하여 매뉴얼을 구성하였음.
- 문헌조사와 사례조사, 심층면담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협의회),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통해 공영형, 매입형 유치원 선정 및 운영 매뉴얼,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및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인 피드백(정책의 환류)을 통해 해당 매뉴얼들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음.
-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II-2-1]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과정



-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연구에서는 크게 매뉴얼 개발과정과 시·도 의견을 담은 정책연구 보고서와 정책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2020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3종 세트(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를 포함함.

3. 선행연구

- 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김진석(2019)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운영 다양화 모델을 제시하였고, 공영형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 성과,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사립유치원 운영 모델의 다양화의 일환으로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사립유치원의 퇴로 마련 방안 등이 제안됨.
- 임재홍, 강남훈, 김용석, 김진석, 박창현(2015)의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준공영형 사립 교육기관 모델을 제시하였고, 사립 교육기관이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음.
 - 법인화형, 기부채납형 등의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이 제시됨.

4. 사례조사

가. A 유치원(서울 협동조합형 유치원)

□ 1차 조사(19.7.9.)

- A유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시작한 이유는 설립자의 사망으로 임대유치원이었던 A 유치가원이 폐원될 위기에서 벗어나, A 유치원의 교육철학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였음. 부모들과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A 유치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음.
- 6-7세 반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기 때문에 부모 간의 협력체계 이사회, 교사회 등이 탄탄함. 그러나 조합 설립된 이후에 들어온 조합원들의 경우, 협동조합형 유치원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하면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 운영될 수 있어 학부모 부담이 경감된다는 이유로 입학한 학부모들도 있었음. 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추후 조합원들이 바뀌고 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 기준으로 지속 운영될 때,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고유한 운영 방식들이 퇴색될 것을 우려하였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협동조합형과 공영형 유치원은 운영과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의 규정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
-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했던 초기 이사진에 비해 새로 들어오는 학

부모 이사진들의 열의가 떨어질 가능성을 염려하기도 하였음. 이에 원장 재량으로 뽑는 졸업생 부모 이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2차 조사(19.12.12.)

- 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 운영되며 안정화가 되었으나, 임대료가 높아 부담이 되었음(월 995만원). 지금보다 임대료가 낮아진다면, 학부모 부담금이 낮아지고 그 혜택은 유아에게 돌아갈 수 있음.
- 임대계약은 지하강당을 포함하였으나, 지하강당은 유치원 시설로 적합하지 않다는 규정 때문에 현재 사용을 못하여 불편함이 있음.
- 원아의 경우, 220명 정원이나 현재는 207명이 재원 중이며, 공무원 맞벌이 가정이 많은 유치원임. 공무원 맞벌이 부모들은 오후에도 유아들이 안전하게 있길 원함. 이에 오후 보조교사 채용이 중요한데, 현재 보조교사에게 지급할 임금이 부족한 실정임.
- 유치원의 유아모집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은 좋으나, 새로운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유치원의 철학과 다른 운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부모중심'이 아닌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해야 교직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번 공영형 유치원 지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원내에서 공영형 유치원 지정을 안 받기로 결정된 것에 대한 불만족으로 원을 다니지 않는 가정도 생김.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되면 병설유치원 같이 학부모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들의 인식이 존재하여, 반대가 많았음. 또한 지금은 유치원 근처에 사는 유아들이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으나,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져 정작 근처에 사는 유아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도 있음.
- 현재 급식비는 2,300원으로, 업체선정을 하지 않고 주변 마트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더 저렴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그러나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를 이용한다면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므로, 현재 유치원의 사회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음.
- 학부모들 중,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에 입학하였으나,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유치원 내 의사결정권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함.

나. B 유치원(강원 공영형 유치원)

- B 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되면, 교직원, 유아, 학부모들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하였음. 그러나 사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추가적인 비용들이 소요된

다는 사전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였음. 매뉴얼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사인을 법인화하는 유치원들이 법인화시 예산을 계획할 때 예측가능하게 해야 함.

- 매뉴얼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할 시기를 명시하여, 법인화를 하고 유치원을 개원할 때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면 좋을 것임.
- 사립유치원 교원 채용은 교원 확보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보다 일찍 하게 됨. 이에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지만 공개 채용을 해야 하고, 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서울 이외의 지역에는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공영형 유치원(법인화) 전환 이전에는 B 유치원에는 중산층 이상 가정의 유아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들의 재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이는 공영형 유치원 선정 이후, 학부모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임. 공영형 유치원을 통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유치원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공공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교사들이 교육청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현재 B 유치원의 교사들은 1시간 정도의 수업준비시간을 활용하고 있음.
-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되고, 행정실장이 예산,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원장과 교사들은 교육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어, 유치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원장도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운영자 연수를 충분히 받고,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공영형 유치원 운영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판단됨.

다. C 유치원(광주 공영형 유치원)

□ 1차 조사(19.7.25.)

○ 원장

-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고, 매달 컨설팅이 있고 3개월에 한번 씩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유치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으나, 도움이 되었음.
-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기 이전에는 C 유치원 주변에 대형 유치원들이 생기고, 주변 환경의 변화로 유아모집이 어려웠으나,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유치원에 대기자가 늘어났고, 지역사회에서 유치원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체감함.
-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된 후, 신입 원아의 부모들은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오해로 유치원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으로 직접 보내는 경우도 많아짐.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이 이전보다 많아짐.
- 공영형 유치원을 처음 시작할 때, 교육청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에듀파인 정착과

행정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음. 또한 소통의 오류로 유치원에서는 교육청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기도 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영형 유치원에 비하여 예산이 낮게 책정되어 교육청에 질의를 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급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답변받았음.
-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고 나서, 유치원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음. 사립 유치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맞추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유치원으로 바라보고, 이에 준하는 규정을 제시하기도 하여, 일관되지 못한 행정에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사립학교법을 따를 것인지 공립기준을 따를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교사

-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이후, 유아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을 긍정적인 성과로 인식함. 처음에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자체만으로는 변화를 잘 체감하지 못하였으나, 행정적으로는 변화가 많았다고 체감함.
-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이후, 학부모들은 원비 경감을 가장 만족스러워 함.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배운다는 인식이 강함.
- 교사의 급여는 10-20만원 정도 증가하였음.
- 공영형 유치원 선정 이전의 체계에서는 원하는 연수를 가고 싶어도 대체교사가 없어 가기 어려웠으나, 선정 이후에는 행정교사 및 대체교사가 있어 연수를 갈 기회가 많아짐.
- 공영형 유치원 교사로의 자부심에 대해서 아직 강하게 체감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 사립유치원에 비하면 자부심이 높음. 이는 유치원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

○ 학부모(학부모 위원)

-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이후,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원비 경감임. 원비로 지출 하던 부분을 현재는 다른 형제의 교육비 또는 유아와 다른 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있음.
-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이후, 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부모로서 관심있게 지켜보게 됨. 부모들 중에는 만족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만족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됨.
- 교육의 질도 높아졌다고 생각됨.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유치원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함. C 유치원에 대한 소식이 뉴스에 나

오고, 주변에서 공영형 유치원을 이야기할 때 부모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하였음.

□ 1차 조사(20.1.22.)

- 공영형 유치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다, 에듀파인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많이 해소되었음.
- 법인 전환시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전환하는 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 교육청에서 특수학급을 신청하여 학급을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유치원 인근에 매입형 유치원이 생겨 보류된 상태임.
- 공영형 유치원의 시작 및 운영에서의 어려움(법인 전환시 취득세 부담, 교직원 급여 관련, 교육(지원)청·컨설팅·본청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과 장점(유아모집의 수월성, 안정적인 교재교구 수급 등), 향후 개선점(특수학급 및 학급증설) 등에 대해 논의함.

라. D 유치원(대구 공영형 유치원)

- D 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이 잘 정착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임.
- 에듀파인 도입시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훨씬 장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예전보다 덜하여, 부모들의 불만족이 다소 존재함.
-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운영이 안정되어 운영자 입장에서 편안해짐. 사립유치원은 늘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매우 많았는데, 공영형 유치원이 되고 오히려 요구사항이 줄어들었음. 현재 만 5세는 공영형 유치원임을 알고 들어왔고,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음. 그러나 기존의 사립에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바뀐 과정을 체감한 부모들은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말하기도 함.
- 원장들은 공영형 유치원이 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가장 큰 걱정은 3년 후 재약정이 되지 않는 것임. 유치원의 성과를 보고 재약정을 정하는데, 이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원장들이 공영형 유치원을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높음.
-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속될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다 써야 함. 사립유치원이 경우, 큰 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하여 적립을 해 놓아야 무리가 없는데,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적립금이 없으니 미래를 생각하면 다소 불안한 점이 있음.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노후된 건물을 수리할 때 목돈이 들어가고, 이를 대비해야 하는데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개방형유치원(대구 공영형 유치원의 명칭)을 도입하고 지지한 교육감이 퇴임하여, 이 정책과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기대가 크지 않음. 공영형 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면 정책이 흐지부지된다고 부모들이 생각할 것 같음.

마. E 사회적협동조합(경기 동탄 협동조합형 준비 유치원)

□ 1차 조사('19.7.29.)

-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걱정과 우려가 있었으며, 준비과정에 있어 화성시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음.
- 부모들이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고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위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는 등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줄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 현재 운영 중인 '숲이랑 놀자(품앗이 공동육아)'은 공교육 또는 공보육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열기 전, 품앗이 육아 단계의 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 또는 매뉴얼이 없으므로 어려움이 있음.

□ 2차 조사('19.12.26.)

- 이음터 앞에 초등학교 놀이터가 있으나, 연령이 맞지 않아(7세 이상 이용 가능한 놀이터) 쓸 수 없어, 협동조합형 유치원 인가 조건이 맞지 않아 고민 중임. 이에 실내놀이터를 만들어 인가를 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함. 이에 초창기 계획 시 학급이 5개였는데, 실내놀이터 때문에 공간이 줄어들어 학급을 4개 신청함. 만약 교무실을 이음터 건물 내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면 교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도 어려운 상황임.
- 현재 7세가 10명이 안 되어 6-7세 통합도 고려하고 있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학부모들이 혼합연령을 선호하지 않아 잘 시행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임. 6-7세 통합은 22명까지 가능함.
- 현재 유치원이 임대하고 있는 이음터 건물도 시범 운영 중이며 2020년 2월 정식 개관 예정임.
- 임대료는 연 3,500만원 정도이며(토지이용료 200만원 포함) 전기요금(냉난방비 포함) 월 350만원 부담이 예상됨.
- 반 이름도 부모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등 부모들의 참여가 적극적임.
- 현재 실내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놀이시설을 구성하고 있는데 6,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감.

-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처음 설립하다 보니, 초기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화성시사회적협동조합 지원금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유치원 인가를 받고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지원받지 못함. 초기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음.

Ⅲ.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1. 2020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안내서

가. 공영형 유치원의 개요

1) 공영형 유치원이란?

가) 공영형 유치원의 개념

□ 공영형 유치원이란,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에 준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임(교육부, 2018: 5).

-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법인에 개방이사를 배치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사립유치원 혁신운영 모델임.
- 재단·사회복지·학교법인·비영리법인 등 법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함.

-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학교법인'을 우선 선정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며, 다중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공공성을 확보하므로 공영형 유치원으로서의 지원이 가능함.

나) 공영형 유치원의 특성

○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에 준하는 운영과 재정 지원을 받지만, 교육과정 등 유치원 운영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립유치원의 건학이념 틀에서 이루어져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이 보장됨.

- 국공립의 공공성과 사립의 자율성이 결합된 사립유치원 운영 모델임.

○ 공공성 확보, 공립에 준하는 운영, 사립의 특수성 보장, 상호 보완 협력 체제 구축 운영, 공정한 업무 추진을 특징으로 함.

○ 공영형 유치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 모집하고,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운영을 강조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임.

2) 공영형 유치원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 유아교육 격차 해소

○ 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 및 교육비의 보편적 지원을 통해 모든 유아들의 교육 격차 완화를 추진 중이나, 사립유치원에 취학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과도한 상황으로 부모 부담 경감이 필요한 실정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학 유아(만 3~5세)에게 누리과정비('20년 3월부터 월 24만 원) 지원 등
- 월평균 학부모 부담('19.4월 유치원 정보 공시 기준): (국공립) 11,010원 / (사립) 219,452원

○ 교육 선택권 확대

-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이나, 원도심 등 도시 지역은 부지 확보,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 침해 등 사유로 공립유치원 신설에 어려움이 있어 유아의 교육 선택권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유치원 원아 수(분담률, '19.4월): (국공립) 17.8만 명(28.1%), (사립) 45.6만 명(71.9%)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사립유치원은 고유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국공립유치원의 유아 수용률을 보완하여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과 더불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공영형 유치원의 핵심가치

-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통해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과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장점을 살려 부모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유치원 운영 혁신 모델임.

-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성'과 '자율성'을 결합하여 유아·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의 본질을 현장에서 실현하며, 교육의 질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음.
- 공영형 유치원의 핵심 가치는 공공성(보편성, 투명성, 참여성), 자율성(교육혁신, 운영의 자율성), 교육의 질적 혁신(유아·놀이 중심의 교육 구현)임.

■ **알아두면 좋아요: 공영형 유치원의 핵심가치**

- 공공성: 투명한 운영과 부모 부담 경감 측면의 공공성 제고
 - 보편성: 부모 부담 경감(비용), 입학의 공정성 및 취약계층 배려
 - 투명성: 정확한 정보 공개, 투명한 회계 관리
 - 참여성: 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부모 참여·공개 강화(급식·안전·교육 모니터링 운영 등)
- 자율성: 교육 혁신과 부모 요구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의 자율성 최대한 부여, 사후 관리 중심으로 부정 행위 사전 예방
 - 회계 규칙 내 활용 및 규제 최소화(단, 인력 채용 시 공개 경쟁 채용+운영위 심의)
- 교육의 질 제고: 유아·놀이 중심 교육 구현
 - 유치원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 지표 일정 수준 달성
 - ※ 교육 프로그램, 리더십 및 교사(근무경력 등), 교사 대 유아 수 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 일정 수준 달성

4) 공영형 유치원의 추진경과와 방향

가) 추진 경과

- ‘제1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13)’에서 ‘공영형 유치원’ 도입 검토
- 공영형 유치원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실시(‘16.4-12)
-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17.3.8)
 - 사회적 배려계층이 밀집한 지역, 원아 수용률이 낮은 지역 등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공공형 유치원’ 도입
-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17.5.4, 5.8)
- 공영형 유치원 시·도 업무담당자 설명회 개최(‘17.6.27)
- ‘공영형 유치원’ 추진 관련 이해 관계자 협의회 개최
 - 시·도교육청, 전문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17.9.13, 9.22, 9.26)
-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시·도교육청 안내(‘18.3.27)
- 시·도교육청(수요 제출: 서울, 대구, 광주, 강원, 전남) 대상 실무협의회 개최(‘18.4.10)
- 공영형 유치원 2개 원(광주 인양, 강원 프랜비숲 유치원) 선정, 운영(‘18.9)

나) 추진 성과

- 공·사립 장점을 결합한 건전한 사립유치원 운영 모델로 공영형 유치원을 추진해 왔음.

- '18.9월 2개 원 선정 후 컨설팅 등 준비 과정을 거쳐 '19.3월부터 공영형 유치원(광주 인양, 강원 프랜비숲 유치원)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둠.
- 기존 공영형 유치원 참여 조건인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개방 이사 도입', '3년간 한시 지원' 등은 사립유치원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의 정책 참여가 어려웠음.

다)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 추진 방향

- 시·도 자율 참여를 권장함.
- '19년 국가시책사업(유아교육 역량 강화) 내 '선택 과제'로 분류하고, 사업 참여 희망 시·도교육청에 한하여 유치원을 선정·운영하도록 함.

〈표 Ⅲ-1-1〉 시·도교육청 자율 추진 사례

서울 더불어기움 유치원	- '15년 정책 연구, '17년부터 시범 운영('17, 2개소, '18, 4개소) - 연 5~6억 원 지원, 부모 만족도 95%, 유아모집 부담 경감, 수업 장학 컨설팅 효과, 행정 부담 완화 등
대구 개방형 유치원	- '18년 시범 사업, 법인·개방형 이사(2인) 조건으로 1개 원 선정(3월) - 연 4억 원 이내 지원, 부모 및 교사 만족도 우수, 교육비 부담 없음, 투명한 기관 운영 등

-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학기 운영 전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함(법인 전환 등).
- 각 시·도별 실정 및 선정 유치원별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를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한 원활한 운영 도모함.

□ 추진 계획

-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공공성이 강화된 우수 사립유치원을 선정, 지원하여 공영형 유치원의 기본 가치 실현 및 공공 유아교육 모델 정착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함.
- 공영형 유치원 지원 개선 및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선정 기준 및 중점 추진사항 등 마련함.

① 지원 확대

- 공영형 유치원 진입을 위한 취득세, 등록세 등 법인 전환 소요 비용 지원, 유치원 규모에 따른 지원 금액 상한 조정, 선정 기준 개선 등 추진
- 법인 전환 소요 비용의 경우, 재산 평가액에 따라 책정(약 1,000-1,500만원 이내 소요)

② 핵심 가치 및 선정 기준 강화

- 핵심 가치 제시, 선정 기준의 세분화 및 강화로 공정성 및 교육의 질 확보로 공영형 유치원의 방향성 제시

〈표 Ⅲ-1-2〉 공영형 유치원과 일반 사립유치원 비교

구분	일반 사립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선정 대상	-	법인 형태 의무화 ※ 사인 선정 시 법인 전환
운영 형태	개인, 법인 형태 가능	법인 이사 2인 이상을 개방 이사로 선임, 운영 상 공공성 확보 ※ 학부모 부담 완화, 저소득층 유아모집, 특수학급 운영 등
유아모집	자율	저소득층 유아 우선 입학 ※ 법정 저소득층,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산 편성	자체 수립	유치원 편성→교육청 심사 및 예산 배부
교원 인건비	설립자 자율 책정 (사립유치원 교원 호봉 준용)	공립유치원 대비 임금 초과 지양(80% 수준 권장)
지원 범위	누리과정 지원비, 교원 기본급 보조 등	누리과정 지원비 및 교원 기본급보조 등 + 교직원 인건비, 학부모 부담금, 운영비 등(4억 원 이내, 필요 시 조정 가능)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과정, 에듀케어, 특성화 프로그램 자율 운영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운영 내실화, 돌봄 운영 권장
학부모 부담금	유치원에 따라 다름 ※ 월 약 219천 원('19 기준)	국공립 수준으로 완화(월 약 1-2만 원('19 기준))
지도 및 관리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연도별 운영 현황 점검, 3년 단위 재지정 평가

나. 공영형 유치원 선정 및 재선정

1) 공영형 유치원의 선정 개요

□ 선정 대상

-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단·사회복지·학교법인·비영리법인 사립유치원으로 3년 이상 운영할 의지가 있는 유치원

- 시·도별 실정에 적합한 세부 선정 기준을 실행 계획 수립 시 설정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기준을 선정 결과 보고 시 명시할 수 있음.
- 아동학대·성범죄 발생 또는 부정 회계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유치원 등을 선정함.

□ 선정 규모

- 00개 내외(평가 후 적정 기준 이하 선정 제외)

□ 운영 기간

- 유치원 현장(유아, 학부모, 교직원 등)의 정착 및 교육 정책의 신뢰성 등을 고려, 3년 이상 운영 원칙 ('20.3월~'23.2월)

□ 재정 지원

○ 기본방향

-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80% 수준의 인건비 및 공립에 준하는 운영 경비 지원, 선정 유치원 수 및 유치원 별 규모(원아 수, 교직원 수 등) 등에 따라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 방식: 누리과정지원금 + 정부보조금

※ (인건비 + 운영비) 소요 예산 총액에서 누리과정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 유치원 운영에 따른 실제 운영비 중 수익자부담경비(학부모 부담금) 제외 분을 지원함.

※ 지원조건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른 예산 지원 유지함.

■ 알아두면 좋아요: 세부 기준 (서울 더불어키움 공영형 유치원 예시)

○ 인건비 : 공립 수준으로 지급

- (경력)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정
- (교원) 최고 40호봉, (행정실장) 최고 7급 10호봉
- (기타직)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원 세부 기준에 따라 지급

○ 운영비 :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적용

- (공동 경상운영비) 9,724,822원*학급 수 + 115,395,000원(유치원계수)
- (개별 경상운영비) 학습 자료 구입비/현장 체험 학습비, 통학 차량 임차료
- (기타 경비) 교재 교구비, 교육환경개선비 별도 지급

* 출범 년도 100%, 2년차 50%, 3년차 미지급 (신설 학교 개교 경비 개념으로 지급)

□ 지원 조건

- 학부모 부담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경감할 의지가 있는 유치원
- 법인에 개방 이사 2인 이상 선임 가능 유치원

- 저소득층 유아 입학(국공립 기준 적용) 및 특수학급 운영(권장 사항, 운영 시 비용 추가 지원) 등으로 공공성 확보할 의지가 있는 유치원
- 기존 법인의 경우, 임기 만료 이사를 개방 이사 2인 이상으로 선임하여 단계적으로 조건을 충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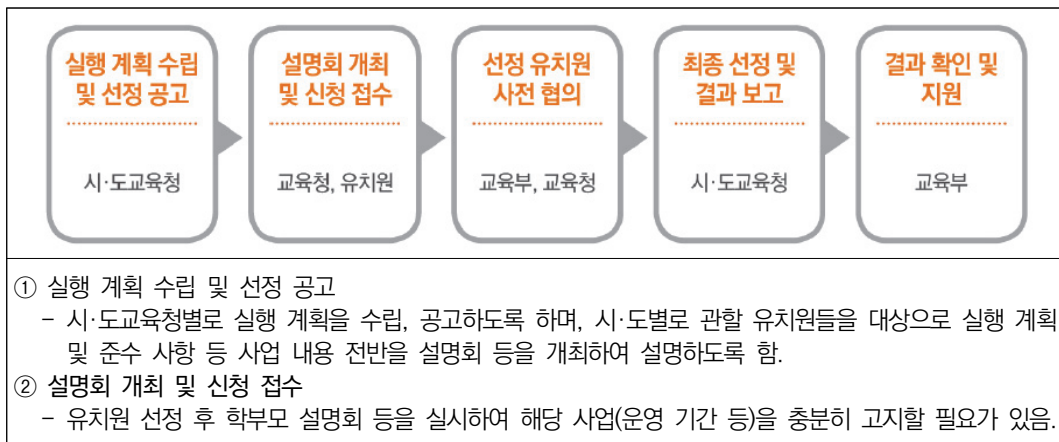
[그림 Ⅲ-1-1]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선임 절차(안)



2) 공영형 유치원의 선정 절차

- ☞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일정에 따라 선정을 추진하고, 결과 보고를 하는 절차를 따름.
 - 시·도교육청에서 실행계획수립 및 선정 공고를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 접수를 받음. 이후 선정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하고, 최종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그림 Ⅲ-1-2] 공영형 유치원 선정 및 결과 보고 절차



- ③ 선정 유치원 사전 협의 및 최종 선정 평가
- 시·도별 선정위원회에서 희망 유치원의 운영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및 결과 제출함.
- ④ 결과 확인 및 지원
- 교육부는 시·도 선정 결과에 따라 시·도별 선정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며, 교육부 공영형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유치원 최종 선정 및 예산 지원함.
 - 시·도별 지원 내용(선정 유치원 수, 유치원 별 지원 규모 등)을 협의한 후 최종 선정함.
 - ※ 3년 시범 운영 후 지속 운영 의지가 있는 교육청의 참여를 독려함.

[그림 III-1-3] 시·도별 지원 내용 심사 후 최종 선정



가)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 운영

- 공영형 유치원 선정 전반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함.
 - 교육청과 유치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부여한 사항을 준수
-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함.
 -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국장급)과 위원 약 6명(과장급 인사, 공·사립유치원 원장, 교육관련 인사, 학부모 1인 이상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알아두면 좋아요: ‘공영형유치원지원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 공영형 유치원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를 ‘공영형유치원지원위원회’로 기능을 확대, 전환하여 운영 가능
-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평가·재약정 등 전반에 대해 심의할 수 있음.

나) 공영형 유치원 선정 심의

○ 선정 심의 절차

- 안내 → 신청서 접수 → 심의 → 통보 → 법인 설립 안내 → 법인 등록 → 확정

○ 신청 기간: 기한 내에 관할청에 신청서 제출

다) 공영형 유치원 지정과 등록

□ 신청 자격

-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사인 유치원으로, 법인이 아닌 유치원의 경우 법인 설립과 경비 조달 방법을 적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서류

- 법인 유치원은 이사 동의서(이사 회의록), 사인 유치원은 설립자의 법인 설립 공증서, 유치원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재산평가 감정서, 수익형 재산을 입증할 서류(증서)를 제출해야 함.

□ 사전 심의

- 공영형 지정을 희망하는 유치원, 법인(조합)의 대표를 신청 서류 접수 전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에 참석시켜 공영형 유치원 운영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음.
- 심층 면담은 선정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설립자의 교육관과 설립 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예심을 거친 후 신청서를 접수토록 함.

□ 등록

-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를 통과한 신청 유치원은 지체없이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위한 법인 등록과 유치원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3개월 안에 국가에 제출함.

※ 제출 서류: 법인 등록 신청서와 수익형 재산 증명서, 유치원 운영 규정안 각 1부.

□ 법인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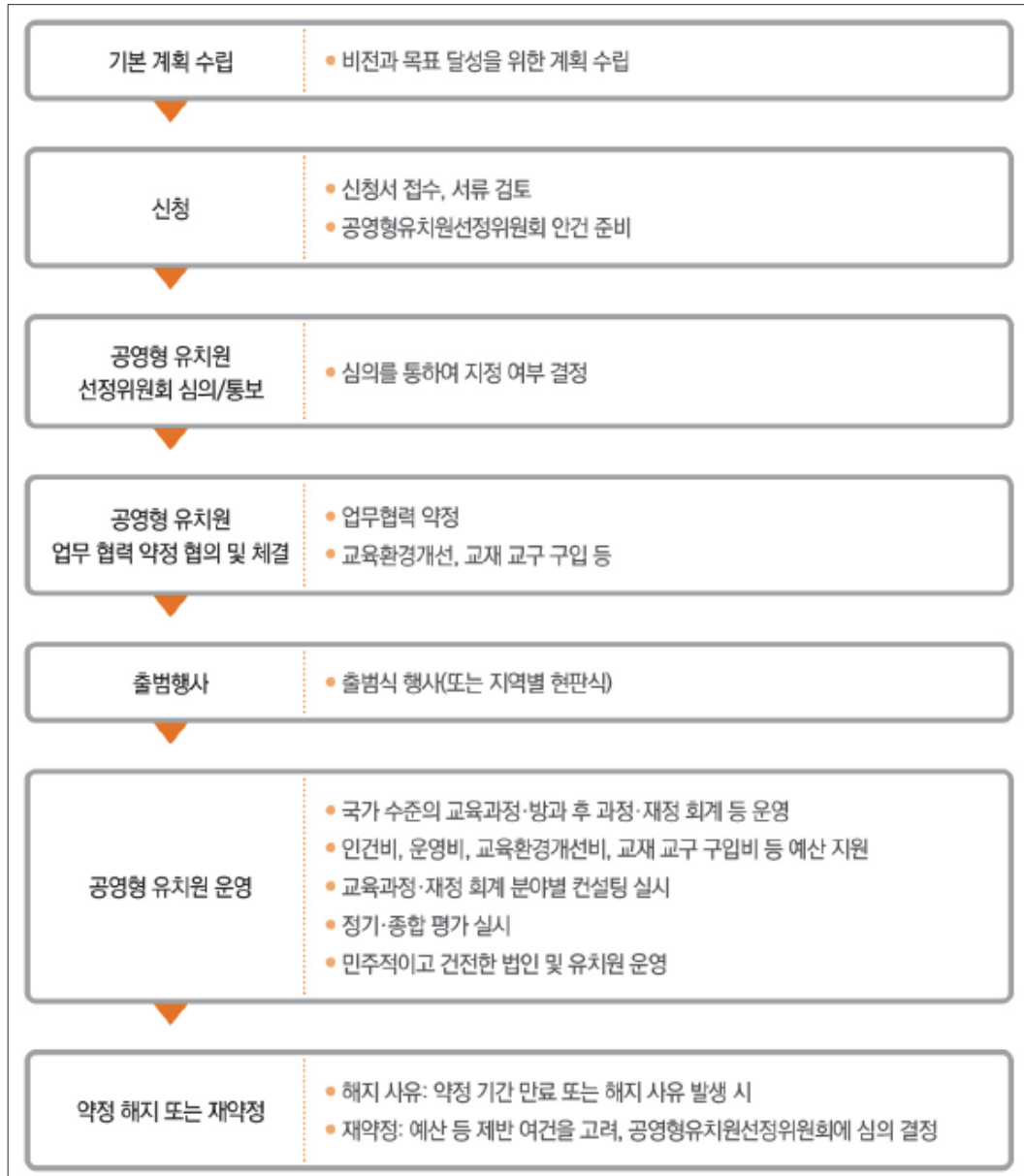
- 법원(등기소)의 법인 설립이 되면 관할 교육청은 학교 법인 인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방 이사를 복수로 추천하여 유치원에서 선임함.

- 교육청의 법인 등록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함.

☞ 교육청의 법인 인가 전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실사를 받고, 법인 인가에 따른 취·등록세 완납증명서와 이사회 신원 조회 후 이사 회의록, 유치원 운영 규정집, 수익형 재산 증서(통장), 예산안 등을 제출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 설립이 성립됨.

※ 법인의 재산은 교사(校舍)와 동일 지번에 속한 토지에 한하며, 법인 설립 전 유치원 명의로 된 부속 토지는 양도 처리해야 함. 이 경우 법인 설립 전 미처분된 토지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법인 소유로 귀속됨.

[그림 Ⅲ-1-4]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흐름도



3) 공영형 유치원의 선정 및 재선정 기준

■ 알아두면 좋아요: 공영형 유치원 선정 기준 주요 사항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그 외 평가 기준에 따라 지표별 평가하여 배점이 우수한 유치원 순으로 선정함.

기본 항목	- 직전연도 정원 충족률 70% 이상(권고), 시·도별 정원 배치 기준 준수, 설립자 및 원장 1인 1기관 운영, 중대한 행정처분 유무 등
세부 항목	① 기관 환경의 적절성(위치, 안정성, 적정 규모 등) ② 사회적 배려계층(저소득층, 특수유아 등) 비율, 교원 임금 등 운영 관리 사항 ③ 공영형 유치원 운영 계획의 적절성 ④ 시·도 자율평가 등 ※ 교육부의 평가 기준(안)을 참고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별도 평가 기준 마련 가능

□ 선정 기본 항목 : 기본 항목은 8가지이며, 참여 기본 조건으로 항목을 모두 충족 시 참여 가능

- 충족 조건과 제외 조건으로 구성됨.

- 기본 항목은 ‘정원충족률’, ‘교육환경 적절성’, ‘학부모 부담금 책정의 적절성’, ‘설립자 및 원장 1인 1기관 운영’, ‘행정처벌 여부’, ‘적정 규모’, ‘적정 운영 여부’, ‘법인 운영’임.

① ‘정원충족률’은 직전연도 정원 모집 정원 대비 충족률 70% 이상을 권고함.

- 지역별 평균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함. 예컨대 도시 지역은 80% 이상, 농어촌(특례) 지역은 50% 이상 조정 가능함.

② ‘교육환경 적절성’은 시·도별 정원 배치 기준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평가 기간은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함.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설·설비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③ ‘학부모 부담금 책정의 적절성’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과도하게 책정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지역 사립유치원 평균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고액 책정된 유치원은 제외함.

④ ‘설립자 및 원장 1인 1기관 운영’은 설립자 및 원장이 유치원을 1인이 1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유치원을 선정함.

- 직전연도 기준으로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유치원은 제외함.

⑤ ‘행정 처벌 여부’는 기관 및 원장의 행정처분 및 처벌 여부 유무를 평가하며, 현재 기준으로 5년간을 평가함.

- 아동학대·성범죄 발생 또는 부정 회계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함.

- 시·도 기준에 따라 경미한 사안 등은 예외가 가능하며, 중대비위제외에 중점을 둠.

■ 알아두면 좋아요: 행정처분 및 처벌의 범위

- ① 유아교육법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 ② 유아교육법 제30조제1호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 조치
- ③ 유아교육법 제32조의 운영정지 또는 유치원의 폐쇄
- ④ 유아교육법 제34조 내지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 ⑥ '적정 운영'은 4학급 이상 유치원을 권고하며, 충족 조건임.
- ⑦ '적정 운영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그 밖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교육감이 판단하는 유치원을 평가함.
- ⑧ '법인 운영'은 사인 유치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선정 유치원의 법인 전환 가능 여부를 평가하며, 법인 유치원의 경우, 개방이사 비율 충족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함.

〈표 Ⅲ-1-3〉 공영형 유치원 선정 기본 항목

평가 지표	중점 평가 사항	평가 기간	준수 여부 (O, X)	비고
① 정원충족률	- 직전연도 정원 모집 정원 대비 충족률 70% 이상(권고) ※ 지역별 평균 등 여건을 고려한 조정 가능 (예시) 도시 지역 80% 이상, 농어촌(특례) 지역 50% 이상	직전 연도		-충족조건
② 교육환경 적절성	- 시·도별 정원 배치 기준 준수 -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설·설비 등 기준 준수	직전 연도		-충족조건
③ 학부모 부담금 책정의 적절성	- 학부모 부담금 적정 책정 ※ (예시) 지역 사립유치원 평균 대비 2배 이상 제외	직전 연도		-고액제외
④ 설립자 및 원장 1인 1기관 운영	- 설립자 및 원장 1인이 1개 유치원 운영 ※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 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유치원은 제외	직전 연도		-충족조건
⑤ 행정처분 처벌 여부	- 기관 및 원장의 행정처분·처벌 여부 ※ 아동학대·성범죄 발생 또는 부정 회계 등에 따른 행정 처분 전력이 없는 유치원 등 기준 참조 (다만, 시·도 감사 기준에 따라 경미한 사안 등 예외 가능)	5년, 현재		-제외조건 -중대비위
⑥ 적정 규모	- 4학급 이상 유치원(권고)	직전 연도		-충족조건

평가 지표	중점 평가 사항	평가 기간	준수 여부 (O, X)	비고
⑦ 적정 운영 여부	- 그 밖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교육감이 판단하는 유치원	현재		-제외조건
⑧ 법인 운영	- (사인) 선정 유치원의 법인 전환 가능 여부 - (법인) 개방이사 비율 충족 여부	현재		-충족조건

□ 선정 세부 항목 : 총점 100점 중, 7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됨.

○ 세부 평가 항목은 5개 항목, 하위 22개의 평가요소로 구성됨.

- 5개 세부 항목은 ‘기관환경’(10점), ‘운영관리’(50점), ‘운영계획’(30점), ‘시·도 자율평가’(10점), ‘가감점’(±5점)으로 구성됨.

① ‘기관환경’은 위치의 적절성에 관한 기준으로 취학 수요조사 결과 국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단설유치원 설립 비율이 낮은 지역 또는 공립유치원 유아배치 비율이 낮은 지역), 인근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등 공영형 유치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 배점은 10점이며, 하위 요소로 ‘우선 설치 지역 대상 여부’(5점), ‘위치의 적절성’(5점)으로 구성됨. 우선 설치 지역 대상 여부는 취학 수요 조사 결과 국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평가하고, 위치의 적절성은 인근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 등 대체 기관 존재 여부를 평가함.

② ‘운영관리’는 ‘유아’, ‘교직원’, ‘학부모’, ‘교육과정’의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점 평가 사항들로 구성됨. ‘운영관리’의 배점은 전체 50점으로 구성되며, ‘유아’(15점), ‘교직원’(15점), ‘학부모’(10점), ‘교육과정’(10점)으로 구성됨.

■ ‘유아’의 경우, ‘정원충족률’, ‘사회적 배려계층 유아 비율’, ‘사회적 배려계층 유아 우선 입학’을 중심으로 평가함.

☞ ‘유아’ 영역의 하위 평가 요소 이해 및 배점

① **정원충족률**: 유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의미하며, 배점은 5점임.

② **사회적 배려계층 유아 비율**: 재원 유아 중 사회적 배려계층(장애통합, 다문화, 저소득층 등) 유아 비율 및 수를 의미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함. 배점은 5점임.

③ **사회적 배려계층 유아 우선 입학**: 신규 유아모집 시 사회적 배려계층(장애통합, 다문화, 저소득층 등) 우선 입학 실시하며, 조건부(협약 등) 가능, 배점은 5점임.

■ ‘교직원’의 경우, ‘교원현황’, ‘교원 임금 수준 및 처우의 적정성’, ‘교원 공개 채용’,

‘원장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 ‘교직원’ 영역의 하위 평가 요소 이해 및 배점

- ① **교원 현황:** 경력 교사 비율 등을 의미하며, 배점은 3점임.
- ② **교원 임금 수준 및 처우의 적정성:** 공립유치원 대비 교원 인건비 수준 평가(기본급 및 수당 포함, 원장 제외),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실사를 의미하며, 각 시·도별 유사 경력별 공립유치원 교원 급여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함. 배점은 5점임.
- ③ **교원 공개 채용:** 교원 신규 및 추가 채용 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조건부(협약 등) 가능, 배점은 2점임.
- ④ **원장의 전문성:** 원장이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 자 여부를 평가하며, 15년 이상 재직 시 5점임. 교원원자격검정령 상 인정되는 교육 경력에 한함. 배점은 5점임.

- ‘부모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부모 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함.

☞ ‘부모’ 영역의 하위 평가 요소 이해 및 배점

- ①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적을 파악하며, 예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유아교육법 상 운영위 자문 사항 준수 여부, 운영위 회의록 등을 평가함. 배점은 5점임.
- ② **부모 참여 수준:** 유치원과 부모와의 소통이 잘되고, 교육 활동과 의사 결정에 부모들의 참여 수준이 높은지를 평가함. 학부모회 운영 여부, 학부모 교육 실시 여부를 평가하며, 조건부(협약 등) 가능, 배점은 5점임.

- 교육과정의 경우, ‘양질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평가함.

☞ ‘교육과정’ 영역의 하위 평가 요소 이해 및 배점

- ① **양질의 유아교육과정 운영:** 유아·놀이 중심, 유치원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 여부를 평가함. 교육과정 내용 및 개정 누리과정 적용 준비 등을 평가함. 배점은 5점임.
- ②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 아침·저녁 돌봄반을 운영하여 돌봄과 학습이 가능한 방과후 과정을 편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학부모 수요에 기반을 둔 방과후 과정, 아침·저녁 돌봄반 운영 여부에 중점을 두며, 배점은 5점임.

- ③ ‘운영계획’은 ‘계획의 적절성’, ‘예산운용’, ‘정책참여’의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점 평가 사항들로 구성됨. ‘운영계획’의 배점은 전체 30점으로 구성되며, ‘계획의 적절성’(5점), ‘예산운용’(15점), ‘정책참여’(10점)으로 구성됨.

- ‘계획의 적절성’의 경우, ‘신청 계획서 내용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 ‘계획의 적절성’ 영역의 하위 평가 요소 이해 및 배점

- ① **신청 계획서 내용의 공공성:** 특수학급 설치 계획, 아침·저녁 돌봄, 학부모 부담 경감 의지, 학부모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교사 처우 및 교육, 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배점은 5점임.

- ‘예산운용’의 경우, ‘예산 운영계획의 적합성’, ‘학부모 부담금 수준’, ‘회계 투명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 ‘예산운용’ 영역의 하위 평가 요소 이해 및 배점

- ① **예산 운영계획의 적합성**: 교사 인건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평가함. 원장 인건비가 과도한지를 확인하고 평가함. 배점은 5점임.
- ② **학부모 부담금 수준**: 기존 학부모 부담금이 지역 내 사립유치원 평균과 비교하여 과도한지 여부를 평가함. 배점은 5점이며, 평균 3점(±2점)으로 점수를 부여함.
- ③ **회계 투명성**: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포함 여부 및 적절성 여부를 평가함. 배점은 5점임.

- ‘정책참여’의 경우, ‘교육 정책의 참여 수준’, ‘사업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함.

☞ ‘정책참여’ 영역의 하위 평가 요소 이해 및 배점

- ① **교육 정책의 참여 수준**: 유치원 평가, 입학 관리 시스템, 교원평가 등 유아교육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함. 조건부(협약 등) 가능, 배점은 5점임.
- ② **사업 참여 의지**: 원장 및 교원의 참여 의지를 평가함. 배점은 5점임.

- ④ ‘시·도 자율평가’는 ‘교육청 자율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시·도 자율평가’의 배점은 전체 10점으로 구성되며, ‘교육청 자율평가 항목’(10점)임.

- ‘교육청 자율평가 항목’의 경우, 시·도별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자율평가 항목을 충족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함.

☞ ‘교육청 자율평가 항목’의 평가 요소 이해 및 배점

- ‘맞춤형 돌봄’ 등, 시·도별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자율평가 항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함.
- 다수 법인이 신청했을 경우, 학교법인을 우선 선정하여 검토함. 배점은 10점임.

- ⑤ ‘가감점’은 ‘가점’과 ‘감점’으로 구성됨. ‘가감점’의 배점은 전체 ±5점으로 구성됨.

- ‘가점’의 경우, 기타 유치원별 공공성 강화 의지 등 중심으로 평가함.

- ‘감점’의 경우, 타 감점 요인 등 중심으로 평가함.

☞ ‘가감점’ 영역의 하위 평가 요소 이해 및 배점

- ① **가점**: 기타 유치원별 공공성 강화 의지 등을 평가함. 예컨대, 유아, 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급 신설·운영, 개방이사 과반 수 이상 선임 등을 반영함. 배점은 +5점임.
- ② **감점**: 기타 감점 요인을 평가함. 예컨대, 원장 인건비 과도 책정 여부,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공영형 유치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여부 등을 반영함. 배점은 -5점임.

■ 알아두면 좋아요: 공영형 유치원 선정 세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비고
1. 기관 환경			10점	
위치	우선 설치 지역 대상 여부	- 취학 수요 조사 결과 국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5점	• 단설유치원 설립 비율이 낮은 지역 또는 공립유치원 유아배치 비율이 낮은 지역
	위치의 적절성	- 인근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및 공영형유치원 등 대체 기관 존재 여부	5점	
2. 운영 관리			50점	
유아	정원충족률	- 유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5점	• 지역 여건 고려 • 조건부(협약 등) 가능
	사회적 배려계층 유아 비율	- 재원 유아 중 사회적 배려계층(장애통합, 다문화, 저소득층 등) 유아 비율 및 수	5점	
	사회적 배려계층 유아 우선 입학	- 신규 유아모집 시 사회적 배려계층(장애통합, 다문화, 저소득층 등) 우선 입학 실시	5점	
교직원	교원 현황	- 경력 교사 비율 등	3점	• 각 시·도별 유사 경력별 공립유치원 교원 급여 기준 활용 • 조건부(협약 등) 가능
	교원 임금 수준 및 처우의 적정성	- 공립유치원 대비 교원 인건비 수준 평가(기본급 및 수당 포함, 원장 제외) -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실시	5점	
	교원 공개 채용	- 교원 신규 및 추가 채용 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2점	
	원장의 전문성	- 원장이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 자	5점	
학부모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적 파악 ※ 예산 등 주요 사항 심의 여부	5점	• 유아교육법 상 운영위 자문 사항 준수 여부 • 운영위 회의록 등 증빙 • 조건부(협약 등) 가능
	부모 참여 수준	- 학부모회 운영 여부 - 학부모 교육 실시 여부	5점	
교육과정	양질의 유아교육과정 운영	- 유아, 놀이 중심, 유치원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 여부	5점	• 교육과정 내용 및 개정 누리과정 적용 준비 등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	- 학부모 수요에 기반을 둔 방과후 과정, 아침·저녁 돌봄반 운영 여부	5점	

평가 항목			배점	비고
3. 운영 계획			30점	
계획의 적절성	신청 계획서 내용의 공공성	- 특수학급 설치 계획, 아침·저녁 돌봄, 학부모 부담 경감 의지, 학부모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교사 처우 및 교육, 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5점	
예산 운용	예산 운영 계획의 적합성	- 교사 인건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평가	5점	• 원장 인건비 과도여부 확인
	학부모 부담금 수준	- 기존 학부모 부담금이 지역 내 사립유치원 평균과 비교하여 과도한지 여부	5점	• 평균 3점(±2점)
	회계 투명성	-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포함 여부 및 적절성 여부	5점	
정책 참여	교육 정책의 참여 수준	- 유치원 평가, 입학 관리 시스템, 교원 평가 등 유아교육 관련 정책 참여 여부	5점	• 조건부(협약 등) 가능
	사업 참여 의지	- 원장 및 교원의 참여 의지	5점	
4. 시·도 자율 평가			10점	
교육청 자율 평가 항목		- 시·도별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자율 평가 항목 충족 여부 - 다수 법인이 신청했을 경우 학교법인 우선 선정 검토	10점	• 맞춤형 돌봄 등
5. 가감점			±5점	
가점		- 기타 유치원 별 공공성 강화 의지 등 예) 유아, 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급 신설 운영, 개방이사 과반 수 이상 선임 등	+5점	
감점		- 기타 감점 요인 예) 원장 인건비 과도 책정 여부,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공영형 유치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여부 등	-5점	

주: 1) 위의 기준은 예시이며, 시·도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재설정 가능

2) 운영계획 평가 시, 미달 혹은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

□ 제외 대상

○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0년 이내 아동학대·성범죄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 부정 회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기타 사유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표 III-1-4〉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

-
- ① 유아교육법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② 유아교육법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
 - ③ 유아교육법 제34조 벌칙
-

○ 법령에 정한 시설 설치 기준을 갖추지 않은 유치원

☞ 설립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 설립 요건

- 건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유치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통화에 지장 없는 곳 위치(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
-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설립자 소유(임대유치원 설립 불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
- 유치원의 건물 및 토지는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사립학교법 제28조).

☞ 시설, 설비 기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교사, 체육장 면적, 온수/급수 시설, 교사 내부 환경, 소방, 전기, 가스 설비,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 검사 합격,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 진단 검사 확인

☞ 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해당 공영형 유치원 신청일 현재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대상 미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 교직원 자격(유아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 원장: 유치원의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 교사: 유치원 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원장, 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 배치
- 기타 사무직원은 범위 내에서 유치원 자율 결정
-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유치원 정보 공시를 하지 않은 기관
 - 정보 공시 여부 판단 시점: 해당 기관별 공영형 유치원 신청일 현재
- 사업 계획 공고일 현재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선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유치원
- 유치원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유치원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유치원
 - 설치·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 현재

4) 공영형 유치원의 선정 취소 및 운영 종료

가) 공영형 유치원의 약정 종료 및 해지

- 업무 협력 약정이 종료되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이 종료되거나 연장되며, 약정이 종료될 경우 유치원 운영은 법인의 정관 및 방침에 따름.
- 약정 해지 사유 발생 시 해지 사유 확정일로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유치원 귀책사유 경중에 따라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 예산에 대하여 정산 및 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 처리함.
- 공영형 유치원의 업무 협력 약정 세부 사항(제22조 또는 23조 약정해지)에 따라 약정 기간 만료 및 해지 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함.
 - 교육청과 유치원 상호 간 약정 및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 단 시정 요구는 3회 이내로 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유치원은 가급적 15일 이내에 시정(개선)을 하여야 함.
 - 공영형 유치원 운영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처분이 확정되었을 경우
 -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종합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 유치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약정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단, 사유는 위원회 심의에 의함)
- 그 밖에 ‘공영형선정위원회’에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영형 유치원의 운영을 종료할 때에는 지원 예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약정 기간 만료 시 해당 회계 연도 결산을 실시하여 교육청으로 집행 잔액을 반납함.
- 약정 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해지 사유 확정일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유치원 귀책사유 경중에 따라 지원 예산에 대하여 정산 및 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 처리함.
- 운영 종료 이후 유치원 운영: 유치원 운영은 법인의 정관 및 방침에 따름.

■ Check Box: 약정 해지 시

- 약정 사유에 해당된 유치원이 부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나요?
- 유치원의 약정 해지 요청 사유가 정당하였나요?
-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 처리는 규정에 맞게 잘 처리하였나요?
- 해지 사유 발생 시 예산 중단 시점과 배상 청구 등의 방법은 적정하였나요?
- 공영형 유치원 운영이 종료되면 예산 지원과 컨설팅·평가가 모두 중단되고,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운영되기 이전과 같이 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정관 및 방침에 따라 운영함을 충분히 고지하였나요?

나) 선정 취소 사유 및 절차

□ 취소권자: 시·도교육감

□ 선정 취소 사유

- 중대한 회계 부정(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및 교육청 미승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등의 경우, 지정 취소함.
 -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 컨설팅 위주로 개선함.
- 일방적 폐원, 모집 중지, 집단 개학 연기 참여 등 유아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이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함.
-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 후 유아교육법 제28조제1항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유아교육법 제32조의 유치원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유아학비 부정 수급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제2항의 비용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선정을 취소함.

- 공영형 유치원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선정을 취소함.
- 공영형 유치원 신규 선정 당시 제외 사유 및 기본 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유아모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함.
- 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 조치하였으나 같은 사항을 재차 적발한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유아교육법령, 지침 및 공영형 유치원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정 조치 완료 후 재차 적발된 경우, 선정을 취소함.
 - 공영형 유치원 선정 및 운영 관련 준수 사항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시정 조치되지 않았거나 시정 조치 완료 후 재차 적발된 경우
- 설립자, 원장 또는 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선정을 취소함.
 - 과태료는 제외
- 해당 유치원의 물리적 및 인적 환경이 동시에 변동됨으로 인해,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선정취소 절차

- 시·도교육청은 선정 후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영형 유치원 취소 처분 진행함.
 - 처분 사전 통지(의견 제출 통지) 등 실시함.
 - 유치원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둬.
 - 공영형 유치원 취소 처분 실시함.
 - 유치원 제출 의견서 검토 후 공영형 유치원 취소 처분을 결정함.
- 시·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선정 취소 통보를 하고 정산 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관련조치를 함.
- 시·도교육청은 선정 취소 결과를 교육부에 서면으로 보고함.
- 시·도교육청은 선정이 취소된 유치원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함.

- 선정 취소일은 처분 확정일임.

다) 선정 취소 사후 관리

□ 선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및 중단

- 선정 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함.
- 지원금 환수: 공영형 유치원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한 운영비 환수함.
- 운영 종료 대비: 교육청과 유치원 약정에는 지원 기간(교육부 특교 3년 지원 감안) 이후 종료 시 교직원 급여, 유아학비 지원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교직원 및 부모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함.
 - ※ 교직원 급여 계약 또는 입학 원서 내 표기 및 충분한 사전 고지 등
- 선정 취소 처분 시 시·도교육청은 공영형 유치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함.
- 사후 처리: 공영형 유치원이 취소되거나 자진 포기한 경우 향후 5년간 공영형 유치원 신청이 제한됨.
- 공영형 유치원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의 통상적인 행정구제 절차 이행 가능함.
 - 쟁송 중 집행 정지 인용, 소송 승소 등으로 인해 선정 취소 후 직권 복원 시 익월부터 운영비 지급함.
 - 해당 월은 일반 유치원으로 운영하되 익월부터는 공영형 유치원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운영 포기

-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유치원도 희망에 의하여 공영형 유치원 운영 포기가 가능함.
 - 해당 유치원은 선정 취하원을 시·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시·도교육청은 취하원 접수 및 해당 유치원에 선정 취소 통보함.
 - 시·도교육청은 선정취소 결과를 교육부에 서면으로 보고함.
- 선정 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함.

-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포기한 유치원은 선정 취소일로부터 3년간 공영형 유치원 신청이 제한됨.

5) 공영형 유치원의 재선정

□ 재약정(약정 연장) 절차

- 예산 여건 및 재약정 요구 등에 따라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청과 법인이 협의하여 필요 이행 사항 조치 후 연장

■ Check Box: 재약정 시

- 공영형 유치원 운영 기간 동안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제반 사항을 검토하였나요?
- 교육청-유치원간 업무 협력 약정했던 사항 중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나요?

□ 공영형 유치원 평가 지표(예시)

- 정기 평가 등 활용을 위한 참고 자료로, 시·도교육청별 실정에 맞게 지표 재설정 가능함.
- 필수 지표로 ‘정원충족률’, ‘교육환경 적절성’, ‘학부모 부담금 책정의 적절성’, ‘설립자 및 원장 1인 기관 운영’, ‘친인척 신규 채용 유무’, ‘행정 처분 처벌 여부’, ‘법인 운영’에 대한 지표로 구성됨.
 - ‘친인척 신규 채용 유무’는 사업 선정 이후 설립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음을 중심으로 평가함.
- 세부 평가 지표로 유아교육복지 실현, 교직원 처우 및 민주적 리더십, 학부모 참여 강화, 교육의 질 개선과 교육 혁신, 예산운용의 투명성, 정책 참여 및 사업 참여 의지, 시·도 자율 평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표 III-1-5〉 공영형 유치원 평가지표 예시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사항	배점 (o, x)	비고
필수 지표	정원충족률	- 지역 기준 충족 여부		
	교육환경 적절성	- 시·도별 정원 배치 기준 준수 - 시설·설비 등 기준 준수		
	학부모 부담금 책정의 적절성	- 학부모 부담금 적정 책정 여부 - 학부모 부담금 추가 징수 시 교육청 승인 이행 여부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사항	배점 (o, x)	비고
	설립자 및 원장 1인 1기관 운영	- 설립자 및 원장 1인이 1개 유치원 운영		
	친인척 신규 채용 유무	- 사업 선정 이후 설립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음		
	행정처분 처벌 여부	- 기관 및 원장의 행정처분 사항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적발 내용 유무 ※ 시·도 기준에 따라 경미한 사안 예외 가능		
	법인 운영 시	- 법인 전환 조건 이행, 시·도교육청 추천 인력 풀 내 개방이사 선정 및 비율 충족 여부		
유아 교육 복지 실현	사회적 배려계층 유아 비율	- 재원 유아 중 사회적 배려계층(장애통합, 다문화, 저소득층 등) 유아 비율 및 수	5점	
	사회적 배려계층 유아 우선입학	- 신규 유아모집 시 사회적 배려계층(장애통합, 다문화, 저소득층 등) 우선 입학 이행 여부	5점	
교직원 처우 및 민주적 리더십	교원 임금 수준 및 처우의 적정성	- 공립유치원 대비 교원 인건비 등을 평가(기본급 및 수당 포함, 원장 제외) -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실시	5점	
	교원 공개 채용	- 교원 신규 및 추가 채용 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5점	
	원장의 리더십	- 원장의 기관 운영 역량 및 리더십(민주성, 참여성, 소통성 등)	5점	
학부모 참여 강화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적 파악	5점	
	학부모 참여 수준	- 학부모회 운영 여부 - 학부모 교육 실시 여부	5점	
	학부모 만족도 수준	- 공영형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부모 만족도 조사	15점	
교육의 질 개선과 교육 혁신	양질의 유아교육과정 운영	- 운영 계획서에 따른 교육 이행 여부	5점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	- 학부모 수요에 기반을 둔 방과후 과정, 아침·저녁 돌봄반 운영 여부	5점	
예산 운용의 투명성	예산 운영 계획 및 집행의 적합성	- 교사 인건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평가 ※ 원장 인건비가 과도한지 확인	5점	
	회계 투명성	-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포함 여부 및 이행 적절성 여부	5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사항	배점 (o, x)	비고
정책 참여 및 사업 참여 의지	교육 정책의 참여 수준	- 유치원 평가, 입학 관리 시스템, 교원 평가 등 유아교육 관련 정책 참여 여부	5점	
	컨설팅 이행 여부	- 컨설팅 등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을 적정 이행했는지 여부	5점	
시·도 자율 평가	교육청 자율 평가 항목 이행 여부	- 시·도별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자율 평가 항목 이행 여부	20점	
평가 점수			00점	

다. 공영형 유치원의 운영 및 관리

1) 공영형 유치원의 운영 개요

가) 운영 목적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유아교육을 실현함.

나) 운영 기간

- 유치원 현장(유아, 부모, 교직원 등)의 정착 및 교육 정책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함.
 -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함.

다) 기본 원칙

- 공영형 유치원의 핵심 가치(공공성, 자율성, 교육의 질) 구현 중심으로 선정된 유치원별 건학이념 등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함.
-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운영 기준에 준하여 적용함.
- 공영형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경감하고, 저소득층 유아 입학 및 특수학급 운영 등으로 공공성 확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3년이 되는 해에 다시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일정 기준을 통과한 유치원에 대해 재지정하고 지원을 유지함.

- 누리과정, 당해 사업 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 학부모 부담(10만원 이하) 완화가 가능한 유치원 선정 권장
- 유아·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을 기본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은 선정 유치원이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유아교육 정책에 우선 참여하도록 지도·독려하도록 함(돌봄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2) 교육복지 강화

- 저소득층 유아를 우선 모집함. 다만, 이에 따라 정원 미충족 시 잔여 인원은 일반 가정 유아 선정 가능함.
-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등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함.
 - 교육과정 및 부모 역할 등을 교육하여 가정에서의 유아교육을 보조하도록 함.
- 장애유아를 고려한 특수학급을 운영 가능함.

■ 알아두면 좋아요: 공영형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 기회 및 일반 사립유치원에 배치를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보조인력 구성 다양화 및 역량 강화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한 효과적 지원 가능
- 통학 지원, 가족 지원 및 학습 보조 기기 지원 등 특수교육 대상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 확대 병행

■ 알아두면 좋아요: 특수학급 운영 지원 관련 사항

- ☐ 관련 법령 및 내용
 - 유아 대상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유치원 내 유아 수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이용 시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봄.
 - 시·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인건비, 시설비 등) 등을 지원

〈표 III-1-6〉 특수학급 운영 관련 법령 및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 유치원 ...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 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제25조(보조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 보조 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참고: 시·도교육청별 유아 특수교육 지원 현황

□ 시·도교육청별 유아 특수교육 지원 현황

- 운영 현황: 총 731개 유치원(2,754명)에서 특수학급을 운영, 이 중 3개 원이 사립유치원(경기 소재, 9명)
- 지원 기준
 - 의무교육: 시·도별 사립유치원 특수교육 유아 1인 당 월 교육비 최고 지원액 평균은 350.7천원

[시·도별 최고 지원액]

(단위: 천 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원액	384	361	361	361	361	361	380	-	322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지원액	361	413	361	361	361	361	141	361	350.7

- 학급운영: 시·도별 여건 및 기준 등에 따라 기존 학급운영비에 특수학급 명목으로 연간 2,000~5,000천원을 추가 지원
 - ※ 시·도별 사례(단위: 천 원) : 서울(학급운영비+3,800), 경기(학급운영비+3,000), 경남(학급 당 2,000+학생 당 400)
- 교사보조인력: 연간 인건비는 시·도별 기준에 따라 상이하나, 교사는 35,000천원, 보조 인력은 25,000천원 상당 지원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치원은 유아 및 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 장학 지원을 요청하도록 함.
 - 개정 누리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
 - 유치원 실정 및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부모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 교육 연한, 학기 및 수업일, 교육 내용, 수업 일수 및 수업 운영 방법 등 교육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유치원 규칙에 포함
- 1일 4~5시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시간 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금지
- 유치원 교육과정 수립 시 지역교육청의 유아교육 지원계획 등을 반영함.
- 교육감이 실시하는 유치원 평가를 받음.
-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
-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침.
-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원 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함.
- 학부모 교육을 통해 유치원 교육과 가정교육 연계 강화

나) 방과후 과정 운영

-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교실 운영을 권장함.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함.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등 교육부 교육과정 계획을 준수함.
 - 아침(7시~9시), 저녁(17시~), 온종일 돌봄교실(07시~22시) 운영 권장함.
- 방과후 과정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며, 교육청 지침에 따름.
- 방과후 과정의 경우, 토요일은 유치원 실정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되,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 특성화 프로그램의 경우,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교육과정 시간 내 운영 불가)하며, 유치

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운영함.

-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미참여 유아는 철저히 지도함.
- 비용은 가능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 내에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노력함(다만, 부득이 추가 비용 발생 시 참여 유아 수, 강사료, 실시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용 산정하여 받을 수 있음).

■ Check Box: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나요?
- 방과후 과정(특성화 프로그램 포함)은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나요?

4) 재정 관리

가) 예산 지원 및 집행

① 예산 지원

- 교육청은 유치원의 총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의 예산을 지원함.
- 유치원의 유아 수, 학급 수, 교직원 수 및 경력 등의 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함.
- 유치원 총 예산액을 산정한 후 누리과정 예산 및 교원 처우 개선비 등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 예산을 지원함.

■ Check Box: 예산 지원 기준

- 유치원 사업자등록증이 유치원장으로 되어 있나요?
- 회계 통장이 유치원 명의로 개설이 되어 있으며, 세입 세출 외 현금, 카드 거래 통장 외 다른 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나요?
-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분기별로, 교육(지원)청은 유치원에 매월 1일 예산을 재배정하여 유치원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고 있나요?
- 유치원 유아 현원을 제대로 반영한 누리과정 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교육청 예산이 과다 과소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있나요?

② 예산 교부 및 자금 관리

-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회계>, <세입 세출 외 현금 회계>, <카드 거래> 등 유치원 명의로 통장 3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
- 예산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재정 소요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분기별로 재배정
- 교육(지원)청은 월별로 유치원 회계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③ 예산 집행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함.
- 예산 집행은 유치원 기관 카드 사용 또는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출납은 지양
- 업무추진비는 공립유치원에 준하여 집행하고, 출장비는 근무상황부 결재 후 공무에 의한 출장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급
- 법인 전입금은 교육청 지원 예산과 별도로 유치원에서 계획 수립 후 집행
- 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나) 유치원 예·결산 및 회계 운영

① 유치원 예·결산

- 회계 연도는 세입·세출 결산 후 이월 예산은 공영형 유치원 지원 예산과 별도로 관리
 - * 전년도 이월금(순세계 잉여금)에 산출 내역 및 금액 명기 후 다음 회계 연도에 집행단, 3년차 운영 후 불용액은 반납
- 유치원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및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회계 연도 중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 시 본예산 편성 절차에 따름.
- 유치원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및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함.

② 유치원 회계 운영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리 및 공적재원을 활용함에 있어 법인 전환, 회계 감사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함.

- 선정 유치원이 제출한 예산 운용 계획을 검토·조정하여 배정함.
 - 사학재단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리 및 공개함.
- 학부모 부담금 징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방과후 과정도 지원금 내에서 운영 가능함.
 - 누리과정 지원비, 공영형 유치원 지원금 내에서 운영이 불가하여 일정 수준 학부모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징수 허용함.
- 인건비 및 시설비의 과다 투입 방지, 학부모 부담 경감 완화 조건 이행 여부 확인, 예산 운용 계획 대비 이행 여부 점검하도록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예산 심의, 학부모회 안내 등 유치원 재원 운용에 대한 학부모 참여 및 공개 강화

■ Check Box: 회계 운영

- 회계 운영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나요?
- 회계를 예산 항목과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나요?
- 수익자부담경비는 최소화하여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나요?
- 수익자부담경비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고 있나요?
- 학년 도중 전입된 세입은 추가 경정 예산에 제대로 반영 편성하였나요?
- 예·결산은 법인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쳤나요?
- 교원 보수 체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이 되었나요?

다) 재정 지원 및 운영

① 수익자부담경비

-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좌 이체 또는 아이행복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가급적으로 당일 유치원 회계 통장으로 입금 처리함.
-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는 최소화하며,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청 승인 후 결정함.
- 징수 항목은 특성화 프로그램비, 졸업 앨범비, 현장 학습비, 통학 차량비, 우유비 등이며 반드시 유치원 회계 통장을 통해 출납 및 관리 운영함.

② 유치원 운영비

- 기본 운영비는 공립학교에 준하는 기준으로 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지원 기준(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따름.

- 기타 운영비는 공립학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지원하되, 실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따름.

③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 교직원 인건비는 지급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되, 유치원의 교직원 근로계약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교원 호봉 승급 및 법정 최저 임금액 인상분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며, 과다한 교직원 보수 지급을 위해 교육 활동비를 감액하여서는 안 됨.
-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액은 별도 교원 개인별 급여 통장으로 지급함.

〈표 III-1-7〉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예시

구분	인건비 지급 기준
교원	- 교원의 호봉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력을 바탕으로 개별 확정 - 개별 호봉에 따라 교육공무원 보수 체계로 인건비 산정 - 교육공무원 연봉의 80% 상당 금액 산정 - 초과 근무 수당은 정액분만 산정 - 최대 40호봉까지 인정(*승급이 도래하는 달에 호봉 승급 실시) - 방과후 교사는 교육공무직원(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단, 방과후 교사가 정규 교원일 경우 교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름)
행정직	- 행정 실장: 최초 경력은 일반직 7급 기준, 최고 10호봉까지 인정(매년 3월 호봉 승급 실시) - 행정 직원: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기준, 근속 연수는 불인정 - 시설 관리: 법정 최저 금액 이상 인정
기타 직원	- 조리사: 교육공무직원(조리원) 기준 산정, 근속연수는 불인정 - 운전원: 법정 최저 임금액 이상 인정(※ 외부 업체 위탁이 지원 불가)
기타사항	- 4대 보험료, 퇴직 적립금 등은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지원

④ 교육환경개선비 및 노후 교재 교구 교체 구입비

-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 시설에 대하여 정밀한 실사 및 진단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 사고 예방 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부여(유아 안전 분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부터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실시함.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할 수 있음.
- 유아의 안전 사고 예방,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되, 전면 리모델링은 지양하고, 법인

설립에 따른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 시 인가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설립자가 부담함.

■ **알아두면 좋아요: 통학 차량 운영비**

- 통학 차량 운영비는 시·도별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되며, 집행 잔액은 교육비 특별 회계로 반납하여야 함.
- ※ 시·도별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함.

⑤ 기타 재정 지원

-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지원함.
- 교원 인건비 중, 일부를 교원 처우 개선비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목적 사업비 및 보조금은 공영형 유치원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
- 유치원 예산 지원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 수, 유아 수, 교원 수, 교원 경력, 차량 운행 여부 등 상황 및 예산 여건에 맞춰 세부 지원 항목과 예산 규모를 조정하여 지원함.
- 기타 사업비 지원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 운영 사업 추진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원할 수 있음.

■ **Check Box: 예산 운영**

- 인건비 중 원장, 원감, 교사, 행정 실장의 경력을 확인하여 규정에 맞게 호봉을 책정하였나요?
- 예산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 교원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공개 전형을 통해 채용하고 있나요?
- 교육환경개선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공사부터 차례로 진행하고,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잘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나요?
- 새 학기 시작 전 교육환경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회계 분야의 유 경력 전문가(퇴직 공무원 등)를 연계하여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나요?
- 유치원 운영비는 항목에 맞게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집행하고 있나요?
- 교재 교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교체 구입하고 있나요?
- 통학 차량 임차 계약은 적정하게 하였나요?
- 시설물은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유치원 인가 기준에 맞도록 설비되어 있나요?

5) 교직원 관리

□ 유치원별 자체 공개 임용 절차를 통해 교원 수급 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개 채용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함.

- 유치원별 정원 대비 추가 교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원금의 지나친 인건비 사용 방지하도록 함.
- 기존 교직원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하며, 추가 정원에 한하여 선발함.

□ 교직원 추가 확보 시, 공개 임용 절차 등 시·도교육청과 구체적 방안을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함.

□ 유치원별 자체 공개 임용 절차를 통해 교원 수급 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개 채용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함.

- 유치원별 정원 대비 추가 교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원금의 지나친 인건비 사용 방지하도록 함.

6)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위원 정수는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해당 범위에서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에게 안내하며,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

〈표 III-1-8〉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유아 수	위원 수	위원 구성 비율
100명 미만	5~8명	- 학부모 위원: 60~70% - 교원 위원: 30~40%
100명 이상	9~11명	

■ Check Box: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나요?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나요?

7) 시설 관리

- 교육환경 개선 계획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되, 유치원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함.
- 그 밖에 공영형 유치원 기본 계획 및 시·도교육청 실행 계획을 준수함.
 - 운영 준수 사항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제·개정함.
 - 준수 사항 위반 시,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함.

8) 법인 설립 및 설립자 변경

가) 법인 설립 및 운영

- 기본 원칙
 -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이미 운영 중인 유치원은 법인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 가능
 -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법인 이사회의 이사 중 2명 이상을 개방이사로 교체·선임
 -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법인 전환 및 설립자 변경 신청은 교육청이 정한 시기를 준수함.
-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사립학교법』 제2절 및 제3절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정관 및 유치원규칙 구성
 - 법인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과 공영형 유치원 운영 취지에 맞도록 필요시 정관 제·개정하며, 유아교육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개정함.
 - 『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유치원규칙> 개정
- 법인 이사회 운영
 - 법인 이사회는 해당 유치원의 건학이념을 존중함.
 - 법인 이사 선임 및 교직원 임면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교원 공개 모집)
 - 법인 이사회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협의(인력풀 구성)하여 추천한 이사 중에서 2명 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표 Ⅲ-1-9〉 운영 주체에 따른 법인 이사회 운영

운영 주체가 사인인 경우	공모 시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 응모 시 법인 전환 계획서를 제출 • 공영형 유치원이 출범한 3월 말 이전에 법인 설립 신청서 접수 • 이사 선임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2명 이상의 개방이사 선임	• 응모 시 이사 임기를 고려하여 임기가 종료되는 이사의 후임부터 2명 이상에 이를 때까지 개방이사를 순차적으로 배치 (약정 사항에 포함)

□ 법인 회계 운영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함.
- 회계 서류는 이사장 또는 회계 관계 직원의 날인으로 결재함.
- 수익용 기본 재산 중 법정 전입금 부담 및 기타 법인 운영은 관련 법규를 준수함.
-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유치원은 인가 신고한 수익용 기본 재산에 대해 약정 기간 동안 일체 변경을 금지함.
 - 약정 기간 동안 예금 해지 및 출금, 매매, 담보 설정, 명의 변경 등 일체의 변경 행위를 금지함.
- 법인의 이사장 및 회계 관계 직원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7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의무 위반 시 변상 책임을 져야 함.

□ 법인 설립 절차

- 법인 관련 업무 담당 : 시·도교육청
- 유치원 설립자 변경 업무 담당 : 교육(지원)청

[그림 Ⅲ-1-5] 학교 법인 절차도



○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기준

- 학교 회계 운영 수익 총액: 학교 세입 합계액(이전 수입+학교 운영 지원비+수익자 부담 수입)
-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기준액: 직전 3개 년도의 학교 회계 운영 수입 총액의 2분의 1이상
- 수익용 기본 재산: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해야 함.

■ 알아두면 좋아요: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 근거

-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 재산의 개념 (「사학기관 업무편람」 제6장)
 - 교육용 기본 재산 : 해당 유치원의 건물 및 대지 등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 수익용 기본 재산 :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 재산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 수익용 기본 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
 - 학교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 수익용 기본 재산의 종류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
 1. 토지 2. 건물 3. 주식(공개 법인 또는 상장 법인의 주식)
 4. 정기 예금, 금전 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 5. 국채·공채
-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기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
 - 확보 기준액 = 직전 3개 년도의 학교 회계 운영 수익 총액의 2분의 1이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학교 회계 운영 수익 총액 = 학교 세입 학계액[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3] - (이전 수입+학교 운영 지원비+수익자 부담 수입)

나) 설립자 변경

□ 설립자 변경 신청

- 사유: 학교 법인 설립에 따라 유치원 운영 주체를 사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 승인 기관: 관할 교육(지원)청

□ 설립자 변경 및 기타 변경 신청

- 설립자 변경 시 신청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유치원 변경 인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변경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함.
- 부지 위치 변경 또는 부지 면적 증감 시 변경 인가 필요
 - 유치원 변경 신고 전 선결 조건으로 교육환경 평가 심의가 필요하고, 동 평가 승인 후 변경 신청이 가능함.
- 법적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 담당부서: 관할 교육(지원)청

라. 공영형 유치원 평가 및 질 관리

1) 공영형 유치원의 운영 평가 및 협의

가) 정기 평가 실시

-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 합동으로 유치원 대상 평가를 주기별 및 수시 실시
- 정기 평가는 '분기 평가'와 '연간 평가'로 나누어 실시
- 분기 평가: 연간 4회(5월, 8월, 11월, 다음 연도 2월) 실시
 -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 대상: 분야별 운영 상황 및 약정 사항 이행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 시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재정·회계 등)
 - 평가 후 환류: 평가 후 해당 유치원 별로 유치원 운영에 대한 환류 및 피드백
 - 시정 조치: 다음 평가 시 전 분기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함.
 - ※ 평가 횟수와 내용 등은 시·도교육청과 단위 유치원의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음.
- 연간 평가: 연간 1회, 익년도 3월에 실시함(단, 3년차 연간 평가는 2월에 실시).
 - 연간 평가는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 결과, 교육청-유치원 약정 사항 이행,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은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함.

- 심의 결과 약정 미이행 또는 위반 사항이 있거나, 평가 결과가 미흡 판정될 경우 보완 및 시정(개선)요구, 운영 약정 해지, 배상 등 조치함(필요시 해당 유치원장은 공문이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연간 평가는 분기 및 수시 평가 결과를 누적하여 평가하여, 연간 운영 현황 및 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며,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될 경우 보완 및 시정(개선)요구, 운영 약정해지, 배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종합 평가 실시

- 약정 기간 중 매년 실시한 평가를 토대로 약정 기간 종료 전 종합적·전반적으로 평가를 실시함.
-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원장은 반드시 출석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회일에 출석 또는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함.
- ※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선정 실시, 교사 및 원장 연수 실시, 선정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정부 지원과 연계 등임.

다) 운영 협의(예시)

- 시기 및 장소: 분기별(3·6·9·12월) 본청 또는 유치원에서 개최
- 참석자
 -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및 팀장, 교육(지원)청 관계자
 - 공영형 유치원 원장 및 교직원, 법인 이사장 등 유치원 관계자
- 내용
 - 분기 평가 결과 분석 및 조치 사항에 대한 협의
 - 교육청 정책 안내 및 유치원 운영 계획 등 전반 사항

2) 공영형 유치원 컨설팅 및 질 관리

가)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 운영

- 운영 목적: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영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지원 방안 마련할 수 있음.

-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 결정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운영방향

- 모든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함.
- 교육청-유치원 간에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함.
- 공영형 유치원 운영 중 사안 발생 시 시정(개선) 조치 요구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
-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역할과 기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 총괄
-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평가·해지·재약정 등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교육청과 유치원 간 어느 일방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하고, 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유치원의 의견을 각각 듣고, 필요한 시정(개선) 조치·별책을 결정하여 부여
- 교육청과 유치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부여한 사항을 준수함.

나) 공영형 유치원 컨설팅 운영

□ 컨설팅 및 연수

① 사전 컨설팅

- 공영형 유치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기 시작 전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포함), 재정 회계 운영 분야 전반에 대하여 유치원과 협의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함.
 - 선정 유치원 별 맞춤형 지도·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공영형 유치원 운영 준비를 지원함.
 - 공영형 유치원의 핵심 가치와 목적, 운영 평가 기준(부모 부담 경감, 공공성 제고 등)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지원함.
 - 준비 기간 중 선정 유치원 대상 지속 실시
-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컨설팅을 실시하며 유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컨설팅을 실시함.
- 선정 평가, 선정 유치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유치원별 종합 진단 후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유치원 별 4회 이상)

- 주요 내용에 대해 구성원(부모, 교원, 유치원운영위원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

[그림 Ⅲ-1-6] 추진 절차(안)



○ 교원 워크숍 실시

- 사전 연수 등을 실시하여 컨설팅의 효율성·타당성을 제고하고 결과를 공유하도록 함.
- 사전 워크숍과 결과 워크숍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함.

○ 컨설팅단 구성

- 시·도 추천 등을 통해 권역별 컨설팅단을 구성 및 전국 단위로 컨설팅 위원을 구성할 수 있음.
- 시·도별 선정 평가 위원을 일부 포함하여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확보할 수 있음.

〈표 Ⅲ-1-10〉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위한 핵심가치

컨설팅단 워크숍	공영형 사립유치원 계획과 컨설팅 실시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컨설팅 방향 공유
컨설팅 위원 연수	컨설팅단별 위원 대상 사전 연수 등을 실시, 컨설팅단 운영의 효율성 및 타당성 제고

② 사후 컨설팅

○ 운영 지원 컨설팅

- 공영형 유치원 운영 전반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인 재선정 기준, 교육 과정 운영 전반, 재무회계 규칙 등을 확인
-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포함) 분야의 컨설팅은 유아(특수)교육과 주관으로 실시함.
 -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에 선정된 경우,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알맞은 컨설팅 계획 수립 필요(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등)

○ 재무 회계 소그룹 교육

-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 안내, 예·결산 작성의 실제: 세입·세출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관련 이론 교육 및 실제 적용을 위한 실습
- 에듀파인 시스템 의무 도입에 따라 재정·회계 분야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멘토링 운영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정보 공시 안내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유치원 정보공시 관리
- 주기적으로 유치원 정보 공시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및 현행화 안내

③ 연수 및 장학 강화

- 시·도 단위 정기·수시 연수 및 장학 실시

④ 우수 사례 공유

- 교육과정, 유치원 운영 등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공유·확산
- 우수 컨설팅 및 평가 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다) 지도·감독

○ 학부모 평가단: 학부모 평가단 운영 권장

- 시·도별로 구성, 부모 입장에서 평가 가능한 사항(시설 안전, 급식 등)의 운영 현황 및 성과 달성도 등의 주기적 점검 권장
- 교육과정 등 교원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는 제외

○ 공영형 유치원 운영 협의회 운영 가능

- 교육청 정책 안내 및 유치원 운영 계획 등 공영형 사립유치원 관련 운영 협의는 분기별(3·6·9·12월) 둘째 주에 실시하고, 협의회에는 유아(특수)교육과장 및 장학관·사무관, 교육(지원)청 관계자, 원장 등이 참석할 수 있음.

○ 운영 점검 및 평가: 시·도교육청(필요시 지원청 합동)이 정한 시기(연도별, 분기별 등)에 따라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현황 등 점검

- 유치원은 선정 당시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청 운영 점검 및 평가 시 임의 변경 사항 있을 경우 시정 조치, 지속 미이행 시 취소 가능
- 선정 시 정한 유치원별 운영 기간 종료 시 학부모 만족도 등 종합 평가 실시를 통해 운영 연장 여부 결정
-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시정 요구 등 컨설팅 조치 실시

- 시·도교육청은 관리 책임 및 유치원의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선정된 유치원과 약정 체결 후 사업 운영
 - 교육청과 유치원 약정에는 지원 기간(교육부 특교 3년 지원 감안) 이후 종료 시 교직원 급여, 유아학비 지원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교직원 및 부모 대상 충분한 사전 안내 실시
 - 교직원 급여 계약 또는 입학 원서 내 표기 및 충분한 사전 고지 등이 필요함.

마. 자주하는 질문

Q1. 공영형 유치원은 ‘학교 법인’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학교 법인 외에도 재단 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 다른 유형의 법인 유치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수 법인이 신청했을 경우, 학교 법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Q2. 법인에서 선임하는 개방이사는 교육청에서 파견되는 관선 이사가 아닌가요?

법인에서 선임하는 개방이사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전에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여 인력풀을 구성한 후, 그 중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관선 인사가 아닙니다.

Q3. 법인에서 선임하는 개방이사는 몇 명이어야 하나요?

법인에서 선임하는 개방이사는 2명 이상입니다. 기존의 법인의 경우, 법인 임원 중, 2명 이상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Q4.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면, 유치원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결국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닌가요?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교육청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사립유치원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인정됩니다.

Q5.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면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어 단위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어도 단위 유치원의 설립자의 교육철학과 신념을 존중합니다.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세부적인 교육과정은 설립자의 신념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Q6.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컨설팅과 평가는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감시 체계가 아닌가요?

컨설팅과 평가는 유치원의 운영을 도와주는 개념이지 감시 체계가 아닙니다. 개별 공영형 유치원에 맞게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재정 및 회계(에듀파인 등)를 맞춤형으로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Q7. 공영형 유치원 업무 협력 약정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영형 유치원 업무 협력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재선정)의 심의를 거쳐 재선정 종료(약정 종료)되거나, 연장되며, 약정이 종료될 경우 유치원은 법인 유치원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Q8. 공영형 유치원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유치원 원비가 많이 오르게 되나요?

공영형 유치원 운영이 종료되면,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여건과 지역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원비를 결정하면 됩니다. 종료 시 교직원 급여, 유아학비 지원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Q9. 공영형 유치원의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재약정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약정 기간 동안 운영 상황, 평가 결과, 약정 위반 여부, 교육청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선정 및 재약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10.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들이 당사자성을 가지고 유치원 운영에 참여하는 운영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므로 공공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이므로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2. 2020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운영 안내서

가. 협동조합형 유치원 알아보기

1) 협동조합형 유치원이란?

가)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개념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란, 학부모조합원(소비자조합원), 교직원조합원(직원 합원), 후원자

조합원, 자원봉사자조합원 중 부모와 교직원조합원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

나)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특성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접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주체가 되어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함.
 - 운영의 주요 원리는 참여와 협력,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의 연대임.
- 부모들과 교직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5인 이상의 부모, 교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상호 출자하여야 함.
 - 부모가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유아가 있는 가구당 1인으로 한정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중 주요 사항은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 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름.
 - 정관 작성 시,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1항(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원장은 조합원 중에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조합원 가입을 전제로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원장을 채용할 수 있음.
 - 조합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유치원은 원장이 교사회와 협력하여 운영함.
 - 유치원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맡되, 주요 사항은 조합의 의사 결정에 따름(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 92조 총회, 이사회 의결에 관한 사항 규정 준수).
 - 조합원은 유치원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최대한 참여하여 설립 목적을 함께 달성하도록 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재원은 출자금과 조합비로 구성함.
 - 출자금의 경우, 주로 유치원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는데 사용함.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 모든 조합원이 1좌 이상 출자함.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됨.

※ 탈퇴 조합원은 출자금 환급 청구 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 조합비의 경우, 교원 인건비, 교재 교구비, 일상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함.

■ **알아두면 좋아요: 발기인, 설립동의자, 조합원의 차이 알기**

- ① 발기인: 법인 설립의 발기 행위에 참여하여 설립 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즉,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함.
- ② 설립동의자: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임.
- ③ 조합원: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정관에 정한 바 1좌 이상 출자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원(학부모 및 교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을 포함함.
 - 발기인 + 설립동의자 = 조합원

〈표 III-2-1〉 조합원의 유형

□ **학부모조합원(소비자조합원)**

- 자녀가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는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됨.
 - 자녀를 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낼 권리, 조합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회의에서의 의결권 및 선출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됨.
 - 학부모들은 다른 학부모들과 조합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평등하게 소통하며 민주적인 조합 운영의 체계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됨.
- 학부모는 교육의 수혜자·소비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주체로서 성장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됨.

□ **교직원조합원(직원조합원)**

- 교사가 해당 유치원에 근무를 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됨.
 - ※ 직원 조합원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함.
- 교사도 직원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됨.
 - 이는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기반이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주체로서 교사의 입지를 세우는 계기가 됨.
 - 부모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회의에서 의결권 및 선출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됨.

□ **후원자, 자원봉사자 조합원**

-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일정한 금액을 기금으로 납부하거나 교육 내용, 시설 설비, 교재 교구, 행정 및 법적 지원, 후원금 등으로 조합을 지원하는 자를 말함.
 -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조합 상황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결권을 가짐.
- 학부모조합원은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더라도 후원자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

2)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유아교육계에 주는 함의

- ‘사유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립유치원의 현실에서 ‘공유한다’, ‘함께한다’, ‘함께 키운다’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
- 공급자-수요자라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탈근대적 교육 프레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자치 실현
- 유아교육의 ‘공공성’의미를 재구조화하여, 정부 역할(公.public)과 시민 및 공동체 역할(共.common)을 일체화함.

□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 추진 방향

○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 10)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 제시,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을 재천명함.
-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협동조합형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등).

○ 협동조합형 유치원 모델 제시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정부의 역할과 시민 공동체의 역할을 일체화하고, 시민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새로운 유치원 혁신 모델임.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장점

- ※ 공동체성 확보, 양육 주체의 당사자성 확보(인권과 참여), 참여보육과 협력적 교사회, 유치원의 교육내용 등을 병행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① 유치원 운영의 개방성과 자율성, 절차의 민주성,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 공시 의무

- 유치원의 경영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 유치원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실현함.
-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은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고, 경영 여건 개선 및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운영·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

-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운영 현황, 재정 운용 등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의 보고, 의결 사항임.
- 유치원의 구성원들은 조합원으로서 참여하여 유치원 운영에 대해 알 수 있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음.
- 조합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이사회 회의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음(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 운영의 자율성과 절차의 민주성

- 유치원 운영의 중요사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인 총회에서 논의, 의결함.
- 구성원들은 조합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중요사안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사안들을 협의, 결정할 수 있음.

② 설립 주체의 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성격과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되므로 유치원이 ‘개인화’, ‘사유화’, ‘영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최고 의결 기관인 총회를 비롯하여 정관과 규약·규정들이 있으므로, 유치원 운영의 중요 사안들을 구성원들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민주적 운영이 가능함.

〈표 III-2-2〉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장점

-
- ① 사회적 육아에 대한 인식의 확산
 - ②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제고
 - ③ 부모 참여 강화
 - ④ 교직원이 주체되는 평등한 조직구성
 - ⑤ 공동체성 증진과 지역사회 관계망의 확산에 기여
 - ⑥ 유아교육 패러다임의 생태적·관계적 전환
 - ⑦ 다양한 유치원 모델 확립에 기여
 - ⑧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유치원 조직문화 구성
-

3)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 주체와 사회적 가치

가)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 주체

□ 교직원과 부모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경우

- 경로: 교사와 부모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함.

○ 강점과 약점:

- 교직원과 부모가 협력하여 유치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교육청 및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조합임.
- 그러나 협력의 구조가 깨지면 원장 또는 부모 중심으로 흘러갈 수도 있음.

○ 위기 및 기회: 원장이 중재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면서 교사와 부모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민주적인 원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그림 Ⅲ-2-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꿈동산아이유치원(서울시 노원)



- 서울 노원구에 있는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설립자의 사망으로 폐원 위기를 극복하고 설립된 우리나라 첫 협동조합형 유치원임.
-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유치원을 개원한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충당함.
- 설립자: 꿈동산유치원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일: '19.3.4.(개원식: '19. 3.12)
- 학급 및 정원: 9학급, 정원267명

[그림 Ⅲ-2-2] 꿈동산아이유치원의 '꿈꾸는 바자회'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예시



□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경우

- 경로: 지역에서 육아를 함께 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유치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함.
- 강점과 약점: 부모들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가 큰 장점이나, 협동조합, 유치원 등 설립·운

영의 경험이 없으므로 협동조합 설립 과정이나 유치원 설립 시 초기 안정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위기 및 기회: 설립 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와의 연계와 지원이 필요하고, 원장·교사회의 전문성과 부모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표 III-2-3〉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화성시 동탄)

-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은 2018년 한유총(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함.
- 2019년 6월 조합원 10명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 2020년 3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 목동 이음터 1층에 협동조합형 유치원 개원 예정

□ 교직원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경우

- 경로: 유치원 교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함.
- 강점과 약점: 교육과 유치원 운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모의 자발적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위기 및 기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 필요함. 또한 부모 참여와 교사-부모간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 지역사회 연대가 중심이 되는 경우

- 경로: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여러 조직, 단체, 주민들과 협력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강점과 약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참여하므로, 지역사회 내 자원을 잘 연계할 수 있으나, 교직원과 부모조합원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음.
- 위기 및 기회: 구성원들이 다양하므로, 공통의 합의 구조를 만들고, 협의와 협력이 일상화된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유치원을 운영할 때도 조합과 유치원의 원장·교사회간의 협력 구조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Tip: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립 주체 구성 방법

1.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안정적 설립을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되도록 부모와 교사가 협력하여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갈 것을 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립 단계 때부터 교육 주체들이 유치원 운영 방향에 대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사회적 가치

① 사회적 육아

-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들’로 공동체성 강조
- 교육과 돌봄의 통합
- 가족주의를 넘어선 사회가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³⁾

② 참여와 신뢰

- 부모들의 실질적 참여
- 유치원 정보와 공간의 개방
- 절차성과 정당성에 준거한 운영
- 상호 이해, 상호 돌봄의 관계망

③ 유아 중심성

- 유아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⁴⁾
- 유아의 선택과 의사결정 존중⁵⁾
- 생활형 비형식적 학습
- 유아 주도의 놀이 중심, 과정 중심 학습

④ 교육의 자율성

- 민주성과 당사자성 강조
- 교육의 주체로 서는 교사회
-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교사⁶⁾
- 협의를 통한 교사회 팀티칭과 리더십

⑤ 마을 공동체와의 연대 및 기여

-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유아·교사·부모
- 마을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치원 운영
- 유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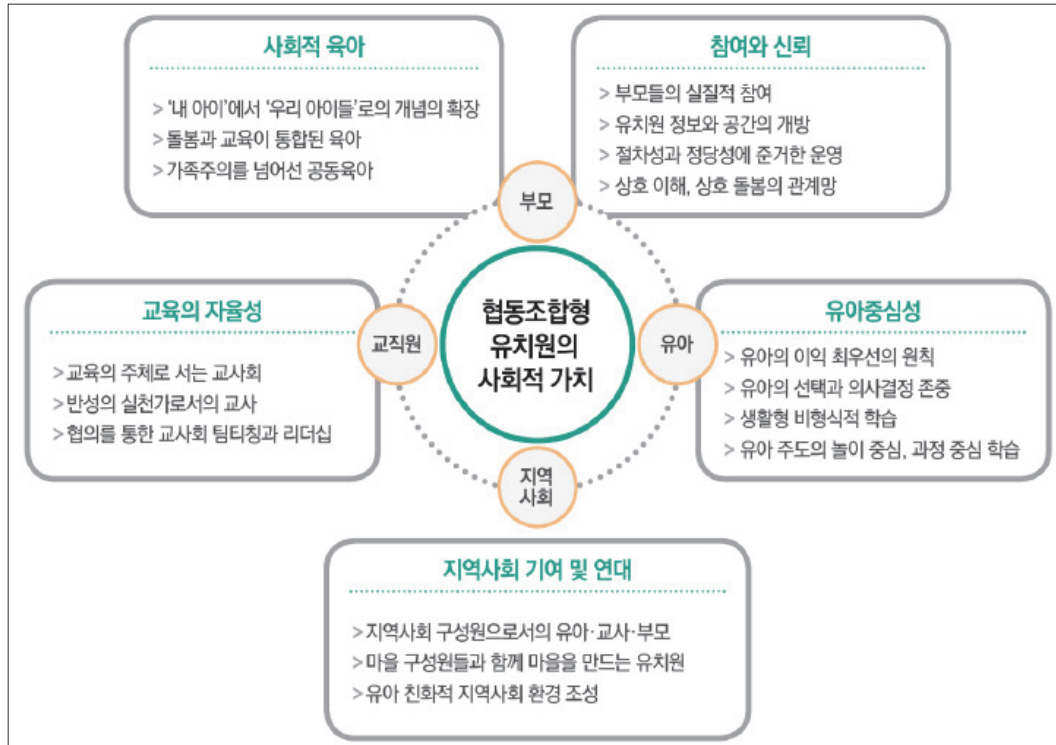
3) 제10회 공동육아 포럼 『공동육아 다시 읽기』 참고

4) 유엔아동권리협약 참고

5) 아동의 권리 중 참여권

6) 최유리·허예지·소경희(2017). 교육과정 자율화 논의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재개념화: Foucault의 '자기배려' 논의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연구, 35(2), 119-141.

[그림 III-2-3]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사회적 가치



4)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추진 경과와 방향

-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 모델 제시('18. 10)
- 서울 노원구 꿈동산 아이 유치원 설립('19.3.4)(개원식: '19. 3.12)
 -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유치원을 개원한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 시설을 임대해서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충당함.
 - 설립자: 꿈동산유치원 사회적협동조합
- 경기 동탄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19. 5.30)
 - 2018년 한유총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준비모임을 구성함.
 - 2019년 9월, 조합원을 모집함.
 - 여러 소위원회를 구성함(교육소위원회, 기획소위원회, 시설소위원회, 맞벌이 소위원회 등).
 - 세부 사업 계획 및 세부 사업 예산 수립함.

- 부모 교육 및 조합원 교육을 진행 중임.
- 유치원 개원 전까지 오산시에서 품앗이 육아를 진행 중임.
- 협동조합형 유치원 개원 예정(2020. 3), 경기도 화성시 동탄 목동 초등학교 내 이음터 시설 1층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음.

■ 궁금해요: ‘품앗이 육아’와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품앗이 육아’는 함께 육아를 하고 싶은 부모들이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서로 돌아가며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반면,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부모와 교직원 등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유치원을 설립하여 교사를 채용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규 교육기관입니다.

■ 궁금해요: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대계약금과 월 임대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구조인가요?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운영체인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건물 사용료와 토지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물론 그 재원은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입니다.

■ 참고: 그동안 왜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불가능했는가?

- 자생적 출발이 어려운 학교 구조 : 유치원은 학교다!
 - 협동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12시간 보육 및 생활 중심보육을 강조하며 자생적으로 출발함.
 - 반면, 어린이집과는 달리 유치원은 학교이므로, 철학, 진입 장벽과 수요, 접근성 측면에서 자생적으로 설립하기 어려움.
- 유치원 설립 시 교지와 교사가 자가여야 가능하므로, 자산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부모들이 설립하기 어려운 구조임.
 -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초기 설립 비용을 충당하기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존재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 공간 확보의 어려움
 - 유치원의 부지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공공기관을 임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참여 의지가 있더라도 진입이 쉽지 않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운영 시 발생하는 행정업무가 많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 공시 및 투명한 회계를 위해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매년 이사장과 이사, 조합원들이 바뀔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행정절차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됨.

5) 자주하는 질문

Q1.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시작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 기본입니다. 초기에는 최소 5명이 모이면 협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협동조합을 결성하기 전 먼저 그 지역의 유치원 수요 실태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셋째, 지역의 지리적 여건, 지역특성, 직업 분포, 영유아 인구 분포, 지역 내 주요 기관 및 협력 기관을 알아봅니다. 넷째, 설립 기간은 인가 절차 및 조합원 모집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설정합니다. 다섯째, 준비 기간 중에는 무엇보다 앞으로 조합원으로서 생활을 같이 할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단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전용 사무실이 꼭 필요할까요?

설립 단계에서 반드시 상설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고, 설립동의자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Q3. 교직원도 반드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야 하나요?

모든 교직원이 반드시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인 만큼 교직원도 협동조합의 철학에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직원조합원이 되면,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조합원 가입은 자발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Q4.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나요?

네, 모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습니다. 이는 힘 있는 소수에 의하여 협동조합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며,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참여와 평등,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장치입니다.

나. 협동조합 알아보기

1) 협동조합이란?

-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함.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

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함.

- 협동조합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안 경제 모델로 우리에게 친숙한 협동조합으로는 농협, 신협, 수협, 생협 등이 있으며 주택, 에너지, 공정무역, 교육,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있음.
- 우리에게 친숙한 서울우유, 썬키스트, FC 바르셀로나 모두 유명한 협동조합임.

2)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및 특성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의미함(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

〈표 Ⅲ-2-4〉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특징

구 분	주요 특징
법인격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 신청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교육부)의 장에게 신청
사 업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 공시	의무 사항
인 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단, 공휴일 미산입,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연장 가능)
기 관	총회, 대의원 총회(조합원 수 200명 이상시 가능), 이사회
설립동의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 포함
출자 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의결권·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출자좌수에 상관없음)
배 당	배당금지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3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적립
청 산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구 분	주요 특징
임 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임원은 자연인만 선임 가능, 법인 임원은 선임 불가 임기는 4년 범위로 정관 규정,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조합원 의무	출자금 납부 의무, 사업을 이용할 의무(미이용 시 제명될 수 있음)
감 독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교육부)의 장이 업무 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 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기부금 모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의 추 진 절차를 거쳐 기부금 모집 가능

〈표 Ⅲ-2-5〉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주 사업(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근거)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 사항 아님 ※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 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	의무 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 당	배당 가능	배당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 독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 기 본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업무상 황, 장부, 서류 등 검사 - 인가 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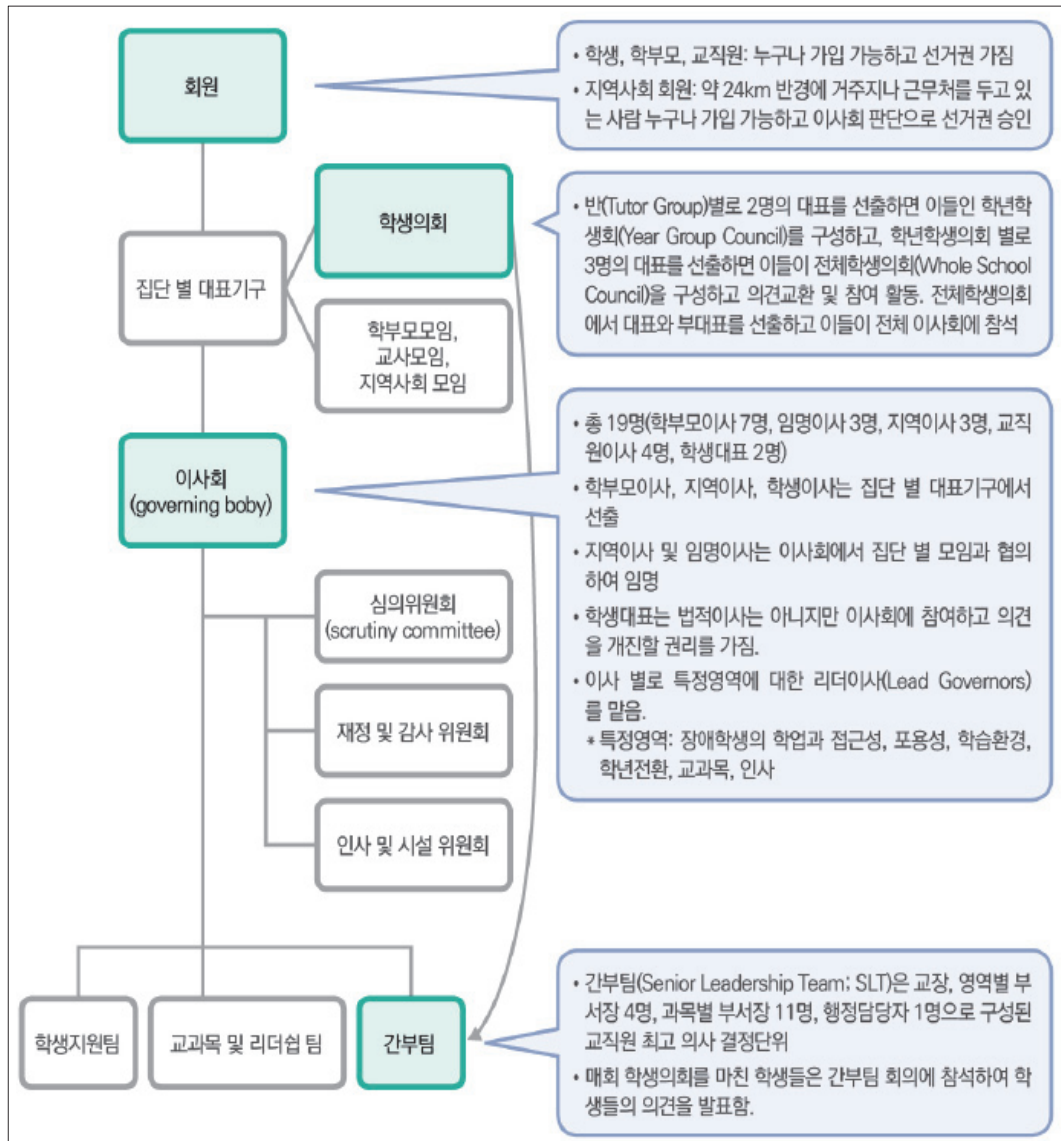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p.6.

3) 협동조합이 걸어온 길

가) 세계협동조합의 역사

- 협동조합은 1844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영국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이후 금융, 운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 경제모델로서 각광을 받아왔음.
 - 우리나라에서도 농협, 신협, 생협 등 다양한 개별법 협동조합과 함께 2012년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왔음.
- 유치원의 경우 이탈리아 북부지역 레지오 에밀리아 로마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학부모와 주민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유치원을 짓기 시작함.
 - 이런 노력은 교육 개혁을 목표로 하는 교사들과 결합하며 새로운 교육철학으로 발달함. 어린이, 학부모, 교사의 상호 협력적인 운영, 환경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교육, 가족 및 지역사회 시민들 간의 생동적이며 강렬한 공동 참여가 강조됨.
 - 레지오 에밀리아의 구성원들의 상호 협력적 교육철학은 다른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1992년 <뉴스위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학교 10곳”의 하나로 유아교육 분야에서 레지오 에밀리아를 선정하였음.
- 유치원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방식의 초·중·고등학교는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영국에서는 2008년부터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 초·중·고가 늘어나 지난 2016년 1월 <에스비에스>(SBS)에서 방영된 <협동조합은학교다> (다시보기: <https://vimeo.com/150932597>)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널리 소개되었음.
 -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며 민주적,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협동조합 학교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도 협동조합 원리가 적용됨.
- 스페인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협동조합 학교가 있으며 수도 마드리드의 GSD 협동조합(Gredos San Diego Cooperative)과 바스크 지방의 이카스톨라 등이 있음.
 - GSD의 경우는 1985년 교사를 중심으로 18명이 모여 지역사회에 부족한 학교를 자체적으로 설립하면서 시작된 교사 중심 노동자협동조합임. 현재는 마드리드에 8개, 국외에 2개의 협동조합 학교를 가지고 있음.
 - 바스크어로 학교를 뜻하는 ‘이카스톨라’는 바스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학교로 이카스톨라 연합회는 전체 110여 개의 학교와 5만 6천여 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교사 및 학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음(www.ikastola.eus).

[그림 III-2-4] 영국 협동조합학교인 출튼 중고등학교 구성원 참여 제도와 실제



출처: 박주희(2018). 영국 협동조합학교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8), pp. 35-62.

- 학교의 형식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에서도 다양한 모둠 활동,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 교육, 상황과 맥락에 맞는 역량 교육,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등 기존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과 협력하며 학생중심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음.

- 국내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협동조합이 활발해 1988년 대학생할소비자협동조합이 생겨 학내 식당, 서점, 매점 등의 생활 복지를 대학 구성원들이 공동 주인이 되어 운영하기 시작했고, 1994년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이 문을 열어 학부모, 지역 주민의 협동 보육이 시작됨.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에는 2013년 서울 영림중, 경기도 복정고를 시작으로 초·중·고에서 매점, 방과후, 청소년 창업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학교협동조합이 생겨났음.
-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70여 개의 협동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 70여 곳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회원 조직임.
- 2019년 6월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창립해 10월 인가를 받았으며, 학교협동조합은 100여 개가 생겨 2017년 8월 전국학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창립해서 같은 해 10월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 ☞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는 다음과 같음.

〈표 III-2-6〉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

- 1844년 최초의 성공한 협동조합 영국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창립
- 1872년 독일 라인주에서 만들어진 75개의 신용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성격의 '라인농업협동조합은행'이 설립
-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도 1882년 낙농협동조합과 1887년 양돈협동조합이 등장하였으며 1890년까지 목장의 1/3이 협동조합에 우유와 돼지를 출하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됨.
- 1884년 프랑스와 영국의 협동조합운동가들이 국제적인 협동조합교류를 제안한 후 11년만인 1895년 런던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차 대회가 열림.
- 1937년 프랑스 파리 대회에서 7대 원칙을 정함.
- 1956년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현재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원조가 되는 '울고(ULGOR)'라는 석유난로를 생산하는 협동조합이 설립됨.
- 197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의 문제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겨남.
-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 100주년 행사 기념으로 영국 맨체스터에서 현재의 원칙을 담은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발표
- 2009년 UN에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함.

출처: 기획재정부(2013).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pp.26-32.

나) 국내 협동조합의 역사

☞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국내 협동조합의 역사는 다음과 같음.

〈표 III-2-7〉 국내 협동조합의 역사

- 조선시대 ‘두레’ 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직과 ‘계’와 같은 근대 협동조합과 거의 유사한 성격과 조직을 갖춘 협동 조직들이 잘 발전되어 옴.
- 1961년 농협법, 수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됨.
- 1960년 민간 주도의 신탁이 창립되며, 1972년 신탁법이 제정됨.
- 1985년 무점포 생협 사업 방식을 도입한 안양의 “바른생협”과 1986년 도농직거래를 위한 “한살림농산”이 시작되며, 1999년 생협법이 제정됨.
-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2012년 시행됨.

출처: 기획재정부(2013).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pp. 32-35.

4) 협동조합의 가치와 7원칙

가) 협동조합의 가치와 조합원의 가치

○ 국제협동조합연맹(ICA)는 1995년 100주년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성, 연대로 설정하고 이를 선언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협동조합 가치도 계승해야 한다고 보았음.

- 이러한 원칙들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 운영할 때도 지켜야 할 주요 가치들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스스로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III-2-8〉 ICA가 선언한 협동조합의 가치 및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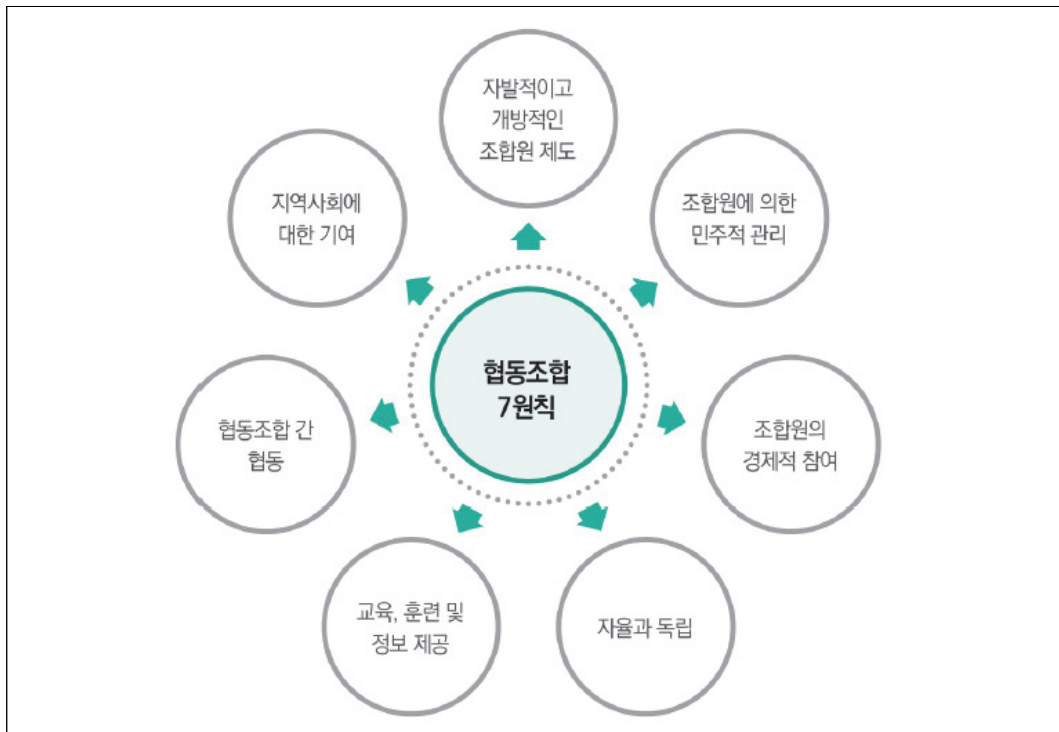
협동조합의 가치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
• 자조(self-help) •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 • 민주주의(democracy) • 평등(equality) • 공정성(equity) • 연대(solidarity)	• 정직(honesty) • 개방(openness) •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 for others)

출처: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홈페이지 www.ica.coop

나) 협동조합의 7원칙

- 협동조합의 원칙은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원칙으로 1937년과 1966년 두 차례에 걸쳐 공식 발표한 뒤, 1995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혀서 새롭게 정립되었음.
-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협동조합 7원칙과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7원칙이 대표적임.
 - 협동조합의 7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임.

[그림 Ⅲ-2-5] 협동조합의 7원칙



출처: 기획재정부(2013).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pp.12-25.

〈표 Ⅲ-2-9〉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며,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라면 누구든지 성이나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음.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운영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조합원은 조합의 방침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조합원들이 선출하여 대표가 된 사람들은 모든 조합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 단위 조합의 조합원은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짐.

3. 조합원에 의한 재산의 형성과 관리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평하게 출자하며, 조합의 재산을 민주적으로 관리함. 조합 재산의 일부는 통상 조합의 공유 재산이 되며, 출자금에 대해 배당이 지불될 경우에도 통례상 그것은 일정한 제한을 받음.

4. 조합의 자치와 자립

협동조합은 자치에 입각한 조합원의 자주 조직이며 조합원이 관리함. 다른 조직과 계약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인 권리가 확보되고, 조합의 자립성이 유지되어야 함.

5. 교육, 연수와 홍보활동의 촉진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나 선출된 임원, 교직원에 대해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여 각자가 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조합은 협동조합의 본질과 의의를 지역사회로 확산시켜야 함.

6. 협동조합간의 협동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적, 전국적, 광역적, 국제적인 구조를 통해 서로 협동해야 함.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사회의 영속적인 발전에 노력해야 함.

5) 자주하는 질문

Q1. 협동조합형은 농협처럼 농촌에만 있는 게 아닌가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서울우유, 썬키스트, FC 바르셀로나 등도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안경제 모델로 농협 외에도 신협, 수협, 생협 등이 있으며 주택, 에너지, 공정무역, 교육,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Q2.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우리나라만 유일한 게 아닌가요?

부모, 교사 구성원들의 상호협력적인 교육 철학으로 유명한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도 처음 시작은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협동조합 학교도 많습니다. 스페인의 GSD, 이카스톨라가 그 예입니다.

Q3.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나요?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초기 설립 단계이고 자체의 목적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벅찬 상황일 경우에는 사회적 연대에 적극 나서기 어렵겠지만, 지역의 역사와 특성, 협동조합의 성격 및 활동 역량에 따라 사회연대와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직원조합원들은 자신의 교육적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조합원들은 육아 선배로서 인근 학부모들과 함께 활동이 가능합니다. 바자회를 통한 지역 이웃돕기, 부모교육, 부모 참여 프로그램, 육아상담 등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생활협동조합형,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도서관, 병원, 소방서, 여성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 마을지원 사업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조합원은 성장하고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지속가능하게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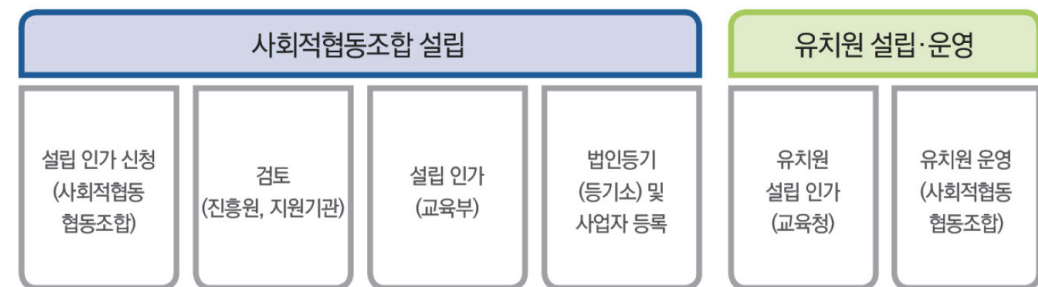
Q4.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육아에 대한 강화와 지역사회의 기여 및 연대에 있다면, 그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워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를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을 구성원으로서 주민 자치 활동, 마을 만들기 운동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대 사례로는 마을 축제, 건강한 먹거리(텃밭 가꾸기, 로컬 푸드), 아나바다 장터, 건강한 교육환경 만들기(예: 작은 산 살리기, 마을 놀이터 살리기, 놀잇감 만들기 등) 등이 있습니다.

다. 협동조합형 유치원 만들기

- ☞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후, 인가증을 취득한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과정을 밟음.

〈표 Ⅲ-2-10〉 협동조합형 유치원 만들기 한눈에 보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 발기인이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함.
 - 발기인 모집은 5인 이상의 학부모(가구당 최대 1인), 교사,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대상으로 함.
 - 설립인가 신청 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함.
- 검토 및 결과 통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필요시 지원기관이 협조하여 설립인가의 형식적·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함.

1 신청서류 검토 요청 (신청기관 → 중앙행정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인가 신청

2 인가 여부 검토 (중앙행정기관)

- ▶ 신청 서류 검토 :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진흥원이 서류 검토
- ▶ 인가 심사 수행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인가 심사 및 서류 보완

- ▶ 검토보고서 작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 서류 검토 및 인가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 보고서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화신

3 결과통보 (중앙행정기관 → 신청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진흥원의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 법인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제1항).
- 사업자등록
 - 인가 통보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
- 유치원 설치 및 운영
 - 유치원 설치 기준 및 운영은 통상의 절차와 동일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를 허용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18.11.6.) 공포)
 -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요건은 유치원 운영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요건 사후 미비 시 인가 취소 가능

1)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인가

〈표 Ⅲ-2-1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구분	내용
구성원(조합원)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모집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 협동조합인가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 준비 추진
정관, 사업 계획 등 구상 및 작성	- 설립할 기관의 목적·명칭·사업 등 포함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 정관, 사업계획·예산 확정, 임원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 사항 결의
설립 인가 신청 서류 구비	- 인가 신청 서류 작성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검토
설립 인가 신청	-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에 인가 신청
인가심사 및 서류보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지원기관 현장 심사 및 미비 서류 보완
설립 인가증 발급	-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설립 인가증 발급
출자금 납입	- 조합원이 이사장에게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장(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p.10.

가) 구성원(조합원)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뜻이 맞는 5인 이상 모집

나)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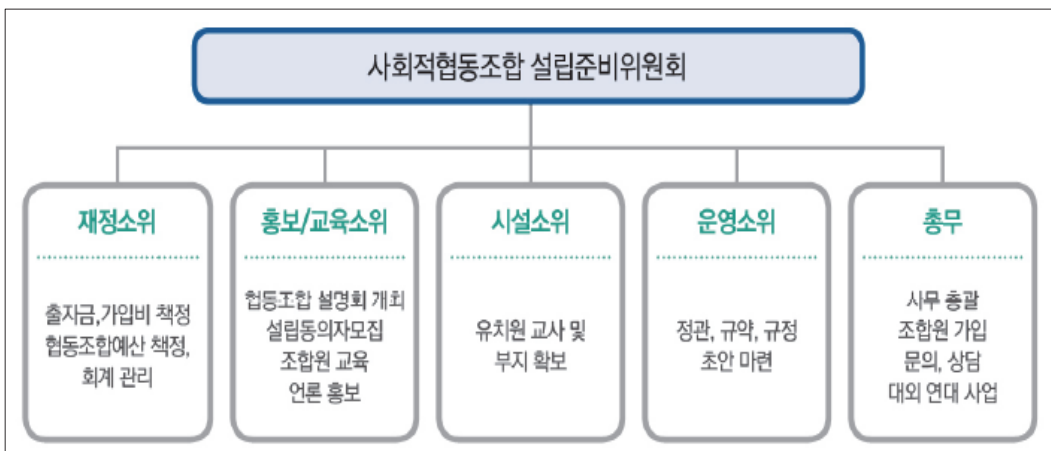
□ 구성

- 발기인이 5인 이상 확보되면 공식적인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협동조합 설립과 인가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준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함.
-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재정, 홍보, 교육, 시설, 운영 등으로 역할 조직을 구성하여 조합원이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후 유치원 설립준비위원회로 전환 가능함.
- 준비위원장을 선임하고 필요 시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구성하여 일을 분담하고 구성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 체계적인 실무를 위하여 총무를 선임할 수 있음.

□ 역할

-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를 모집함.
- 설립 준비위원회 전체모임과 소위원회모임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함.

[그림 III-2-6] 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역할(예시)



■ Tip: 설립준비위원회 진행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여러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서로 친해지고, 양육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고,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치원의 모습을 공유해 나갑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은 협동조합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것으로 준비 기간 중 가장 힘을 모아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의 협동조합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협동조합 설립 교육과 컨설팅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 가입비, 출자금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합의할 사항이 많아지는 만큼 갈등이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뜻을 모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일이 많아지면서 자칫 준비위원장과 총무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모임을 이끌어가는 힘은 위원장과 총무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도록 합니다.

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작성

○ 정관 : 단체의 기본 규범, 조직 체계, 운영 방법, 사업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경영 공시를 통해 공시함.

- 정관은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정해 놓은 조합원들의 약속이므로 조합원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개념을 갖고 조합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 필요가 있음.
- 정관은 먼저 5인 이상의 발기인들이 모이고 또는,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함께 논의하여 합의를 통해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 작성함.
- 작성 후 창립총회에서 승인하고 발기인들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함.
- 기획재정부에서 ‘표준정관례’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각자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

○ 정관을 만들 때 참고 사항(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조항)

〈표 Ⅲ-2-12〉 정관을 만들 때 참고 사항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1항): 필수 기재사항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 무효)

- ① 목적
-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⑥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⑦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⑧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해산에 관한 사항
- ③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명칭(제3조)

명칭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동일 명칭 사용 제한) 동일한 특별사광역사·특별자치사·특별자치도·사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 사용 금지

임직원의 겸직금지(제44조)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음.

운영의 공개(제96조)

협동조합은 정관 및 규정,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 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적극 공개해야 함.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음.

경영공시(제96조의2)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기재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사항(정관과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등)을 공시하여야 함.

※ 참고 : 정관과 규정의 사례는 부록(1-6) 정관사본 참조

○ 정관, 규약, 규정의 차이점

- 협동조합의 정관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고유한 특징을 담은 근본 규칙이며, 이를 기반으로 세부사항을 다룬 규칙이 규약과 규정임.
- 정관은 설립한 이후에도 변경되면, 변경 신고나 인가가 필요함.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정관은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그 세부사항은 규약이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표 Ⅲ-2-13〉 정관, 규약, 규정의 차이점

	정 관	규 약	규 정
의 결	총회 (과반 수 출석, 2/3이상 찬성) 중앙행정기관(교육부)인가	총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사회 (과반 수 출석, 과반 수 찬성)
내 용	목적, 명칭, 조직, 운영, 사업, 조합원 등 14개 필수사항	정관 이외에 조직,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정관, 규약 이외에 경미한 사항
예 시	표준정관(예시)	총회 운영, 출자금 감소, 배당, 현물 출자 등	이사회 운영, 감사, 직원 보수, 선거 관리 등

■ 알아두면 좋아요: 정관을 작성하기 전, 협동조합의 사명과 비전 세워보기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조직이 하고자하는 바를 분명하게 수립하는 것은 이후 협동조합과 유치원의 운영 방향성을 수립하는 기준이 됨.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명과 비전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함.
 - * 사명 (Mission): 조직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
- 조직이 실현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밝히는 것
 - * 비전(Vision): 특정한 기간 안에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 모습. 협동조합이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목표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목적과 아동, 교사, 부모와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협동조합정관/설립 목적에 담도록 함.

☞ 화성시 동탄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예시)

정관 [제2조 설립 목적]

공동육아 이념과 운영 방식에 동의하는 둘 이상 유형의 구성원들이 모여 자조·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지역·계층·혼인상태 및 신체·정신의 장애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공동육아이념을 실천하여 공동육아 정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보다 발전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 계획서 작성

- 설립 목적, 의사결정기구, 조직도, 임원 현황, 당해 연도 사업 계획 등 협동조합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함.
- 사업 계획서를 함께 논의하고 작성하는 것은 사업 초기 발생하게 되는 혼란을 줄이고 협동조합의 기본 방향에 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함.
- 작성 후 창립총회에서 승인함.

○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 수입·지출예산서는 설립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대략적으로 예상하여 손익계산을 따져 봄으로써 협동조합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기 위해 작성함.
- 작성 후 창립총회에서 승인함.

라)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 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함.

- 다만,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도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창립총회 필수 의결 사항은 ① 정관, ② 사업 계획과 예산, ③ 임원의 선출, ④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며, 이외 기관의 상황에 따라 의결 사항을 자유롭게 규정함.

○ 창립총회 진행과 창립총회의사록

마) 설립 인가 신청 서류 구비

○ 인가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III-2-14〉 설립 인가 신청 필요 서류 목록

-
- 1 설립 인가 신청서
 - 2 정관 사본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5 임원명부
 - 6 사업 계획서
 - 7 수입·지출예산서
 -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p.17.

바) 설립 인가 신청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업종·업태와 관련 있는 교육 부 사회적협동조합 담당부서로 신청함.

☞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 문의·상담·교육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

〈표 Ⅲ-2-15〉 협동조합 설립 시 상담 가능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목록(예시)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31	033-749-3900	gwcs0524@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2	070-4763-0120	pns@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66-7971	0303-0945-7945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053-267-5003	coop@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053-217-5003	dgcoop@hanmail.net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hanmail.net
부산	(사)사회적기업 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050-4926-0028	coop@rise.or.kr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fcoop@daum.net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052-267-6177	ulsan@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032-446-9492	032-421-9585	inseca@daum.net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9588	0303-0955-9571	sstreetree@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gmail.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cnsecoop@gmail.com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043-222-9001	043-223-9201	cbse@hanmail.net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coop.go.kr)

주: 2020년 1월 기준.

사) 신청 서류 검토 및 서류 보완

-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는 설립 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 60일 기간에는 공휴일(토·일 포함),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보완하는 기간 등은 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60일 이상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신청해야 함.

아) 설립 인가증 발급

-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설립 인가증을 발급 받음.

자) 출자금 납입

- 조합원이 이사장에게 출자금 납입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규모
 -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최저·최고 제한 규정은 없음.
 - ※ 다만, 조합원 1인의 출자 비율이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차)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해야 함.
- ※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란 설립 인가증이 도달한 날을 의미함(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
- 등기 절차는 ①인가증 수령, ②설립사무의 인계(발기인 대표→이사장), ③출자금 납입(이사장 명의 통장), ④등록면허세 납부(시·군·구 세무 민원실), ⑤의사록 공증, ⑥등기 신청(관할 등기사무소)의 절차로 이루어짐.
- 등기 신청 시 서류 양식은 다음과 같음.

〈표 III-2-16〉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1. 설립 등기신청서(법원행정처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
2. 정관(공증 불요,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 인가증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증명서 제출)
6. 인감신고서(등기신청서 기명날인한 사람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

-
- 는 출자재산영수증)
 -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입 확인서)
 - 9. 등기 수수료
 - 10.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운영 가이드북, p.82.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함.
 - ※ ‘사업 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함.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이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됨.
-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서류 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제출서류는 관할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제출해야 함.

〈표 III-2-17〉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
- 1.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
 - 2. 설립 인가증 사본
 - 3. 정관 사본
 - 4. 법인등기부등본
 - 5.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6. 출자자명세서
 - 7.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 계획서)
 - 8.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p.83.

2)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 및 인가

가)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의 기본사항

- ☐ 설립경영자의 자격확인 : 사회적협동조합
- ☐ 교사 및 교지의 소유여부
 - 건물 용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 자가인 경우: 사권(저당권,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함.
 - 교지 안에는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며, 유치원의 재산은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담보 제공이 불가함.

○ 설립 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소유가 아닌 임대인 경우도 설립 가능함.

〈표 Ⅲ-2-18〉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 근거

- ① 사립인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 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출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 알아두면 좋아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소유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자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유치원을 설립해 볼 수 있음. 유치원 설립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투자기금 등을 이용하여 저리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음. 다만, 이용시 원금 상환 및 이자 조달 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함.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여부

- 설립 예정지의 위치, 크기, 외형, 지형, 토양 환경, 대기 환경, 주변 유해환경, 유아배치계획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평가받아야 함.
- 교육환경평가를 받을 시 비용이 발생하므로 설립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유자격 교원 확보

- 유치원장 자격증 소지자,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의 제1~2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교사를 확보해야 함.
- 특히 협동조합유치원 설립 초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치원 설립·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유치원 경험이 있는 교직원 확보가 필요함.
- 교원 임용 관련 서류: 교육(지원)청 유아교육담당 확인(협조)이 필수임.

■ 알아두면 좋아요: 유치원 설립인가 시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된 후, 유치원을 개원할 때까지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함. 유치원을 설립한 경험이 있는 원장님 또는 교직원이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할 때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

□ 유치원 명칭 선정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가치와 방향을 담은 명칭을 선정하도록 함.

□ 개원 시기의 적절성

- 유아모집을 학기 초에 할 수 있도록 설립 인가 준비 기간을 여유 있게 갖도록 함.

□ 학급 수 및 학급당 정원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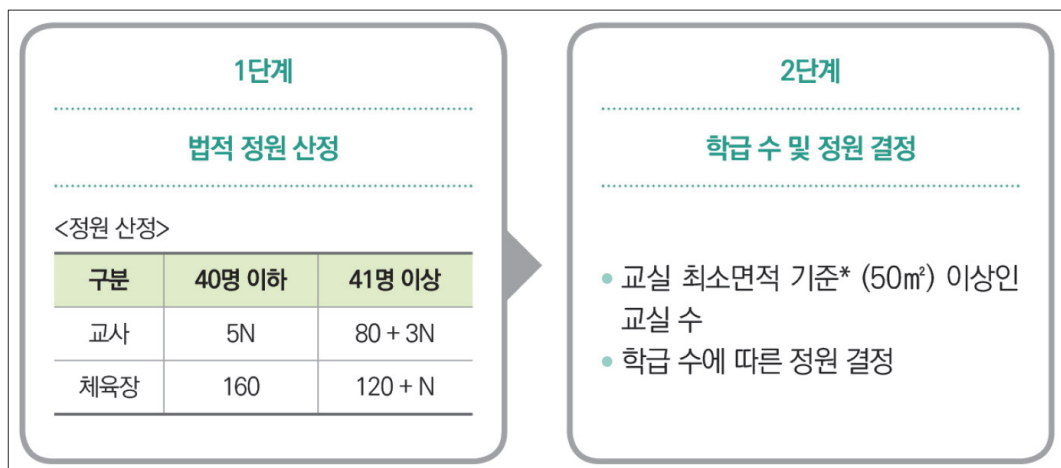
- 유치원의 적정 규모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시·도교육(지원)청 별 배치 계획에 의거하여 판단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적정 규모는 운영의 안정성(교육 활동의 안정성,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3학급 이상이 적정함.
 - 소규모일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표 Ⅲ-2-19〉 2017~2020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급편성기준	단일연령 학급			혼합연령 학급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4~5세	만3~5세
급당정원 (최대)	16	22	26	16	22	20

근거 : 「유아교육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기도교육청(2019b)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그림 Ⅲ-2-기] 유치원 인가정원 결정 절차



*최소 면적 기준은 교육청마다 상이함.

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인가 준비

- ☞ 유치원 설립·인가의 경우, 서울 및 경기도는 지원청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다른 시·도는 본청에서 소관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설립·인가 절차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후, 유치원 설립·인가 진행함.
-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 절차에 따름.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교육(지원)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 「유아교육법」제8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 「00시·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도 있음.

〈표 Ⅲ-2-20〉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구 분	요 약	시 기
① 유아배치 계획수립·확정 [교육청]	■ 권역별 취원 수요에 따른 정원으로 신·증설 인가 여부 지역교육청 판단 결정	3년마다
② 설립가능 권역확인 [설립자]	■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권역 및 신설 가능 정원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확인	매년 1월15일까지
③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승인 [설립자→교육청]	■ 설립예정지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등에 대한 평가서 제출승인	(승인) 제출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④ 설립계획서 제출·승인 [설립자→교육청]	■ 설립예정자의 재산 주체, 교지확보계획, 교사건축계획, 설립자자격요건 등 구비서류 적정성 및 유아교육 관계 법령 부합 여부 검토·승인	(제출) 매년 3월31일 까지
⑤ 설립인가 신청·통보 [설립자→교육청]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설립 인가·통보	(신청) 설립 예정일 4개월 전까지
⑥ 유치원 개원 보고	■ 교원임용보고-교육(지원)청 해당부서 개원결과보고-교육(지원)청 해당부서	개원 후 7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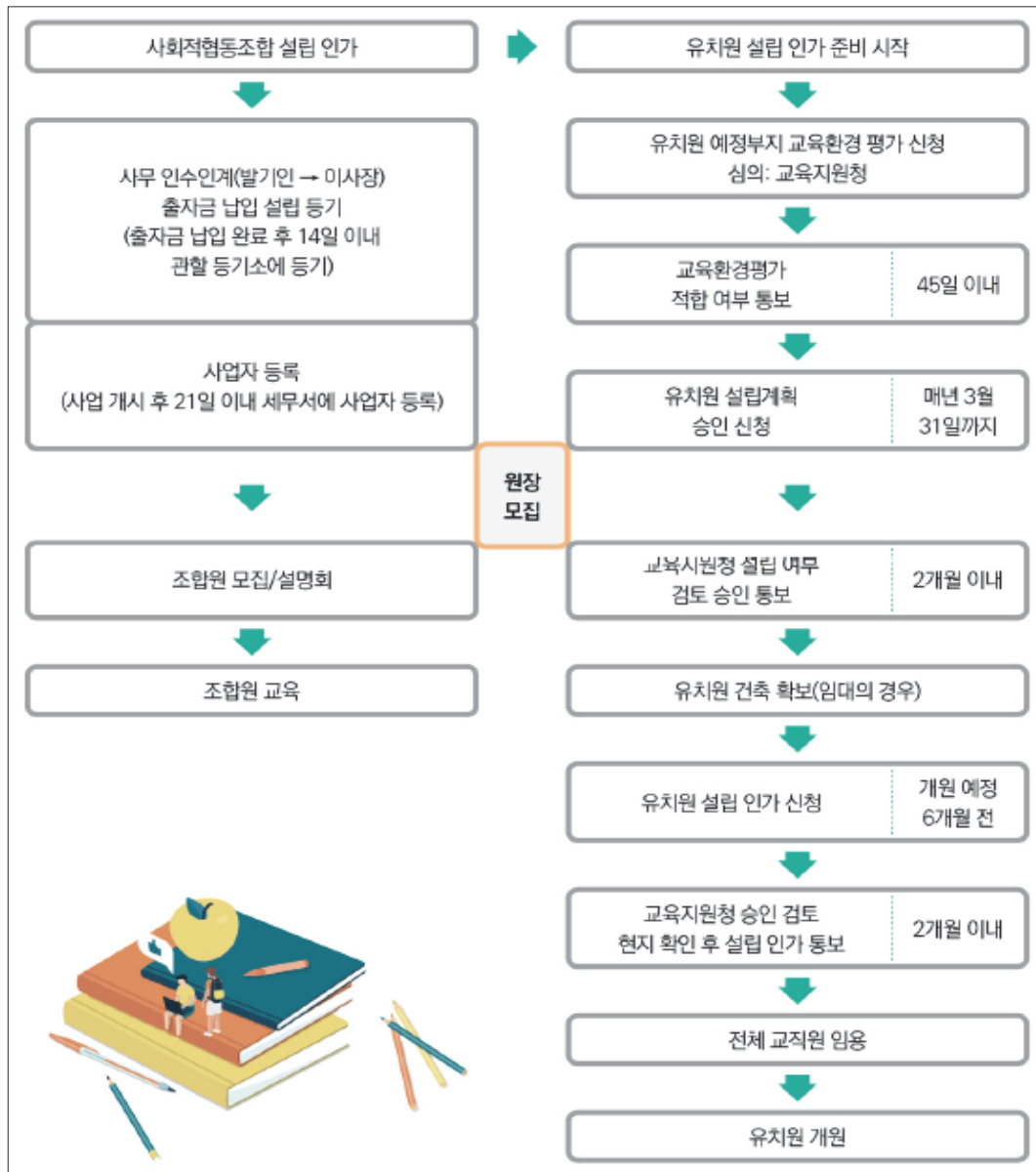
출처 : 경기도교육청(2019a) 사립유치원행정업무 길라잡이, p.222.

〈표 Ⅲ-2-21〉 유치원 설립 인가 전·후 유의사항(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 설립 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유아모집 금지
- 설립 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 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 변경 금지
-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 조치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과정은 협동조합 인가 후 등기, 조합원 모집 등 협동조합 업무와 유치원 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짐.
- 따라서 협동조합의 이사진은 이 두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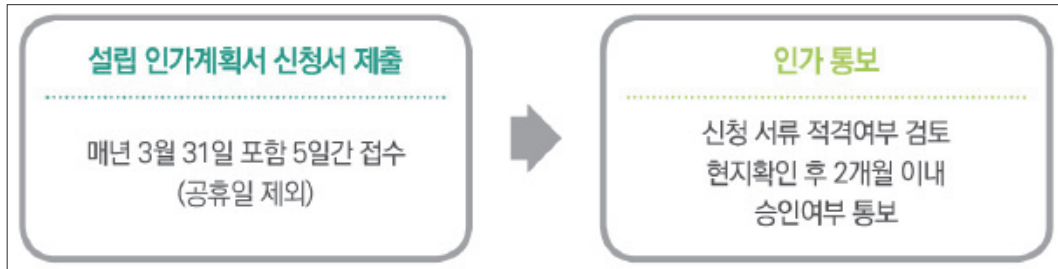
[그림 III-2-8]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



□ 설립계획서 제출·승인

- 설립 예정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목적, 명칭, 위치, 개원 예정일 및 학급 수 유아 정원 등을 기재한 설립 계획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림 Ⅲ-2-9] 업무 처리 절차



〈표 Ⅲ-2-22〉 유치원 설립계획서 구비서류(경기도교육청의 경우)

- 교지확보계획서
- 교사건축계획서
- 교구 설비 확보계획서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 설립자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 설립자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재산명세서)
- 설립자 범죄전력조회 및 개인정보 제공 관련 서류
-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 정관(유치원 규칙)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

** 주: 경기도교육청(2019a)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 p.226 참조.

□ 시설설비 구비

-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 유치원[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교사[校舍]

〈표 Ⅲ-2-23〉 유치원 교사의 기본 조건(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구분	기준	유의점
층수 제한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단, 건물전체 사용 시 최대 5층까지 설치 가능). ※ 유치원 건물의 4층 이상 설치된 실내체육시설(강당, 체육장 등)은 유아의 안전, 교수·학습 활동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 여부 결정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상은 교수학습 지원 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로 활용
지하실	유치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단, 유치원 시설안 전관리 기준 및 위생,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 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있는 경우 예외 허용).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지하에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일반 교실, 강당(체육장), 유희실 등)은 설치
복합 건축물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건축하는 경우,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함께 설치 가능(단, 교육환경보호구역(舊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유치원 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 면적의 2분의 1 이상 - 유치원 사용 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 설치 불가 - 유아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 제외)과 분리 [근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의무 사항] 유치원에는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매개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내부시설) 출입문·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시설 안전	소방	- 소방 설비: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 및 소화설비, 안전점검 확인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5조 [별표5]] ①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② 소방 안전점검 확인서
	전기	- 전기설비: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가스	- 가스설비: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어린이 놀이시설	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③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구분	기준	유의점
기타	- 급수·온수공급시설: 급수시설 설치, 수질검사결과 무해할 것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0조] - 집단급식소 신고: 상시 1회 50인 이상 단체급식 실시하는 경우 [근거: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출처: 경기도교육청(2019a) 사립유치원행정업무 길라잡이, p.227.

□ 교구 교재 구비

○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실별 설비 및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함.

- 관련 근거: 각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참조

☞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중 보통교실면적(최소 50㎡)을 제외한 교재 교구 필수항목은 권장 사항으로 완화하여 인가받을 수 있음.

○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교구로 구비할 것을 권장함.

□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관리 조건 준수

○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부록 참조: 환경안전관리기준「별표 2」)을 준수하여야 함.

○ 근거 법령: 환경보건법 제2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6호제1항

〈표 Ⅲ-2-24〉 유치원 시설 설비 기준(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구분	시설기준	근거	비고
교사	- 학생수 40명 이하 - 5N - 학생수 41명 이상 - 80 + 3N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 립·운영규정 제3조제3항	N : 학생정원 지하는 교사면적 제외
교사용 대지	- 건축 관련 법령의 건폐율 및 용 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 한 면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 운영규정 제4조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의 건폐 율 및 용적율 규정에 의하여 산출
체육장	- 학생수 40명이하 - 160 - 학생수 41명이상- 120+N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 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 단, 실내체육시설의 면적(실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 립·운영규정 제5조제2항	N : 학생정원 (학생정원이 40 명에 미달하는 경우 40명으로 산출) 교내의 실내체육시설 면 적이 체육장 면적에 포함된 경 우 교사 면적에서 제외

구 분	시설기준	근 거	비 고
	은 1학급 단위의 학생이 동시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		
교지	- 교사용대지+체육장 면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	
급수 시설	-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 판정된 급수시설 설치 - 온수 공급시설 설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0조	
보통 교실	- 1반당 정원은 만3세아 16명, 만4세아 22명, 만5세아 26명, - 만3·4세, 4·5세 혼합반은 20명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단, 만3-4세로 구성된 혼합반은 만3세아 기준, 만4-5세로 구성된 혼합반은 만4세반 기준 적용
권장 시설	- 종일반교실, 보건실, 유학실	각 시·도교육청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필수 시설	- 원무실, 보통교실, 자료실, 유원장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교재·교구	- 종일반 교실, 유학실, 자료실, 보통교실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 유치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개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인가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함.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그림 III-2-10] 업무 처리 절차



〈표 III-2-25〉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서류(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유지방법 -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출연재산목록, 법인정관사본 및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 증명서) - 대표자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대표자 각서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원장 임용예정자 관련	-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졸업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교원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 -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신원진술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시설 및 설비관련 서류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교사(체육장 포함) 현황도 - 교구 확보 현황 및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결과서)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보험가입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기타 제출 서류	- 유치원규칙 및 예산서류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망)	- 교지·실습지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교사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출처 : 경기도교육청(2019a) 사립유치원행정업무 길라잡이, p.228.

□ 협동조합형 유치원 규칙 만들기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규칙은 협동조합의 이사회에서 원장과 함께 논의하여 제정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 규칙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원칙에 따르며,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 목적, 운영, 교육 방향이 잘 드러나 있어야 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가 담겨있으며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함.
-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자격검증령 등 참조

〈표 Ⅲ-2-26〉 유치원 규칙(유아교육법 제10조)

제10조(유치원 규칙)

-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② 유치원 규칙의 기재 사항 및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Ⅲ-2-27〉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 사항 등)

-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 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제6호·제6호의2·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 궁금해요: 유치원 인가를 받기 전에 교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는 유치원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개원 전에 발생하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등은 모두 조합출자금 및 조합비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유치원 예산에 따른 지출은 유치원 인가 후에 가능합니다.

다) 유치원 인가 후 개원 준비

□ 교직원 채용 및 교육

○ 교직원 채용을 위한 사전 준비

- 유치원규칙의 교직원인사 및 채용관련 절차에 의해 진행함.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규정 및 유치원규칙 수립 시, 교직원 인사규정과 임금 지급규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

○ 인사위원회 구성

- 교직원 채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협동조합이사 2~3인과 지역사회인사 1~2인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공개 채용의 원칙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0항).
- 인사위원회에서는 공개 채용을 위한 내용 및 방법을 논의하여 공모하도록 함.

○ 법적 자격기준 - 교직원 채용 시 법적 자격 기준을 따름.

※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 실무 매뉴얼 참조(서울특별시교육청, 2018a, pp.9~12.)

〈표 Ⅲ-2-28〉 유치원 교원의 자격 기준

구분		자격기준
원장		•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1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원감		•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사	1급 정교사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 준교사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교직원의 자격 및 자질 기준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가치와 지향점에 동참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는 논의하여 채용 기준을 정함.

■ 알아두면 좋아요: 협동조합유치원 교직원의 일반조건 외 요건(예시)

-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생활 중심의 교육관과 아동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와 지향에 동의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 민주적인 리더십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 변화의 의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 채용 후 원장 및 교직원 교육

○ 교직원 오리엔테이션

- 협동조합형 유치원에서 처음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유치원 생활을 안내하고 적응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협동조합에서 안내해야 할 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 방향, 정관 및 제반 규정, 근무 규정 안내 등.

○ 교사회에서 안내해야 할 내용

- 유치원 교육의 방향, 하루 일과, 월간 계획, 연간 계획 등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도록 안내함.
- 반 구성, 일과에 따른 교사의 역할, 부모 상담 및 부모와 관계 맺기, 반모임 등을 안내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와 지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읽기와 토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 개원 전 교직원 교육

- 개원 전 교육은 사회적협동조합 이해를 포함, 교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을 계획해서 진행함.

■ 알아두면 좋아요: 협동조합형 유치원 교직원 교육(예시)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필요성, 의의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
- 협력적 교사회 운영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와의 협력,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

□ 사무직원 배치

〈표 III-2-29〉 사무직원 배치기준(경기도교육청의 경우)

	9학급 이하	10-20학급	21학급 이상	비고
정원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교육행정, 시설관리에 한함

* 일반직, 기능직 구분은 사무직원 배치기준 범위 내에서 유치원 자율결정

* 사무직원 외 직종(영양사, 조리사, 통합차량운전원 등)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유치원 규정에 반영(경기도 학급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교육공무직원 정원, 통학차량대수 등). [근거 :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사립학교법 제 70조의2]

* 학급 수 증감에 따라 사무직원 배치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주 : 교육청마다 배치기준이 다를 수 있음.

출처 : 경기도교육청(2019a) 사립유치원행정업무 길라잡이, p.231.

□ 유치원 환경 구성

○ 유치원 환경구성

-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유치원 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구성원들은 ‘유아의 삶과 안전이 보장되는’ 유치원 공간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정리가 필요함.
- 유치원은 교사와 유아들의 삶의 공간이므로 생활과 놀이의 동선을 고려해야 함.
- 특히 공간구성에는 유치원의 교육철학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회가 유치원 환경구성 전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운영 철학과 방향에 따라 주방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전체 통합공간이 필요한지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유치원 주변 환경 확인

- 유치원 운영과 교육과정 구성 등을 위해 개원 전에 지역사회와 유치원 주변 환경을 파악해 두는 것 필요함.
- 개원을 앞두고 이웃 및 지역사회에 유치원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함.

○ 유치원 교구 설비 준비

-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교구, 도서 등을 준비함.
- 물품 준비: 생활용품, 사무용품, 학습 기자재, 주방용품 등

- 비품 목록, 교재 교구 목록 등 각종 교구 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함.

* 사립유치원행정업무 길라잡이(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교구 설비기준, pp.236~243)참조

□ 신입 부모 오리엔테이션

- 필요성: 협동조합형 유치원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 부모들이 협동조합의 문화를 이해하고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시기: 유치원 개원 상황을 보며 결정함.
- 주관: 교육소위원회의 주관 아래 운영진들과 교사회가 함께 참여함.
- 자료: 신입 부모 안내 및 교육자료를 만들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함.

■ 알아두면 좋아요: 신입 부모 오리엔테이션 역할 나눔(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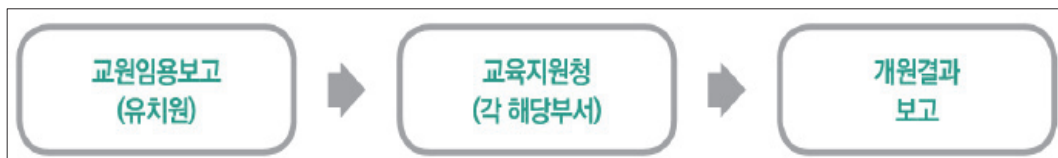
- 사회적협동조합(법인)
협동조합의 설립 배경, 협동조합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조합원 생활 수칙,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가치와 방향성 등
- 원장
- 유치원의 하루 일과 및 부모 참여 활동 안내
- 유치원 운영 방향 및 운영 안내, 기타 필요 경비 납부 등 안내
- 교사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
- 반 운영, 등원 준비물, 신입 원아 적응 일정 등

라) 협동조합형 유치원 개원

□ 개원 보고

- 개원보고는 다음의 절차에 따름.

[그림 Ⅲ-2-11] 개원 보고 절차



3) 협동조합형 유치원 폐원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 해산 및 청산

□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의 개념

- 협동조합의 해산은 협동조합이 그 활동을 정지한 이후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고 이에 따라 청산 절차에 들어감.
- 협동조합이 해산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님. 청산 절차를 통해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게 될 때 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게 됨.

□ 해산 및 청산의 절차

-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및 청산함.
 -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해산해야 함.
 -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정관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정관 절차의 종료로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하게 됨.

〈표 Ⅲ-2-30〉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

제35조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총회의 의결 2.합병·분할 또는 파산 3.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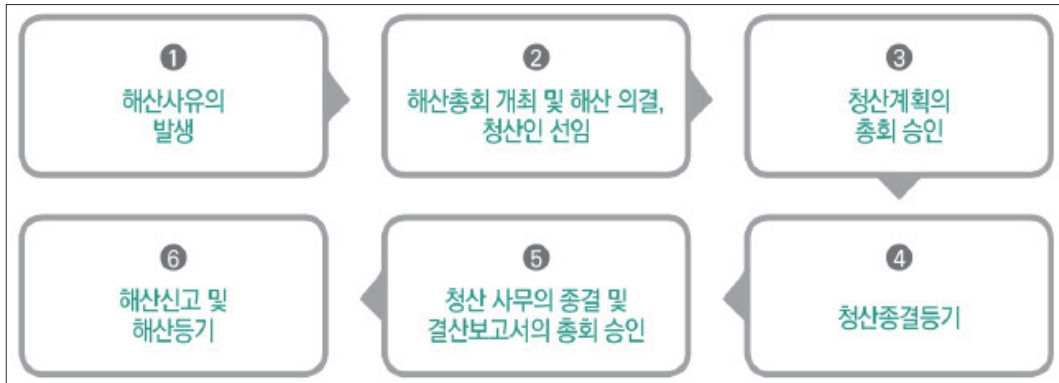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협동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비영리법인·공익법인 4.국고

□ 절차 및 내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총회를 개최하고 청산임을 선임하고 총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체계를 거침.

[그림 III-2-12]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



① 해산 사유의 발생

- 협동조합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할 수 있음.
 - 총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설립 인가의 취소

② 해산총회 개최 및 해산 의결, 청산인 선임

- 해산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함.
 - 해산 사유, 해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한 정리 필요함.
- 유치원 폐원 과정 및 폐원일 확정
- 청산인 선임 및 청산인에 의한 재산 조사(재무제표 작성)
- 조합원에게 해산 사유 알리기
 - 재산처분방법에 대해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함.

③ 청산계획의 총회 승인

- 해산 의결
- 재산조사 및 처분방법 결정
 - 잔여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참조

〈표 Ⅲ-2-31〉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예시)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④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함.

⑤ 청산 사무, 청산 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 재산 처분: 혹시 분쟁의 소지가 많다면 변호사·법무사 대행도 방법임.

○ 유치원 폐원

○ 재산 처분 보고

-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의견 수렴에 유의해야 함.

- 해산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진행되었거나 온라인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면 생략 가능함.

⑥ 청산종결등기(확인)

-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함.

- 실질적인 청산의 종결과 이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게 되면 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소멸됨.

나) 유치원의 폐쇄

□ 유치원의 폐쇄 절차

유치원 폐쇄 절차는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2에 따름.

[그림 Ⅲ-2-13] 유치원의 폐쇄 절차



구분	요약	시기
① 폐쇄 신청	건물 개축, 재해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폐쇄 가능	사유 발생 시
② 검토 및 현지 확인	폐쇄 타당성 및 서류의 적합성 검토	
③ 폐쇄 승인	폐쇄 신청에 대한 승인 통보	신청서 제출받은 날부터 15일(폐쇄) 이내
④ 폐쇄 보고	폐쇄 인가(승인)에 따른 후속 보고	폐쇄 이후

* 휴업, 폐쇄의 구분

- 휴업: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 정지
- 폐쇄: 유치원의 모든 기능 정지 및 폐쇄

〈표 Ⅲ-2-32〉 폐쇄 신청 시 제출 서류

유치원 폐쇄 신청서 제출 사유발생서 제출	인가 통보 신청 서류 적격 여부 검토 후 신청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	--

폐쇄인가 신청서	- 폐쇄 사유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 및 설립자 인감 증명서 제출
원아 및 교직원 처리방법	- 재원 원아 지원계획(타 유치원, 어린이집 전출, 졸업 등) - 재원 원아 학부모 자필 동의서 - 교직원 처리방안 동의서(이직, 퇴직 등)
폐쇄 사전 알림 증빙 서류	- 가정통신문, 전체학부모 대상 협의회 등 재원생 대상 폐쇄 사전 알림 서류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폐쇄 관련 협의 내용 포함(학부모 동의 절차 필수)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인 경우만 해당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처리계획서	- 건물 및 토지 처리방법, 토지,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비품대장, 물품(교재 교구) 구입지원금으로 취득한 품목에 대해 내용연수 및 물품 상태에 따른 처리(사업부서와 협의)

〈표 III-2-33〉 폐쇄 승인 후 제출 서류

재산 및 물품 처리 자료	- 물품(교재 교구) 처리 계획에 따른 처리 결과 - 당해 연도 결산서, 잔액증명서
보조금 및 수익자 경비 정산 자료	- 유아학비, 무상급식 경비(교육회계, 지보조금) 등 정산 및 반납 공문 - 수익자 부담 경비 정산 자료
기록물 이관 서류	- 기록물 이관목록 및 교육(지원)청 기록물 이관처리 완료 서류 (기록물 인수인계증 사본 등). 졸업대장과 생활기록부 이관 철저
기타 제출 서류	- 인가서 반납, 직인폐기신고서 및 기관인증서 폐기신청서 제출 - 사학연금 체납 내역 확인 서류(사학연금관리공단 확인서)

□ 폐쇄 검토 기준

- 폐쇄가 가능한 경우: 유치원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2조에 의거 관할청이 폐쇄를 명한 때

□ 검토 내용

○ 폐쇄 신청 시

- 유치원 폐쇄 사유의 적합성(교육목적 달성 불가능 등)
- 폐쇄 시기의 적절성(학기 중 지양)
- 법인(학교 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폐원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관, 규약) 여부
- 원아 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 여부(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 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수용 대책 협의 등)
- 재산 및 보조금 구입 물품에 대한 처리계획 적정 여부 (물품의 종류, 내용 연수 및 상태에 따라 폐기 또는 반납 등 해당 사업 부서와 협의 처리)

○ 폐쇄 승인 후

- 기록물 이관 관리 적절성
- 재산 및 물품 처리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 무상급식비, 유아학비, 수익자 부담경비 등 정산(잔여분 반납 또는 반환)
- 폐쇄 예정 당해 연도 유치원회계 결산 검토

〈표 III-2-34〉 기관 폐쇄 후 행정 사항(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신청기관	요청사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적용 대상기관 지정해제 요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전자문서시스템(DCMS) 사용자 삭제 요청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연수부 (사립유치원 문서유통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폐쇄 사실(사항) 알림	경기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내 유관부서 관할 시군구청 기타 유관기관
유치원장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기관 폐쇄 처리요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치원장	기관인증서 폐기 신청	교육(지원)청 정보화담당

자료출처: 경기도교육청(2019a)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길라잡이

4) 자주하는 질문

Q1.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에 대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설립체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초기 유치원 설립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신용대출 등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을 받을 때 사회적투자자금 등을 활용한 대출을 활용하면 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사진 동의를 얻어 신용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활용하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년 5월 말까지 경영공시를 마쳐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설립 신고를 한 기재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사항(정관과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및 대의원 총회, 이사회 의 활동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Q3. 해산 시 잔여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해산 시 청산인을 선임하여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이나 조합비 등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반환되 조합운영에 따라 형성된 재산이나 수익금 등은 정관에 규정된 국가 또는 상급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지정된 공공기금 등에 귀속하게 됩니다.

Q4.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되면,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함께 폐원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을 결정하였다고 해서 유치원도 해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은 유아들의 교육기관으로 다른 유치원과 합병, 또는 양도 양수를 통해서 운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 함께 알아두기 : 반대의 경우라면?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관할청의 폐쇄를 명 받았을 경우에 운영 기관인 협동조합을 반드시 해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체이므로 유치원이 해산되더라도 사업은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영과 유치원의 운영은 각각 다른 체계로 운영하는 조직체입니다.

라.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하기

1) 사회적협동조합 운영하기

가) 운영 방향

- ①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조직으로, 사업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함.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이타적 동기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함.
-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세제 혜택, 기부금지정단체 지정, 공공구매 우선 등의 혜택이 있으며 따라서 설립 후 경영공시 의무가 있음.

■ 알아두면 좋아요: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 구분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체인 유치원 운영화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으로 나뉨.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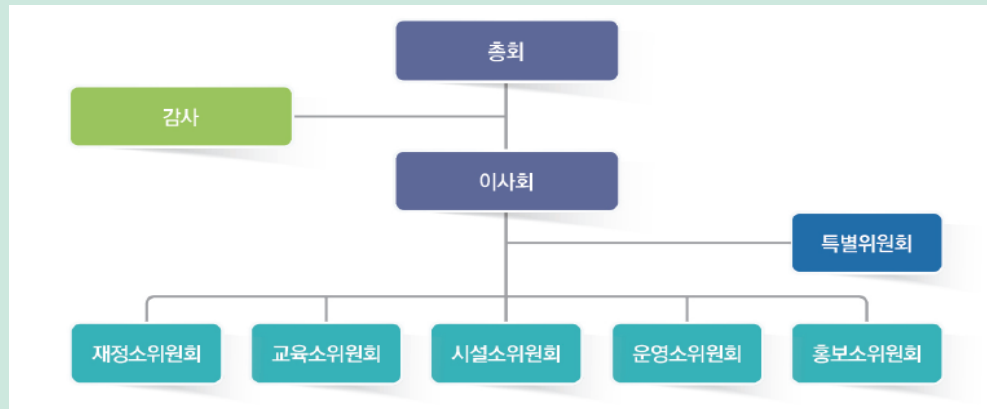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재정의 안정화, 조합원 관리, 제도 지원 체계 확보 등에 주력함.

② 유치원의 운영

유치원 일과와 유치원 환경 전반에 관해서는 원장이 중심이 된 교사회가 담당함.
학부모조합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

나) 운영기구

■ 알아두면 좋아요: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기구 조직도



① 이사회(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

□ 이사회의 역할

- 이사회의 구성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성패가 좌우될 만큼 이사회의 구성은 매우 중요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적인 조직체로 사회적 책임이 따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어 운영해야 함.
- 이사회는 총회에서 결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실행하며,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전반의 중요 사항을 논의·결정함.

■ 알아두면 좋아요: 이사회의 역할알기

- 규정 관련: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결정·집행
- 조합원 관련: 징계 발의, 신입조합원 면담
- 조합원교육 관련: 신입조합원 교육, 기존 조합원 교육과 안내
- 회계 관련: 출자금과 가입비 관리 운영, 예산과 사업 계획 작성, 수입과 지출 결정 관리, 채무와 상환에 대해 의결 관리, 재정 사업의 기획과 집행, 출자금 분납 승인 등
- 홍보 관련: 협동조합 홍보, 조합원 친목 도모, 대기자 안내 등
- 조직 관련: 소위원회 구성과 집행, 협동조합 간 연대 사업, 후원 회원 위촉
- 시설 관련: 유치원의 시설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 회의 관련: 정기총회에 사업과 결산 보고,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제출, 총회 의사록 작성, 의사회 의사록 비치, 각종 위원 구성 및 위촉에 대한 동의
- 기타 규정이 정한 사항

■ 알아두면 좋아요: 이사회의 총회 보고 사항

이사회의 총회 보고사항에는 이사장 보고, 회계 보고, 운영 보고, 교육 보고, 시설 보고, 홍보 보고(소위), 유치원 교육 운영에 관한 보고(원장, 교사회) 등이 있음.

- 이사장 보고
 - 이사장으로서 1년 활동을 이사회, 연대활동,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 회계 보고
 - 재정 보고는 재정 이사가 대차대조표를 포함해서 작성
 - 적자 발생 시 적자 발생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 운영 보고
 - 운영소위원회활동 및 평가, 조합원 참여활동, 조합원 전체 모임,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
- 교육 보고
 - 교육소위원회활동 및 평가, 조합원교육, 신입 조합원 교육 등
- 시설 보고
 - 시설소위원회활동 및 평가, 유치원 시설 안전 관리 보고 등
- 홍보 보고(소위)
 - 홍보소위원회 활동 및 평가, 조합원 대기자 관리, 유치원 홍보, 소식지 발간 등
- 유치원 교육 운영 보고(원장, 교사회)
 - 유치원 및 교사회 운영에 대한 평가, 유치원 교육 활동 보고 등

□ 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조합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집행되어야 함. 이에 조합원은 이사회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도록 함.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있음.

〈표 Ⅲ-2-35〉 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이사회) 및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2조(이사회)

-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둬.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함.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 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제 33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의 수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③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④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
 - ⑤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 ⑥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 이사회의 구성

○ 이사장

-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사회를 주재하고 총회의 의장이 됨.
- * 이사장은 이사진과 사업 계획을 세우고 주요 사업을 총괄하며 주관할 담당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독려하는 역할을 함.
- * 이사장은 협동조합 내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함.
- * 이사장은 관계 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대 활동을 담당함.

○ 이사

- 이사들은 각 분야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소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사정에 따라 구성될 수도 있고 이사 단독으로 활동할 수도 있음.
- 운영 이사: 협동조합 행사를 기획하며, 조합원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함.
- 교육 이사: 조합원 교육을 기획함.
- 회계·재정 이사: 협동조합과 시설의 운영을 위한 지출과 수입을 관리함. 매해 예산안과 매월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수익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함.
- 시설 이사: 유치원의 시설·안전·위생 상태를 점검 보수하며, 1년 시설·안전·위생 사업 계획을 수립함.
- 홍보 이사: 협동조합 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함.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며, 회의록 작성 및 각종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함. 조합원 충원을 위해 지역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일을 함.

② 감사: 이사회 활동을 감사

□ 감사의 역할

- 이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으로 역할을 설정해야 함.
- 매 분기별로 협동조합의 사업과 회계 전반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함.
- 감사는 협동조합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이사장이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

〈표 III-2-36〉 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감사의 직무) 및 제43조(감사의 대표권)

제42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 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함.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음.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맡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함.

제 43조(감사의 대표권)

-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함(개정 2014. 1. 21.).
-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함.

- 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에 따라 협동조합이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형이므로, 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감사의 선출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함.
- 운영 감사: 이사회 의사 결정, 업무 집행 사항, 협동조합의 일상을 관리하고 운영 상황을 감사
- 회계 감사: 협동조합의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등의 내용, 회계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

■ **알아두면 좋아요: 감사의 절차**

그 해 감사의 기본 방향 설정 → 감사의 기본 방향에 따라 주요 감사 과제 설정 → 감사 자료 확보 → 자료 검토 → 보완 자료 요청 → 대면 감사 → 시정 사항 개선 의견 제시 → 감사보고서 작성 → 이사회 및 총회보고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2019). 협동조합 운영가이드북. p.774.

③ 총회

- 역할: 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협동조합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참석자: 조합원 전체
- 운영: 이사장 7일 전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됨.
- 구성: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됨.

* 총회진행

* 총회 준비: 총회는 전 조합원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총회를 개최하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함.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2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회 정리: 의사록 작성 및 비치: 의사록을 작성한 후에는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해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

- 참석자 명부 및 위임장 보관: 총회 참석자 명부와 위임장을 의사록 원본에 첨부하여 기타 총회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표 III-2-37〉 총회(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둠.
-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함.
-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됨.
- ④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정관으로
-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함.

〈표 III-2-38〉 총회 의결사항(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조합원 과반 수 참석에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조합원 과반 수 참석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
① 정관의 개정 ② 협동조합의 해산과 합병 및 분할과 같은 협동조합의 운명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의 제명 ④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①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②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③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④ 결산보고서의 승인 ⑤ 감사보고서의 승인 ⑥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⑦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Ⅲ-2-39〉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 28조)

정기 총회	임시 총회
-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의무사항) -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 승인 -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 알아두면 좋아요: 의사록 명시 내용

- 총회의 종류
- 소집 연월일과 개최일시
- 개최 장소
- 정족수 확인 : 재적조합원 00명/출석조합원 00명 (본인 출석 000인, 위임출석 0000인)
- 의장 취임 확인
- 의사 일정 확정
- 부의 안건 열거
- 의사경과요령 및 의안별 결의결과 : 총회에 부의한 안건별로 의사결과 요령을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록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개결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표시해야 함.
- 의사록 서명 날인인 선임 :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인 이상을 의사록 서명 날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야 하며, 이 서명 날인인은 의사록에 의장과 연서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함.
(임원선거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선거관리인도 서명 날인 하여야 함.)
- 폐회일시

■ 알아두면 좋아요: 정기 총회 식순 (예시)

정기 총회 식순 (예시)〈제1부 기념식〉

- 개회
- 이사장 인사말
- 축사
- 내빈 및 참가조합원 소개
- 조합원 활동 사례 발표
- 협동조합 활동 슬라이드 상영
- 기념식 마침 및 총회 안내

〈제2부 정기총회〉

- 성원 보고
- 개회 선언

- 의사록 서기와 서명날인인 지명 (의사록 서기 2인 이상, 서명날인인 3인 이상)
- 전차회의록 승인
- 의사 일정 확정
- 상정 의안 심의

[의안 순서]

- 제1호 의안 00년 감사 보고서 승인 건
- 제2호 의안 0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건
- 제3호 의안 잉여금(손실금) 처리의 건.
- 제4호 의안 정관 및 규약 개정에 관한 건
- 제5호 의안 임원 선출에 관한 건
- 제6호 의안 0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기타 안건

- 폐회선언

■ 궁금해요: 대의원총회는 무엇인가요?

대의원총회(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함.
- 대의원 총회로 협동조합 총회를 갈음할 경우, 조합원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총회 전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반모임 단위로 안건을 논의하고 수렴하는 구조가 밀받침되는 것이 중요함.

④ 위원회

□ 소위원회

- 협동조합 운영 상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참여를 높임.
- 소위원회는 교육소위원회, 재정소위원회, 운영소위원회, 홍보소위원회, 시설소위원회 등으로 협동조합의 상황에 적합하게 구성 가능함.
- 이사회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 중 1인 이상이 소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함.

□ 특별위원회

- 협동조합의 장기 목표나 주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인사위원회,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재정특위 등이 있음.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는 교직원의 인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함.
- 인사규정의 개폐, 교직원의 신규채용, 교직원의 징계, 해고, 교직원의 상벌 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인사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함.
- 구성 원칙과 구성방법
 - 교사회의 교사와 이사회 이사 이사 동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 이유는 교사의 채용과 징계 등은 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임.
 - ※ 교사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사회의 의견과 학부모조합원의 의견을 고려 반영하기 위한 원칙임.
 -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는 제외하고 구성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원장일 경우에는 교사회 가운데서 대체위원을 선정해야 함.

다) 재정 및 회계관리

□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

① 예산 편성

- 예산편성을 한 해 수입 및 지출을 가능 범위 내에서 예측하여 계산함.
 - 예산 편성 시 과도하게 적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상반기 결산을 통해 하반기 예산을 가늠하여 추경 예산 편성하여야 함.
 - 만일 적자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매월 정산하는 방법은 신중해야 함.

② 사업 계획

-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리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한 해의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들을 구상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매년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사업실적을 축적하고 사업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함.
 - 연간 사업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 집행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운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음.

-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조합원들이 연간 협동조합의 각종 행사와 사업규모, 사업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어 조합원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음.

■ 알아두면 좋아요: 연간 계획 수립 시 확인할 사항

- ① 중장기 계획 속에서 한 해의 목표 세우기
- ② 한 해의 계획에 따른 분야별 계획 세우기
- ③ 수지 예산서 만들기
- ④ 매년 확인할 내용들
 - 계획 수립과 진행에서 협동조합 구성원의 고른 참여를 독려하기
 - 협동조합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계획 세우기
 -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기

③ 사업 평가

- 협동조합 운영 평가는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1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평가는 다음 해의 계획을 수립할 때 연속해야 할 원칙과 중장기 사업 방향의 단기적 실천방안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임.
 - 협동조합 운영 평가는 감사와 이사회에서 함께 진행함.
- 감사는 회계와 운영 감사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운영을 평가하고, 총회에서 보고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 이사회는 각 영역별 활동내용과 평가를 총회에서 보고하고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수립함.
- 이 내용은 모두 총회 자료집에 수록하여 참고하도록 함.

■ Tip: 회계관리는 이렇게

- 유치원 회계와 협동조합 회계로 나누어 관리
 - '사업체(유치원) 회계',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협동조합비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회계'로 구분됨.
 - 유치원 회계는 되도록 원장 책임 주관하도록 하고, 재정 담당자는 협동조합 회계를 책임 주관하면서 총괄하는 것을 권장함.
- 수입과 지출 관리
 - 출자금, 가입비, 협동조합비, 기부금, 정부보조금 등과 같은 수입에 대한 관리
 - 협동조합 행사비 및 시설비의 집행 등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리
- 재정 관련 정보 작성과 관리
 - 월별·반기(총회보고자료) 결산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조합원들에게 전체 공지
 - 연간 사업 계획과 예산 작성

- 모든 재정문서의 비치

구 분		주 요 업 무
협동 조합 회계	수입 관리	- 출자금, 가입비, 기부금, 협동조합비, 행사비,
	지출 관리	- 협동조합 행사 비용 지출과 결산 - 시설 비용, 연대 사업 비용
	자료 작성	- 이사회 및 총회 보고 자료 - 연간 사업 계획 - 월별·분기별·연간 회계 예·결산

■ Tip: 사회적협동조합 회계 공통 원칙

협동조합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조직이므로,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법인통장 및 법인카드 개설하기: 법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기록이 통장에 남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 처리가 가능함.
- 현금거래 지양하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반드시 챙기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함. 기록에 없는 현금거래를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통장 나누어 관리하기: 통장은 그 쓰임에 따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회계처리에 용이함
- 상호 검증 시스템 마련하기: 상호 검증 시스템은 실수나 부정행위를 방지시킴.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 할 시에는 거래 전에 2인 이상이 가격과 거래 정당성을 확인하고, 송금 후에는 서류 대조를 통해 오류 를 확인하는 등 상호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음.
- 결재 지급일 정해두기: 상시로 일어나는 지출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날짜를 정하여 거래처에 알려주고 해당 날짜에 송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 회계와 관련된 서류 챙기기: 지출 증빙 서류, 협동조합비 관리 장부 등 회계와 관련된 서류를 그때그때 챙기고 보관해야 함.
- 증빙 수취 생활화하기: 모든 지출에 있어서 세무 상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고 일정 금액 이 상은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해야 함. 적격증빙이 없으면 세무 상 불이익 을 받기도 하지만 투명한 회계처리도 불가능함. 협동조합에서는 모든 지출은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 이 서로 간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임.

※ 세무부분 참고서류 보관하기— 지출일자 순서(통장내역 순)로 편철, 증빙서류와 장부는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운영가이드북, p.31.

■ 알아두면 좋아요: 회계의 의무

- 세법 상 의무
 - 복식부기에 의해 회계 장부 비치 및 기장, 관리
 - 법적 증빙 서류 및 보관
- 협동조합 기본법 상 의무
 - 회계 결산 보고 및 공개

□ 회계결산

- 월 결산을 적시에 하면서 세입 세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인으로서 복식부기 의무가 있음.
 - *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의 변동을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재무재표를 작성하여야 함.
- 정기 총회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 작성 후 감사에게 제출→ 정기 총회 승인→ 경영 공시(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 총회 보고 자료: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 경영 공시 자료: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 회계 연도 :일반적인 회계 연도는 1월 1일 ~12월 31일 또는 3월 1일~ 차년도 2월 28일로 설정할 수 있음.

□ 세입

- 출자금
 - 협동조합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이 부담하는 자금임.
 - 특별회계로 독립 관리함. 출자금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부채이므로, 건물의 매입 혹은 임대보증금과 같이 자산가치가 보존되는 형태로 관리하여야 함.
 - 유치원이나 협동조합 회계로 단기 차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입금을 반환하여야 함.
 - 출자금 반환은 총회들에서 승인받아야 함. 출자금 반환은 탈퇴한 다음 회계년도의 총회 이후부터 가능함.
 - 출자금 납입과 동시에 ‘출자금 납입증서’를 발급함.
- 가입비(설립 기금)
 - 조합원의 자격 취득을 위해 부담하는 자금임.
 - 처음 협동조합 가입 시 1회 납부함. ‘가입비’는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비용이므로 유치원에 둘째 이상의 아동이 등원하게 되더라도 가구당 1회만 납입함.
 - 협동조합 가입비와 유치원 ‘입학금’은 다른 목적으로 걷는 비용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함.
 - * 가입비: 협동조합에 납부하며 협동조합에서 금액을 정하여 관리함.

* 유치원 입학금: 학교 입학에 따른 필요 경비(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등) 충당을 목적으로 함.

- 특별회계로 독립 관리하며, 사용 용도는 시설비 등으로 제한적으로 지출함.
- 점차 감액하여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가입비 대신 설립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함.
- 신입 조합원이 유치원 등원 전에 탈퇴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함. 유치원 등원 후 1개월 이내에 탈퇴할 경우에는 50%나 일할 계산 반환을 권장함.

○ 조합비

-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부함.
- 별도 계좌로 독립 관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유치원 운영비와 함께 관리하지 않도록 유의함.
-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비용이므로 연말 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금 관리

- 지정기부금단체만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은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됨.
- 지정기부금단체는 교육부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가 고시함.
- * 추천방법: 주무관청(교육부)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반드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에 한 해 매분기 마지막 달 2개월 전(7)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⁸⁾)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에 제출

■ 궁금해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이 설립허가를 해준 교육청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고 교육청은 지정요건을 검토 후 충족한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추천을 하면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별로 지정·고시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2019).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및 추천방법(2019.07.12.).

http://www.moe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063&menuNo=8010200&searchNttId=MOSF_000000000029057

7) 매분기별 추천기한(2019년 기준):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8)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 **궁금해요: 지정기부금 신청 및 고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접수마감일*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
지정고시일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 교육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추천서가 접수되는 날

출처: 기획재정부(2019).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및 추천방법(2019.07.12.).

http://www.moe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063&menuNo=8010200&searchNttId=MOSF_000000000029057

■ **알아두면 좋아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모은 가입비나 회비, 후원금을 이용하여 운영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기부목적의 금품을 모으는 것은 가능

※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 적용대상(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이 되므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함.

■ **알아두면 좋아요: 행사비, 관리 운영비 및 시설비(재산 조성비)**

- 수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출의 통제를 통하여 균형 재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꼭 필요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지출함.
- 조합원 단합대회, 야유회, 체육대회, 바자회 등 모든 행사비는 조합비에 지출입 내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함. 이를 통해 조합 살림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는 데 참조가 가능함.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2019). 협동조합 운영가이드북. pp. 52-53.

□ 세출

○ 세무관리

- 법인세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 사업에 면제 가능함. 단, 수익사업

을 하게 되면 과세됨(사업자 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함).

- 원천세

급여나 사업, 기타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배당을 하는 모든 협동조합은 원천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음.

원천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함.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과 지급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정보를 찾아보거나 세무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함.

〈표 Ⅲ-2-40〉 원천징수대상 및 소득 종류

대상	소득의 종류
임원 및 직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조합원	배당소득
용역을 제공한 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기간

원천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두 가지 신고기간이 있으며 혹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됨. 신고하지 않으면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함. 또한 경과 일수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다르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음.

〈표 Ⅲ-2-4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 다음달 10일에 신고 및 납부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의 경우 세무서에 신청하여 반기별 납부도 가능

날짜	항목
매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세 납부

* 매월 16일부터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직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연 1회 신고의무가 있음.

날짜	항목
차년도 2월	지급명세서 제출(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차년도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2월28일, 4월30일, 7월31일, 10월 31일	지급명세서제출(일용직근로소득)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2019). 협동조합 운영가이드북, p.53.

*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원천세

■ Tip: 사회보험사이트

- 사회보험 EDI(<http://edi.nhis.or.kr>)
 -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http://si4n.nhic.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고용산재보험서비스(<http://www.total.kcomwel.or.kr>)
- 출처: 경기도교육청(2019a).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 p.207.

■ 알아두면 좋아요: 사학연금이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이하 '사학연금제도'라 함)는 사학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써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 되어있음.
-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함.
- 교직원이 퇴직·사망시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며,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 지급.

▶ 사학연금 적용범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당연적용)

- 교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사람
- 사무직원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명된 사람. 또한 사립학교 중 유치원, 각종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정규 교직원과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직원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임의적용 및 특례적용).
- 유치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 : 교육감이 지정
-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 : 교육부장관이 지정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교육부장관이 지정

▶ 사학연금 적용절차

학교기관의 교직원임용 →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임용신고서 공단에 제출 → 공단에서 연금적용(가입) 사실 통지

* 자세한 사항은 <http://www.tp.or.kr> 참고

출처: 경기도교육청(2019a).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 p.207.

〈표 Ⅲ-2-42〉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구분	가입대상	취득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 ※ 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대상	자격취득(상실)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국민건강보험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	자격취득(상실)일로부터 다음 달 14일 이내
고용보험	※ 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자격취득(상실)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산업재해 보상보험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③ 정보공개

-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관, 결산보고서, 총회 활동 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반적인 회계연도는 1월 1일 ~12월 31일임.

회계연도가 매 3월 1일부터 2월 28일인 경우에는 그해 5월 말까지 공시함.

- 경영 공시에 입력할 결산보고서는 반드시 결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 경영 공시 입력 방법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 공시하며, 인증서 로그인→ 마이페이지→ 회계연도 경영공시 입력

-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 공시) 에 따름.

〈표 Ⅲ-2-43〉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경영 공시)

제96조의2(경영 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 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함.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회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 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음.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 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알아두면 좋아요: 경영공시자료

구 분	내 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개인정보 삭제 필수 -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
사업결산 보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결산 총회에서 의결하여 확정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일치하도록 작성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상황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창립총회포함 ※ 최근에는 경영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의 두 서식은 직접 시스템으로 입력 가능하여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사업결과 보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사업 결과 기재 ※ 최근에는 경영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의 두 서식은 직접 시스템으로 입력 가능하여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보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해당 연도 소액 대출 및 상호 부조 사업 결과 기재

○ 위반 시 처벌규정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에 따름.

- 경영 공시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부처·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실시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향후 미 공시 및 주 사업 4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표 Ⅲ-2-44〉 위반 시 처벌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제3항3호)

제119조(과태료)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p.13.

라) 조합원 관리

□ 조합원 구성

- 생산자조합원, 소비자조합원, 직원조합원, 자원봉사자조합원, 후원자조합원 중 둘 이상의 유형으로 다중이해관계자가 설립함.
-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원들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임.
- 유치원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학부모조합원과 교직원조합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 가입과 탈퇴

○ 가입 원칙 :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개방됨.

-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각 협동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일정한 가입요건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취지(유치원의 교육 철학, 운영 방식, 학부모 참여)에 대한 동의, 참여의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가입절차

-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조합가입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와의 면접에 참석해야 함.
- 학부모조합원의 경우 학부모(주 양육담당자)가 필수 참여해야 함.

■ 알아두면 좋아요: 조합원 가입 시 이사회 면접을 하는 이유

면접은 협동조합 가입 동기, 참여 의지, 유치원 교육 방향과 방식에 대한 동의 등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호 간(조합과 신청인) 협동조합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임.

- 이사회에서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출자금과 가입비를 납부하면 협동조합에 가입이 완

료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처음학교로’를 통해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음.

■ **궁금해요: 유치원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이용해요!**

- 협동조합형 유치원 1호인 공동산아이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우선 모집하고 서류전형 시 입학원서와 학부모조합원 가입신청서를 같이 받았습니다.

○ 탈퇴

- 탈퇴 절차

- * 협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협동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일정한 탈퇴요건에 따라서 탈퇴할 수 있음.
- *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은 협동조합이 정한 규정에 따름.
- * 학부모조합원의 경우, 아동이 유치원을 졸업하면 탈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조합원과 아이들 모두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졸업 후에는 조합원 유형을 변경해서 후원자조합원, 또는 자원봉사자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 협동조합은 운영진(이사진)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사진의 교체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가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역사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경험들이 잘 전수되어야 함.
- * 조합원으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선배조합원들의 경험이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함.

□ 조합원 교육

○ 조합원 교육의 필요성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함(협동조합 7원칙 중, 제5원칙인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편 참조).
- ※ 협동조합의 수준은 조합원 교육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에 달려 있음.

○ 조합원 교육의 목적

-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게 함.
- 협동조합의 기본원리와 조합원의 역할을 이해하게 됨.

- 협동조합형 유치원 생활과 교육활동을 이해하게 됨.
- 조합원들의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좁혀주고 유치원에서 만나는 다른 학부모와 선생님들,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도록 함.

○ 조합원 교육 내용

- 조합원 교육은 협동조합을 설립 후 유치원 개원까지의 ‘설립기에 필요한 교육’과 ‘유치원 개원 후 1년까지 필요한 교육’을 나누어 볼 수 있음.
- * **설립기에 필요한 교육**은 협동조합과 유치원의 기본틀을 세우고 실제 운영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며, 협동조합, 공동체 조직문화, 민주적 회의운영, 유치원 교육 방향 등의 주제를 다룸.
- * **유치원 개원 이후 1년까지 필요한 교육**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치원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의사소통, 갈등관리, 조합원 역할에 대한 이해, 민주적 조직 운영, 조직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를 다룸.

〈표 Ⅲ-2-45〉 조합원 교육 내용(예시)

시 기	내 용	주 제
설립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유치원 개원까지)에 필요한 교육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치원의 기본틀을 세우고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는 교육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 민주적 회의 운영방식 - 사회적협동조합의 미션·비전 이해 -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과 교육의 방향 - 사회적협동조합 정기 총회 및 경영 공시 교육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교육
유치원 개원 후~1년까지 필요한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과 유치원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교육	- 의사소통, 갈등 관리 - 민주적 조직운영과 조직 문화 -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이해 - 조합원 역할에 대한 이해 - 조직 활성화 방안 - 유치원 부모 참여 활동

○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이사회)교육

- 이사회는 총회에서 결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실행하며, 운영 전반의 책임을 짐.
- * 중요 사항을 논의·결정하며 인사와 재정에 관한 책임을 짐.
- * 이에 이사회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채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사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을 진행함.

■ **알아두면 좋아요: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될 경우**

-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신·구 이사진 워크숍 개최가 필요함.
- 전임 이사진들은 임기 동안 했던 사업의 내용을 상세하게 문서로 정리하여 차기 이사회에 전달하도록 함.
- 전임 이사진들은 신임 이사진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을 제공함.
- 이사진들이 해야 할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 **알아두면 좋아요: 조합원 관련 서식**

- 조합원 가입신청서: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소속, 계좌번호, 조합원 유형, 출자금액, 출자좌수, 정관에 대한 동의, 협동조합에 바라는 점, 신청자 기명날인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협동조합 가입신청서와 함께 작성하도록 안내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활용 기간, 행정절차를 위한 제3자 제공 안내, 작성일, 작성자 기명날인 등
- 조합원 가입증서(조합원증): 협동조합의 정식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증서번호, 성명, 생년월일, 조합원번호, 가입일, 교부일, 협동조합 명, 협동조합 직인 등
- 출자금 납입증서: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증서번호, 성명, 출자금액, 출자좌수, 교부일, 협동조합 명, 협동조합 직인 등
- 탈퇴 신청서: 협동조합 탈퇴를 신청하는 서류
성명, 생년월일, 조합원번호, 탈퇴 사유 선택 혹은 기재란, 탈퇴 시 동의 사항, 신청 날짜, 신청자 기명날인
- 탈퇴 확인서: 협동조합 탈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성명, 가입일, 탈퇴일, 교부일, 협동조합 명, 협동조합 직인 등
- 기타 취임승낙서, 중임승낙서, 사임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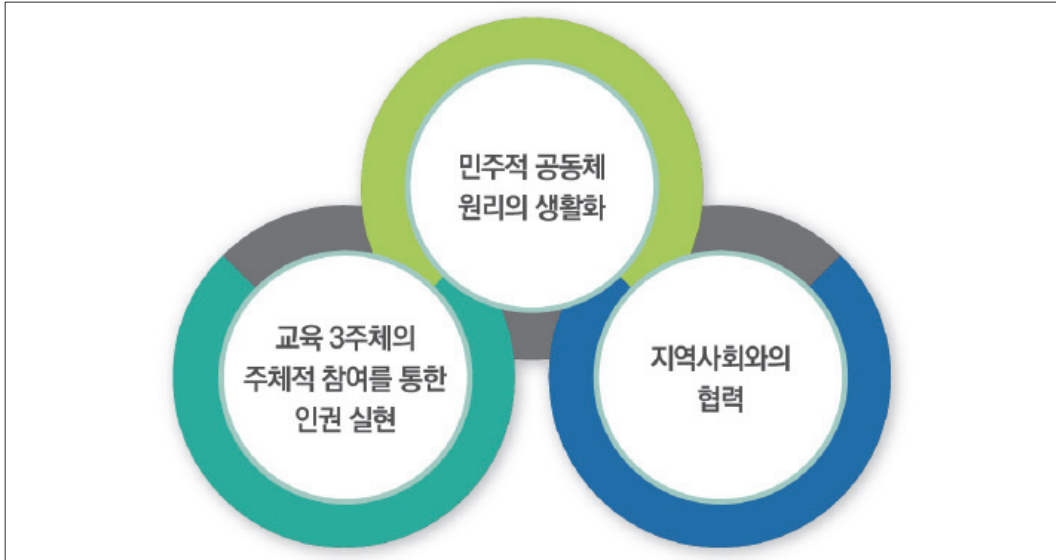
2)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하기

가) 운영 방향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유치원의 정보와 공간 개방을 통한 민주적 공동체 원리의 생활화
- 교육 3주체(유아, 교사, 학부모)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인권 실현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그림 Ⅲ-2-14]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방향



① 유치원의 정보와 공간 개방을 통한 민주적인 공동체 원리의 생활화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공익성, 개방성, 자율성, 참여성을 강조하여 투명한 운영, 평등한 관계, 참여와 협력이 일어나는 민주적인 공동체 문화를 생활화함.

□ 유치원의 운영 정보와 공간의 개방

○ 운영 정보의 개방의 필요성

- 유치원은 다양한 운영 정보를 공개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신뢰감을 형성함.
-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유치원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운영내용과 같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치원의 교육과 운영을 폭넓게 이해함.
- 구성원들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문제 해결의 참여자’가 됨.

○ 운영개방의 내용과 방법

- 내용 : 유치원 예·결산, 유아의 건강과 영양, 안전과 학대 예방 사항,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과 지역사회의 협력 사항 등이 있음.
- 방법 : 경영 공시, 운영위원회 참여, 반모임 참여, 가정통신문이나 식단공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등이 있음.

○ 공간 개방의 목적과 방법

- 목적 : 유치원 공간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개방하는지에 따라 목적을 달리함. 주된 목적은 유아들의 유치원 생활을 이해하고, 학부모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 방법 : 등·하원 시 교실을 개방하여 학부모가 자연스럽게 유치원 생활공간을 볼 수 있게 함. 일정 기간이나 정해진 시간에 학부모 참여 활동을 위해 교실 개방하기 등

○ 공간개방의 규칙

- 교사의 교육 활동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공간 개방에 대한 규칙이 필요함.
- 유아의 교육환경, 교사들의 노동환경이 방해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지켜야 할 수칙과 개방 목적을 명확하게 안내함.
-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마련한 규칙에 적극 협조함.

② 교육 3주체(유아, 교사, 학부모)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인권 실현

□ 학부모와 교사의 주체적인 참여

- 학부모는 교육서비스의 이용자가 아닌, 학부모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유아의 양육과 교육의 주체로 성장함.
- 교사들은 교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교육과 조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당사자가 됨.
- 학부모와 교사는 조합과 유치원 운영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참여함.

□ 교육의 당사자인 유아, 교사, 학부모의 행복을 위한 각 주체의 인권 실현

- 유아가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유아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함.
- 교사의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며,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함.
- 학부모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서로의 인권을 보호하는 상호돌봄의 관계망을 만들고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함.

③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 유치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 유치원은 가정과 유치원, 유치원과 지역사회를 서로 잘 연결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함.
 - 유치원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와 협력적 관계를 맺어 유치원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주민센터,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관, 도서관, 병원, 소방서, 여성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 마을지원사업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대, 지원과 협동을 통해 조합원은 성장하고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지역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음.

■ 알아두면 좋아요: 지역과의 연대 활동(예시)

마을 축제, 건강한 먹거리 관련 활동 (텃밭 가꾸기, 로컬 푸드 먹기) 야나바다 장터, 건강한 교육환경 만들기 (작은 산 살리기, 마을 놀이터 살리기, 자연물 놀잇감 만들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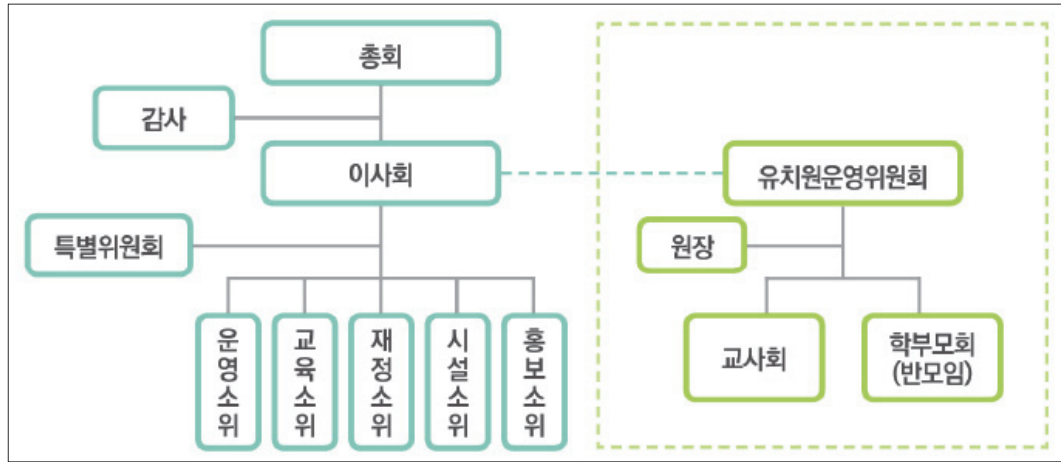
○ 학부모, 마을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마을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둬.
- 공동육아 품앗이,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등 마을의 아이들 함께 키우기 활동에 협력할 수 있음.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 자치 활동, 마을 만들기 운동 등에 참여할 수 있음.

나) 운영 기구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운영조직 간 민주적인 소통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여, 학부모들의 일상적 참여를 촉진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원장, 교사회, 반모임의 상호 협력 관계 운영체인 협동조합과 유치원의 협력 관계가 중요함.

[그림 III-2-15]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기구 조직도



□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구로서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국공립유치원), 또는 자문(사립유치원)하는 기구임.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원장, 협동조합 임원, 지역사회 위원, 반모임 대표 등으로 구성함.
 - 학부모 위원은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로서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교원 위원은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로서 교사 전체 회의에서 선출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역할
 -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심의를 함.
 - 유치원장의 요청에 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유치원장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 공하는 등 자문을 함.
 - 운영위원회회의의 모든 논의 사항은 ‘유아의 교육을 중심에 둔다’ 는 관점을 가지고 논의 하도록 함.
 - 연 4회 이상 진행·분기별, 또는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 임시 개최해야 함.
 - 학부모회, 교사회의 활동과 논의 사항을 공유해야 함.
 - 유치원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협력을 지원함.
 - 유치원 교육과 운영 보고, 안전을 논의함.

〈표 Ⅲ-2-46〉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사항

-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유아의 보건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인성교육계획
- 그 밖의 대통령령 및 사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자료: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6,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알아두면 좋아요: 협동조합 의사결정기구와 유치원 운영기구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 협동조합 이사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소통과 협력구조 만들기: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협동조합 이사회의 이사로 참여(학부모조합원 대표)
- 유치원의 운영위원회와 원장, 원장과 교사, 교사회와 학부모회 등은 일상적이고 수평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함.
- 운영위원회, 혹은 원장 개인에게 맡겨진 유치원이 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와 원장, 교사회는 일상적으로 유치원의 교육과 운영에 대해 소통하도록 함.
- 매월 정기 보고와 회의 구조를 마련함은 물론 일상적인 소통구조(홈페이지, 밴드, 카페 등)를 갖도록 함.

□ 원장

○ 원장의 역할

-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총괄책임자임.
- 유치원 교육·운영의 리더, 팀워크를 이끄는 리더임.
- 협동조합과 유치원, 유치원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중재·조정하는 역할을 함.
- 교사가 성장할 수 있게 교사 교육과 복지를 돕고 지원함.
- 중간 리더(원감, 수석교사) 육성, 교사회 상호장학의 역할도 함.

○ 원장의 업무

- 유아의 안전과 건강관리
- 운영위원회, 교사회, 반모임 등 운영기구들 간의 소통(각 기구의 당연직)

- 규정에 의한 교사의 근태 관리
- 교사들에 대한 심리적이고 교육적인 지원과 업무 협력
- 교사 회의 주재
- 교사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유아에 대한 학부모 상담
- 대외 행정 업무 수행 등

■ 알아두면 좋아요: 원감의 역할과 업무

- 원감의 역할
 -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함.
 -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 *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함.
- 원감의 업무
 - 유아의 건강과 안전 유아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유치원에 필요한 원무를 수행함.

□ 교사회

○ 교사회의 의미

- 교사회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교육의 책임 단위로 교육에 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운영 기구임.
- 교사는 교사회를 통해 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학습 공동체의 일원임.

○ 교사회 구성

- 원장, 원감, 담임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등 유치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함.

○ 교사회 역할과 기능

- 교육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수립함.
- 교사의 교육 활동은 개별적 활동이 아닌 교사회 내 소통을 통한 공적 결과임.
-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학부모와 소통함.
- 교사들의 교육 계획 및 평가도 교사회의 논의를 거쳐 공유함.
- 교사회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철학을 실천하고 논의하는 단위뿐 아니라 유치원의 운영 기구로서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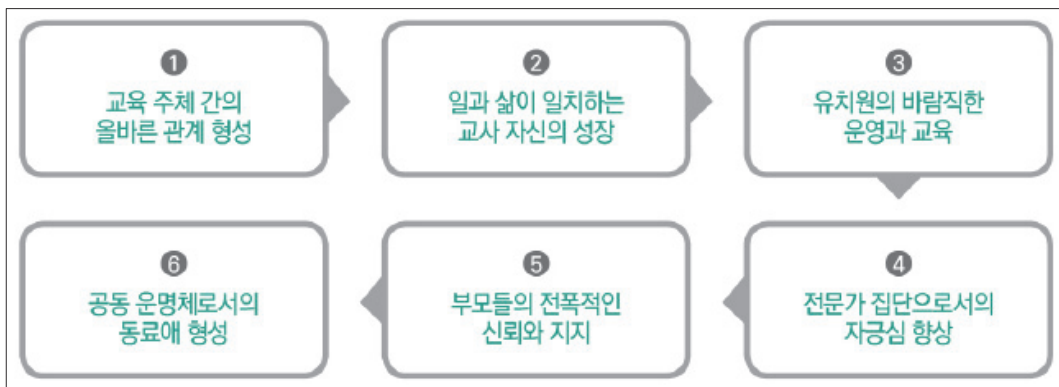
■ 알아두면 좋아요: 교직원 회의 운영과 종류

- 교직원 회의 운영과 종류
 - 교사회는 월별, 주간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여러 안건을 논의하여 교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교사회는 수습 교사 평가와 교사 평가, 교사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환경과 제도 만들기 등 교직원 회의의 운영과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감.
 - 교사회의 회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교육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교육 실행도 잘 이루어짐.
 - 회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기본으로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는 과정임. 결정을 할 때는 다수결보다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교직원 회의의 종류
 - * 교직원 회의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 전체 교직원 회의
 - 원장/원감/담임 회의
 - 주간 회의/월간 회의/상·하반기 및 연간 회의
 - 교사 자치 회의

○ 교사회 문화: 협력적 공동체 문화 만들기

- 협력적 교사회 문화란,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 내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교사회 일원으로서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민주적 협력적 주인의식을 내면화하는 조직문화를 말함.
- 학습 공동체로서의 교사회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이슈에 대해 논쟁하고 조율하면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교육적 방향과 내용을 만들어가게 됨.

[그림 III-2-16] 협력적 교사회가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



○ 교직원 교육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교사 교육과 연수시스템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 유치원은 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사 교육을 지원하며, 교사는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함.

〈표 III-2-47〉 교직원 교육: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교사 성장 체계(예시)

구분	내용	세부내용
신입 교사 교육	• 신입교사 교육은 일반적으로 내·외부 사전 연수, 교사회 자체 교육, 수습(적응) 평가 등으로 이루어짐.	▶ 사전 연수 - 사전 연수는 현장 실습으로 기관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어짐. - 기관의 여건에 따라 근무 시점보다 앞서 채용하여 내·외부 연수를 충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사회 자체 교육 - 교사회 자체에서 신입 교사를 위한 교사 교육계획안을 마련하고 동료 교사들 간에 역할을 나누어 1~3개월 정도 체계적으로 진행함. ▶ 수습(적응) 평가 - 신입 교사는 연수 기간을 포함한 3개월 전후의 수습 기간을 갖는데, 경력교사는 적응 기간을 가짐. - 교사의 수습(적응) 기간은 임용과 해임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교육 철학을 확인하고 수용하여 적응의 기회로 삼음.
현직 교사 교육	• 교사가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 연차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성장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교사 성장 체계는 교사의 자율적 성장을 독려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현직 교육임. • 모든 교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 주제와 직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선택 교육이 있음.	▶ 현장학교 - 현장학교는 교사 필수 과정으로 단계별로 이수할 수 있음. - 현장학교Ⅰ-기초 과정, 현장학교Ⅱ-심화 과정, 현장학교Ⅲ-전문 과정으로 구성됨. ▶ 역할에 따른 직무 교육 - 직무 교육은 필수 교육으로 신입 교사 교육, 영양 교사 교육, 대표 교사 교육이 있음. - 신입 교사 교육은 교사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지역 단위 교사회에서도 이루어짐. ▶ 단기교육 및 특강 - 법인에서 상시적으로 개설하는 재교육과정(단기 교육, 특강), 대동놀이 교육(3년차 교사 의무 참여), 장애아 통합 교사 교육, 모둠 활동(세시와 절기, 놀이와 노래, 생태나들이, 통합교사 모듬 등)등 다양한 재교육의 기회를 가짐. ▶ 이 외에도 교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적인 논의를 하여 일상적인 재교육과 자기 성찰,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

□ 학부모회

- 학부모회는 가정과 유치원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들의 자발적인 기구로 반모임, 소모임 등으로 구성됨.
- 학부모회는 유치원 교육과 운영에 대한 부모의 의견수렴, 학부모들의 친목 도모, 부모 교육을 통한 부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반모임

- 반모임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월 1회 정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구조로, 반의 학부모 대표가 주관하여 진행하며 교사가 반드시 참여함.
- 반모임은 유치원 소식과 유아에 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풀고, 교육 제안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이면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이해와 친목을 다지는 자리임.
- 반모임에서는 반별 교육 활동에 대한 보고와 평가, 다음 달 계획을 나눔. 학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유아에 대해 이해를 넓혀감.
- 반 단위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유치원 전체 성원과의 소통이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형태의 반모임을 조직할 필요가 있음(여러 반이 같이 모이는 연합 반모임, 연령별 통합 반모임 등).
- 반모임의 내용은 서기를 두어 기록으로 남겨서 전체 학부모들과 공유함.

○ 소모임

- 부모들의 취미와 관심사에 따라 운영하며, 그림책 모임, 목공 모임, 놀잇감 만들기, 아빠 축구 모임 등이 있음.

다) 재정 관리

□ 유치원 재정의 원칙

○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정 운영

- 적합한 예산 집행
- 총회,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공개, 논의함.
- 경영 공시 의무를 따름.

○ 유치원 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예·결산은 시·도의 교육규칙과 함께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에 맞추어 에듀파인을 사용하여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입력함.

○ 사회적협동조합(법인)과 유치원의 회계 분리

□ 유치원의 회계 구성

- 예·결산은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합원 총회의 추인을 받음.

○ 유치원 회계 예·결산의 기본 개념

- 유치원 회계 예·결산은 유치원이 해당 회계 연도 동안 교육과정 운영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로 표시한 체계적인 계획서를 말함.
-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유아교육법 제19조의8).
- 출납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함.
- 유치원 회계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단위 학교의 재정 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유치원 운영 재정의 가장 중요한 과정임.
- 유치원 회계의 예·결산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중요 자문 사항으로 원장에게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 있는 유치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정 계획, 집행 평가 등의 과정임.

○ 예산 편성

- 예산은 1년간의 단위 유치원 수입·지출의 예정표이며 유치원의 교육 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위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동조합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 수렴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자문이 보장되어야 함.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 교육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 추진비 등 간접 교육 경비는 필요한 적정수준에서 편성함.
- 유치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집행결과는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유치원 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함.
- 예산의 구조(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참조)
- 세입 예산 과목(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참조)

○ 예산의 집행

-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정한 경비(인건비, 교육비, 시설 유지 관리비 등)를 집행함.
-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 지출할 수 없으나, 동일한 정책 사업 내의 상호 이용 및 세부 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이 가능함.
- 정산 재원(목적 사업비, 보조금 및 지원금, 다른 유치원 전입금, 수익자 부담 교육비 등) 및 이월액은 이·전용 할 수 없음.

○ 결산

- 결산은 1년 동안 유치원의 수입·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유치원 재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정임.
- 결산내역은 다음 회계 연도의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함.

○ 관련 법령

-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 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30일 전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자문함(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 교육비용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제2항).

○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함(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특별시장·광역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음(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음(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음(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라) 교육과정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총론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유치원 교육과정(개정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성함.

□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추구하는 인간상

-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수용해도 무방하며, 협동조합형 유치원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어린이 상을 구성할 수도 있음.
- 이때에 유아는 성장할 힘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유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함.

- 유아가 행복권, 능력, 관계적 능동성이 있는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함.

□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

○ 목적

-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음.

○ 목표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름.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름.
-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름.
-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름.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름.

□ 협동조합형 유치원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①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지향

- 유아들의 자율, 자발성을 중시하여 스스로 탐색하고 놀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함.
- 유아의 선택과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이 되도록 함.
- 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지향함

② 공동체 교육 지향

-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인 공동체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성장함.
- 부모, 교사, 유아들이 핵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면서 자율적 주체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장하는 공동체 교육을 지향함.
- 유아의 선택과 의사결정을 중시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함.

③ 생활형, 비형식적 학습 지향

- 교육은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뤄져야 함.
-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유아의 삶과 교육이 따로 분리되지 않도록 함.
- 유아들의 경험이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도록 삶의 맥락 속에서 계속성을 가져가도록 함.

④ 통합교육 지향

- 총체적(holistic)이고 관계적인 우리의 삶을 재인식하고, 실생활을 통해 분리된 개념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통합적 교육을 지향함.
-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의 전인발달에 필요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경험이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함.
-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 연령 등을 통합할 수 있게 함.
-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다문화, 다원화 시대의 포용적 교육을 실시함.

⑤ 생태교육 지향

-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위한 생태적 삶을 지향하며, 유아들과 함께 생태적 환경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감.
- 유아들을 위한 생태적인 주변 환경의 조성에 노력함.

□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조

- 교육과정은 유아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유의미한 교육적 상황을 마련하고, 모든 종류의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설계도임.
- 교육운영의 실천계획으로 국가 수준, 지역 수준, 유치원 수준 교육과정의 구조가 있음.
 - 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치원이 편성해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함.
 - ②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지역의 특성과 유치원의 실정, 유아 상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말함.
 - ③ 협동조합형 유치원 수준의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에 해당되는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등을 근거로 하되, 유치원 부모들의 생활 반경과 유아들의 유치원 환경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마을 수준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지향함.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① 편성·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함.
 -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함.
 -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음.
 -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 하루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함.
-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함.
-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함.
-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운영함.
-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함.

■ **알아두면 좋아요: 협동조합형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의 예**

- 유아생체리듬에 따라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연결함.
 - 유아의 생활과 쉼, 놀이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루 흐름을 구성함.
 - 유아의 요구와 리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유치원 과정 교사와 방과후 과정 교사 간에 유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교육과정은 교원의 조직, 유아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반영하여 운영함.
- 교사 자율 장학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협력과 배움이 있는 교사회가 되도록 함.

②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함.

-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함.
-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함.
-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함.
-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함.
-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함.

③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함.

-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함.
-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함.
-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함.
-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알아두면 좋아요: 협동조합형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평가와 유아 평가**

- 교육과정 운영 평가
 - 교육 내용이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통합적으로 편성·운영되는지를 평가함.
 - 교수·학습 방법이 유아의 흥미와 활동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평가함.
 - 교육 환경 및 교육 활동 자료가 활동 내용,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함.
 - 교육과정 평가는 유아 놀이 관찰 및 활동기록 자료 분석하기, 전문 서적 읽기와 토론하기, 동료와 협의하기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함.
 - 교육과정 운영 평가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함.
- 유아 평가
 - 유치원 일과 속에서 생활과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관찰, 일화기록, 기본생활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평가하되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함.
 - 평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유아 지원을 위한 의사 결정, 교수·학습 방법 개선,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모 면담, 생활기록부 작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3)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문화 만들기

■ **알아두면 좋아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소유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

- 부모, 교사, 유아들이 만들어갈 교육의 구성 원리들은 곧바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문화를 형성하는 틀이 됨.
 - 부모 참여 및 양성평등교육, 통합교육, 민주적 의사소통, 다양한 모임과 회의문화, 놀이를 보장하는 생활, 자연으로의 나들이, 건강한 먹거리 등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삶과 교육이 부모 참여와 교사들의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됨.

가) 민주적 소통문화 만들기

□ 민주적 소통의 중요성

-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에서 의사소통은 운영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임.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구성원들은 조직의 사명과 가치를 이해하고, 각자의 생각과 뜻을 경청하고 합의와 조율을 이뤄나가야 함.
 - 협동조합의 의사소통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만들고, 논의와 활동 과정에서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함.

- 이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 훈련이며, 민주주의의 연습임.

○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과 실행

- 모든 사안은 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개방적인 토의로 진행하며 구성원들의 전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성원이 인정하고 준수해야 함.

□ 민주적 소통의 방법

○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돌보고 관계 맺기를 지향함.

○ 구성원들 간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체계 만들기를 지향함.

-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의 체계를 마련해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지향하는 민주적 소통과 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Tip: 민주적인 조직문화 만들기

- 협동조합 내의 의사소통
 - 협동조합 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려면 협동조합의 다양한 기관의 운영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함.
 -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등 협동조합의 중요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잘 전달되어 조합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공유된 의견이 다시 협동조합의 각 기관에 전달되도록 해야 함.
 -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 과정이 잘 전달되어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면 사업 진행도 수월해짐.
- 협동조합과 교사 간의 의사소통
 - 협동조합과 교사회의 의사소통은 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짐.
 - 협동조합의 이사진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양자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 교사회와 이사회의 연석회의나 간담회, 단합대회 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함.
-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가치와 지향 중 하나는 부모가 단순히 유치원의 고객이라 아니라 유치원 교육에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나, 부모 참여는 교사의 권한과 갈등 관계에 놓일 수도 있음. 교사들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부모들이 적절하게 교육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마련해야 함. 부모와 교사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민주적 소통을 위해서는 가능한 공식적인 소통 통로를 활용해야 함.
- 신입 조합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의사소통

신입 조합원이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잘 적응하여 자리를 잡아야 협동조합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내부의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음.

 - * 신입조합원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유치원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원장이나 원감, 담임 교사와 수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 신입 조합원 교육의 진행과 더불어 선배 조합원 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가구를 골라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빠른 정착에 도움이 됨.
 - * 무엇보다 신입 조합원 스스로 협동조합과 유치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알아두면 좋아요: 부모-교사 간의 공식적인 소통의 방법**

공식적인 소통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알림장**

- 교사가 쓰는 알림장을 통해서 유아에 대한 일상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음.
- 알림장이 교사의 보고서가 아니라 부모와 주고받는 유아 성장의 기록이자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함.

② **면담**

- 유아를 중심에 두고 부모와 교사가 생각을 맞춰갈 수 있는 정기 면담의 기회는 연 1~2회임.
- 정기 면담 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입 유아의 경우 적응을 돕기 위해 보다 긴밀한 부모와의 소통이 필요함.

③ **정기적인 반모임**

- 정기적인(보통 월 1회) 반모임을 통해 유치원에서의 유아들의 생활과 또래관계 얘기를 나눌 수 있음.
- 반 단위의 논의에만 머물기보다는 유치원 전체 구성원과의 소통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반모임의 기록을 남겨 전체 유치원 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음.

④ **연석회의 및 교육 간담회**

- 부모들이 교육 활동에 대해 교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을 때는 교육소위를 통하거나 원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여 연석회의나 교육 간담회를 열 수 있음.
- 부모의 사적인 욕구나 감정들을 교사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유치원 전체를 위한 교육적 제안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공유하여 풀어가도록 함.

나) 민주적인 회의 문화 만들기

□ 민주적인 회의운영의 원칙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도 존중하며 운영해 나가야 함.
 - 회의 내용과 일시, 참석자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 회의 전 정족수를 확인하여야 함.
 -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를 다뤄야 함.
 -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보장해야 함.
 - 회의 진행 시 심리적, 신체적 등의 비폭력의 원칙을 지켜야 함.
 - 모든 구성원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이 있음.
 - 다수결이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의 원칙을 따라야 함.
 -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함.
 - 같은 회의에서 부결된 의결에 대한 재논의를 금지함.
- 회의를 할 때 조합원은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책임이 있음.
 - 회의 때는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청하도록 함. 다른 이의 말을 경

청하고, 내 차례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난 후 보충 발언을 한다면 바람직할 것임.

- 임원 선출이나 역할 배분을 고루 함. 역할을 고루 나누다 보면 때로는 일이 잘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의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므로 회의 자리에서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

○ 다수결의 원칙의 중요성

- 대부분 다수결의 방법을 선택하고 의견이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는 이를 수용해야 함.
- 다수결이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한 원칙으로 결정이 났다면, 결정된 사항을 두고서 반대 의견이나 불평을 계속하는 것은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함.
- 그러나 논의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 구성원이 많지 않은 작은 공동체의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전 구성원의 합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동조합도 있음.
- 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더 들기는 하지만 결정 후에 일을 진행하는데 큰 힘을 가질 수 있음. 다수결이나 만장일치나는 각 협동조합의 선택이며, 해당 협동조합의 문화이기도 함.

○ 소수의견 존중 방법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함.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해서 소수의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 전체 결정 사항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문제는 조만간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 소수 의견 발의자는 다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토론과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음.
- 특히 소규모 조직에서는 다수의 불합리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수정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회의 자료의 보관

○ 회의 자료를 비롯해서 협동조합의 중요 자료들은 반드시 보관해야 함.

- 자료는 온라인상의 자료방에 파일형태로 체계를 갖춰 보관하고, 오프라인에도 2부씩 출력하여 온라인과 동일한 체계로 문서로 정리해서 보관함.
- 자료를 보관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협동조합의 역사이기도 하며, 필요시 언제든지 자료를 열람하고 참고하기 위해서임.
- 자료 보관이 잘 안되어 있으면 의사 결정 시 참고하고 싶을 때 참고가 어려울 뿐 아니라 유치원과 조합의 운영을 증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 알아두면 좋아요: 민주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태도

- 회의할 때는 말하지 않다가 회의 한 후에만 말하는 태도
- 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요한 사안들을 뒤돌이 때 결정하는 태도
- 총회 기록이 잘되지 않아서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 회의에는 집중하지 않고 개별적인 담화에 열중하는 태도
- 회의에 늦게 참석하거나 일찍 자리를 뜨고 나서, 논의 과정이나 결정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을 반박할 때, 상대를 비난하거나 화내는 태도 등

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만들기

□ 유치원과 가정을 연계하기

- 유치원의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세시 절기에 따르는 생활문화, 먹을거리나 나들이로 나타나는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일을 가정에서도 함께 해나가면 조합원들 간의 공통된 문화를 만들 수 있음.
- 이를 통해 유치원과 가정 간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갖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음.

□ 생활 문화를 나누기

- 조합원 친목을 위해서는 계절 좋은 때 가까운 곳으로 가족야유회를 가거나, 아동들의 돌살이 기간에 조합원 단합대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임.
- 부모들 간의 테니스모임이나, 조기축구, 등산모임, 학습모임 등 소모임도 좋음.
- 부모들의 늦은 퇴근, 불가피한 사고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서로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품앗이나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놀면서 이웃 간의 정을 돈독하게 하는 마실 문화를 살리는 것도 좋음.
- 마실, 품앗이 등은 이웃 간의 어려움과 정을 나누는 효과뿐 아니라 유아에게는 서로 돕고 사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기회가 됨.

■ Tip: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유치원을 만들어 가요!

- 지역의 아이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자, 지역 사회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포함하여 삶과 교육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임.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초기 설립 단계이고 자체의 목적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벅찬 상황일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이나 연대에 적극 나서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역의 역사와 특성, 협동조합의 성격 및 활동 역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교직원조합원들은 자신의 교육적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조합원들도 육아 선배로서 인근 학부모들과 함께 활동 가능함.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 구성원 간의 친목 도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마을과 우리 사회의 교육, 환경, 생활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자녀를 함께 키우며, 살기 좋은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 마을의 작은 산 살리기 운동,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등,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바른 가치이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쁨과 보람이기 때문임.
 - 어린이날 잔치, 단오잔치, 마을잔치, 체육대회 등을 함께 기획·운영하거나, 조합원 교육 개방, 지역 저소득층에 김장 나누기 참여, 유치원 개방 등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을 함께 만들고, 소모임을 구성해 조합원 역량을 키우며,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장하는 등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 나감.
- 교육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 등 지역사회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도 동참할 필요가 있음.

□ 갈등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여러 구성원이 모인 곳이므로, 협동조합과 유치원의 목표와 가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 정도가 다르고, 개인의 욕구가 충돌할 수 있음.
- 갈등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상호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변화 추구의 계기가 되기도 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구성원들은 변화와 다름을 수용하는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

■ Tip: 갈등에 대처하는 자세

-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문제를 구별하고, 비판이나 비난보다 상호이해와 공감을 우선으로 해야 함.
- 개별의 입장을 앞세우기보다 공동의 이로움을 생각하며, 구성원 모두가 문제의 당사자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함.

□ 일상적인 갈등 관리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비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친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교육이나, 성찰을 촉진하는 교육 등이 필요함.
-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한 방법임.
- 교육에 대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소위를 통해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음.

■ Tip: 갈등을 기회로 만들기

- 갈등은 조직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음. 갈등은 대화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도이자 기존의 관행, 가치 등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받아들임.
- 성숙한 조직일수록 갈등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함.

4) 자주하는 질문

Q1.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출자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자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합원 1인의 출자 비율이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사업의 종류나 규모, 조합원 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조합원 탈퇴 시에는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은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자금 반환은 총회를 거쳐서 정기 총회에서 정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

Q3.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의 역할과 권한은 일반 유치원과 다른가요?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의 역할은 일반유치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교사회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형 유치원 원장은 교사와 교사, 교사와 부모 등 상호소통과 연결을 해주고 조정하는 역할이 강조됩니다.

Q4. 회의에서 한번 결정한 사안은 다시 이야기할 수 없나요?

같은 회의에서 한번 논의된 안건을 다시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안건의 논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미 논의된 안건을 다시 검토하려면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사항이든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하면 다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든 협동조합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성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부모 참여가 강조되어 좋기도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부모 참여의 부담을 조금 덜 수는 없나요?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부모 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민주적인 소통과 관계 맺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참여에 따른 각종 회의나 행사 등의 경우 퇴근 후나 주말 등 서로가 부담이 적은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부모 참여의 부담이 어느 한 부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 한부모 가정일 경우 협동조합 참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모임 외에는 협동조합 내 논의를 통해서 조절하도록 합니다.

Q6. 협동조합형 유치원 교육과정 안에서 학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부모 참여는 단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것만이 아닌 넓은 의미의 ‘육아·교육’을 포함하는 ‘사회적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반모임, 일일 교사 활동 등에 참여하여 교육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의견도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의사소통구조를 활용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7.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학부모조합원 활동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최대 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를 포함하여 1년~5년입니다. 학부모조합원의 짧은 활동 기간을 보완하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치원 학부모로서의 참여는 자녀가 유치원에 재원 중인 기간에 해당하지만, 조합원으로서의 참여는 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조합의 다른 사업(초등 방과후, 지역 돌봄, 건강한 먹거리 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속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조합원의 연계를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연차가 고루 참여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 협동조합형 유치원 지원하기

1) 민-관-학 협력체계 구성하기

가) 민-관-학 협력 체계의 필요성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 지원 체계의 필요성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의 단체 및 정부 지원 단체 등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단체가 필요함.

- 유치원의 부지 및 시설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부담감이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 경험이 풍부함, 경력 있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부모들의 조직화 경험이 부족하여 설립과 운영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관련된 민간, 정부, 학계 등의 지원 체계 마련이 요청됨.

나) 민-관-학 협력체계 관계 기관 구성과 역할

□ 정부 파트너 1: 교육부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설립·정관 변경·합병·분할),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청산 사무의 감독, 해산 등기 촉탁, 감독, 설립 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 교육부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함.
 - 교육부에서는 평생학습정책과가 비영리법인업무와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평생학습정책과에서는 2019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교 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지원 업무를 맡겨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음.

□ 정부 파트너 2: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업무 총괄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음.
 -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협동조합 정책협의회 운영,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인가 등을 맡고 있음.
- 2019년 6월 현재 기획재정부 장기 전략국 산하에 ① 미래전략과, ② 사회적경제과, ③ 협동조합과를 두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 제도 개선,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 관련한 정보 및 지원 사업, 온라인 교육 등이 탑재되어 있는 협동조합 포털(coop.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지정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상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민간 파트너1: 관련 분야 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연합회 등이 있음(학교협동조합 연합회,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등).
-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170여 개의 협동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중 70여 곳이 (사)공동육

아와공동체교육의 회원 조직이며 2019년 6월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를 창립해서 운영하고 있음(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18).

〈표 Ⅲ-2-48〉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누리집

기관	연락처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gongdong@gongdong.or.kr - www.gongdong.or.kr
전국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schoolcoop@naver.com - www.facebook.com/schoolcoop

■ 알아두면 좋아요: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 설립배경: 1991년 계층 차별적인 보육정책과 영리화·관료화된 사회적 육아를 걱정하는 모임이 결성되었음. 이 모임은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공동육아연구회’로 개칭하고 직접 구체적인 공동육아 터전 만들기 시작하였음.
- 방향성: 계층 통합을 실현하는 보편적인 보육제도를 구축하기
- 성과: 1994년 신촌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 개원
- 결과: ‘공동육아연구회’는 1996년 ‘(사)공동육아연구원’으로 정식 발족
2001년 10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으로 개칭

□ 민간 파트너 2: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로는 교육협동조합,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신협,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협동조합 지원센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등이 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인가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서류 검토·보완
 - 사회적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개발, 확산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및 경영 공시 지원
 - 지역 내 협동조합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 DB 구축 및 홍보 업무 등
 -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위한 대출, 융자
- 다음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기관의 사이트를 참고로 하여 각 기관의 특징에 따라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정리한 표임.

〈표 III-2-49〉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자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누리집

기관	홈페이지
서울시협동조합센터	(http://www.15445077.net/) 이외 지역은 검색하여 해당 지역 문의 가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i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센터	지자체 별 지원센터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http://www.ksenet.org/
쿠팡비즈 협동조합	http://www.coopbiz.kr/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http://www.gongdong.or.kr/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schoolcoop@naver.com www.facebook.com/schoolcoop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http://www.social-investment.kr/

□ 학교 파트너 1: 유치원 네트워크 및 학계

- 당사자 조직으로서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민-관-학의 학교 파트너로서 참여해서 유기적 거버넌스를 구축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치원 연대 모임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교육 내용, 원장·교사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교사교육, 부모교육, 유아교육 등에 관한 연구 등 학계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 학교 파트너 2: 지역 단위 협동조합형 유치원 TF

- 지역별로 지자체, 교육청,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관계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TF를 구성해서 조례제정 및 지원정책 마련을 시도해볼 수 있음.
- 초·중·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의 예를 살펴보면 2014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협동조합 민관거버넌스인 학교협동조합추진단이 발족했음. 추진단은 홍보 및 교육,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함.
- 2015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2016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6조에서 민관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여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민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

〈표 Ⅲ-2-50〉 민관협의회의 설치(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6)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지원하기

가)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희망 대상자를 위한 홍보와 교육

□ 홍보 필요성과 방안

- 협동조합형 유치원 개념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기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교육청 등에서 기사, 동영상, 포스터 등으로 시민 대상 홍보를 진행할 수 있음.

□ 설립 희망 대상자 교육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설립 희망자 공모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해서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과 유치원에 대해 단계적인 이해를 진행할 수 있음.

〈표 Ⅲ-2-51〉 설립 희망 대상자 교육의 활동 내용 및 추진 방법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공모를 통해 교육생 선발
- 협동조합과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중심으로 8회(18시간) 집중 교육 실시
 - ① 협동조합이란?(역사, 운영원리, 사례)
 - ②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실제(조직, 참여, 관계, 연대)
 - ③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과정
 - ④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생활과 교육
 - ⑤ 협동조합형 유치원 현장 방문
 - ⑥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기획안 발표
- 사회적협동조합 현장 방문, 질의응답 및 토론식 교육, 설립 기획안 수립하기 등으로 구성하여 교육생들의 자발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
- 사업 종료 후 수료자 네트워크 구성 유도
- 만족도 조사 실시

-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은 앞서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소개한 기관들과 협의하에 지역별로 진행할 수 있음.
- 콤비즈협동조합(<http://www.coopbiz.kr/>)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음.

〈표 III-2-5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교육 예시

과정내용	내용수준(level)	내용중요도(criticality)
협동조합철학역사	기본이해	필수과목
협동조합법무설립	설립운영	필수과목
협동조합사업모델	설립운영	필수과목
협동조합인사노무	경영심화	필수과목
협동조합재무회계	경영심화	필수과목
협동조합경영진단	경영심화	선택과목
협동조합마케팅	경영심화	선택과목

□ 준비모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희망자 공모를 마친 후 본격적인 설립을 준비하는 모임이 생긴 경우 전문 컨설턴트 2인으로 설립 지원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음.

〈표 III-2-53〉 유치원 준비 모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내용 및 추진방법

- 사회적협동조합 준비 모임 중에서 선정
- 전문 컨설턴트 2인으로 설립 지원팀 구성
- 현장 방문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 컨설팅 과정(안)
 - ① 협동조합형 유치원 교육 1회
 - ② 준비 모임 회의 지원 2회
 - ③ 협동조합 및 유치원 조직 구성에 대한 조언 1회 만족도 조사 실시

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시 필요한 지원 컨설팅 목표와 내용

□ 컨설팅의 목표

- 컨설팅을 통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유치원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당면하게 될 여러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 종사자 및 관련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증가시켜 안정된 운영에 이바지하게 함.

□ 컨설팅 분야와 내용

컨설팅의 분야는 크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 및 사업영역 개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III-2-54〉 컨설팅의 분야와 주제(예시)

컨설팅 분야	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 설립/운영 컨설팅 ③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영역개발: 돌봄과정 설립/운영 컨설팅
컨설팅 주제	1)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2) 설립 전화 상담 및 정보 제공 3) 사회적협동조합 설명회 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교육과정 운영 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 컨설팅 6)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7)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지원 8) 조합운영진, 조합원, 교사, 관계 공무원 교육 9) 사회적협동조합 전문가양성 과정 운영 10) 지원체계 간 네트워킹 활성화 11) 그 외 신청 현장 요구 주제에 따른 컨설팅

□ 컨설팅 진행과정

- 설립 지원 컨설팅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초동 모임 단계부터 함께 결합되는 것이 좋음.
- 초기 모임에서 상황 분석과 과제 도출을 통해 사전 진단을 하고, 이후 유치원 운영·교육의 방향을 준비하는 분들이 함께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촉진과 조정 작용이 필요함.

〈표 Ⅲ-2-55〉 실제 컨설팅 진행 사례(경기‘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단계	과업 범위	세부내용		수행기법
1단계	상황 분석과 과제 도출	사전 진단	- 컨설팅 목표 수립 - 일정 확인	간담회
2단계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교육 방향 수립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원칙 수립	- 사협의 사명·비전 수립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 방향 세우기	워크숍 /교육
		협동조합형 유치원 교육의 방향 세우기	-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일어나는 교육과정 -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 공동 육아 교육 철학 학습	교육/ 워크숍
		사례지 방문	- 운영의 방향과 교육 방향이 같은 교육 현장 방문. 실제 사례학습	사례지 방문
3단계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모델 제시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준비 체계화	- 설립계획·설립준비 체크리스트 만들기 (유치원 공간 구성, 조합원 모집, 원장, 교사회 모집 등)	법령검토, 타 자료 등 분석
		설립 주체들의 역량 강화	- 설립·운영 주체로서의 역할과 자세 -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교육 -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 과정 학습 등	워크숍 /교육
4단계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모델 제시	유치원 운영규칙(안) 만들기	- 운영 방향과 운영위원회 구성, 원비책정, 교사 채용 등 유치원 운영의 원칙과 기준, 세부 내용 만들기	법령검토, 타 운영규칙 자료 등 분석

□ 현재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 신청할 수 있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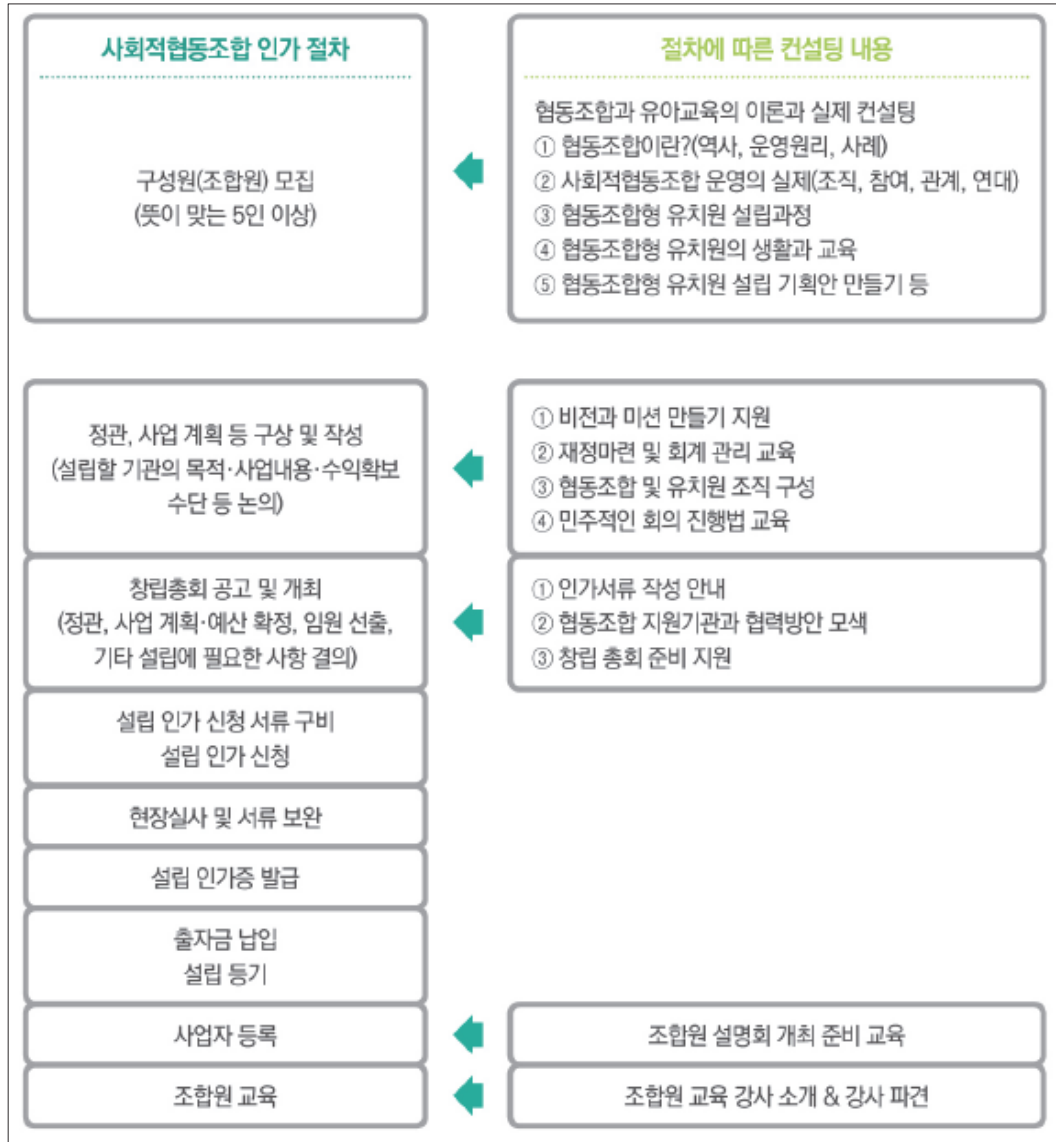
- 컨설팅 신청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음.
- 각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 기관에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음.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전국), 각 지자체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등

○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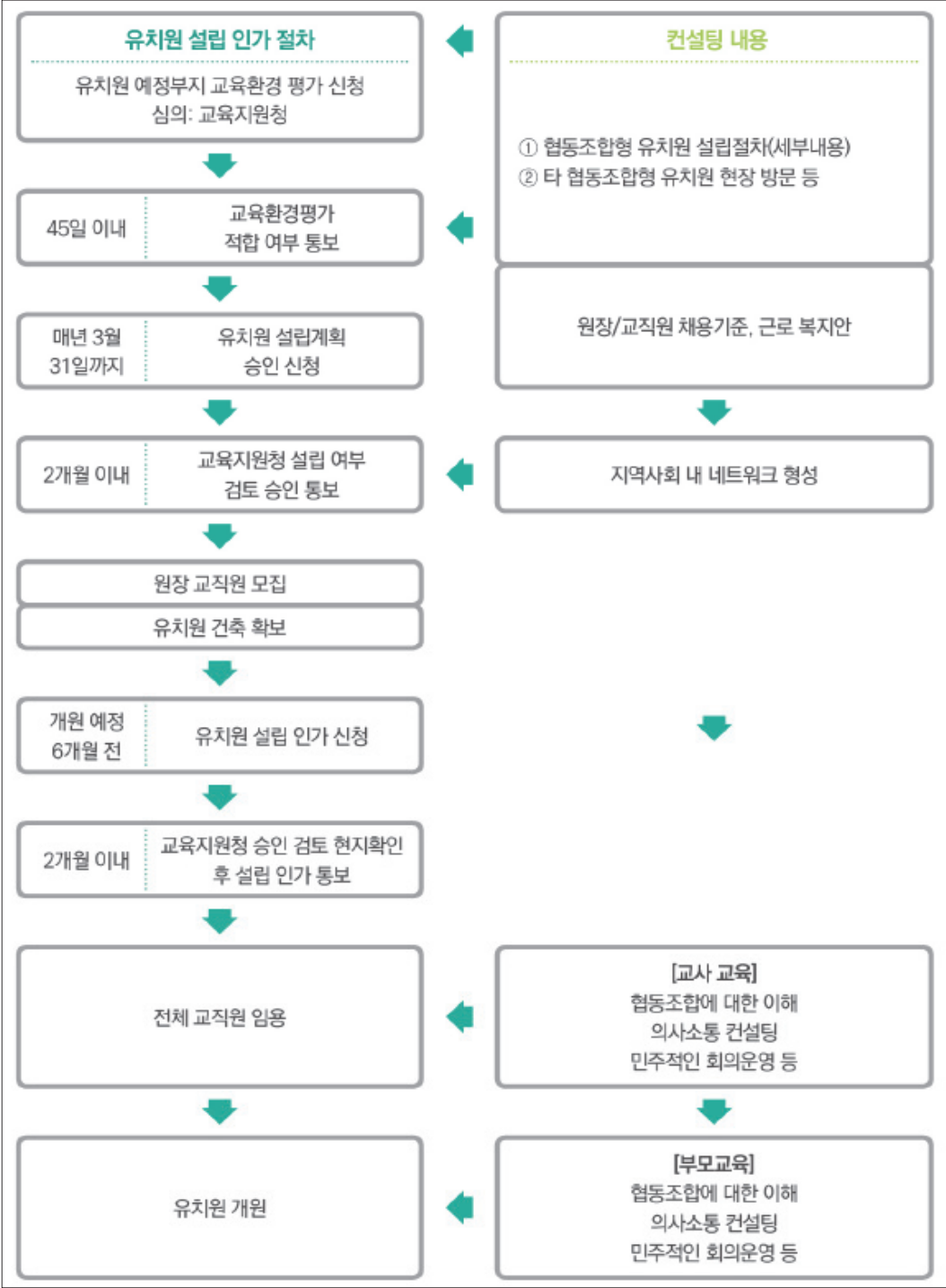
- 아직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 통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부족한 상황임.

□ 설립과정과 연계한 지원 체계

[그림 Ⅲ-2-17]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따른 지원(예시)



[그림 III-2-18]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에 따른 지원(예시)



3)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지원하기

가)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 지원의 필요성

- 개원 이후에도 최소 1년 정도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설립도 중요하지만, 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함.
 - 사회적협동조합을 잘 운영하고 있더라도, 유치원 교육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면, 협동조합형 유치원 자체가 좌초되거나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운영 경험의 부족과 갈등으로 인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유치원 교육·운영 노하우 전수, 회계 점검, 민주적 운영 방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나) 운영 재원 확보 방안

- 설립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 신용보증 기금 등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한 비용의 일부를 대출할 수 있음. 단 주 사업(유치원 개원)이 발효되기 전에는 대출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문의가 필요함.
- 공영형 유치원 사업 지원: 협동조합형 유치원 개원 이후,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지원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며 비영리법인으로 공영형 유치원 사업 지원이 가능함.
 -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모델을 확대하여 협동조합형 공영형 유치원 모델을 제시하여 공립대비 85%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부담 수준을 10만원 내외로 운영하고 있음.

■ **알아두면 좋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영형 유치원 모델(예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b)**

〈재정지원〉

- 기본방향: 기존 공영형 유치원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특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정책을 지향함.
 - ※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주성, 자주성 등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 학부모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방향으로 지원함.
- (지원방식) 재정결함보조방식 + 누리지원금
 - ※ [인건비(공립수준 대비 85%) + 운영비] 소요예산 총액에서 누리과정비 지원액 제외금액

〈표 III-2-56〉 서울더불어키움형과 협동조합형 유치원 비교

구분	서울더불어키움형(기존)	협동조합형(*신설)
설립주체	법인	비영리법인
개방이사	이사 정수의 1/2이상	이사 2명 이상
지원방식	재정결함 보조방식 + 누리지원금 등	재정결함 보조방식 + 누리지원금 등
교직원인건비	공립 수준	공립 대비 85% 수준
학부모부담금	공립 수준(1~2만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부담수준 (10만원 내외)

다)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의 안정화에 필요한 컨설팅

- ①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재정 운영방안 컨설팅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계·재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용이 되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의 회계·재정은 분리되어 각각의 회계규칙을 지켜야 하는 등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함.
- ② 총회, 이사회, 조합의 각종 소위원회 등 조직운영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컨설팅
 - 협동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합 기구가 원활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각종 위원회, 회의들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민주적 회의 진행 방안과 의사 결정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
- ③ 관계 맺기, 갈등 조정 방안 등 조합원의 열린 의사소통을 위한 컨설팅
 - 조합원의 열린 의사소통과 관계 맺기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긴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도 많음.
 -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할 만큼 중요함.
 -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조정, 해결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
- ④ 교육 지원 : 조합 운영진(이사회) 교육, 조합원 교육, 교사 교육
 - 협동조합형 유치원 경영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합 운영진(이사회) 교육, 조합원 교육, 교사 교육 등이 필요함.

- 조합 운영진(이사회)교육, 교사 교육 등은 컨설팅 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함.

4) 자주하는 질문

Q1.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하고 싶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각 지역에는 본문에 안내된 대로 기재부가 지정한 '권역별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이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시 초기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과의 상담을 통해 유치원 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이 되면 더 이상 지원은 필요 없을까요?

개원 이후에도 최소 1년 정도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은 설립보다 운영이 중요합니다. 유치원 교육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서 좌초되거나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운영 경험의 부족과 갈등으로 인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유치원 교육·운영 노하우 전수, 회계 점검, 민주적 운영 방안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3.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안내서

가. 매입형 유치원의 개요

1) 매입형 유치원이란?

- 매입형 유치원이란,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폐원)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의미함.
- 매입은 교사(校舍), 교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은 승계되지 않음.
 -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아조치계획을 세우고, 재원생 중, 재원을 희망하는 경우, '처음 학교로'를 통해 유아 승계가 가능함.

2) 매입형 유치원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가) 유아교육 공공성 및 국가 책무성 강화

-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수준을 40%까지 확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나) 공립유치원 확대 지원

- 교실 부족으로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 설치가 어렵거나,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필요한 도심 지역은 초등학교도 과밀 학급인 경우가 일반적임.
- 도심 내 공립유치원 설립 용지 부족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에 한계가 있음.

다)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의 행정 비용 절감

- 매입형 유치원 도입 시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건축물 신설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매입형 유치원 도입 시 주변 사립유치원 반발 등의 정책 갈등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시, 신규 유치원에 따른 유아모집의 어려움으로 인근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높음.

3) 매입형 유치원의 추진 경과와 근거

가) 매입형 유치원의 추진 경과

- '18. 4. 10 서울시 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추진 계획 발표
- '18. 10. 25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 '19. 1학기, 1개 원 운영 중임(서울 구암 유치원).
- '19. 2학기, 4개 원 운영 중임(서울 좋은소리, 수명, 신정, 금남화 유치원).
- '20년 30개 원 개원 예정임.
(서울 9개, 경기 14개, 부산 3개, 울산 1개, 광주 1개, 경남 2개)

나) 매입형 유치원의 추진 근거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 계획 안내(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170, 2018.11.1.)(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8a).
-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매뉴얼 안내 및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제출(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327, 2018.11.8.)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8b).
-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 알림(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6343, 2018.12.13.)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8c).

나. 매입형 유치원 선정

1)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기준

가) 원칙

□ 공모를 통하여 매입 대상 유치원을 선정함.

※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학교신설비 교부금 교부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재정 소요액의 측정 항목·측정 단위 및 산정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매입 대상 사립유치원 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 재정 소요액의 측정 항목·측정 단위·산정 공식 및 단위 비용(제7조제1항 관련):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립유치원당 매입비

나) 선정 대상

□ 선정 공고일 현재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휴·폐원 유치원 제외)

- 공유 부지(대지권 비율)인 경우, 감점을 주거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건물 전체가 동일인 소유여야 하며, 저당권, 용익권(임차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매입계약 전까지 권리 의무 관계가 종결되어야 함.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대상 확대 가능(유치원 설립 인가 후, 개원 예정인 유치원 등)

다) 신청 기본 요건

□ 설립자 소유의 부지, 단독 건물의 사립유치원

- 건물 중 일부만을 유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건물 전체 매입 검토(5층 건물 중 1~4층을 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등)
- 유치원과 인접하여 사실상 유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또는 유치원 부지 안에 설립자의 개인부지가 있는 등(진입로, 주차 공간 등) 유치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지 매입은 시·도별 기준 마련 필요

□ 인가 학급 기준 OO학급 이상 또는 연면적 OO㎡으로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라) 제외 대상

□ 일방적 폐원(통보) 및 모집 중지 등 유아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 (단, 학습권 침해가 경미한 경우 매입 대상에는 포함하되 경중에 따라 사안별 감점으로 같음함)

- ☐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유치원
- ☐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치원
- ☐ 감사 등 각종 지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
 - 단, 완료 이행 중이거나 조치결과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명시)의 경우 완료 예정으로 같은 가능

마) 선정 기준

- ☐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단설유치원 미설치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 우선 설립 등
- ☐ 세부 선정 기준 및 항목
 - ① 배치 여건 : 시·군 또는 취학권역별 공립 단설유치원 수, 취학권역 내 공립유치원 취원율, 해당 유치원 정원충족률, 취학권역 내 취원 대상아, 인근 유치원 거리, 재정 투자 효율성(교지 및 교사 매입비용, 수선비용) 등
 - ※ 특히 유치원 수요-공급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매입 후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등 충원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 필요(충원율 낮은 곳 매입 시 충원율 제고 방안 및 향후 전망 검토)
 - ② 시설 여건 : 교지 및 교사(건축물) 연면적, 건물 노후도, 시설 상태(시설 안전)
 - ③ 매입 적합성 : 통학 안전, 유치원 내·외부 환경, 주차장, 교육환경 적합성 등
 - ④ 기타 고려 사항 : 소방 시설, 석면 유무, 장애인 편의 시설, 자체 안전 점검 결과, 공동 소유 여부, 사회 취약 계층 배려 정도 등

〈표 Ⅲ-3-1〉 우선 선정 대상 기준 예시

항목	기준	우선선정대상 기준
지역	국내 소재	1.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낮은 지역 등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시급한 곳 2. 취학수요 조사 결과,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등,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높은 곳 3. 단설유치원 미설치 지역 4. 서민 거주 밀집 지역
교사 및 교지 소유·이용 형태	자가 소유 (법인 포함)	1. 단독 부지 2. 소유 교사·교지의 매입만으로 유치원 운영이 가능한 곳

항목	기준	우선선정대상 기준
운영 형태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매입 후에도 운영이 지속 가능한 곳	1. 매입 후 중단 없이 즉시 운영이 가능한 곳
규모	제한 없음	1. 현재 4학급 이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2. 매입 후 6학급 이상으로 운영 가능한 유치원 ※ 단, 시·도별 여건에 맞추어 규모 조정 가능

바) 선정 평가 항목

□ 선정 평가 항목 중,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점수 비중을 지역별 특성에 알맞게 60(70) : 40(30)등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표 Ⅲ-3-2〉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 항목(정량, 정성 평가) 예시

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정량평가	1. 배치여건	1-1 공립 단설유치원 수	자치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 수
		1-2 공립 배치여건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대비 공립 배치여건 부족인원 (취학권역 취학대상아동기준)
		1-3 공립취원율	공립유치원 원아 수/ 전체 유치원 원아 수
		1-4 서민거주 비율	유치원 소재 행정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1-5 취학대상 아동수	인근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만 3~5세 아동 수
		1-6 공립유치원 거리	인근 공립유치원 직선거리
		1-7 사립유치원 거리	인근 사립유치원 직선거리
		1-8 유치원 총원율	인가정원 대비 2018학년도 원아 수
		1-9 재정투자 효율성	토지 공시지가(㎡당)
	2. 시설여건	2-1 교지 및 교사 단독사용 여부	단독 필지 및 유치원 전용 건물 여부
		2-2 건축연면적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2-3 건축노후도	건축물대장상 건축연도
정성평가	3.적합성	3-1 종합평가	통학여건, 외부환경 등 교육환경 및 매입 적합성

☐ 통학 환경, 건물 외부 환경 등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와 매입형 유치원으로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표 III-3-3〉 2020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정성 평가 내용(예시)

평가요소	평가 시 고려사항
통학 환경	• 통학 안전 고려 - 교통 정체 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하지 않을 것 (대형 판매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 통학 시 4차선 이상 도로를 횡단하지 않으며, 인접 도로가 4차선 이내일 것 - 통학로 보행 공간의 유효 폭이 2m이상 확보 등 • 통학로 및 유치원 교지의 경사가 심하지 않을 것 등
건물 외부 환경	• 건물 방향, 일조, 통풍, 조망 등 건물 외부 환경 고려 - 남쪽 방향에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 통풍과 일조를 방해하는 건물, 지형 등이 있는지 등 확인
지역 적합성	• 해당 지역에 매입형 유치원이 필요한지 적합성 판단 - 인근에 공·사립유치원이 밀집되지 않았는지, 서민 거주 지역인지 등을 판단
기타	• 기타 사항을 평가 - 유치원이 독립적인 공간 확보(담장 등 영역 분리)가 가능한지 확인 - 원아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공립 전환 시 기존 원아들이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을지 확인 - 공립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등 확인

〈표 III-3-4〉 평가방법(영역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배점 범위 내에서 절대평가 점수 부여)

평가	배점	평가기준
매우우수	91~100점	평가요소들이 모두 우수하여 매입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우수	81~90점	평가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특별히 부족한 요소가 없을 경우
보통	71~80점	평가요소들이 대부분 적합하여 매입 가능하나, 일부 요소가 미흡할 경우
미흡	61~70점	평가요소 일부는 적합하나, 대부분의 요소가 열악한 경우
매우미흡	60점 미만	평가요소들이 모두 미흡하여 매입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

사) 선정 방법

-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 득점 순으로 교육부에 추천함.
 - ※ 지역 내 국공립유치원 선호도, 유아 수 추이, 유치원 충원율, 시설 안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1차 심사: 1차 심사는 정량평가로 2~3배수 선정을 함.
 - 평가 방식: 서면 평가 + 감점
 - 감점: 일방적 폐원(통보) 및 모집 중지 등 유아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등(11~12쪽 제외 대상 참조)
 - 2차 심사(정성 평가)
 - 평가 방식: 현장 방문 평가
 - 추천 대상 유치원: 1~2차 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5개 원 선정
 - 1~2차 심사 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동점인 경우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교육부 자문: 선정된 ○개 원을 교육부에 자문의뢰

아) 매입금액

- 매입금액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준용)
-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 감정평가업자: 2인(교육청 추천 1인, 대상 유치원 추천 1인)
- 감정평가 수수료: 교육청과 대상 유치원에서 각각 부담
 - ※ 감정평가 시기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절차 과정에서 진행하되, 평가액에 불만족한 유치원이 매입 의사를 철회하지 않도록 적정 협의(시·도별 여건에 맞추어 탄력 적용)

2)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절차

-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절차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시·도별 실행(추진) 계획 수립 및 공고, 공모
 -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
 - 해당 유치원 시설 확인 및 선정 후 정밀 안전 점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점검비용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부담함.

- 교육부 매입형 유치원 자문 위원회(자문의 형태로 매입 적정성 심의 결과를 시·도에 안내 → 교부 신청 시, 참고자료로 송부)
- 필요시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위원회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청
- 최종 선정

■ 알아두면 좋아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제1항

1. 자체심사

-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2. 중앙의뢰심사

-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그림 Ⅲ-3-1]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절차



가) 실행 계획 수립 및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 구성

- 매입형 유치원 일정과 로드맵 확정
- 시·도교육청에서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함.
- 선정 위원회는 10~15명 내외(외부 위원 1/4 이상 구성)
- 1차 선정위원회에서는 회의 규칙, 선정 기준, 심사 방법(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 심의·결정함.

■ **알아두면 좋아요: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 운영 방식은 다양해요.**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는 시·도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은 ‘추진 위원회’에서 평가는 ‘평가단’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나) 공고 및 접수

-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
- 공고문에는 매입형 유치원 개념, 선정 대상 유치원 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제외 대상, 선정 방법 및 감점 요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다) 선정대상 평가

□ 제출 서류 검증

- 제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실사를 함(심사 위원회에도 자료 제공).

□ 심사

- 선정 기준에 맞춰 검증된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 심사를 실시 후 대상 유치원 선정함.
-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 심사 절차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2회 이상의 선정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함.

라) 교육부 선정 자문위 개최 및 대상 유치원 선정

- 교육부 선정 자문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성을 판단함.

마)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및 학부모와의 협의

- 매입형 유치원 신청시 공립 전환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등의 학부모와의 협의가 필요함.

■ **알아두면 좋아요: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하기 전, 교육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요.**

폐원 시 교직원 조치 계획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안내와 이직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하기 전, 기존 교직원들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합니다.

바) 중기 재정 계획 반영 자체(중앙) 투자 심사

- 근거: 지방재정법 제33조·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지방교육행정 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제6조
- 사전 반영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급한 현안인 경우 차기 반영을 전제로 심사
- 40억 이상은 자체투자심사, 1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함(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

사)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를 거침.
- 중요 재산 20억 이상인 재산의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재산)이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아) 예산 편성

- 개교 경비를 포함하여 본예산을 편성함.

자) 매입·폐원 절차 및 개원 진행

〈표 III-3-5〉 매입형 유치원 선정 일정표 예시

추진일정		구분	주요내용
2020년	2월	추진계획안 마련	기본계획(로드맵) 확정
		선정위원회 구성	10~15명 내외(외부 위원 1/4 이상)
		선정위원회 회의(1차)	회의규칙, 선정기준, 심사방법 등 심의 결정
	3월	공모 및 접수	매입형 유치원 공모
		검증	제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실사(심사위원회 자료 제공)
	4월	선정위원회 회의(2~4차)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 → 유치원 선정
	5~6월	교육부 자문 및 대상 유치원 선정/교육청 선정 결과 발표	타당성 검토 및 제외 대상 여부 판단
	6~7월	학교설립계획 수립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설립계획 수립

추진일정		구분		주요내용
	6~7월	중기 재정 계획 반영 자체(중앙) 투자 심사	감정 평가	- 사전 반영 원칙. 단, 시급한 현안인 경우 차기 반영 을 전제로 심사(※예산기획과 협조) - 40억 이상 자체, 100억 이상은 중앙 심사
	8~11월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통과		20억 원 이상 시의회 의결
	9월	예산 편성		2021년 본예산 편성(개교경비 포함)
2021년	12~1월	관련 조례 개정		교명 선정 및 신설 유치원 설립사무취급교 지정
	1~2월	매입, 폐원 절차 진행		계약·매입·폐원 절차 진행(필요시 리모델링)
	3월	개원		공립 단설유치원 개원

3)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이후 절차(3월 개원)

가) 대상 유치원의 확약서 체결

□ 대상 유치원은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침(원인자 부담).

□ 확약서 내용

① 개원 시기

- 설립자는 개원 시기에 맞추어 유치원의 교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이전해야 함.
※ 교재 교구의 승계는 시·도별기준에 따름.
- 설립자는 기존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지 않음.

② 안전 점검

- 설립자 비용 부담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 진단 전문 기관에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함.
- 정밀 안전 점검 결과 C등급 이하인 경우 설립자 부담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함.
※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됨.
-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설립자 부담으로 보수 및 보강 등 시설 보완 등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됨.
- 안전 점검 결과 D 등급 이하인 경우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하지 않음.

③ 감정평가

- 안전 점검 등으로 통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 조건을 갖춘 경우 교육청과 설립자는 유치원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함.
- 유치원의 매매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평가 기준일을 동일하게 하여 교육청과 설립자가 각각 실시하고 각자 비용을 부담함.
-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는 요구할 수 없으며 측량비는 설립자가 부담함.
- 설립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받은 1개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청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받거나 조달청을 통해 결정된 1개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실시함.
- 감정평가 실시 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권리를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교육청이 부담 하게 되는 감정평가 관련 비용을 보상함.

④ 보안 유지

- 설립자는 본 확약 및 매매계약 등의 제반 절차가 완료되어 매입형 유치원 우선 협의 대상 유치원이 공립유치원으로 설립될 때까지 학부모 안내를 제외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대외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⑤ 효력 및 해석

- 본 확약 이후, 설립자는 재산 상태의 변경 또는 자금 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본 확약을 무효로 할 수 없음.
- 본 확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변경이 필요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 폐원 인가, 매입 계약 및 매입(개원 준비)
- 폐원 인가, 매매 계약 및 매입(2021년 1~2월)
 - 자체투자심사 및 교육부 자문 의뢰

□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교육부 자문 의뢰와 함께 진행하여 2020.7월 말까지 완료함.

- 내부 행정 절차 완료

□ 공유 재산 심의 및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본예산 확보

- 정밀 안전 점검, 예정 교부 신청, 교명 제정 협의, 감정평가 협의(2020.8월말 까지)
- 입법예고, 본예산 신청, 예정 교부 확보, 공심의 제출(2020.9월말까지)
- 공심의 통과, 법제심의, 조례 안건 제출, 공유 관리 제출 및 의결(2020.10월~11월말까지)
- 설치 조례 반영, 본예산 확보(2020.12월말까지)

• 유치원 리모델링

□ 공립유치원 시설 및 설비 기준, 소방 및 전기 안전 기준 등에 맞추어 리모델링 실시

- 관련 법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별 설립·운영 규정
- 급식 시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1항 별표1)
- 석면안전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알아두면 좋아요: '리모델링 관련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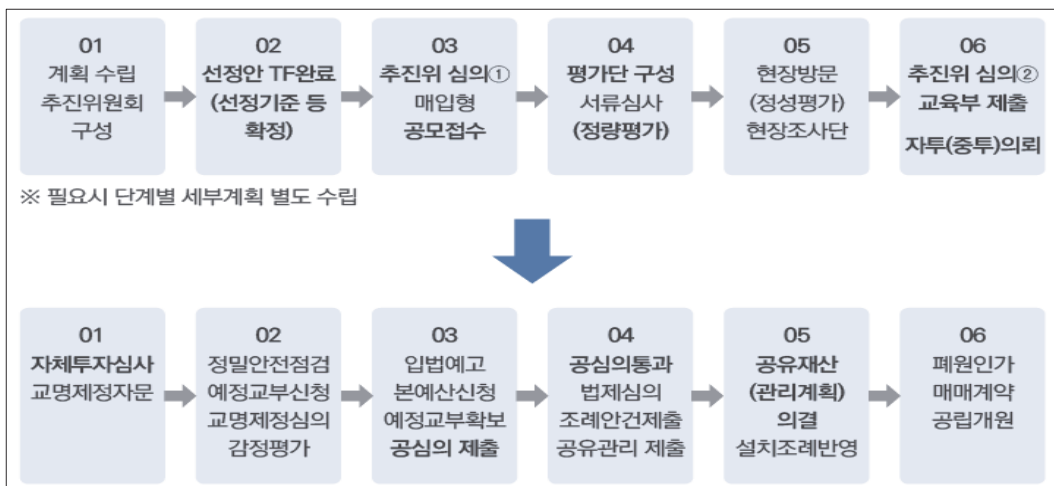
리모델링은 개원 전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원 후 방학기간 이용도 가능함.
리모델링 기간 중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일반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개원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유치원 구성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함.
※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국공립 단설 및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리모델링 비용 부담은 시·도별 기준에 따름.

• 매입형 유치원 개원 (2021. 3월)

□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 해당 교육(지원)청

□ 매입 유치원 개원 시기를 제외하면 응모 결과 및 행정 절차 등에 따라 유치원별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그림 Ⅲ-3-2] 매입형 유치원 선정 및 선정 이후 절차 (예시)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부서별 업무 처리 절차(예시)

〈표 Ⅲ-3-6〉 매입형 유치원 부서별 추진 로드맵(1기: 9월 개원, 2기: 3월 개원)

부서 시기	대상 유치원	학교 설립 부서	관련 부서
2019. ~1월		- 계획 수립, 대상 공모 - 선정 평가, 교육부 자문	교원정원
2월		- 자체 재정투자심사 - 교육부 교부금 확보 - 개교 점검, 보도자료	- 학사, 원아, 교원 인사 - 투자심사, 매입 - 인사, 공무원
3월	정밀안전점검	- 대상 통보, 공심의 2기 선정기준, 1기 추진	- 공심의 - 설립 계획, 교명자문
4월	- 안전 점검 또는 진단 - 시설보완	- 교명제정심의위, 조례예고 - 공유재산 관리계획 - 추가경정 예산편성 2기 추진계획, 선정위구성 2기 공모	- 공유재산 관리계획, 감정평가 추진 검토 - 설치조례 입법예고 - 중기재정 계획 변경 - 추경예산 협조(개교경비 등) - 공무원 배치 검토 - 시설 및 인원배치 검토
5월		- 법제심의 제출 2기 선정 기준 확정 - 정량 및 정성(중순) 평가	- 감정평가 추진 검토 - 법제심의 및 조례 상정 - 공무원 및 예산 - 시설 및 인원 예산
6월	- 감정평가 세부 협의 - 교직원 고용 해결	2기 선정 대상 협의 2기 교육부 사전 자문 2기 자체투자 심사 의뢰	- 감정평가 세부 협의 - 교원정원 - 설치조례 일반직정원 - 추경확정(개교경비 등) - 공무원 인건비 확정 - 시설 및 인원 예산확정 - 사립유 폐원 협의
7월	- 재원 희망 파악 - 감정평가 가격 결정	2기 자체 재정투자심사	- 감정평가 매입계약 - 학사, 원아, 교원인사 - 투자심사, 예산 교부 - 인사 - 공무원 - 예산 - 안전점검 - 폐원 검토, 리모델링, 유아모집
8월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 개교 점검 - 언론 보도자료	- 매입금 이체, 소유권 이전 등기추진 - 교육과정 개설(입학식 등)

부서 시기	대상 유치원	학교 설립 부서	관련 부서
	• 재원 희망 아동 인계 • 매각 계약 • 소유권 이전 등기	• 2기교육부 예정교부 신청	• 폐원 인가
9월	• 정밀안전 점검	• 우선 협의 대상 통보 • 교명 제정 심의위원회 • 설치조례 입법 예고 • 교육부 예정교부 및 본예산 편성	• 입학식 • 설치조례 협의, 입법예고 • 설립계획, 교명자문 • 본예산 편성 협조 • 공무원 배치 검토 • 시설, 인원배치 검토
10월	• 안전 점검 또는 진단 • 시설보완	• 공유재산 심의 • 본예산 편성 • 법제심의 제출	• 공심의, 감정평가 검토 • 법제심의, 조례 상정 • 편성협조 • 공무원 배치 및 예산 • 시설 및 인원 예산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감정평가 추진 검토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 본예산 반영 협조
12월	• 감정평가 세부 협의 • 교직원 고용 해결		• 감정평가 세부 협의 • 교원정원 • 설치조례 일반직정원 • 본예산 확정 • 개교경비 포함 • 공무원 인건비 확정 • 시설 및 인원 예산확정 • 사립유 폐원 협의
2021. 1월	• 재원 희망 파악 • 감정평가 가격 결정	• 교육부 교부금 신청	• 감정평가 • 학사, 원아, 교원인사 • 교부, 인사 • 공무원, 예산 • 안전점검 • 폐원 검토, 리모델링, 유아모집
2월	•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 재원 희망 인계 • 매각 계약 • 소유권 이전 등기	• 교육부 교부금 확정교부 • 개교 점검 • 언론 보도자료	• 매입계약 • 매입금 이체, 소유권 이전 등기추진 • 교육과정 개설(입학식 등) • 폐원 인가
부위원장		행정국장	매입형 유치원 설립 총괄

4)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취소 및 중도 포기

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 취소

- 최종 확정 이후라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유아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매입형 유치원 확정 취소될 수 있음.
- 시·도교육청은 선정 후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발생 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시·도교육청은 통보받은 취소 사유를 확인하고, 처분 사전 통지 등에 따라 취소 처분을 진행함.

나) 매입형 유치원 중도 포기

- 본 협약 이후에는 설립자가 재산 상태 변경 또는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음.
- 중도 포기 시, 매입 선정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대상 유치원에서 부담하고 차후 매입형 유치원에 신청할 수 없음.

※ 매입형 유치원의 취소나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 유치원명, 취소사유를 작성하여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로 반드시 공문 시행

다.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추진 체계

1)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위원회 추진 체계(예시)

가)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

- 원활한 매입형 유치원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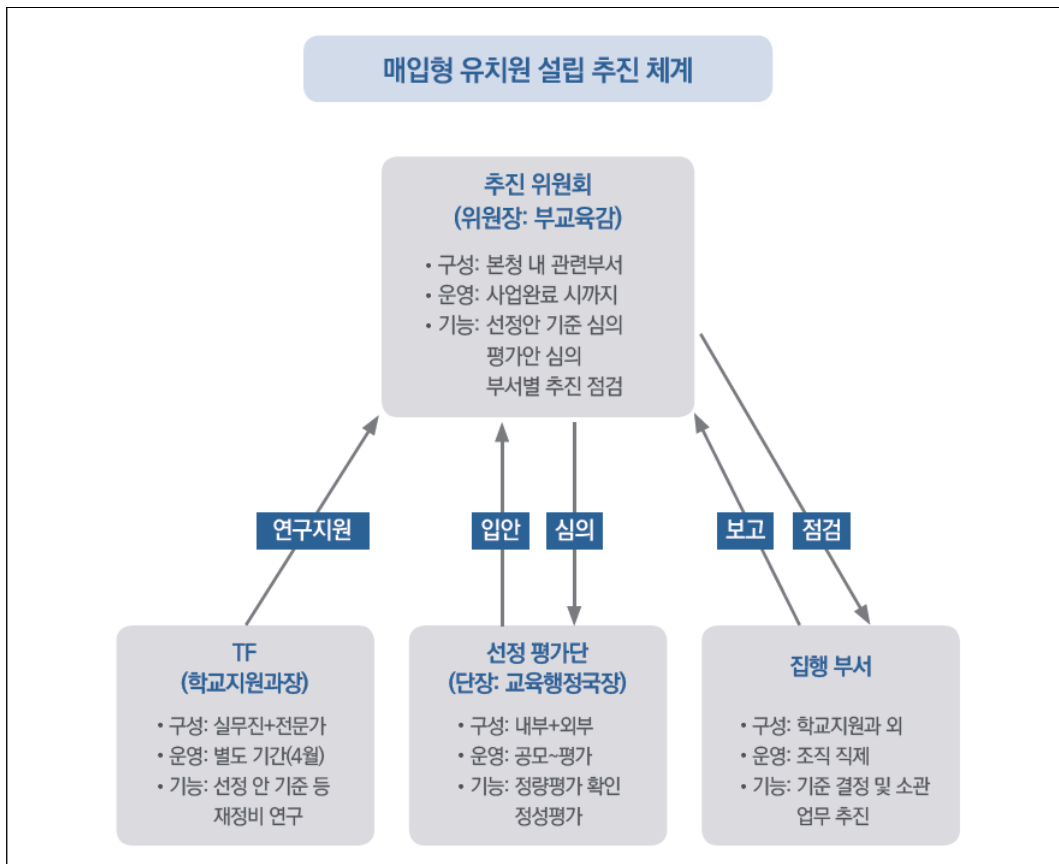
나)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 구성

-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기능별 추진 위원회, 선정 평가단, 집행 부서, 실무팀(TF)으로 기능을 나누어 구성할 수 있음.
- 추진 위원회: 사업 전체를 총괄 점검하고, 선정·평가안을 심의함.
- 선정 평가단: 결정된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담당하며, 선정 평가단은 공모 이후 별도로 구성함.

- 집행 부서: 각 부서별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현안 보고함.
- 실무팀(TF): 선정 및 배점 기준 등의 선정안을 재정비하거나, 관련 안을 검토하고 환류하는 역할을 담당함.

다) 매입형 유치원 관련 업무 추진 체계도

[그림 Ⅲ-3-3] 표본 설계안(예시)



2)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 운영

가)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선정 기준안 및 평가안 심의 및 추진 상황 점검

- 선정 평가단 평가(안) 심의

- 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

나)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 구성(안)(예시)

□ 부교육감 위원장으로 총 11명 구성

〈표 Ⅲ-3-7〉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 구성 예시

구 분	직위	주요 역할
위원장	부교육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 총괄
부위원장	행정국장	매입형 유치원 설립 총괄
설립운영	학교설립부서장	대상 선정 및 설립 추진 총괄
	유아담당부서장	교원임용, 교육과정, 유아모집
재정시설	예산담당부서장	투자심사, 예산확보 및 개교경비
	재정담당부서장	공유재산심의, 감정평가 및 매입
	시설담당부서장	안전진단, 환경개선
지원	인사담당부서장	일반직 임용
	정원담당부서장	공무원 정원
	공무직담당부서장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
	급식담당부서장	급식 인원 및 환경

※간사: 학교설립담당사무관/구성원은 인사 이동 시 해당 부서장 인계

다)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 운영 기간

□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사업 추진 완료 시까지로 설정함.

라)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 운영 방식

□ 전체 회의 또는 진행 상황별 해당 부서 회의

3)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및 재정비 실무팀(TF) 운영

가) 매입형 유치원 실무팀(TF)의 역할과 기능

□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안) 및 평가단 구성(안) 등 도출

□ 내부 공무원, 외부 전문가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

※ 시설 전문가의 인원을 선정심의위원회에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매입형 유치원 실무팀(TF)의 구성 예시

- 학교설립부서장 단장으로 총 14명 구성
- 설립, 재산, 시설 담당 사무관
- 공립 유치원장, 공·사립유치원 부모
- 설립 담당 주무관 등

다) 매입형 유치원 실무팀(TF) 운영기간

□ 약 1개월

라) 매입형 유치원 실무팀(TF) 검토내용

□ 현행 매입형 유치원 선정 및 배점 기준

- 선정 기준: 교사(교지) 소유·이용 형태, 규모 및 충원율, 검토 지역
- 선정 평가단 운영, 선정 및 배점 기준

〈표 III-3-8〉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 주요 검토 사항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정 학급 수 및 연면적: 공립 전환 가능 규모 등 2. 운영 유치원으로 대상 한정 3. 지역 안배: 단설 유 미설치, 공립 부족, 서민 거주 지역 등 4. 안전 점검 등급, 경과 연수, 공용 면적 등 시설 여건 5. 정량 및 정성 배점 6. 정량지표 항목 7. 기타 제외 대상 등 |
|--|
-

마) 매입형 유치원 실무팀(TF) 운영방식

□ 전체 또는 그룹별 회의

- 회의 결과는 매입형 유치원 추진 위원회에 보고 (서면 또는 대면)

4)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 평가단 구성

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단의 기능

☐ 결정된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

나)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단 구성

☐ 내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

☐ 선정 평가단 구성 예시

- 교육행정국장 단장으로 총 15명 구성
- 행정국장 및 설립, 재산, 유아 담당 부서장
- 해당 교육(지원)청 국(과)장
- 외부 전공 교수, 시설 전문가, 공립 유치원장, 유치원 학부모 등

다)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단 운영 기간

☐ 공모 이후 평가 완료 시까지 운영

라)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단의 역할

☐ 대상 유치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인 평가안을 추진 위원회에 안건 상정

〈표 Ⅲ-3-9〉 매입형 유치원 선정 평가단 선정 기준 주요 검토 사항

-
1. 선정 평가 기준에 따라 학교지원과의 정량평가 결과 확인
 2. 현장 방문 대상 유치원 선정 및 방문 일정 논의
 3. 선정 평가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결과 상위 유치원 현장평가(정성평가)
 4.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 평가안: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종합
-

라. 자주하는 질문

Q1. 선정 시 공유부지(대지권 비율)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상 공유토지 분할을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점 처리함).

Q2. 유치원 건물에 용익권(임차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용익권(임차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매입계약 전까지 권리의무관계가 종결되어야 합니다.
예시 : 유치원 건물 옥상에 한전 전선이 올라가 있는 경우, 개원 전까지 한전과 권리의무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Q3.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때, 복합 건물의 경우 매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구도심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원이나 어린이집 같이 위치한 복합 건물들이 많아, 학원 시설 등과 같이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학원, 어린이집 겸용 복합 건물의 경우, 건물 소유자가 학원, 어린이집 소유주와 동일하면 매입 가능합니다. 복합 건물인데 명의자가 다를 경우는 불가하며, 추후 소유주가 정리되면 가능합니다.

Q4. 감정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A: 감정평가 시기는 시·도별로 1~2회 실시할 수 있으며, 탁상감정과 실감정을 나누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회 실시할 경우에는 자체(중앙)투자심사 전과 예산 편성 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Q5. 교재 교구도 승계가 가능한가요?

A: 시·도별 지침에 따릅니다.

Q6. 사립유치원 매입 후,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사립 교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의 사립 교원은 원칙적으로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교직원들과 사립 교원의 취업과 임용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유치원 리모델링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개원 전 방학기간 중에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개원 전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원 후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여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들을 돌볼 공간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매입 유치원 인근 국공립 단설 및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협조 요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IV. 국공립 다양화 정책에 관한 시·도별 의견 수렴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국공립 40% 확충 및 사립유치원 국공립 다양화 정책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음.

□ 조사 내용 및 방법

- 17개 시·도교육청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서면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였음.
- 조사내용은 국공립 40% 확충 현황(국공립유치원 수, 현재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 비율), 2020년 국공립 확충 계획, 국공립 다양화 정책 계획, 매뉴얼 포함 내용, 기타의견으로 나누어 의견을 수렴하였음.

2. 조사 결과

- 16개 시·도교육청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부산시교육청의 경우, 해당 조사 기간 내 자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사에서 제외함).

1) 시·도 교육청의 지역적 특성 및 특수성 고려한 현재 및 향후 중점 정책

구분	내용
서울	○ 공립유치원 취학수요가 높은 곳에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매입형 등) 설립 필요 ○ 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 필요
대구	○ 사립유치원이 법인 전환을 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공공형 사립유치원 운영 희망

구분	내용
인천	○ 인천은 도시개발지역(송도, 청라, 영종 등) 등 신도심으로 유입 인구가 많아 학생 이동이 급격히 쏠리고 있음. 도시개발지역은 초등학교 신설 당시부터 병설유치원을 개원하고 있어 정원 충족률이 높으나, 원도심 지역은 충족률이 신도심보다 낮음. 인천지역은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하여 학생 감소 폭이 낮은 도시지만, 2016년 대비 2022년 유치원 적령 원아 수가 25.6% 감소(2019년 대비 2022년 적령 원아 수는 18.0%)하여 유치원 적령 원아수가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합산 정원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균형이 필요한 상황임.
대전	○ 대전의 원도심(동구, 중구, 대덕구)은 유치원 확충 시설 확보는 가능하나 취원 대상아 수 부족으로 공립유치원 확충 곤란함. ○ 신도심(서구, 유성구)은 취원 대상아는 많으나 시설 부족으로 유치원 확충이 어려운 환경으로 취원 대상아와 시설 확보가 미스 매치되는 실정임. ○ 대전은 인구 감소와 인근 세종시 인구 유출로 인하여 총 인구와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임. ○ 공립유치원 원도심(동구, 중구, 대덕구)과 신도심(서구, 유성구) 간 취원대상 유아 수, 유아교육 기관 수 차이가 큼. 원도심 지역의 경우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을 위한 전용기능교실, 유희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취원 대상 유아가 부족하고, 신도심 지역은 취원 대상 유아는 많으나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확충을 하여도 총원 부족으로 인해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26학급 신증설에도 불구하고, 취원을 증가는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대전 지역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도시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울산	○ 공동주택개발 등으로 젊은 계층의 지역적 이동으로 인하여 유치원 수급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단설 및 병설 유치원 신증설이 어려운 실정임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임
광주	○ 현재 운영 중인 공영형 유치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시범사례 도출
세종	○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인구가 대거 이동하는 도시화 현상과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짐에 따라 읍면 지역의 영유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동 지역 또한 새롭게 개발되는 구역이 아닌 곳은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이에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유치원 간의 학급당 정원을 달리하였으며, 읍면 지역의 경우 학급당 정원을 선제적으로 대폭 감축하였고, 동 지역은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임 ○ 새롭게 개발되는 구역은 공립유치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임. ○ 원도심 유아 수 감소에 따른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경북	○ 공영형, 매입형은 현재 2020년 운영 계획은 없으나,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타당성 검토 중임. ○ 경북 지역은 현재 매입형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유치원 수가 사립 235개원 중 약 20개원(포항, 구미)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원아 수 감소가 예상되어, 분원 설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일부 지역(구미)에서 설립 문의가 있는 상황임. ○ 매입형 유치원은 11개원으로 파악되며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임. ○ 현재 공영형 유치원 추진 계획이 없음.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 유치원 및 돌봄 운영에

구분	내용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음. ○ 경북 지역은 대도시 개발지구(포항, 경산, 구미)를 제외하고는 대상 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단설유치원 설립 또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농산어촌이 대부분으로 공립유치원 472개원 중 331개원이 읍면 지역에 있어 유아 총원이 어려워 총원율이 낮음. 그러나 유아교육을 위해 병설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임. ○ 인구유입지역(포항, 경산, 구미)을 중심으로 단설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되, 분원 기준 마련 이후 필요하다면 소규모 단설유치원도 고려해볼 예정임. 단설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많으나, 경북지역은 대부분이 농산어촌지역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임. 매입형으로 분원을 설립하거나 단설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도가 높음. ○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소규모 유치원 공동행사 활동비 지원-교육과정 행사, 상호방문 수업, 자매결연 활동 운영).
전남	○ 전남은 농어촌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절벽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겪고 있음. 8개원이 2020년 3월 휴·폐원 신청 중임. ○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심에는 공립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추진 중이며, 병설 유치원 학급수는 증설할 예정임.
전북	○ 전주·군산·익산 지역의 유치원 총원율을 높이기 위해 단설유치원 신설을 적극 추진 중임.
강원	○ 강원도의 경우 대부분 농산어촌 지역으로 10명 이하 소인수 공립유치원이 43.6%임 ○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최소 원아 기준 없으며, 낮은 출산율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원아수 10명 이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농산어촌 마을 인근의 여러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강원도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음(등하원 문제, 마을 발전 저해 등) ○ 강원도의 경우 신도심 형성으로 공동화가 진행된 원도심의 유치원 학급수를 줄여 신도심의 유치원을 신증설 하는 방향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음.
충북	○ 충청북도는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52.8%로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등 유치원 운영 계획이 없으며, 사립유치원 또한 공영형, 매입형 유치원 등에 대한 불신 및 인식 부족으로 희망하는 유치원이 없음 ○ 교육부 차원의 설명회, 운영 우수유치원 사례 안내 등을 통해 운영 시 장점 홍보 등 필요 ○ 유아 수 감소 및 신도심의 인구 수평 이동에 따른 유치원 수급 및 유치원 설립 고려 - 공립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있으나, 유아 수 감소 및 신도심의 인구 수평 이동 등에 따라 학급증설한 유치원이 또다시 학급 감축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공립병설유치원은 차량운영 및 돌봄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학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중장기 대응책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확대하여 차량 지원(학부모의 유아 등·하원에 대한 부담감 해소), 돌봄 지원 확대(맞벌이 부부의 유아 돌봄 보장)가 가장 시급함.
충남	○ 농산어촌 소규모 유치원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추진(저녁 돌봄 확대 등)
제주	○ 취학수요가 높고 취원률이 높은 동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수립 예정

2) 공영형/매입형/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반영 내용

가) 공영형 유치원 관련

구분	내용
서울	○ 공영형 유치원 선정·재선정 평가 기준 ○ 공영형 유치원 선정 후 질적 관리 방안(컨설팅, 평가 등) ○ 공영형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안 * 공립 수준의 교육과정과 사립의 특성을 유지·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대구	○ 공영형 유치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실정을 알아야 함. 공영형 유치원을 유아교육에서 담당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경영이나 운영구조를 잘 아는 과) ○ 유치원 정원충족률과 관련하여 구도심 지역에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정원이 줄어들고 신도심이나 활성화되는 지역은 정원이 많이 채워짐. 정원충족률은 주거지, 초등학교의 위치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엮여 있음.
인천	○ 공영형 유치원을 18년도에 시도했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음. 폐원을 앞두고 있는 유치원이 한곳 지원하긴 하였으나 서류, 환경 등 여러모로 부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음. 공영형 유치원 계획이 다시 들어오면서 교육부에서 지원 이전보다 조금 더 해주겠다고 했으나 크게 변하지는 않았음. 공영형 유치원을 하는 경우 학부모들이 납부할 교육료가 10만원 정도인데, 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음(방과후 과정 등의 문제). 또한 다른 공립에 비해서 공영형 유치원이 시설 부분에서 열악하므로 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영형 유치원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폐원하려고 했던 원을 소생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 등으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무리하게 추진하고 싶지 않음. 단설은 아무래도 통학권역이 넓어져서 차량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병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음. ○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후관리(이후 들어가는 예산 인력)가 중요함. 교육부 등에서는 처음 1,2년만 지원해주고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함. 그러므로 좋은 정책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예산 인력이 중요함
대전	○ 대전은 총 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 유치원 시설 확충에 비하여 취원율이 저조한 상태임, 향후 시설 확충과 더불어 공립유치원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 ○ 공영형 유치원의 지속가능 방안 ○ 교직원 처리 대책(신분, 퇴직시 대책 등) ○ 사례별 Q&A 혹은 추진, 해결 사례
경기	○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관련 공공기관 임차 협의가 있었으나, 임차 가능한 실 부재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이 무산된 사례가 있음, '공공기관'에 임차하여 운영하는 규정을 어린이집처럼 공공주택단지 내 교육시설을 장기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 필요, 현재 임대유치원 불가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방식의(예산지원) 장기임대유치원 유형의 유치원 검토 필요 ○ 경기도 매입형 유치원 14개 원 중 용인지역 3개 원 설립 추진(2020.3월 개원), 향후에도 매입형 유치원 설립 추진 예정

구분	내용
경북	○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3년 한시적 지원 후 재원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공영형 유치원 추진계획은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경북의 특성상 해당되는 유치원이 몇이나 될지 의문스러움. 원아 수가 많은 운영이 잘되는 유치원도 좋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유치원도 정책에 담아 다양한 유치원이 모델이 되었으면 함. ○ 현재 사립유치원들은 공영형이나 협동조합형으로 전환하고 싶어함. 원아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이기 때문임.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확충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김. ○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상 농촌, 산간지방이 대부분임. 때문에 인구 수가 적으며, 공영형을 했을 때 과연 국공립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 의문임. 현재 유치원 다양화 정책은 서울·경기지역에 국한되어 기획한 것 같음. 교육부에 경북 지역에 현재 규정에 해당되는 유치원이 몇 개가 있겠냐 말씀드리기도 함. ○ 한시적 교부금은 3년이 끝나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 또한 부담이 큼.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확충에 있어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큼. 관련 인력충원 및 거점 만들기 등이 선행되어야지 지금의 정책을 각 지역교육청이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지금도 법인화하겠다는 유치원은 평소에 투명하여 운영을 잘 하던 유치원임. 그런데 정작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던 곳이 매입형을 주장함. 김천에 있는 곳은 처음에는 10학급을 하고 싶었는데 6학급까지만 허가가 나서 6학급을 하고 있음. 그랬더니 본인이 계획했던 예산에 맞지 않게 되며 손해가 날 것 같자 매입을 해달라고 함. 만약 분원이 허가되면 해당 원의 시설이 좋아서 매입대상이 될 것이나, 다른 곳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고 때문에 매입이 어려울 것 같음.
강원	○ 공영형 유치원의 법인 전환 절차 ○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3년만 지원됨을 명시 ○ 공영형 유치원 선정 관련 공통된 매뉴얼 필요 ○ 다음과 같은 문제점 해소 필요 -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3년 후, 자체예산이 필요하여 재정적 부담 발생 - 특정 사립유치원에 치우친 예산 지원으로 다른 유치원과 형평성을 침해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약정 해지 되면, 불이익은 원아 및 학부모에게 돌아감(원비 상승 등)
충북	○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운영에 관련 경영자, 교사, 학부모 기타 등등이 궁금해하는 세부적인 Q&A 자료집 등이 담겨지면 좋겠음. ○ 운영 우수유치원 사례 등
충남	○ 지역별 균형, 유아 수, 경영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추진

다) 협동조합형 유치원 관련

구분	내용
경기	○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절차 간소화 및 설립 절차 구체화 필요 - 협동조합형 유치원 개념을 유치원 재원생 대상인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명시화 필요 - 사립유치원 인가 절차 안내 -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설·설비·교구

구분	내용
	기준 갖추어 설립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 임차 가능 기관을 어린이집처럼 주택단지 내 교육시설을 장기임차하는 방법이 필요함) ○ 매뉴얼에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회계 운영 예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법인 설립 절차, 유치원 유형별 지원금/보조금 지원 내용, 유치원 운영시 지켜야 할 관련 법규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화성시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여 설립이 진행되고 있으나, 매뉴얼이 없다보니 담당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임. 또한 공공시설을 유치원 부지로 내줄 때,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음.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는 지역적 특성상 국공립유치원이 이미 많아, '굳이 그 시설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지어야 하나?'라는 의견들도 있음. - 20년 3월 개원 추진이나 현재 어려움이 있음. 조합원을 모집해서 설립계획까지는 왔으나 조합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음. 40가구라고는 하는데 현재의 실 참여 가구는 미지수. 또 사립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으로 유치원 설립을 해야 하는데 운영비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여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함. 그러나 특혜사비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려움. - 처음부터 예산이 어렵다고 조합원들에게 고지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가능하다고 하여 추진하였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함. 그러나 사립을 한 곳만 지원할 수 없고 설립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설립할 당시의 돈을 지원하지 않음. 설립 이후 운영비 교재 교구비 지원은 가능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준비가 탄탄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시작부터가 태생적 한계가 있음. 또한 노원과 비교했을 때 조합원비의 진입 비용이 너무 높음. 법적인 부분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었지만 진입장벽이 높으며 담당 공무원의 부담도 매우 큼. - 유치원 설립을 할 때 교육환경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평가를 통과하는 게 어려움. 요건에 맞는 땅을 찾기가 힘들. 매입형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반대임. 차라리 단설을 짓는게 낫다는 판단됨. 기준에 맞지 않는 걸 계속 하다보니까 유치원 부지 공간도 나오지 않고 감사받으면 걸릴 수 있는 사항들이 생김. 이러한 신규사업을 위해 인력을 지원해주거나 전담직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이 부족함. 사립유치원이 100개가 넘으나 현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함.
경북	○ 협동조합형 설립 시 교육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지역에서 답변을 해주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도 세부적으로 명시될 필요성이 있음.

나) 매입형 유치원 관련

구분	내용
서울	○ 공립 취학수요를 반영한 공립유치원 확대 - 공립유치원 취학수요가 높은 곳에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매입형 등) 설립 ○ 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 필요
대구	○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마지막 공식 퇴로로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사학을 팔 수 있다는 공식 루트를 제공해주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부정적으로 생각함. 현재 매입형 유치원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함.

구분	내용
	-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초중고 사립은 모두 지원되나, 유치원은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음. 사학도 사립 교원인데 유치원은 사립과 국공립 간의 처우가 너무 달라서 지원이 어려움. 유치원을 매입하는 경우 사립 교사의 처우 보장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단설유치원을 증설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학생 수와 관련함. 현재 초등학교의 인가도 10년 이후에도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을 내주고 있음. 현재 추이 상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초등학교가 있어야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음. 단설은 기존에 이미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단설을 늘리기 어려움. -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할 때 어려운 점은 반대세력이 너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음.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시설 여건 등이 있으며 외부 요인은 사립유치원들의 반대가 있음.
인천	- 원아 수와 관련하여 구도심에 대한 고민이 있음. 현재 학령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원아 수 또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국공립을 신설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 하려고 하지만 3~4년이 지나버리면 주변 원아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사립까지 다 잠식할 가능성도 있음. 매입형 유치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구도심에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 지 시기상조라 생각함. - 원아 수가 줄어 사립유치원만 폐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의 존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사립유치원 폐원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립유치원 폐원 전 감사 같은 필수적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함. 이외의 절차적인 부분이 간소화되면 전체 총원률 자체가 2~4%까지 충분히 오를 것이라 생각함. - 규모가 큰 유치원들은 원아 수가 30~40명이 빠져도 문제가 없으나 100명 미만의 유치원은 원아가 조금만 줄어도 타격이 있고 이런 곳이 폐원하면 원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받게 됨. 이런 이유로 현재 쓰고 있는 유치원을 생계나 생존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쉽게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됨.
대전	- 매입형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고용 승계, 퇴직 시 처리문제에 대한 지침이 명확히 담겼으면 함. - 사례별 Q&A 혹은 추진, 해결 사례 - 매입형 유치원 선정 후 유치원에서 취소 시 제재방안
울산	매입형 유치원 매뉴얼 업무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선정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시설의 규모 및 예산 반영 등)
경기	- 매입형 유치원 설립 추진 시 개선될 사항 (신청 전 학부모 동의 반드시 필요) 선정 후 학부모의 반대로 인하여 매입형 유치원 취소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 (매입형 유치원 설립 행정절차 준비 기간 1년 이상 확보 필요) 현재 6개월 동안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상당 기간 설립 검토 기간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1년 이상의 행정절차 준비 기간을 확보하여 설립할 필요성이 있음 (감정평가대상의 세부 기준 명확화) 지역청별 감정평가 각각 의뢰 시, 감정평가대상의 기준이 모호하여 유치원 간 잡음이 발생하므로 도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대상(공작물 및 비품 등)의 세부 기준을 명확화* 필요 (예시) 비품의 경우,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내용연수 3년 이내의 물품 (감정평가용역의 일괄 입찰 실시 필요) 선정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하여 도 교육청에서 감정

구분	내용
	평가영역을 일괄 입찰하여 의뢰함으로써 유치원별 감정평가 기준의 일반화 - (조기 계약체결 필요) 확약 체결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동의 절차 생략 필요) 매입형 유치원은 국가 정책상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폐원 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폐원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징구하는 학부모 동의서는 매입형 유치원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매입형 유치원 추진시 문제점 - (기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반대) 유치원의 매입신청 전 학부모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어 실제 용인의 매입형 유치원 1개원 학부모 반대로 인한 취소 요구 사태 발생 ■ 주된 반대사유 ○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불만족) 교육과정 시간이 끝난 후에만 차량운행 되고, 방과후 과정 끝난 후에는 통학차량이 미운행되며, 차량 대수를 축소하여 운행범위가 한정될 수 밖에 없는 등 기존 사립유치원의 재원생을 고려하지 않은 차량 지원 ○ (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기준의 차이) 유아모집의 우선순위, 방과후 과정 신청 자격 등 공·사립유치원 간 유아모집 기준의 차이 ○ 공·사립유치원간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포함) 및 교사의 질(서비스)의 차이 ☞ 학부모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공·사립 유치원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사의 직무능력향상 및 친절한 바른 인성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에 대한 다양화, 통학차량지원 대책, 돌봄서비스 확대(방학, 방과후)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공립유치원 전환 준비기간 부족) 선정 후 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한 행정절차*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행정업무 처리 어려움 ※ 현재 매입형 유치원 설립절차(6개월 소요) ☞ 감정평가 및 건물 안전진단점검 실시(2019.8월 중순 ~ 9월 중순) → 학교설립계획 심의(9월 말) →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10월 초) → 공유재산 심의(10월 초) → 유치원명 선정(10월 중순) → 신설유치원 설립사무취급교 지정(10월 중순) → 학부모 설명회 개최(10월 말) → 확약체결(11월 초)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11월 말) → 예산편성 심의(11월 말) → 계약체결(2020.1월 중) → 개원 준비(1~2월) ※ 행정절차 개선요구 사항(1년 이상 소요 예상) ☞ 도교육청의 감정평가 용역 일괄 입찰(1개월 소요) → 감정평가 및 건물 안전진단점검 실시(2개월 소요) → 학교설립계획 심의(1개월 소요) →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2개월 소요) → 공유재산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예산편성(2~3개월 소요) → 계약체결 → 유치원명 선정(1~2개월 소요) → 신설유치원 설립사무취급교 지정 → 개원 준비(2개월 소요) - (감정평가 대상 기준 모호) 사적 재산을 매입함으로써 유치원에서는 감정평가금액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청에서 감정평가를 각각 의뢰 시, 감정평가 대상 기준이 모호하여 유치원과 지역청 간 잡음 발생 ○ 사립유치원이 폐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하면 국공립 40% 확충은 쉽게 되지만, 폐원을 한다고 해서 유아들이 공립을 간다는 보장도 없음. 사립학교처럼 들어온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전환이 안 됨. 사단법인은 의미가 없고 학교법인은 까다롭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굳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영형 유치원이 좋지만 원장들이 거부함. 법인 해산시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내 것이 뺏긴다고 생각함.

구분	내용
	-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매입형을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 '매입형 유치원을 지원했다가 기준에 미달되어 떨어진 유치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걱정함. 매입형 유치원을 지원했던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함. 또한 유치원이 매입되면 기존의 교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혼란스러워함. 때문에 유보기간을 두고 달라지는 점(특성화, 버스 등)을 적응하게 하려하나 아직까지 미흡함. - 용인지역은 단설 공립 유치원이 없어서 부모들이 단설의 운영 방식을 병설유치원과 동일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용인지역은 단설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음. 화성은 단설유치원이 많음. -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사립->공립으로 바로 전환되서 방과후 하는 원아들이 2/3부터 바로 공립으로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시설공사를 할 수가 없음. 시설공사도 절실히 필요함. 장애인 화장실, 급식소 등. 기간 확보도 충분히 필요함. 졸업을 1월에 하고 공사를 하는 방법과 인근 단설유치원에 가는 방법 등을 생각해 봄. 이런 문제는 후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함. - 교육부 매뉴얼에 감정평가시 제시하는 기준이 있긴 하나, 잘못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태임. - 서울은 유치원을 매입하며 건물, 토지 비품 전부 매입하였는데 나중에는 폐품이 더 많았음. 그래서 경기도는 비품은 안 한다고 조건을 걸었으나 유치원 측에서는 비품까지 매입할 것을 계속 요구함. 그리고 감정평가에 대한 자세한 기준도 달라고 하고 있음.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서 유치원을 팔지 않는다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음. -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시설도 노후된 상태에서 비품까지 노후된 것을 사용할 경우 교직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음. 또한 특성화 교육과 관련된 교구들(몬테소리, 레지오에밀리아 등)은 누리과정과 맞지 않는 교구라 사용하지 않게 됨. - 단설유치원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비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에 맞는 부지를 찾는 것이 힘들기 때문임. 또한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과의 상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 40% 확충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서 하는 것임. 부가적으로 사립과의 상생이라는 이점이 따라올 수는 있으나 국공립 40% 확충이 우선. - 학급을 늘려서 병설형 단설을 추진하기도 함. 당초 5학급을 10.11학급까지 늘려 단설 유치원으로 추진함. 파주운정지구에서는 아예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설계하고 들어가고 있음. 총 6개 추진하고 있는데 2개는 확정된 상태임. 나머지는 향후 활성화되면 지어지며, 만약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병설로(변수: 인구수, 유입 등) 동태를 살펴가며 진행할 예정임. - 병설형 단설유치원의 장점도 있지만 기관장이 2명이다보니 마찰이 생기는 단점도 있음.
경북	○ 매입형의 경우 사립유치원 교직원 실직 우려로 국공립 기간제교사 준용하여 희망시 단기(1년) 고용승계 검토(유예기간 부여) ※ 공립유치원교사는 국가 임용고시로 선발 - 사립유치원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진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유아모집이 중간 정도되며 향후 기관 운영에 손해를 볼 것 같은 곳이 매입형을 지원하려고 함. 그러나 돌봄이 확충되지 않는 한 부모들은 돌봄이 충족되는 사립을 원함. 매입형으로 가면 부모들은 주변 사립으로 가니까 결국 사립유치원의 원아가 늘어남. 그러므로 매입형으로 갔을 때,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손해가 없음. - 총원률이 작년에 비해서 2.3%정도 증가가 됐으나 40% 달성을 어렵다고 보고 있음. 폐원문의가 들어오고 있긴 함. 에듀파인을 도입하며 이에 대하여 반발하고 자신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폐원하겠다고 원장들도 있음. 폐원이 되면 공립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일년에 최소 5%씩 증가시켜야 하는데 돌봄 확충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는 어려움.

구분	내용
	- 그나마 잘되는 유치원을 사서 매입할 경우, 국공립 40% 확충을 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 1학기 학급편성 결과를 보고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함. 매입기준을 따져봤을 때 235개의 사립유치원 중에 기준에 맞는 유치원은 20개이나(10% 미만) 운영이 정말 잘되는 유치원은 팔 생각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부합하는 유치원은 10개 정도임. 또한 유치원 쪽에서 먼저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먼저 기준이 되는 유치원을 정해놓고 해당 유치원만 매입을 하는 방법이 되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정작 매입을 원하는 유치원은 문제가 있는 곳이어서 살 수 없음. ○ 매입형의 가장 큰 탈락 기준으로 시설을 꼽을 수 있음. 휴폐원은 대상이 아니라 운영 중 인원이 대상이며,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기간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시설의 수리 기간이 너무 부족함. 게다가 사립은 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리가 필수적임. 차라리 이정도면 단설 짓는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옴.
강원	○ 도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추진 시, 도내 5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도 부지 5,000㎡ 정도가 있어야 가능함.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학급수가 적으며, 최근 신설 유치원도 부지나 건물 면적이 적어 공립유치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건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최소 6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 재원아 재배치 문제가 있음. ○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매입형 유치원 법적 근거에 따른 전국 공통 매뉴얼 필요 ○ 매입형 유치원으로 공립 단설유치원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분원의 형태 등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교재교구 인수 여부, 범위 적시 필요 ○ 휴·폐원 예정 유치원도 매입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개선사항 및 추가의견

구분	내용
서울	○ 공립유치원 충원을 지속적 감소: 교육서비스 질 개선으로 경쟁력 향상 필요 - 에듀케어반 확대, 특성화 실시 등 ○ 공영형 유치원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립의 거부감(재산 박탈 등의 오해), 공영형 참여 조건 부담 등의 사유로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대구	○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해도 유아모집이 잘 안됨 ○ 공공형 사립유치원 운영 확대 필요 ○ 취학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을 계속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 됨. ○ 병설유치원 증설을 해도 유아모집이 잘 안됨 ○ 초등학교에 건물 1층에 유희교실이 없어 병설유치원 증설하기가 매우 힘들
인천	○ 공립유치원 확충을 향후 원아 수 감소 추세 고려 필요, 원도심 지역의 공립유치원 신설에 대한 주변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국공립 40% 확충 목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해년도 모집 비율인데,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어 들고 있음.(16년도 대비 19년도 25% 감소) ○ 공립유치원을 55개 늘렸음.(신도심지역 15개, 40개 원도심에 증설함) 신도심 지역의 경우 병

구분	내용
	설유치원이 더 필요함. 현재 5학급씩 인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1학급 정도 더 늘려 인가하는 것을 고려 중임. ○ 단설유치원을 8개 신설 계획이며 병설은 초등학교 17개교 설립예정 안에 5학급씩(특수포함)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정임. ○ 인천의 경우 대규모 개발지역(송도, 계양, 영종 등)이 많아서 단설 및 병설 설립계획이 예정되어 있음. 서구 쪽은 자잘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신설이 많으며, 검단 지역만 해도 6개(단설) 설립 예정임. 사립유치원에 대한 계획은 없음. ○ 송도 같은 경우도 개발 지역이 커 단설 부지만 5개가 있음. 22년까지는 국공립 40%를 맞추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다만 균형발전에 있어 고민이 됨. 현재 국공립이 늘어나는 비율은 신도심이 대부분임. 올해 55학급을 확충하였는데,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권에서의 확충이다보니 주변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심함. 사립유치원과 상생도 필요함. ○ 원아가 줄어들면 자연히 유치원은 줄어든 것임.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음. 이는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선택과 행동을 기다리는 것임. 2023년 정도가 되면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함.
대전	○ 유치원 시설 확충과 아울러, 프로그램 질 제고, 통학지원 서비스 확충, 돌봄교실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영역 범위를 정해주었으면 함 예) 어린이집 0~3세, 유치원 4~6세 등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 기반확보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은 필요하지만,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만3세~만5세 유아 공통교육 과정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준하는 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돌봄시간 연장, 통학버스 확충,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제고 등)이 공립유치원 취원을 증가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매입형 유치원 추진 중 기존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 학부모 반대한 신문기사)
울산	○ 단설유치원 필요지역에 학교용지 미제공 따른 신설 유치원 개설 어려움 ○ 과밀학급 등 학교 공간 부족으로 병설유치원 개설 어려움 ○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매입한 사립유치원의 시설과 공립유치원에 요구되는 시설의 차이가 현저히 남 (ex, 급식실 등). 공립 수준으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비 등 예산 부담이 매우 큼
세종	○ 단순히 국공립유치원의 공급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 시설의 다양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사의 전문성 증진 등의 방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지방교육자치의 한계) ○ 현재 확충한 공립유치원도 합계출산율 감소에 따라 결원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공립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한 「유아교육법시행령」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개발 구역은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의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불필요한 공립유치원 설립을 강요하게 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여지가 다분함. 우리 지역의 경우 일부 구역이 시간 차이를 두고 개발되고 있는데 이미 개발된 곳의 유치원 결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의 조문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바로 옆동네에 유치원을 설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렇게 된다면 출산율 감소에 따라 유치원 결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조문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관 부처가 달라 교육·보육 기관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문제가 있으며,

구분	내용
	이에 따라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 소관 부처 간의 협의회를 구성을 법제화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유치원 확충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허가 기관인 교육청과 시청이 협력하여 무분별한 시설이 난립되지 않도록 세종시 3~5세 인구수를 고려하여 수요를 감안한 시설의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확충 계획을 조율할 필요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로 인한 행정적 낭비, 학부모의 혼란과 불편, 교육과정 파행운영, 소모적인 유아모집 경쟁 및 갈등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필요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 필요
경기	- 유치원 설립을 위한 유형별 사전 준비 절차(유의점 위주로) - 각 유형별 유치원 설립 절차 및 시설 기준 ○ 단설 공립유치원은 학교용지특례법 미적용되어, 부지 비용 과다발생하여 설립 추진에 어려움 있음, 용지법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법을 조속히 개정해주거나, 초등학교 부지 내 설립하는 병설형 단설유치원은 용지법 적용 명시화 필요함. ○ 공립유치원 중점 개선 사항 -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 과정은 1~3실 운영하고 있어, 방과후 과정 미선정시에는 공립유치원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방과후 과정을 확대 편성하거나, 지역사회 연계, 예외적 고용 검토(한시채용) 필요,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연장, 긴 방학 대한 대책 필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함(방과후 조기 하원 후, 학원 이용 원아들이 많음) - 통학차량 확대: 사립유치원은 97% 통학버스 운행, 공립유치원 20%대이며(운행하던 통학차량도 관리 및 고용 문제로 이후 연수가 지나면 재신청하지 않고 통학차량 중단하는 경우 있음) - 유치원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이 커 설립 시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학교용지법 개정이 필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의 총원임. 여러 요구에 있어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도와주지 못함.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인력 지원에 있어 본청에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지원청에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 진흥원에서 지원을 하려면 모든 도시에 진흥원이 생겨야 하며 일부 지역에 생겨서는 소용이 없음. 그리고 진흥원은 교과과정에 지원을 줄 수는 있으나 설립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진흥원의 설립보다는 각 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국공립유치원을 일시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반대. 앞으로의 유아 인원의 추이도 고민해봐야 함. 파주는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의 인구 격차가 심함. 공립의 정원충족도 어려우며, 사립도 원아 수가 계속 줄어지고 있음. 또한 부모들이 혼합반을 선호하지 않음. 통합과 관련해서도 초등통합을 작년에도 했는데, 이는 지역의 반대가 심하면 이루어지기 힘들. 학교 통합이 가능했던 건 두 학교 간의 거리가 1km도 차이가 안지 않아서 가능했으나, 학교 사이의 거리가 그 이상 멀어지면 더욱 어려울 것이라 예측함. - 매입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무작정 국공립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매입형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음. - 장기임대형 유치원은 들어가는 금액 엄청남.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금액은 1500만원이 최대인데 사립은 5000만원을 생각함. 이를 각 시도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움. 차라리 병설을 짓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권한 밖임. - 지역에 아이들이 없는 어떤 형태의 유치원도 의미가 없음.
경북	○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확충만 하는 것은 향후 교원 인건비, 시설비 등 교육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음. ○ 통폐합 세부 기준 및 통폐합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향후 교원 수급 등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구분	내용
	○ 사립유치원의 반발 ○ 도심지의 부지 확보가 어려움.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공립유치원이 그 원아들을 유치원으로 데리고 올 만큼 장점이 있을지 의문임. 또, 작년에 계약연기 사태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원아들이 이동한 상황임. - 병설유치원은 정원이 미달이나 단설유치원은 경쟁률이 엄청남. 국공립도 병설이 안되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단설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서울, 경기도와 같은 지역과 동일하게 하라는 건 어렵다고 생각함.
전남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지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함. 교육문제 이전에 지역문제이고 학교는 지역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교육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전북	○ 향후 원아 수 급감이 되고 있어, 농어촌 학교는 원아 수 유지가 어려워 휴원 및 폐원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조건 공립유치원 확충만 하는 것보다 원아 수 감소를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강원	○ 국공립 확대와 관련하여 병설유치원 확대 시, 직장을 가진 엄마들은 병설유치원을 보낼 수 없음. 아침 돌봄 및 저녁 돌봄이 동반되어야 병설유치원 취원율이 향상될 것임 ○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공립에 맞게 적용해야 함 ○ 유치원 시설 현대화와 신증설 등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부분일 뿐임 ○ 공공성 강화, 질 제고를 위해 원아에 대하여 보육과 교육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함. ○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공립유치원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충북	○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화도 필요하나, 현재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및 관리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기존의 사립유치원의 시설 상황(보통교실 면적 및 유휴실 등)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 많아 실제 교육청에서 매입 가능한 사립유치원은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음 ○ 협동조합형 형태의 유치원의 경우 저출산 현상의 가속화로 인한 취원 대상아 수 감소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 지역의 특성상 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원도심 및 시 지역의 경계지역, 군지역의 경우 읍,면 소재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유치원이 많음(해당 지역의 취원 대상아수가 매우 적음) ○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화도 필요하나, 현재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및 관리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학부모 의견 수렴 시 국공립 단설유치원 확대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단설유치원 확대 요청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단설유치원 확대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다양화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충남	○ 2020년 유아모집 결과 분석을 해 보니 공립유치원 유아 취원률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공립 병설 유치원을 재배치 및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임. 매우 급박한 상황임

3. 소결

- **농산어촌을 포함하는 지역의 경우**, 인구절벽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겪고 있으며 원아 수 급감이 진행되고 있음. 농어촌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은 원아 수 유지가 어려워 휴원 및 폐원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정책도 중요하나, 원아 수 감소를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임.

☞ 정책고려사항

-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의 퇴로 정책인,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매입형 유치원 등의 정책을 시도 사정에 알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광역시 및 시도 구도심의 경우**, 원아 수 자연 감소의 문제를 겪는 지역들은 국공립유치원 정원도 다 차지 않는 실정임. 인천의 경우에도 유치원 적령 원아 수가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합산 정원을 고민하는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정책고려사항

- 추후 유보 통합 논의 가속화 될 수 있음(유치원+어린이집 포함한 유아 배치 고려)
 - 국공립 통합할 정책 및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 정책 논의 필요
 - 택지개발지역은 과밀, 구도심은 인구절벽으로 유치원 재구조화 정책 필요
- 질높은 국공립+사립유치원 상생 발전을 방안을 위해 교육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는 정책 필요
 - 유아 대 교사 비율 낮추기, 공공성 높은 우수 유치원 인센티브 및 지원 사업 등

- **‘공영형 유치원’ 확산이 어려운 이유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임. 교육부의 공영형 유치원 3년 약정이 종료되면, 시·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시·도교육청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함. 또한 현장에서는 공영형 유치원 등의 정책 아이템보다 퇴로 이후 전환 업종, 당장 시행해야하는 에듀파인 현장 적용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함.

☞ 정책고려사항

- 공영형 유치원 유형 개발로 잔존 유치원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 전략 필요
 - 예시: 공영형 1유형(법인), 2유형(사인+기존법인), 3유형(협동조합형) 등
 - 유형에 따른 재정차등지원, 1유형으로 유도
 - * 공영형 유치원 정책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중, 정책우선순위임(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다양화 모델 연구, 2019).
- 공영형 유치원 정책은 추후 건강한 사립학교의 기본 틀을 세우고, 의무교육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안착과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성과평가 등 추후 연구 진행, 공영형 유치원 단계적 실행 방안 구축 필요

-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고용 승계, 비품 매입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많음.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명확한 매뉴얼이 없어 조합원 뿐만 아니라 담당자 또한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인력을 늘린다면 본청이 아닌 각 지원청에 추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정책고려사항

- 매입형 유치원 교원고용승계 및 비품 매입은 매뉴얼에 불허함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 홍보가 필요함.
 - 매뉴얼 배포 이후,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홍보를 통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국민들에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 연수 및 홍보(교육청, 지원청 단위)
- 인력 지원, 교육청(유아과/학교설립과 등)내 칸막이를 극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TF 등 구성 필요, 교육청 및 지자체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마련 필요

- 공립과 사립의 차이점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인구감소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유아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돌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 마련 필요. 각 지역의 특성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모델의 유치원과 돌봄 운영 정책이 필요함.

V. 정책 제언

1. 국공립 다양화 운영 정책 방향 및 과제

- 1)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 및 인구변화, 어린이집 수요, 사립유치원 퇴로 및 공사립 상생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국공립 다양화 정책은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 비율 40% 확충 정책, 시도별 인구변화 및 국공립유치원 통폐합 정책, 어린이집 수요, 사립유치원 퇴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함. 즉, 국공립 통폐합 정책, 사립유치원의 퇴로 정책인,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 매입형 유치원 등의 정책을 시·도교육청에 알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택지개발지역은 과밀, 구도심은 인구절벽으로 유치원 확충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택지개발지역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정책에 집중하고, 구도심은 사립유치원과 상생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나가야 함.
 - 인구 과밀 지역의 경우, 학교의 공간 부족으로 병설유치원 설립이 어려우므로, 공영형,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농산어촌의 경우, 저녁돌봄 수요가 있는 소규모 유치원들이 많음. 이에 공립 병설 유치원을 재배치 및 통합 정책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함.
 - 단설유치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신설 유치원 개설을 가능케 해야 하나, 불필요한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개발구역은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의 유치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 부처가 달라 교육과 보육기관이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으므로, 부처간 협의체 구성을 법제화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유아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질높은 국공립+사립유치원 상생 발전을 방안을 위해 교육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함.

- 국공립유치원 질 제고 방안(혁신, 교육자치)과 함께 조율되며 진행되어야 함.
- 유아 대 교사 비율 낮추기, 공공성 높은 우수 유치원 인센티브 및 지원 사업 등 진행 필요
-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돌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국공립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 2018)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 마련 필요. 각 지역의 특성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모델의 유치원과 돌봄 운영 정책이 필요함.
- 기존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3법 시행 시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함. 예컨대, 아파트 공유지분 문제로 급식법 시행이 어렵다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한 인력 지원의 문제, 행정지원인력의 ICT 역량 강화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함.

2) 공공성 가치를 실천하는 국공립 다양화 및 공공성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국공립 다양화 매뉴얼 배포 이후, 국민들에게 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의 역할과 가치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성과에 대한 라디오, 광고, 카드뉴스, 누리집 등의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3)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를 통한 국공립 다양화 정책 개선 필요

- 국공립 다양화 정책에 관한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성과를 누적하고, 환류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함.

4) 공영형 유치원 정책 방향 및 과제

□ 공영형 유치원 사업의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 사인 유치원들이 공영형 유치원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의 지속가능성 때문임. 현재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나, 유아교육법제에 포함하기는 무리가 있는 실정임. 이에 각 시·도교육청별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대한 법제화(조례제정)를 권장하고,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영형 유치원 유형의 다양화, 재정지원 차등화를 통한 공영형 유치원 외연 넓히기

- 공영형 유치원 유형 개발로 잔존 유치원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 전략도 고려 가능

* 예시: 공영형 1유형(법인), 2유형(사인+기존법인), 3유형(협동조합형) 등

* 유형에 따른 재정차등지원, 1유형으로 유도

- 법인화가 어려운 소규모 사립 사인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공영형 유치원의 모델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차등화하여 일반 유치원의 공영형 유치원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협동조합형 유치원들이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오해(개방이사제도를 통한 교육청의 개입 우려 등)를 줄여나가도록 함.

□ 공영형 유치원의 정체성 확립: 성장, 공공성, 자율과 자치, 혁신 등의 선도적 가치 내재화

- 공영형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을 결합한 형태의 유치원이므로, 국공립유치원에서 기대하는 공공성과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이에 성장, 공공성, 자율과 자치, 혁신의 키워드를 내재화하고, 일반 유치원들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함.
- 기존의 공영형 유치원들의 조직 운영에 있어 민주성, 참여성, 공공성 등의 가치를 내재화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유치원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함. 교육과정과 교직원 운영원리에 있어 함께 더불어 커가는 공동체 교육을 강조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악하고, 공영형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시범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 속에서 성장, 발전시켜, 유아학교 시스템 속에서 다양성을 살리고 건강한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핵심임.

□ 교육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준공영형 유치원 체제 마련: 특수학급 추가,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체제

-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공성을 선도하는 유치원으로, 선정지표, 또는 재선정 지표에 교육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공헌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나갈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과 학급배치를 고려하여 특수학급을 늘리고,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층 유아들을 적극 수용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함.

5) 협동조합형 유치원 정책 방향 및 과제

□ 협동조합형 유치원 사업의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현존하므로,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재원생 대상인 유아를 둔 보호자

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보고, 이를 유아교육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업무 컨트롤타워 및 부처 간 협업 구조 구축

-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관련 공공기관 입차 협의가 가능한 교육청, 부처의 실 구성이 중요함. 또한 여러 부처와의 공동협업이 필요한 유치원이므로, 이를 관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필요함. 지원청 수준에 관련 업무에 대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 설립 초기 지원 정책에 집중 필요

- 공공기관에 입차하여 운영하는 규정을 어린이집처럼 공공주택단지 내 교육시설을 장기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임대 유치원은 불가이나,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임대가 가능하므로, 장기임대유치원 유형의 유치원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절차를 과감히 간소화해야 함. 부모가 중심이 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유치원 설립 시 교육청의 도움없이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법인으로 학교법인과 차이가 있음. 이에 유치원 회계와 법인회계의 분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6) 매입형 유치원 정책 방향 및 과제

□ 국공립유치원 질 제고 및 유연한 제도 도입

- 매입형 유치원을 부모가 반대할 경우, 유치원과 교육청은 어려움을 겪게 됨. 매입형 유치원을 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불만족, 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기준의 차이, 방과후 과정(돌봄) 및 서비스의 차이 때문임.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차량지원 대책, 돌봄 서비스 확대, 교육과정의 질 제고, 교사의 직무능력 향상 및 친절한 태도 개선 등이 필요함. 매입형 유치원 설립 추진시 부모들의 동의를 받도록 권유하는 충분한 이해과정이 필요함.

□ 매입형 유치원 관련 기준 설정 필요

- 매입형 유치원 선정 후 유치원에서 취소 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런 이유로 애초 충분한 설명과 이해과정이 필요함.
- 매입형 유치원 교원고용승계 및 비품 매입은 매뉴얼에 불허함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 홍보가 필요함.
- 매입형 유치원 설립 추진 시 부모들의 동의를 받도록 권유하고, 매입형 유치원을 진행시

1년 이상의 행정절차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매입형 유치원 분원 법령 마련

-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 유치원이 많으므로 매입형 유치원을 분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마련이 필요함.

2.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및 컨설팅 관련 정책 방향과 과제

□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정책들이 안착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음. 이를 통해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함.

□ 추후 시도별 다양한 사례들을 매뉴얼에 포함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편의를 도울 필요가 있음.

- 초기 매뉴얼 개발 시, 연구진 회의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사례들을 Q & A에 포함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행 사례들을 담기에는 연구의 시기와 진행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 이에 추후 운영 매뉴얼에는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담아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 연수 및 홍보(교육청, 지원청 단위) 필요

-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교육청 단위 담당자 연수 진행이 어려웠음. 앞으로 비대면 회의 및 비대면 연수자료 등을 개발하여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교육청 및 지자체 아우르는 TF 팀 구성 등이 필요함. 교육(지원)청 또는 도 교육청 수준에서 국공립 다양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배치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교육청 내 칸막이를 극복하고, 업무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함.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2019a). 사립유치원행정업무 길라잡이.
- 경기도교육청(2019b).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2018). 「공동육아」 다시읽기. 제 10회 공동육아포럼.
- 교육부(2018).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0.25).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18a).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 계획 안내(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170, 2018.11.1.)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18b).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매뉴얼 안내 및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제출(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327, 2018.11.8.)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18c).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 알림(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6343, 2018.12.13.)
- 기획재정부(2013).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 기획재정부(2019).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및 추천방법 (2019.07.12.).
http://www.moe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63&menuNo=8010200&searchNttId=MOSF_000000000029057.
-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 박주희(2018). 영국 협동조합학교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8), 35-62.
- 박창현, 김근진(2018). 국공립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박창현, 김근진, 이재희, 조혜주, 김진석(2019).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 충남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2018a). 사립유치원교원인사실무매뉴얼.
- 서울특별시교육청(2018b).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매뉴얼. 비공개 내부자료.
- 서울특별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2013). 협동조합 운영가이드북. 서울특별시.
- 임재홍, 강남훈, 김진석, 김용섭, 박창현, 김태현(2015).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 최유리·허예지·소경희(2017). 교육과정 자율화 논의에 가정된 교사 자율성 재개념화: Foucault의 '자기배려' 논의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연구, 35(2), 119-141.

[참고법령]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23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9275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39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839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83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7-117호, 2017.4.12., 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6845호]

사립학교법[법률 제1667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627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733호]

식품위생법[법률 제15534호]

아동복지법[법률 제16248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5호]

유아교육법 [법률 제1456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24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문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6746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33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59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제60호]

지방재정법[법률 제16857호]

평생교육법[법률 제16677호]

행정절차법법률 [제1483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환경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95호]

환경보건법[법률 제15661호]

[웹사이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홈페이지 (www.ica.coop)

Ikastolen Elkartea (www.ikastola.eus)

SBS 〈협동조합은 학교다〉 (다시보기:<https://vimeo.com/150932597>)

건강보험 EDI edi.nhis.or.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www.gongdong.or.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coop.go.kr)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사학연금 <http://www.tp.or.kr>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www.4insure.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 (<http://si4n.nhis.or.kr>)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http://www.15445077.net/>)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www.wage.go.kr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http://www.social-investment.kr/>)

전국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www.facebook.com/schoolcoop

쿠팡Biz 협동조합 (<http://www.coopbiz.kr/>)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http://www.ksenet.or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1.1 공모 관련 서식

내식기 공인형 유지원 운영 계획서	
공명형 유치원 운영계획서 작성 서식	
※ 본 식지는 시·도교육청에서頒發하여 사용 가능	
※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서식-분할 제원 없이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	
※ 유치원은영리원칙 열의 결과 포함	

◆유지연 현명◆									
☐ 유지연형 :					☐ 법연형 :				
주 소 □□□□□□									
대표전화 :				FAX :			홈페이지 :		
전화:			전보:		이메일:		e-mail:		
담당교과(학목) :			전화:		이메일:		e-mail:		
유지연 현명	구분		출자 수		확급 수		학급당 인원		
							유지연의 작성 및 의견		
	영급								
	달래주								
	특성화								
	문물교실								
	사회의 재구성 (문화 기억활동)								
	특수학급 수								
교 사									
교원 현명	원인	강	영급	보조교원	기	계			
	일	후	교사	활용	함				
지원 현명	행정 지원		관리· 회계		운영·전 담		기타		
							계		

※유지연 소재지, 유아교육진흥부와의 작성 동
지(지역사회적 여건 및 특성에요)

I 유치원 현황(신청서 제출 시 기준)

1. 개요

유치원명	개원일	주소	설립	원장 (부임일)	이사장 (임기)
			법인/사립		사단법적

2. 유치원 규모

만3세			만4세			만5세			합계		
유아수	학급수	학급수	유아수	학급수	학급수	유아수	학급수	학급수	유아수	학급수	학급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 교육시설 현황

구분	수	㎡(가로×세로)
교실		
급식실		
교사 휴게실		
기타 등		

※ 시설이 미비한 경우는 「시설충족계획」에 세부 기재 요망
※ 동일 교과교실이 다수로 표기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기 요망

4.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사무직원				계
	원장	원감	교사	소계	행정직원	운전원	조리사	기타	

※ 보조인력 : 교원 보조, 행정 보조 00명 등 별도 표기

II 운영 계획

※ 미션비전 (운영총 유치원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
○○ 사도 ○○ 유치원 (출력되지 주소)

1. 신청 사유

2. 기대 효과

3. 유아 모집 및 선정 계획

□
○
※ 자소특성 유아 우선 모집 방법, 규모 및 특수학급 설치 등 포함

4. 교육과정 운영계획

□ (정규/ 방과후/ 특성화)
○
※ 사회적 특화개선에 대한 이해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부모 의견수렴 방안 등 포함

5. 학부모 교육 및 의견수렴 계획

※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 방안 등

6. 공영형 유치원 지정 신청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심의) 여부

※ (예) 원장, 의견, 자문결과 등

7. 기타

※ 위의 항목 외에 유치원에서 기술하고 싶은 내용

[사석] 법인 이사 현황

III 재정지원비 운영계획서

구분	내역	금액(비율)	세부 내역	비고
교직원 인건비			※ ※ 원장, 교원, 행정직원 등 구분하여 작성	
유치원 운영비				비행규칙, 운영프로그램, 교사인수비 등
교육과정 운영비				교재, 교구, 실비 등
교육환경 개선비				
기타				
계	(100%)			

※ 세부 내역에는 포함(인건비)의 경우 교육 기간 등 구분하여 내용 기재
※ 지원금 외 학부외 추가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내역을 별도로 명시

○○법인 이사 현황(○○유치원)									
연번	직명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소	현직	교육경력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비고란에는 개별이사 여부 표시

1.2 선정 관련 서식

[서식 1] 공영형 유치원 선정 심사표(예시)

공영형 유치원 선정 심사표(예시)				
발안명		유치원명		
선정기준항목				
평가지표	중점 평가사항	평가 기준	점수 범위 (0, 10)	
① 원칙준수율	- 직전년도 정원 모집정원 대비 충족률 70%이상(고교) ※ 지역별 평균 등 여건을 고려한 조정 가능 (예시) 도시지역 80% 이상, 농어촌(특목) 지역 50% 이상	직전년도		
② 교육환경 적합성	- 사·도별 정원 배치 기준 준수 ※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설·설비 등 기준 준수	직전년도		
③ 학부모부담금 회원의 적절성	- 학부모 부담금 책정 적절 ※ (예시) 지역 사립유치원 평균 대비 2배 이상 적음	직전년도		
④ 설립자 및 원장 1인 1기관 운영	- 설립자 및 원장 1인이 1개 유치원 운영 ※ 원장이 다른 사립유치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자가 다른 사립유치원, 유치원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유치원은 제외	직전년도		
⑤ 행정처분 처벌여부	- 기관 및 원장의 행정처분처벌 여부 ※ 아동학대성범죄 발생 또는 부정청탁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전적이 없는 유치원 등 기준 참조 (단, 사·도 감사 기준에 따라 경미한 사항 등 예외 가능)	5년, 현재		
⑥ 재원 규모	- 4학급 이상 유치원(고교)	직전년도		
⑦ 적정 운영 여부	- 그 밖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인원이 재가되는 등 공영형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교육감이 판단하는 유치원	현재		
⑧ 발안운영	- (사)인 선정 유치원의 발안 전환 가능 여부 - (발)인 개정(사) 비율 충족 여부	현재		
선정세부항목				
평가 항목		배점	점수	
1. 기관 환경				
위치 (10점)	우선설치지역 대상 여부	- 취학수요조사결과 국·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5점	
	위치의 적절성	- 인근 지역에 국·공립 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 등 대체 기관 존재 여부	5점	
2. 운영 관리				
원칙준수율	- 유아 정원 대비 학원 비율		50점	
사립제 배려기준 유아 비율	- 재원 유아 중 사립제 배려기준(중·대·통합, 다문화, 저소득층 등) 유아 비율		5점	
사립제 배려기준 유아 중·대·통합, 다문화, 저소득층 등	- 신규 유아 모집 시 사립제 배려기준(중·대·통합, 다문화, 저소득층 등) 우선절차 실시		5점	
교육현황	- 경매고사 비율 등		3점	

* 총점이 가장 높은 유치원부터 차례로 실시한 후 추후 최종 공영형 유치원 선정

선정세부항목				
평가 항목		배점	점수	
학부모	교육 접근 수준 및 자유의 적합성	- 공립유치원 대비 교육 접근의 수준 평가(가 변동 및 수업 포함, 현장 제외) -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실시	5점	
	교육 공개채널	- 교육 신규 및 추가 채널 시 공개포장 철거 를 거쳤는지 여부	2점	
	원장의 전문성	- 원장이 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5점	
	유치원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적 실적 여부 ※ 예산 등 주요사항 자료 여부	5점	
교육 과정	부모 참여 수준	- 학부모 교육 운영 여부	5점	
	양질의 유아교육과정 운영	- 유아, 놀이중심, 유치원의 자율성과 특성 이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 여부	5점	
3. 운영 계획	발과 후 돌봄	- 학부모 수요에 기반한 돌봄 발과 후 과정, 아 기 건강관리	5점	
	3. 운영 계획	원·지역 돌봄반 운영 여부	30점	
계획의 적합성	계획의 적합성	- 특수학급 설치 계획, 아동·지역 돌봄, 학 부모 부담 감소 등 - 운영 계획, 교사사우 및 교육, 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5점	
	예산 운용	- 예산 운영계획의 적합성	5점	
예산 운용	예산 운용	- 교사 인건비 중 우선순위에 예산이 편 성되었는지 평가	5점	
	예산 운용	- 기존 학부모부담금이 지역 내 사립유치원 평균과 비교하여 과도한지 여부	5점	
정책 참여	교육 정책의 참여 수준	- 교육 정책의 참여 수준	5점	
	정책 참여	- 원장 및 교원의 참여 의견	5점	
4. 사·도 자율평가		- 사·도별 평가항목 고려한 사·도교육청 자율 평가 항목 충족 여부 - 다수 법인이 선정할 경우 학교법인 무 선 선정, 압도	10점	
교육청 자율평가 항목	교육청 자율평가 항목	- 사·도별 평가항목 고려한 사·도교육청 자율 평가 항목 충족 여부 - 다수 법인이 선정할 경우 학교법인 무 선 선정, 압도	10점	
	교육청 자율평가 항목	- 사·도별 평가항목 고려한 사·도교육청 자율 평가 항목 충족 여부 - 다수 법인이 선정할 경우 학교법인 무 선 선정, 압도	10점	
5. 가점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5점	
가점	가점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5점	
	가점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5점	
감점	감점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5점	
	감점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 기타 유치원 별 중점성 강화 등	±5점	
합계			100점	총점
위원명:		(인)		

[서식 2] 공영형 유치원 선정 심사표(예시)

공영형 유치원 선정 심사 집계표									
심사위원장					(인)				
연 번	유치 원명	평가위원			총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총점이 가장 높은 유치원부터 차례로 실시한 후 추후 최종 공영형 유치원 선정

1.3 업무협력 약정서 관련 서식

[서식 1]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업무협력 약정서 및 약정 세부사항(예시)

투명하고 견전한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서 OO시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과 OO유치원(이하「유치원」이라 한다)은 건전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을 투명하고 견전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재유 관계의 수립 교육청과 유치원은 본 업무협력 약정에 따라 재정 지원 및 이에 따르는 공공성 강화, 상호 정보의 공유, 업무의 연계 지원 등 공영형 유치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 2 조】 교육청의 협력사항 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협력을 제공한다. 1.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재정 지원 2. 교육과정(임과후 과정 포함)·기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정보 제공과 평가 【제 3 조】 유치원의 협력사항 유치원은 교육청에게 아래와 같은 협력을 제공한다. 1. 법인 및 유치원의 투명하고 견전한 재정 운영과 공개적이고 공정한 교원 임용 2.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아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3. 공영형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요청하는 각종 제도 제공 및 시정(개선) 요구에 대한 조치 4. 법인으로 전환 및 설립자 변경 【제 4 조】 상호협력 사항 교육청과 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고, 이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서비스 제공 및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경감 2. 공영형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견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 3. 기타 교육청과 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협력한 사항 【제 5 조】 비밀의 유지 교육청과 유치원은 상호 약정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본 약정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신의성실의 의무 교육청과 유치원은 본 약정의 업무협력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약정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정서의 효력은 약정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유효 기간은 서명한 날부터 0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2. 본 약정은 어느 당사자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고, 본 약정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 당사자 간에 사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약정이후, 유치원이 법인소유의 유치원으로 설립변경되었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등 약정 효력은 해당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4. 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 평가와 약정 안로 시정에 총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와 심의를 받으며, 교육청과 유치원은 위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 8 조】 약정의 해지 1. 약정기간 만료 및 해지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한다. 2. 약정 해지는 <공영형 유치원 운영 업무협력 약정 세부사항> 제22조를 따른다. 【제 9 조】 기타사항 1. 교육청과 유치원은 본 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불문의 <공영형 유치원 운영 업무협력 약정 세부사항>에 따르고, 기타 본 약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약정서와 정밀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유치원은 약정서를 2부 작성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존한다. 붙임 공영형 유치원 운영 업무협력 약정 세부사항 1부 20 . . . OO시교육청 □□법인 OO 교육청 ○ ○ ○ 아사장 ○ ○ ○ (서명) (서명)
공영형 유치원 운영 업무협력 약정 세부사항(예시) OO시교육청-OO유치원 제1조(예산 지원) ① 교육청은 유치원에 총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의 예산을 지원한다. ② 유치원의 유아수, 학급수, 교직원 수 및 경력 등의 원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단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③ 예산액 중 예산액을 산정한 후 누리과정 예산 및 교원초·중·고·대비 등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제2조(예산 운영) ① 유치원은 유치원회계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의 환급 회계>, <기타 기타> 등 유치원 명의로 통장 3개항을 개설하여 운영 한다 ② 예산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으로 재정 소요 의견 및 상황에 따라 분기별로 재배정 한다. ③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은 월별로 <유치원 회계> 재정보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3조(교원 인용) ① 유치원과 교원의 정원은 교육청과 유치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할당 또는 법인 이사장은 공립(단립) 유치원 수의 적정 규모를 유아교육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② 유치원은 OO유아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고급직 해당분야 경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교원을 선발한다. 제4조(교육환경개선) 유치원의 교육환경개선은 우선순위에 교육과정 운영 및 공시기간을 감안하여 신학기 이전까지 준공 가능한 공사로 우선 시행하며,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법정 전환 및 운영) 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법인 전환 및 설립자 변경신청은 교육청이 정한 시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 이사회의 해당 유치원의 건학이념을 존중한다. ③ 법인의 이사회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 정수의 2인 이상을 겸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명신청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으로 개명신청을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과 공영형 유치원 운영 취지에 맞도록 필요시 정원을 재조정하며, 이러한 내용을 유아교육정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개정한다. ⑥ 법인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의무적 준수하고, 회계 서류는 이사장 또는 회계관계	직원의 날인으로 결정하며, 수익용기본재산 중 법정전입금 부담 및 기타 법인 운영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⑦ 법인설립 인가서 신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약정기간 동안 예금계좌 출금, 매매, 담보 설정, 명의 변경 등 일체의 변경 행위를 금지한다. ⑧ 교육청의 이사장 및 회계관계직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7조에 따라 선출한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무 위반 시 반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 운영) ①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평가·해지·재약정 등 전환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청과 유치원간 어느 일방의 시연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하고, 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유치원의 의견을 각각 묻고, 필요한 사항(예산 조차·법칙을 정리하여 부속한다. ③ 교육청과 유치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부여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운영) ① 유치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등 교육과정이 개정될 경우 그 개정 사항을 따른다. 1.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9-189호, 2019.7.24.) 2. OO시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③ 교육연령, 학기 및 수업일, 교육 내용, 수업일수 등 수업 운영방법 등 교육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유치원 규칙에 포함한다. ④ 1일 4-5시간 기준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며 교육과정 시간 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유치원 교육과정 수립 시 OO유아교육정책, OO형유치원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한다. ⑥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장학지도를 받는다. ⑦ 교육감이 실시하는 유치원 평가를 받는다. ⑧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 ⑨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⑩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방과후 과정 운영) ① 방과후 과정은 공영유치원을 제외하여 방학기간 없이 연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1. 학년은 07:00-20:00까지, 토요일 운영 시 07:00-13:00까지 운영한다. 2. 토요일은 유치원 실정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한다. ② 방과후 과정 보조 인력인 3세대 하로니 지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1. 사업기간은 3월-12월, 봉사시간은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한다. 2. 만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채용한다. 3. 책 읽기, 글쓰기 및 예식보조, 대소변 돕기, 원내시설 청결미화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③ 특성화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교육과정 시간 내 운영 불가)한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운영한다.
3.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특성화프로그램 미참여 유아는 철저히 지원한다.
4. 비용은 가능한 범위와 과정 지원금 내에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에 노력한다. 다만, 부득이 추가 비용 발생 시 참여 유아 수, 강사로, 실시횟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용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해당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유아수	위원수	구성비율
100명 미만	5-8명	• 학부모위원 : 60~70%
100명 이상	9~11명	• 교원위원 : 30~40%

- ② 유치원운영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유치원운영 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에게 안내하며,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④ 애·결산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 제10조(유치원 회계 운영)** ① 『사립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당시 조항에 따라 단식부기에 의한다.
- ② 『사립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의 예산과목들을 준용한다.
- ③ 각종 장부와 서류는 『사립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장에 따른다.
- ④ 원장은 유치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입·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회계장계직원)을 둘 수 있다.
- ⑤ 회계 서류는 원장 및 회계장계직원의 날인으로써 견제한다.
- ⑥ 회계 및 회계장계직원(사립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7조)에 따라 선정한 원가조사자의 피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위반시 반상 책임을 진다.

- 제11조(유치원 회계 예산·결산)** ① 2000학년도 유치원 예산은 익년도 2월말 까지 집행 후 정산하며, 정산 후 집행잔액은 교육청 지원예산과 별도로 법인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② 20000학년도 예산은 교육청·유치원 상호간 지원예산 규모를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00학년도 이후에는 유치원예산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 후 결정된다.

- 제12조(수익자부담금비)** ①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좌이체 또는 아이행복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학부모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당일 <유치원 회계>로 입금 처리한다.
- ② 학부모 수익자부담금비는 최소한이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여 시행한다.

- ③ 정수할독은 특성화 프로그램 졸업앨범·현장학습 원복(가방) 통학 자랑비 등이며, 반드시 유치원 회계 통장을 통해 출납한다.

- 제13조(세출)** ① 유치원은 『사립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운영예산은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교육지원청으로 대개정 한다.
- ③ 예산 지원은 공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대별 송금한다.
- ④ 예산 집행은 기관카드 사용 또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출납은 지양한다.
- ⑤ 업무수진비는 공립유치원에 준하여 집행하고, 출장비는 근무상황부에 결정 후 공무에 의한 출장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급한다.
- ⑥ 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정 지원-인건비)** ① 인건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구분	인건비 지원기준	비고
교원	- 교원의 호봉은 재관직으로 승진이 가능한 경계를 바탕으로 개별 확정 - 개별 확정된 호봉에 따라 교육유무급 보수 체계로 연봉 산정 - 교육유무급 연봉의 80% ~ 100% 상당 금액으로 지원 [단, 현 연봉액의 200% 이하(원장 제외).] - 초과근무수당은 정액분만 지원 - 최대 40.80봉까지 인정	
행정직	- 행정실장: 일반직 7급 10호봉 상당액(교원 지급기준과 동일) - 행정직원 및 사서관리: 교무실무사 기준	
기타직원	- 보조교사는 공립유치원 기준 교원 인건비 대비 예산을 감안하여 배치 - 조리사: 조리원 기준 - 운전원 정원: 특별인부 기준으로 지원 리스: 특별인부임과 개별경상운임비(차량유류 등)를 합하여 편성	
기타사상	4대 보험료, 퇴직연금금, 초과근무수당, 실제 근무상황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지침의 규정에 따라 지원	

- ② 유치원의 규모와 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유아수, 학급수, 교직원 수 및 경비 등의 여건에 따라 차를 지급한다.
- ③ 유치원 지원 예산액은 총 소요액을 각각 산정한 후 누리과정 예산 및 교원직무개선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단, 누리과정 예산은 교원 인건비에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재정 지원-유치원 운영비)** ① 공부경상운영비는 (9,724,000원×학급수)+115,395,000원(유치원개수의 산식에 의하여 지원한다).
- ② 개별경상운영비는 학습자료구입, 현장학습지원 및 특수교육 차량유지비 기준으로 지원하되, 차량유지비는 중형상용 주행기(10,000~15,000km)를 적용한다.

- 제16조(재정 지원-교육환경개선비)** ①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 시설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 및 진단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의 시설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부여

- (유아 안전관리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부터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실시한다.
- ②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할 수 있다.
- ③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되, 전면 리모델링은 지양하고, 법인 설립에 따른 설립자 변경 인가신청 시 인가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가 부당하다.
- 제17조(안전 대책지원)** ①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지원한다.
- ② 교원 인건비 중 일부를 교원재무개선비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은 공명형 유치원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 ④ 유치원 예산 지원 기준에 따라 유치원이 학급수, 유아수, 교원수, 교원 경력, 차량운행 여부 등 상황 및 예산 여건에 맞춰 세부 지원 항목과 예산 규모를 조정하여 지원한다.

- 제18조(건설성 실시)** ① 교육과정(탐과주 과정 포함)분야의 컨설팅 및 정책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교육과정 및 탐과주 과정 등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매학기 개시 전 집중 실시하고,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2. 컨설팅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 ② 재정회계 운영 분야 컨설팅(지도·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애·결산, 예산집행 상황 등 재정 분야에 대하여 매학기 개시 전 집중 실시하고, 학기 중에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컨설팅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 제19조(공명형 유치원 운영 협의)** 교육청 정책 안내 및 유치원 운영 계획 등 공명형 유치원 관련 운영 협의는 분기별(3·6·9·12월) 둘째주에 실시하고, 협의회에는 유아교육과정 및 장학관·사무관, 교육지원청 관계자, 원장 등이 참석한다.

- 제20조(평가평가 실시)** ① 교육청(유아교육과)과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합동으로 공명형 유치원 대상 평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 ② 평가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분기 평가는 분기별 정전을 통하여 5월, 8월, 11월, 2월중에 실시한다.
2. 연간 평가는 분기 및 수시평가 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매년 12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1년간 평가 결과와 교육청과 유치원의 약정 사항, 관련규정 위반 여부 등 운영진행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약정 미이행 또는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시정(개선) 요구, 운영 약정 해지, 배상 등으로 조치하며,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 교육청과 해당 유치원은 따라야 한다.

- 제21조(종합평가 실시)** ① 약정기간 중 매년 실시한 평가 결과를 약정기간 종료 전에 종합적·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재약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위원회 개회시 원장은 반드시 출석하거나 문서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회일에 출석 또는 문서를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제22조(약정 해지)** ① 약정 기간 만료 및 해지 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한다.
- ② 다음 각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해지한다.
1. 교육청과 유치원 상호간 약정 및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 단, 시정 요구는 3회 이내로 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은 가급적 15일 이내에 조치한다.
2. 공명형 유치원 운영 관련 인원이 재가되어 처분이 확정되었을 경우
3.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유아 원원이 같은 학급수의 공명 정원 수준의 80%를 2년간 미달하는 경우
5. 유치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약정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단, 사유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6. 위원회에서 유치원이 계속적으로 공명형 유치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공명형 유치원의 운영을 종료할 때에는 공명형 유치원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약정 기간 만료 시 해당 학년도 결산을 실시하여 교육청으로 집행 잔액은 만납한다.
2.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에는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유치원 귀책사유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예산에 대하여 정산 및 배상 징수 등의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 ④ 운영 종료 이후 유치원 운영은 법인의 정관 및 방침에 따른다.

- 제23조(약정 연장)** ① 약정 연장은 약정기간 만료 1달 이전까지 공명형 유치원의 재지정 요구가 시면으로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 ② 재지정은 공명형 유치원 운영 평가 등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유치원이 합의하여 조치 완료 후 재약정 체결한다.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참고 1] 공영형 유치원 운영 준수사항(안)(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운영 준수사항(안) (유치원)

1. 「유치원 교육과정 및 평가 후 과정 내실화 계획(안)」등 교육부 교육과정 계획 준수
2. 유치원은 유아 및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에 정한 지원 요청
3. 교직원 추가 확보 시, 공개임용 절차 등 시·도교육청과 구제직 방안을 협의 후 결정
4. 교육과정 개선 계획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되, 유치원 운영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 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5. 운영 이후 일정 수준 학부모 부담금 추가 장수가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징수 허용
6.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부모 수요에 기반을 둔 돌봄 운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
7. 유아 모집 시에는 「초유학교로」를 활용하고, 저소득층 유아를 우선 모집, 다만, 이에 따라 정원 미충족 시 잔여인원은 일반 가정 유아 선정 가능
8.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리 및 공직제원을 활용함에 있어 법인전환, 회계 감사 등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및 준수
9. 예산은 지원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
10. 시·도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는 교원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
11. 유치원 운영, 교육과정 운영, 회계처리 등 공영형 유치원 컨설팅단이 제시하는 제언 사항 이행 준수
12. 그 밖에 공영형 유치원 기본계획 및 시·도교육청 실행 계획 준수
13. 운영 준수 사항 등을 유치원규칙으로 제·개정
14. 위의 준수사항(1.~13.) 위반 시,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취소 및 지원금 환 수 가능

[참고 2] 공영형 유치원 운영 준수사항(안)(시·도교육청)

공영형 유치원 운영 준수사항 (시·도교육청)

1. 교육청은 평가기준 및 본기별 평가 등을 상세화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선정 및 평가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청은 실행 계획 수립 시, 유치원의 재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
3. 교육청은 선정 권 관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함.
4. 교육청은 1.을 고려하여 유치원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함, 이 때, 회계 전문가 등의 검토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
5. 교육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사 인건비, 교육과정 등 유치원 전반에 걸쳐 운영이 가능한 유치원을 선정하여야 함.
6. 교육청은 선정된 유치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함, 약정 체결 시 준수사항, 지도·감독,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7. 교육청은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 예산 지원하되,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80% 수준의 인건비 및 공립에 준하는 운영경비 지원 권고
8. 교육청은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이 지원금(누리과정 지원비 등 포함) 내에서 운영이 불가 하여 학부모 부담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적정한 지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함.
9. 교육청은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이 교직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공개 임용 절차 준수 등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함.
10.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정기평가 등을 통해 점검하여야 함.
11. 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12. 교육청은 유치원의 예산 집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함.
13.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장학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여야 함.
14. 교육청은 유치원이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체 감사 및 점검 후 교육부에 결과를 보고함.
15. 교육청은 공영형 유치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원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음.
16. 그 밖에 공립유치원에 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1.4 공영형 유치원 재선정 심사 관련 서식

[서식 1] 공영형 유치원 재선정 심사표

공영형 유치원 재선정 심사표					
법인명		유치원명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사항	배점	점수	총점 합계
평가 영역	정원충족률	- 정원 충족률이 70% 이상			
	유아대 교사비율의 적절성	- 사·도별 정원 배치 기준 준수			
	행정처분 처리여부	- 행정처분 사항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제발 내용 유무 (경미한 수준 제외 가능)			
	부모 부담금 책정의 적절성	- 부모 부담금 제도 책정 여부 (지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발수 지표	설립자 및 원장 1인 1기관 운영	- 설립자 및 원장 1인이 1개 유치원 운영			
	친인척 신규채용 유무	- 설립자 및 원장 또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학원이나 유치원 등학원내 존재하는지 유무			
	친인척 신규채용 유무	- 당해년 설립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삼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음.			
	법인운영시 개입이사 선임	- 사·도교육청에서 추천 인력 중 내 선정 여부			
유아 교육 복지 실현	사회적배려계층 유아 비율	- 재원 유아 중 사회적 배려계층(장애·중증, 다문화, 저소득층 등) 유아 비율 및 수			
	사회적배려계층 유아 우선입학	- 신규 유아 모집에 있어 사회적 배려계층 유아 우선입학을 실시하는지 여부			
	특수학급 운영	- 특수학급 운영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매년 유치원장, 특수학급 운영 헌장 및 기안)			
	교원연구 수준 및 차이의 적정성	- 공립유치원 대비 교원 인건비 등을 평가(기분급 및 주당 포상, 현장 체제) ※ 각 사·도별 유사 경력별 공립유치원 교원 급여 기준 활용			
교직원 처우 및 민주적 리더십	교원 공개 채용 유무	- 교원 신규 및 추가 채용 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			
	원장의 민주적 리더십	- 원장의 기관 운영 역량 및 리더십(민주성, 참여성, 소통성 등)			
	부모 부담금 감감 및	-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적 파악			
	부모 부담금 수준	- 부모부담금이 매월 10만원 이하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사항	배점	점수	총점 합계
부모참여 강화	지역 평균 이하 유지	- 지역 평균 이하 유지			
	부모 참여 수준	- 유치원과 부모(가족)와의 소통이 원활하고,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부모들의 참여 수준이 높음. ※ 협동조합 유치원 가점			
교육의 질 개선과 교육혁신	양질의 유아교육과정 운영	- 유아, 놀이중심의 유아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			
평가후 등록 가능강학	유아교육과정 운영	- 유아, 놀이중심의 유아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과정 운영	- 유아, 놀이중심의 유아교육과정 운영			
예산 운용의 투명성	예산 운영계획의 적절성	- 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평가			
	회계 투명성	-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포함 여부 및 적절성 여부			
정책 참여 및 공신력	교육부 및 교육청 정책의 참여 수준	- 유치원 평가, 입학관리시스템, 교원평가 등 유아교육 관련 정책 참여 여부			
	민원해결여부	- 민원이 없는 기관			
지도점검이행여부	지도점검이행여부	- 지도, 시정, 개선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			
	지도점검이행여부	- 지도, 시정, 개선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			
시설 개선	시설 및 교육교구	- 시설, 교육 교구 등 교육 환경에 따라 개선되었는지			
	금속 및 안전	- 금속, 안전 등의 시설 및 설비는 적절한지?			
위원명: (인)					

※ 평가/평가 및 총합계가 시 활용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사·도교육청에 상정해 맞게 지표 재설정 가능
※ 부모 부담금, 저소득층 우선입학, 가정에서 과반수 수업 운영 등 공공성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 포함

[서식 2] 공영형 유치원 재선정 심사 집계표

공영형 유치원 재선정 심사 집계표					
심사위원장			(인)		
연번	유치원명	평가위원			총점 비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예산 지원 관련 서식(예시)

[서식 1] 경영형 유치원 지원 대상 및 항목 표준안

경영형 유치원 지원 대상 및 항목 표준안				
구분	지원기준	소요액	비고	
학급수	교육과정	운영 학급	-	
	보육과정	운영 학급	-	
유아수	교육과정	보육 정원	유치원 수용계획 준용(학교지원과)	
	보육과정	보육 정원	학급당 20명	
원장	원장	1	-	
	담당교과	교육과정 학급당 1명	-	
교원수	보육교사	보육교사	학급당 1명	
	보조교사	1	-	
행정담당	행정담당	1	-	
	행정 총	1	-	
직원수	조리사	1	유차까지	
	종사자	1	단건비(유차비) 또는 원사용역비	
통계지원 지원수 운영지원 수				
④ 인건비				
원장	월 평균 인가	연 지급액	최대 40호봉까지 인정	
	월 평균 인가	연 지급액	최대 40호봉까지 인정	
담당교과	월 평균 인가	연 지급액	실용교육 학과 지원(40호봉 이하)	
	월 평균 인가	연 지급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기준	
행정담당	월 평균 인가	연 지급액	7급 기준(최대 10호봉까지)	
	월 평균 인가	연 지급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기준	
보조교사	월 평균 인가	연 지급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기준	
	월 평균 인가	연 지급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기준	
조리사	월 평균 인가	연 지급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기준	
	월 평균 인가	연 지급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기준	
⑤ 학교기초운영비				
교육과정	9,724,622	단기*유아수*12월	학교회계 예산연결 기본지출 준용	
	116,696,000	유차비: 개수	학교회계 예산연결 기본지출 준용	
기초운영	2,000,000	단기*학급수	학교회계 예산연결 기본지출 준용	
	40,000,000	단기	학교회계 예산연결 기본지출 준용	
통계지원	48,000,000	단기	통계서비스 인건비 운영	
⑥ 시설환경개선비				
시설개선비 80,000,000				
⑦ 소모품(⑧+⑨+⑩)				
⑧ 교육과정비				
교육과정비	220,000	단기*유아수*12월	유아학비 지원계획	
	70,000	단기*유아수*12월	유아학비 지원계획	
⑨ 교육청 지원(예산(소요액)-⑧)				
⑩ 예비지출금				
⑪ 예비지출금				
⑫ 예비지출금				

* 단건비 등 예산액 100% 지원할 경우의 표준안으로써, 유치원 및 통계를예산 예산에 따라 조정하여 지원함.

[서식 2] 경영형 유치원 재정 지원금 신청서

20○○학년도 경영형 유치원 재정 지원금 신청서					
1. 신청 유치원(법인명) 현황					
구분	법인	유치원	비고		
명칭					
대표자 성명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가. 목적 : 20 학년도 경영형 유치원 교육의 진흥 및 재정운영의 내실화					
나. 내용 : 20 학년도 경영형 유치원 인건비 등 운영 제경비 등					
3.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구분	금액	비고			
총수입액(A)					
지출수입액(B)					
지원금신청액(A-B)					
4. 지원금의 사용기간 : 20○○. 3. 1. ~ 20○○. 2. 28.					
붙임. 20 학년도 경영형 유치원 재정지원금 신청조사 1부					
20 . 3 .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직인)					
○○교육감 귀하					

[서식 3] 경영형 유치원 재정 지원금 신청조사

20○○학년도 경영형 유치원 재정 지원금 신청조사				
(유치원명: ○○유치원, 담당자: , 전화번호:)				
□ 일반현황				
○ 학급 및 학생수 (20○○. 3. 1 현재)				
구분	학급수	만3세	만4세	만5세
학급수	교육과정			0
	보육과정			0
학생수	교육 정원			0
	과정 정원			0
보육과정	보육과정			0
	보육과정			0
○ 교직원 장·현원 (20○○. 3. 1 현재)				
구분	원장	원감	담당교사	행정/사실
장원	교육과정	보육과정	보육교사	보조교사
	교육과정	보육과정	보육교사	보조교사
현원	교육과정	보육과정	보육교사	보조교사
	교육과정	보육과정	보육교사	보조교사
□ 지원신청 예산 규모				
(단위: 천원)				
항목	예산규모			비고
재출예산	인건비			
	유치원운영비			
	교재교구비			
	교육환경개선비			
	합계(가)	0		
세입예산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합계(나)	0		
* 재출예산(가)과 세입예산(나)은 같아야 함.				

□ 교직원 명단									
연번	직명	성명	생년월일(연월)	소속기관(종)	소속기관(종)	소속기관(종)	소속기관(종)	소속기관(종)	소속기관(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20 . 3. 1.									
○ 직명: 원장, 원감, 교사, 행정담당, 보조교사, 사서, 조리사									
○ 소속기관(종): 원감, 원감, 원감,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조리사 등으로 기재									
○ 생년월일: 예) 77.3.1(40)									
○ 호봉: 실제 호봉을 기재(2017.3.1. 기준)									
○ 근무연수(경력): 해당 경력기간을 기재 예) 7.10.20									
○ 최초입원일: 원 장직으로 처음 입원한 날(다른 기관을 포함하여 처음으로 입원한 날) 예) 10.3.1.									
○ 원가관: 원감, 원감, 원감, 원감, 원감, 원감, 원감, 원감, 원감, 원감									

[참고 1] 교직원 보수지급 세부산정 기준

교직원 보수지급 세부산정 기준						
구 분	산정 기준					비 고
기 본 급	o 교 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의한 해당 효봉액 o 일반직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에 의한 해당 효봉액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o 지급액 : 근무연수에 기본급 기준 지급률 적용(별표 2) o 지급률 : 근무연수에 따라 0%~50% o 지급시기 :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연2회) o 근무연수 계산일월 1월과 7월 1일 현재 기준 - 교 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한산율표, - 사무원 : 공무원 및 학교기관에서 교원 또는 사무원인 (학교보조직근무경력에는 제외)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7조
정근수당 가 산 금	o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 지급방법 준용 o 월지급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7조
	구 분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비 고
	교원, 일반직	100,000원	80,000원	60,000원	50,000원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지급기준
※ 추가 가산금 : 교원, 일반직 근무 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만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월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직급보조비	o 원장(400,000원), 원감(250,000원), 7급(130,000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8조제2항 (제11조)
정책집약비	o 교원 및 사무원 월 130,000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8조
명월특가비	o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2회(상년, 추세) o 지급시기 : 지급력상일(상년, 추세)이 속하는 월의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대상일 전후 15일 이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8조제3항
가족수당	o 지급대상 : 60세(여자 55세)이상 직계존속, 20세미만 직계비속 o 지급연령 : 배우자 포함 4명까지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여도 가족수당 지급 o 월 지급액 : 배우자 40,000원,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자녀 100,000원 ※ 부양모든 또는 공무원인 경우 그 용 1인당에만 지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0조

구 분	산정 기준	비 고
자녀학비 보조수당	- 지급액 : 학교에서 발생한 공단급납입금수중 또는 공단급납입고지사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합산한 금액)에 단, OO지역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학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시기 : 2(산입월은 3월), 5, 8, 11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1조
초·중·고교수당 (합영학 분)	- 지급기준 - 월당액(보통) 지급 : 근무월수가 15월 이상인 자에 대하여 별도의 초·중·고교수당 없이 지급 - 초·중·고교수당 지급 : 근무월수가 15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마다 15분의 1을 상하고 지급 - 기준 조율 * 초·중·고교수당(합계) 원 : 기준조율 월당액×55%×1/208×150%×120=131,730원 -원당25% 추감 : 3,438,000원×55%×1/208×150%×120=131,730원 -고사20% 추감 : 954-23 추감3,218,000원×55%×1/208×150%×120=127,000원 -고사20% 추감 : 954-23 추감3,218,000원×55%×1/208×150%×120=127,000원 -고사18% 추감 : 954-23 추감3,218,000원×55%×1/208×150%×120=127,000원 -원당25% 추감 : 3,438,000원×55%×1/208×150%×120=131,730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5조 교사(초·중·고교)에 대한 세출예산(보통)에 대한
관리 업무 수 당	- 지급대상 : 원장 (사무대리자 제외) - 월 지급액 : 월 지급률에 7.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7조제2항(별표 13)
교직 수당	월 지급액 : 250,000원(원장, 원감, 교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별표11
담임 수당	월 지급액 : 130,000원(담임, 교사)	
육아 휴직 수 당	-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교직원 - 지급기간 : 휴직기간 중 최초 1년간(야4) - 월 지급액 : 정월세(기본급)의 40%, 학원50-상한(100만원) - 같은 자에게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시 100만원 지급(150만원) -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 정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상한 250만원) ※ 다만, 지급액의 월(150)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5조제2항

1.6 법인 설립 인가 신청 관련 서식

[서식 1] 학교 법인 설립 신청서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인	설 립 대 표 자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직업)						
		③주소	(주원번호)						
법인	법 인	④전화번호	(사무실)						
		⑤명칭	학교법인 (한자)						
		⑥소재지	(주원번호)						
		⑦전화번호	(주간)						
		⑧인원수	(여사)	명	(강사)	명			
신청내용	설 치 학 교	⑨학교종별	대학(한자)						
		⑩학교명칭	(가칭)						
		⑪학교위치	(주원번호)						
		⑫전화번호	(주간)						
		⑬개설학과	개설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⑭학생정원	계		명		명		명
		「사립학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교육감 귀하							
※ 불입서류 1. 설립 취지서 2. 장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6. 재산의 소유권증명(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7.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서 등)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진술서 11. 임원의 취임술납서 12. 임원의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13.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 계획서(예산서첨부) 15. 창립총회 회의록				

[서식 2] 학교 법인 설립 취지서

학 교 법 인 설 립 취 지 서	
☐ 법인 명칭	
☐ 설립 대표자	
☐ 견학 이념	
☐ 학교 법인 설립 목적	
☐ 학교 법인 발전 계획	
☐ 학교 설립 개요	
☐ 기타	
년 월 일	
○○시교육감 귀하	

[서식 3] 학교 법인 기본재산 목록

학교법인 ○○학원 기본재산 목록									
1. 총 말 (단위: ㎡, 원)									
구 분	재산명	수 량	평 가 액		소 유 자		비 고		
교육용 기본재산	토 지								
	건 물								
소 계	토 지								
	건 물								
수익용 기본재산	예 금								
	주 식								
소 계									
합 계									
2. 교육용기본재산 (단위: ㎡, 원)									
구 분	소재지	지면	지목	지 적	평가액	용도	비고		
토 지									
건 물									
계									
3. 수익용기본재산 (단위: 원)									
가. 현금, 주식, 채권 등 (단위: 원)									
구 분	예금/발행기관	구좌번호/발행번호	예금액/평가액		비고				
증서									
통장									
계									

[서식 4]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본인 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학교법인 ○○학원에 무상출연(기부) 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인)					
위 기부자 (인)					
○ 기부재산 표시 (단위: 원)					
재산명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교육용기본재산	토 지				
교육용기본재산	건 물				
-이하 미란 -					
※ 비고 : 기부자 인감증명서, 기부자가 기부할 재산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재산가액 증명 서류(감정평가서 등),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조서 등을 첨부할 수 있음.					

[서식 5] 임원 이력서

임원 이력서					
1. 성 명	한글 / 한자 / 영문				
2. 주민등록번호					
3. 현 주 소	(-)				
4. 전 화	(사무실)	(가택)			
5. 학 력					
구 분	학 교 명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비 고	
중 고 대 학원					
6. 주 요 경 력					
소 속	재직기간	직 책	비 고		
7. 자 격 면 허					
연월일	종 별	자격, 면허 발급 기관	비 고		
8. 지역사회 활동현황					
9. 포 상 설 력					
연월일	훈 격	내 용	시행청	비 고	
10. 처 벌 내 용					
연월일	처 벌 내 용	사 유	시행청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불립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서식 6] 임원 신원 진술서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등록기준지			사진촬영 가능		
주 소			(3cm×4cm)·		
실거주지			(3.5cm×4.5cm)		
직 장	직장명 :	연 락 처	직장전화 :		
	소재지 :		휴대폰 :	B-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경 력	기관·업체 및 경향·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별 관 계(인자)	
배 위 거 주 사 실	거 주 국 가	기 간	거 주 목적	동 반 가족	
병 력	분 별	기 간	병 과	확진 기관	미 편 사용
배 위 부 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서식 7] 임원의 위임승낙서

임원취임 승낙서	
본인은 2020. 00. 00. 이사회에서 이사(감사)직에 선임되었으므로, 학교법인 00학원 이사(감사)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등기소 제출본 활용 가능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 귀하	

[서식 8] 각서

각 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의 결격사유나 임원 선임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한 행정 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연 번	내 용	점 토 결 과
1	「사립학교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선임의 제한 해당 여부	해당없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해당없음
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 경과 여부	해당없음
4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재임요구에 의하여 재임권 자로서 3년 경과 여부	해당없음
5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 경과 여부	해당없음
6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제직하다 퇴직한지 2년 경과 여부	해당없음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성 명:		(서명) 사관서명
00시교육감 귀하		

[서식 10] 창립총회 회의록

□ 대상자 인적사항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겸직허가사항

- 결 직 기 관:
○ 직 위:
○ 결 직 기 간:

위와 같이 검적을 허가(동의)합니다.

रु. १५ १५ १५

검직허가(동의)기관의 장(직인)

창립총회 회의록

1. 회의 년월일 :
2. 회의 장소 :
3. 회의 안건 :
4. 참석 인원 : 참석이사(이사성명을 기재)
참석감사(감사성명을 기재)
5. 결석 인원 : 결석이사(이사성명을 기재)
결석감사(감사성명을 기재)
6. 회의 내용

20 년 월 일
 설립당초의 임원
설립대표 이사장 (인)
(출석임원)이 사

※ 출석이사 전원 기명날인

<참고사항>

- ※ 창립총회 회의록
 - 설립내보, 이사장 선임
 - 설립 취지와 대학설립계획(법인의 명칭·위치, 학교의 종류·명칭, 위치 등) 채택
 - 학교법인 정관 심의의결
 - 학교헌장 제정 심의의결
 - 출연재산(소요자금 조달계획) 내용
 - 임원(이사·감사) 선임
 - 기타 중요사항 의결

[서식 11] 임원 명부

임원 명부

직명	성명	연령 (세)	주민등록 번호	주소	현직	이사장호전 또는 감사 와의 관계	교육 경력	개방이사 여부
1	이사장							년
2	이 사							년
3	"							년
4	"							년
5	"							년
1	감 사							
2	"							

4. 유치원 예정(계획)지 주변 교육환경 조사결과

지역구분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	해당 시설 명칭(상호 또는 종류)
절대경화구역		
상대경화구역		

※ 작성방법

-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 : '있음' 또는 '없음'으로 표시하되, '있음'의 경우 해당시설 명칭을 표시
- 절대경화구역 내에서 가능한 시설(예 : 담구장) 외에는 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함을 안 내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이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
- 상대경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자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주지

5. 참고자료 : 별지

- 가. 유치원 건물 배치도 (출입구 표시, 건축예정인 경우 배치계획)
- 나. 유치원 예정부지 도시계획확인원
- 다. 유치원 설립 예정지 및 주변 약도 (경화구역 범위 포함)
- 라. 유치원 설립 예정지 사진 (전경)

※ 작성방법

- 각각 항목별로 A4용지 1/2 크기 또는 A4용지 1장 분량으로 별지 작성
- 파일 제출이 가능하도록 작성 (배치도, 약도, 사진 등은 스캔 작성)

1.8 평가 관련 서식

[서식 1] 공영형 유치원 분기별 평가표(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분야)

공명형 유치원 분기별 평가표(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분야)					
	유치원명	세월 동안 사항			
구분	입장방법 및 기준	적정 (아함)	부족 (있음)	(부차적 사정, 교육형 조직화여의 다른 개인 내용 등 기입)	
교 육 과 정	-1월 누리과정 4-5학년 학습 -배움달이 1월 14일 이상 확보 여부 -『교육과정평가서』작성 여부 수업				
방 과 후 과 정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여부 -교육활동계획 작성 여부 -인재 재능 계발성 -『예산 편성내용』제출성 -실질적 기증 실적 참여 현황				
특 성 화 프 로 그 램	-프로그램 활동계획 작성 여부 -『예산 편성』 1월 14일 이상 준수 여부 -『예산 편성』(비율) 비율 투명성 -비율 적정 산출 여부 -『예산 편성내용』제출성 -학부모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미충족 원인 대책 여부				
평생교육 (초보)	-학부모 대상 정보공개(초보) 노력 정도				
운영 현황	-운영위원회 운영회 작성성				
급식	-교육청 복무 관리직자 작성성				
관리	-급식금리의 작성성				
기타	-종류 불합격 학부외의 요구 수업 여부 -시설 안전 진단 수행				
담당자 확인					

2020 . . .

평가자	소속)	직(명)	성명)	인
평가자	소속)	직(명)	성명)	인

[서식 2] 공영형 유치원 분기별 평가표(재정·회계 분야)

공정형 유치원 분기별 평가표(재정·회계 분야)						
유치원명						
구분	세부 항목	목표 (인원)	비율	회계 (인원)	목 기 사 람 (부채상 사채, 교육채 보조금외에 다른 개입 내용 구분)	
예산 및 결산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예산 편성의 투명성 여부					
	-예산결산업무의 예산 준수 실적 여부					
재무	-재무보고서의 편성 여부					
	-예산 수입의 세입예산 반영 여부					
	-예산 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세출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세출액의 실적 실적 여부					
	-세출액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예산집행의 실적 실적 여부					

[서식 3] 공영형 유치원 종합평가표

공영형 유치원 종합평가표				
□ 평가대상기관: ~				
유치원명	지점 (인원)	노동	미혼 (인원)	특·기·사·장 (부작업 사제, 교육청 소지업무에 미준 개인 노동 등 기입)
교육과정 운영				
보육후 과정 운영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예산 및 결산				
시설				
식량				
안전비				
교육환경 확보관리				
수급지원운영				
부모참여운영				
교내관리				
영아실관리				
건강관리				
방역				
신체검진관리				
행사운영				
(가라 표시사항)				

2020. .

평가자 스승)	직(명)	성명)	인
평가자 스승)	직(명)	성명)	인

1.9 공영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관련 서식

[서식 1]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 회의록

제 ○차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 회의록

□ 일 사: 20 . . () : ~ :

□ 장 소:

□ 참석현황

연번	직	소 속	직 위	참 경	비고
1	위원장	교육정책국	국 장		
2		유아교육과	과 장		
3		학교지원과	과 장		
4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5	위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6		○○유치원	원 장		공립
7		○○유치원	원 장		사립
8		○○유치원	학부모		

□ 안전 심의결과

1.

2.

붙임 제○차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 회의록 1부

〈붙임〉

제 ○차 회의록

00교육청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

○ 일시: 20 년 월 일() : ~ :

○ 장소:

○ 의사일정

1. 20○○학년도 공영형 유치원 선정 심의안

2. 공영형 유치원 제○차 평가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 보고사항

1.

○ 위원장:

○ ○○○:

○ 위원장:

○ 간 사:

○ 위원장:

1.10 컨설팅 관련 서식

[서식 1] 경영형 유치원 컨설팅 대장

경영형 유치원 컨설팅 대장			
○○유치원			
일 시	2020. . . () : - :	방 문 자	(서명)
영역 (현황영역)	컨설팅 내용	비고	

* 사시는 책상 대면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컨설팅 대장 기재시 참고사항(예시)		
영역	핵심영역	참의 내용
교육과정	교과과정 (누리과정) 편성 운영	○ 교육개혁 수립, 운영, 평가 ○ 유아 관찰 및 평가 방법 ○ 타당성이 시간 확보 운영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 연령별 교수학습 운영의 실제 ○ 연령별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활용
	영역별 누리과정 운영	○ 신체운동·건강 영역/의사소통 영역/사회관계 영역/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수업혁신 전개	○ 유아중심, 경험중심, 협력적 배움 중심의 수업 ○ 수업내용과 방법적 개선 방안
	교육환경 조성	○ 실내·외 교육환경 조성의 계획성(종이영역, 벽면 등)
교사지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 원내실학, 동료상담 실시 ○ 교사 연수 기회 및 자기연찬
방과후 과정	방과후 과정 편성 운영	○ 매뉴얼이 운영 필수 및 시간의 적절성 ○ 매뉴얼이 운영 취지에 적합한 교육활동 운영 ○ 운영활동의의 연계성, 호혜 활동의 질적 ○ 매뉴얼이 교사의 근무 실태 및 연수 지원
	안전 교육 및 관리	○ 안전교육 및 정기적인 재난대피 훈련 실시 ○ 일일 4명 안전점검의 날 실시 ○ 유치원 생활안전관리 구축(CCTV설치, 보안등, 순찰 등)
연인	통학버스 운행	○ 유치원 통학버스 운행 관리
	급식관리	○ 급식실 및 식자재 관리
학부모지 원	학부모 상담 및 관리	○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학부모 민원 관리 및 상담가법 지원
	가정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참여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기관 활용 ○ 유치원과 가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운영	교직원 관리 운영	○ 교직원 간역 인간관계 기법 훈련 프로그램 ○ 교사의 현업연구 자립방안 ○ 교직원 직무 관리 및 근무생활 기록·관리
	유치원 시설 설비 운영	○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 ○ 유치원시설 관리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 유치원 예산 편성 및 결산 ○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 강구 ○ 시정사치(2개)와 연계한 예산확보 방안 강구
재정운영	세입·세출 등 회계운영	○ 보조금·항비 등 세입금 관리 ○ 기관카드 사용·관리 ○ 세출예산의 운영 및 운영지출 관리 ○ 원인일월위 처리 등 정지 절차 준수
	교직원 보수	○ 보충 학점 및 각종 수당 지급 ○ 세급 및 4대 보험 준 처리
	기타	○ 기타 컨설팅 실시 사항

※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컨설팅 후 작성 할 수 있음

2. 협동조합형 유치원 만들기 서식

2.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서류 양식

부록 1-1. 설립인가 신청서

합동협약 기본법 제18조 제4항				

부록 1-3.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제1기)
	초점영역(연립사업)	일촌(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입대				
	인간자원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개요	인원 및 구성 현황(※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주수	주사무소				
	제1 이사무소					
	제2 이사무소					
	출자금	예산금				
	주 사업 현황	[]지역사업형	[]학각계 사회서비스 제공형	[]회화계 고품질		
조직 현역	연월일	[]취직사업형	[]타 공익제공형	주요 내용		
설립 목적						
외사감정 기구	[]조화관 총회	[]지리관 총회	[]이사회			
	본 회칙 표시 가능					
조직도						
	직위	성명	경력	직함 경력 여부		
인력 현황						
조화관 총회 구성 현황	신상장	소비자	직원	지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 계약 체계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계	명
	고용 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계	명
	학각계 고용	학각계용	명 비학각계용	명 계	명 계	명
직업분류 최소 설립자가 신임 직 조화관 초점영역(연립사업), 주수, 출자금인 적어도누구 하나를 담당한다. 215w×281mm 역방향 85g/㎡(세로방향)						

부록 1-2. 임원명부

[illegible]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해당 연도 사업계획 (※ 해당 내용만 작성)					
③ 지역사업별 (문단기준: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용 중 역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연원수/시간/회)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 계 (A)					
지역 사업	소 계 (B)				
	○ ○ 사업				
	□ □ 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 ○ 사업				
	□ □ 사업				
	...				
지역사업 비율 (C=B(A)/A%)					
④ 취약계층을 사회서비스 제공형 (문단기준: 사회서비스 공급 비율)					
구 분		사회서비스 공급 (연원수/시간/회)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 (C=B(A)/A%)					
⑤ 취약계층을 고용형 (문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비율 중 역일)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 (C=B(A)/A%)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제7조(통지 및 회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회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회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장)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제공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유의사항 >

-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할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제부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책임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〇과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과의 금액은 〇〇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최수는 총 출자최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 출자 1과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 한 조합원의 출자최수는 총 출자최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금으로 할 수 있고, 현금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금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〇과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과의 금액은 〇〇 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인 이내의 협력, 4인 이내의 인적,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금으로 할 수 있고, 현금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금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출자자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〇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면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유의사항 >

-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후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〇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경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그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

< 유의사항 >

-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후회의 의결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정이 있었을 때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무보합할 수 있다.
- 인가결정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자자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표를 기입납입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최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여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견)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최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과의 금액 또는 출자최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익이 있으면 조합의 주권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익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견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익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이익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익을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 조합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에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2. 부채할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경기총회) 경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할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진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할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결정을 해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결정을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결정을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결원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겸임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의로특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① 조합은 총회에 겸임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유의사항 >

• 대의원은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경우는 ○○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겐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 유의사항 >

•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의로특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1. 차입금의 회고년도 결정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효권 내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금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등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유의사항 >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결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행 인쇄물의 배부
 4. 활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회 조합원자격자를 상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호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제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부위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들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난후진인
2. 파산정후진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경우)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회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유의사항 >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징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직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송납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압제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드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영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미방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④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임원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결격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자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의사항 >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제48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징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경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의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의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의회 또는 총회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로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권)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책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회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기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와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총회·이사회 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재정무결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 유의사항 >

-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기타 사업은 조합법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법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O O O'으로서 'O O O O O O'으로 한다.

< 유의사항 >

• 위 4항에 해당하는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에 사업유형에 따른 예시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한다. 반 사업유형에 예시가 없는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 지역사업형
 -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지역사업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취약사업형
 - '취약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체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기타 공익증진형
 -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주 사업으로 두가지 이상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는 해당 유형을 모두 기재

적용 예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0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자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전화 등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 해당 민간부처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 그 뒤 법인세제과 심사팀 거쳐 최종 지정되어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한해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므로, '취약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및 기부금 모집 계획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위 조합을 정관에 기재하지서는 안된다.

제59조(직원의 임면권) ① 직원은 이사가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와의 결의를 거쳐 이사가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임원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액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O O O 사업
2. O O O 사업
3. O O O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O O O 사업
2. O O O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제61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부조 증진을 위하여 제60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O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O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O%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O%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잔액과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재무상환능력과 금융기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출출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출상환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유의사항 >

- 소액대출 총액은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의 설립 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대출을 제공한다.
- 소액대출 한도는 조합원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신규회금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25%)을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O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O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O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규 또는 계약사업규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저나니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을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⑤ 상호부조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 유의사항 >

- 조합은 상호부조사업의 여부 및 상호부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혼례, 사망, 질병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상호부조를 제공한다.
- 상호부조의 범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63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63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출금금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출금규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금대상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헌부보조유족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제헌회국인 거주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인차정결혼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개하는 사·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유의사항 >

- 출금금고의 설정기준은 직접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출금금고를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사업계획과 수익배분)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익배분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율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과산
3. 설립인가의 취소

< 유의사항 >

- 필요한 예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과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부가 증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전이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 유의사항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⑤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자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6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8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지분이익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제약서 또는 분할제약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부록 1-7.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표준양식 ⑦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다.
4. 의결 사항
가. 정관 확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다. 임원 선출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20 . . .

※ 창립총회 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야 함(법 제28조⑤, 영 제6조①)
(예) 7.2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민법상 기일 기산에 따라 20일이 아닌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19일부터 역산하여 7일이 되는 13일까지 공고

(가정) ○○○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 ○ ○ (인)

부록 1-8. 창립총회 회의록

■ 표준양식 ⑧ 창립총회 의사록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1. 총회 개회 공고일 : 20 . . (○요일)

2. 총회일시 및 장소

일시 : 20 . . (○요일) ○○시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참석자

개회 설립동의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 ▽▽▽ (제적 설립동의자 이름 나열)

참석 설립동의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 (참석 설립동의자 이름 나열)

4.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5. 총회 내용

가. 발기인대표 ○○○가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나. 정관 보고와 개회 선언

- 전체 설립동의자 ○○명 중 ○○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기 지명과 기명날인인 선출

- 의장이 회의의 기록을 위한 서기로 ○○○ 조합원을 지명하고 수탁어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탁하다.

- 의장이 회의록 확인을 위한 기명날인인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기명날인인으로 ○○○, △△△, … ▽▽▽가 추천되다. 관련하여 승인을 묻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선출되다.

※ 기명날인인을 별도로 지명하지 않고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도 무방

라.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마.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정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정관의 목적, 조합의 책무, 조합원의 자격 등 각 조항에 대해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정관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묻다.

- △△△ 조합원이 정관 제○조에서 '○○○○'를 '△△△△'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다.

- □□□ 조합원이 제○조 제○항의 문구에 '▽▽▽▽▽▽'를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제○조 제○항의 수정안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와 제정을 묻다.

- ◇◇◇ 조합원의 제정, 전원 동의로 수정안이 성립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제○조 제○항을 제안과 같이 수정하여 정관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묻고, 조합원 전원지 동의로 수정안을 수정하고 정관을 확정하다.

바. 제3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다.

- 의장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승인을 줄 것을 주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사.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후보추진 예시①) 의장이 임원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사로 ○○○, △△△, … ▽▽▽, 감사로 ◇◇◇가 추천되다.

<이사후보>

- ○○○(발기인 대표)

- △△△(발기인, ○○○○ 대표)

…

<감사후보>

- ○○○(발기인)

- 임원후보 전원이 인사말을 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을 거수토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조합원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선출방법을 확정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에 대한 찬성하는 조합원은 거수할 것을 주문하여 전원이 동의하여 후보 전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다.

- 의장이 선출된 임원 전원에 대해 수탁어부를 묻고 선출된 임원 전원이 수탁하다.

- 의장이 이사로 선출된 자 가운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주문하고, ○○○ 이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하다.

- ▽▽▽ 이사가 다른 후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주문하여 전원 동의로 선출하다.

아.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 조합의 주 사무소를 00(상세한 주소 기재 필요)에 두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묻다. 이견이 없음을 묻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한다.

- 의장이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된 내역 및 설립 시까지 소요 될 예상 경비를 보고하고 설명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차후 설립인가 후 읍자금 남입이 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다.

- 조합원 ○○○이 동의하고 조합원 △△△의 제정 및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자.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에게 의견사항을 제자 확인한 다음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 . . .

(가정)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이사장 ○ ○ ○ (원)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원)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원)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원)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부록 1-9. 임원 이력서

사진 (3x4)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이력서			
		성명	주면등록번호		
			-		
			이메일	④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도로명 주소)			
임원의 필적사유 해당여부		■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필적사유) 1. 과징금추징금 2. 피환영추진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나지 않았으나 부속을 포함하여)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나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년	월	일	
		학력 / 경력 / 자격 사항			비 고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인)

부록 1-10.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illegible]

부록 1-11. 세부사업계획서

▶ 표본당시 ④ 세부사업계획서 _ 기준 사업별 수정하여 작성

○○○ 사회적활동조합 세부사업계획서

I. 사업 추진 배경

II. 내외부 환경 분석

III. 사업 목표

IV. 사업 추진 방향

V. 사업 추진 계획

1. 0000 사업(※ 경관의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기재)

1) 사업 목표

2) 세부사업 내용

3) 당해연도 세부 계획 및 일정

4) 0000사업 예산 편성

수입		지출	
1. 0000 판매수입	0.000원×0회	00.000원	1. 인건비 0.000원×0월 00.
2. ...	...	...	2. 강사료 0.000원×0회 00.
			3. 임차료 0.000원×0회 00.
			
합계		합계	

2. 0000 사업(※ 경관의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기재)

1) 사업 목표

VI. 예산 계획

1. 사업 예산 정리(※ 주사업 및 기타사업등 사업별 수입 지출 정리한 예산안 작성)

사업명	수입		지출	
AAA 사업	1,000 만원(수입)	0,000만원(지출)	0,000원	1. 인건비 0,000만원(지출) 0,000원
	***	***	***	2. 코웨이 0,000만원(지출) 0,000원
BBS 사업	1,000 만원(수입)	0,000만원(지출)	0,000원	1. 인건비 0,000만원(지출) 0,000원
	***	***		2. 코웨이 0,000만원(지출) 0,000원
	합계		합계	

2. 운영 예산 정리(※ 사업 예산을 제외한 조직 운영에 경상비 예산 정리)

기관 운영비		
1. 인건비	0,000원<0원	00,000원
2. 교목비	0,000원<0원	00,000원
***	0,000원<0원	00,000원
합계		

부록 1-12. 취임승낙서

■ 표본형식 ② 취임승낙서 (보통기피명에서 필요시 사용, 상당인가 제출서류 아님)

취 임 승 낙 서	
본인은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창립총회에서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이사장 등)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이사장 등) 홍 길 동	인감
〇〇〇 사회경력동조합 귀중	

2.2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양식

부록 2-1. 설립등기신청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									
점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 종 봉 지
계	호	인							
등 기 의 목 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기 의 사 유									
주사부조/분사부조 신청구분					1. 주사부조 신청 ☐ 2. 분사부조 신청 ☐ 3. 주-분사부조 일괄신청 ☐				
등 기 할 사 항									
명 칭									
주 사 부 조									
이사과 감사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 할 사 항	
목 적	
분 사 부 조	
출자 총과수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 연월일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과세표준액			금 원			
첨 부 서 면						
1. 경 관			통			
1. 창립총회의사록			통			
1.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주부조설립의 설립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통			
1.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			
1. 인감신고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취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신청인 명 주사부조 대표자 성명 대리인 성명 주소						년 월 일 (인) (전화 :) (인) (전화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
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cm× 29.7cm)

부록 2-2. 인감신고서

별지 제1호 양식(인감·개인(改印) 신고서)

인감·개인(改印) 신고서		
(신고하는 인감납인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명(주사부조)	
	인 감 제 출 자	자적/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위와 같이 인감을 신고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改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감 납인란)		
신고인 분 인 성 명 (인)		
대리인 성 명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인감 납인란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납인하고 그 인감증명서(합계 인도부인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改印)신고의 경우, 개인인감을 납인하는 대신에 등기소에 신고한 후의 본인 인감을 납인하여야 합니다.		
2. 인감·개인(改印)신고에는 신고하는 인감을 납인한 인감대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지폐인이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제출자의 주소지에 지폐인을 둔 장소를 기재 하고, 「상법등기규칙」 제36조제4항의 보증서면(영당주가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 납인) 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보증서면은 아래의 보증서면전에 기재하는 것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 증 서 면		
위 신고하는 인감은 지폐인 의 인감이 불멸됨을 보증합니다. 대표이사 (법인인감)		
위 임 장		
성 명 : 주원등록번호(-)		
주 소 : 위와 사람에게, 위 인감신고 또는 개인(改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인감(개인) 신고인 성 명 (인)		

인 감 대 지

인 감 대 지	
	상 호(명 칭) : 자 적 및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신고하는인감납인란	

- 주1. 자적은 대표이사(이사), 이사장, 지폐인, 대리인, 상호사용자, 무능력자, 법정대리
인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
니다.

부록 2-3.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출자금 총액 납입 증명
출자금 총액 금 ○○○○원정(₩ ○○○○) 위 금액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의 총 출자좌수인 ○○좌(출자 1좌당 금액 ○○원)에 대한 납입금으로 ○○○○년 ○○월 ○○일에 납입이 완료되어 보관증임을 증명함. ○○○○년 ○○월 ○○일 ○○○○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인)

부록 2-4. 위임장

위 임 장	
법인의 표시	상호 : 주식회사 ○○○ 본점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대리인	법무사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위 대리인에게 위 등기의 신청 및 취하, 그리고 원본 환부청구 및 수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위임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인감
	인감

2.4 유치원 설립 신청 시 필요 서류 양식

부록 4-1. 학교설립 계획서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5.3.5.>**

학교설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판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양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교육)학교 (사인이 설립하는 유치원 또는 이비 학교법인 을 설립한 법인의 학교설립) 2개월
------	-----	------	---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규 내용	종류	[] 유적지, [] 조립화, [] 중학교, [] 고등학교, [] 공민학교, [] 고동공민학교, [] 고동기술헌교, [] 기타(아래 관하는 각종학교), [] 특수학교									
	목적										
	명칭										
	위치										
	개교(원) 예정일										
학 생 정 원	유 치 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4~5세	계			
		확급수									
		확정수									
	유·치원 이외의 학교	개설명					학과		학생정원 입학정원 총정원		

위임받은 사람 의 정보 (위임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실질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부록 4-2. 교지확보계획서

교지 확보 계획서

1. 총괄 현황 (단위:㎡)

구 분	기준면적(m ²)	확보계획면적(m ²)	과부족
교사면적			
체육장			
계			

2.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첨부 1)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2) 지적도 및 위치도 각 1부(부지중명).

3. 확보 방법

(위쪽)

제출서류	(1) 표지(表紙) 확보필수 1부 (2) 조서(奏書) 작성필수 1부 (3) 고구려서 표본 제작서 1부 (4) 초상묘사본 제작서 1부 (5) 원형서지 이차지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본서지 이차서지 1부 (6) 원형서지(원형) 정본서지(정본)와 원형본(원형)과 정본본(정본) 1부 (7) 청탁(淸託) 및 청탁조서(淸託奏書), 아랑주(阿郞周) 및 아랑주조서(阿郞周奏書) 관련 서류 ○ 신원확인서 1부, 및 청탁서 1부, 청탁원인(淸託原因) 조의 동의서 1부. ○ 아랑주(阿郞周) 및 아랑주조서(阿郞周奏書) 1부. (8) 고구려청탁서 조의 통상서 1부 (9) 이차지 회피조서 관련 서지 1부	수수료 없음
	1. 청탁서지 이차지(이차지)인 경우: 주연본(主連本) 초본(主連本特種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연본(主連本)의 복사본(主連本)을 있음 2. 청탁서지 원형지인 경우: 원형본(原形本)과 정본본(正本本)을 있음	
담당공무원 취급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신청하지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키워드** : **신원조사**로 표현된 부처(부처님, 불교인)를 신원조사의 대상이다.
- **신원조사**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에 따라 학과(학교)가 아닌 '『포자』'를 한다.
- 단, 국공립학교의 경우 「인간도」 41에 「『포자』'를 하고 학교 중에서 해당 과목(학교의 교육(습득) 관련 제반)의 「기안도」 「포자」를 한다.
- 유치원은 유년(유아)인 「『포자』'를 한다.
- **신원조사**의 대상자는 사원(사제)과 관원(관)이다.
- 신원조사를 선행하는 사원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함이다.
- 유년(유아)은 해당하는 사원에 신원조사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 「사학(사립)등 시험법, 제4조」에 따른 서명을 첨부하여야 함이다.
- 이와 마찬가지로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6.에 해당하는 사원은 제출하여야 아니함이다.
-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신원조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이다.
-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신원조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이다.

부록 4-3. 교사건축계획서

교사건축계획서

1. 교사건축계획

작 공 일	
준공예정일	
개원예정일	
원아모집기차	

2. 설계개요

구분	바닥면적	1층	2층	3층	4층	비고	합계

3. 교사시설내역

	구분	수량	단위면적	연면적	비고
보통교실	보통교실 1				
	보통교실 2				
	보통교실 3				
	보통교실 4				
	보통교실 5				
편의실	소 계				
	원강실				
	교직원실				
기타	자료실				
	소 계				
	소 계				
	계단 및 복도				

4. 총별 건물배치도 및 기본설계도

- 첨부: 평년도 및 배치도 1부

5. 교구·설비 확보 계획서

구 분	시설·설비적용기준	기 준	확보계획	과목목	비 고
교사환경	○ 조도(작성광) : 300룩스이상	300lux이상	Lux	Lux	
	○ 소음 : 55데시벨이하	55dB이하	dB	dB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18℃ 이상	℃	℃	
급수시설	○ 급탕 1개 이상	개	개	개	
온수공급시설	○ 회탕 1개 이상	개	개	개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부록 4-4. 소요경비조달계획서

소요경비조달계획서

가. 총 판

(단위 : 천원)

구 분	년 도 별 화 보 계 획						비 고
	20 년		20 년		20 년		
	소요액	조달방법	소요액	조달방법	소요액	조달방법	
토지매입비							
표목공사비							
교사건축비							
실험실습 설 비 비							
교재교구 구 입 비							
책 서 선 비							
도서 구 입 비							
.							
.							
계							

※ 조달방법은 별첨으로 기술하고 관계증빙서류 첨부

나. 소요금액 및 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금액	조 단 방 안			
		현 금	유가증권	부 동 산	기 타
토지매입비					
노복공사비					
교사인속비					
실험실설 설 비 비					
교재교구 구 입 비					
체 육 장 설 설 비					
도서및비품 구 입 비					
·					
계					

부록 4-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설립자 재산명세서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증빙서 첨부

채권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수량	평가액	원금 수입액	원소유자	비고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또는 금원신탁								
국채·공채								
기타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서(법인)

◎ 재산명세 : 가.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현용도
토지					
건물					
소 계					

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현용도
토지					
건물					
소 계					

◎ 재산확보계획 : 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구분	연간운영경비	수익용 기본재산 기출액	비 고

※ 기타재산은 구체적인 재산내역 표시

다. 조달방안 재산내역

☐ 현금 및 유가증권

(단위 : 천원)

예금종류	금 액	예 금 주	예 치 기 관	잔 고 일 시
계				

☐ 부동산

(단위 : m, 천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평 가 액	비 고
계						

※ 별첨 : 예금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및 공시지가 조서, 등기부등본, 재산출연증서 및 출연용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

나. 재산확보계획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평가액	유통방법	년간수익액

◎ 유치원 설립 후 재산변동 현황 : 가.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현용도
토지					
건물					
소 계					

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현용도
토지					
건물					
소 계					

다. 재산변동상황 신·구 대조표

구	신

2.5 유치원 설립·인가 시 필요 서류 양식

부록 5-1. 설립 인가 신청서

(가칭)○○협동유치원	
수신자	○○교육지원청 교육장(행정지원과장)
(장유)	
제 목	(가칭)○○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사 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사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설립과 같이 유치원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
붙임:	
1.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규칙 1부. ※ (별첨 2) 유치원 규칙(표준안) 참조	
3. 사회적협동조합법령인 재무 등기 및 출원금에 관한 증명서류	
3-1. 출원금잔고확인(기초재산(교육용, 수익용, 보충재산)) 각 1부.	
3-2.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의사록 회의록 각 1부.	
3-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4. 설립자 관련 제출 서류(별첨인 경우 그 대표자의 것)	
4-1. 설립 조합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본 각 1부.	
4-2. 설립자 이력서 1부.	
4-3.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4-4. 설립자범죄기록의 동시서 1부.	
4-5. 설립자 자서 1부.	
5.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5-1. 유치원현황(현상도, 지적도, 도지리우계획확인서) 1부.	
5-2. 건축물(내부면적) 기재 각 1부.	
5-3. 토지 및 건축물(별첨도 포함)대장 각 1부.	
5-4.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5-5. 사회적협동 유치원 교육·연구·보육현황 1부.	
5-6. 시설설비 조서 1부.	
5-7. 소방시설안전관리사물용(별첨부 처리상농업사 견본)서 1부.	
소방 안전점검 확인서 1부.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1부.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1부.	
5-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1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완료 후 6개월 이내) 1부.	
어린이놀이시설 보합제일 중시(실시 후 30일 이내) 1부.	
6. 유치원 현황 및 교육 운영 관련 서류	
6-1. 원장 취임נס서 및 경력증명서(자격증 포함) 각1부.	
6-2. 교직원 부보제서시(현장, 원장, 교사) 1부.	

담당자	설립자
협조자	
시행 00유지름-	(20 . . .)
후 주소	주소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www.000.00.00	
/ 공개	

- ①유치원의 상황,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수준별 내용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 ②학습급 교구·수업물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습자료본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자체 수업한 교육 과정 지도안으로 운영한다.
- ③방과후과정은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 심리적 부담을 배려하여 교육과 보육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진 오전, 오후의 연계성 없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제10조 (수업일수) ①본원의 수업일수는 별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해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하여 운영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휴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전학령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한다.

②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제법칙을 허가하고, 일정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제11조 (수업시간) ①본원의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시간은 0시00분으로 하며, 끝나는 시간은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정해진 종료시간에 따르며,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계절, 학부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제12조 (방과후과정운영) ①방과후과정은 기본교육과정외에 이루어지거나 기본교육과정을 시작시간으로 하여 8시간이상 운영한다.

제13조 (수업운영방법) ①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안방과후과정을 통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②교사는 학습활동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화 학습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양한 놀이중심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교사는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전기교재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다.

④필요한 교육상 필요한 경우 제법칙을 허가한다.

제14조 (수업연구) ①교사는 다양한 수업이 되도록 무한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교사는 교제 연구자를 작성하여 결정되는 학년 후 수업에 임하여야 하며, 본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연구 결과물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업연구회) ①학과와 원장은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해 수시로 수업연구회를 실시한다.

②학과와 원장은 교내 수준을 통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조언을 하고,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16조 (진단검정 및 급식) ①별 제17조 제1항에 의거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요 실시하고, 그 결과 처분요를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별 제17조 제2항에 의거 학부주의와 협의해 거제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한다.

제17조 (원아평가) ①원아평가는 원아의 발달정도에 대해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결과표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에 역점을 둔다.

②원아 평가는 학기 초에 평가의 영역, 평가의 방법, 평가도구의 제작, 평가의 시기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③평가 결과는 학년 간 장소 이코나 사립회를 지양하고, 원아 개인적 성장발달을 돕는 지도 및 학년도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제18조 (생활기록부 작성보안) ①별 제14조에 의거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②원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여 유아성정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

제6장 입학 제입학 인입, 편입, 휴학 및 졸업

제19조 (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인종으로 하며, 총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도 입학이 가능하다.

부록 5-2. 유치원규칙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 규칙(표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의 유아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원은 ()유치원이라 명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서울특별시 ()구 ()도 ()에 위치한다.
제2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학기·휴입일	
제4조 (교육연한 및 학년도)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별 제12조 제1항에 의거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학기)	본원의 학기는 해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까지(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 2학기는 1학기 종료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입일)	①본원의 휴입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2. 여름·겨울, 학년말의 휴가 3. 개원기념일 4. 재향휴입일 ②제4항 제2호의 휴입일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의 휴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해 학년 18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장이 정한다. ③유치원장은 비상사태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입을 할 수 있다. ④휴입일이러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업규제 및 원아정원	
제7조 (학업규제)	①본원의 학습수는 ()학급으로 한다. ②본원의 방과후과정안은 ()학급으로 하며, 방과후과정안은 당해연도 1학기 편성규정으로 운영한다. ③본원은 일반반 ()학급, 특수반 ()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 (원아정원)	①본원의 원아정원은 ()명으로 한다. ②본원의 원아정원()명은 방과후과정안 원아정원 ()명을 포함한다. ③본원의 한 학급 원아 정원은 인가정원 원아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전체 대기자 순으로 결원을 보충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9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별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본원의 교육내용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교육청의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00유치원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제20조 (입학자격)** ①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연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유아로 한다.
- ②입학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원아를 선발한다.
- 제21조 (제입학)** 만 3세에 입학 유아의 만 6세에 중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치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입학을 할 수 있다.
- 제22조 (원아정원)** 원, 시교육청에서 본원으로 편입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 제23조 (휴학)** 원장 또는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이 휴학서를 받아 지리한다.
- 제24조 (퇴학)** 원아가 다음의 각 조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통지할 수 있다.
①보조교사 전 가조 어주나 가정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
②수업료 징수정액 후 정할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
③정명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 제25조 (수료 및 졸업)** ①원장은 유치원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를 통틀 평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출석일수는 별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5세 유아에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④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53.4세 유아에게는 수료장을 수여한다.

제7장 교직원

- 제26조 (교원의 배치)** ①별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원간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②별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방과후과정안에는 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③시행령 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교사 (3명미만)를 둘 수 있다.
- ④ 그 외 세부 사항은 교육청의 보조교사 배치 계획에 따른다.
- 제27조 (사무직원 배치)**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원을 배치하고 세부사항은 교육청의 사무직원 배치규정별 배치기준에 따른다.
- 제28조 (교직원 연수)** ①원장은 교육개신 연구회, 학습연구회, 강연회 등의 각종 연수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여 하여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 및 수업방법 개선에 노력한다.
- ②원장은 교직원 연수에 필요한 인력, 일정 지원을 한다.
- ③교사는 교육과정 연수,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수, 동료인 연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물을 원장에게 연 2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비용 징수

- 제29조 (입학금)** 본원은 000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장이 입학금을 징하여 징수한다.
- 제30조 (수업료)** ①본원은 000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연도에 정해진 일정 금액의 수업료를 징하여 징수한다.
- ②원장 또는 지인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제31조 (징수기일)** 수업료는 해당 학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야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32조 (수업료의 반환)** ①수업료가 재납입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필요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현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유치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33조 (수업료의 면제) ①유치원장이 정하는 기준(유치원 내규·원칙)에 의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제34조 (정월)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할 원아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치원장이 당해 원아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5조 (교육활동비) 유치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에 의한 현장 학습비를 정수할 수 있다.
- 제36조 (성급 및 위문금)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각종 성급, 위문금 등을 모집할 수 있다.
- 제37조 (비율 준수시기 및 회계처리) 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의 경우 시기는 유치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의한다.

제9장 유치원운영위원회

- 제38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1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로제 제정되는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결정이 정한다.

제10장 규칙개정절차

- 제39조 (규칙개정절차)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이 규칙개정안을 작성하여 사회책임동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사회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부록 5-4. 시설·설비조서

시설 · 설비 조서

◎ 교지 및 교사(○확급 ○○명 정원기준)

구 분	사실·설비적용기준	기 준	보 용	파부족	비 고
교 지	교사용 대 지 ①	○ 건축관련법령의 전례를 및 용역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건축면적/건축률)	㎡	㎡	㎡
	목 의 채육장 ②	○ 학생수별 기준면적 - 40명이하 : 160㎡ - 41명이상 : 120+Nm	㎡	㎡	㎡
	교 지 합 계 (①+②)		㎡	㎡	㎡
교 사	○ 학생수별 기준면적 - 40명이하 : (5N) ㎡ - 41명이상 : (80+3N) ㎡	㎡	㎡	㎡	

◎ 설비 및 교사환경

구 분	사실·설비적용기준	기 준	보 용	파부족	비 고
교사환경	○ 조도(확상면) : 300lux이상	300Lux이상	Lux	Lux	
	○ 소음 : 55데시벨이하	55dB이하	dB	dB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18℃이상	℃	℃	
급수시설	○ 급탕 1개 이상	개	개	개	
온수공급시설	○ 원탕 1개 이상	개	개	개	

※ 급수시설 및 온수공급시설 설치도면 1부 첨부

부록 5-3. 경비의 유지방법

경비와 유지 방법				
명칭		유지원		
위치				
호출번호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경비와 유지방법	1. 유치원의 원비 및 옥상회동 감독청의 지시금액 수입으로 운영하되 세입부족으로 인한 부족경비와 설립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전액 설립자 부담금으로 증당한다.			
	2. 기타 제반법규와 감독청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며 만약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지번자 : (인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경 비 지 변 서				
유치원 설립자	본적			
	주소			
유치원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치원명			
	본적			
	주소			
지변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경비지변한계		1. 세입부족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경비 2. 설립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위와 같이 경비를 지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 변 자 : (인감)				
0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경비지변 동행증명서 1부(제산세 파지증명) - 지변자가 설립자가 아닐 경우				

부록 5-5. 민간인 신원진술서

[별지 제2-1호 서식] < 2015.4.13 시행 >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사 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월액행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연	자택전화: 직장전화: 휴 대 폰: E-mail:			
직 장	직장명: 소재지:	박 치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경 력	기반, 임차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별 관 계(임자)	
		. . ~ . .			
		. . ~ . .			
해 의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등만 가족	
		. . ~ . .			
		. . ~ . .			
병 력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연	미 필 사 유
	. . ~ . .				
배우 자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부 모					
자녀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부록 5-6. 원장인용예정증명서 및 위임예정증명서·영양사 면허증

유치원 원장 취임 예정 승낙서

1. 취임예정 유치원명 :

2.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현 주소 :

5. 입술(취임)예정일 :

본인은 정주하남시 ○○동 ○○로 ○○○○에 설립예정인 ○○○유치원의 원장으로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20

성 명 : (인)

별첨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원본확인)

0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부록 5-7. 교직원확보계획서

교직원확보계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최종 학 령	소 기 자 격증	유아교육 경 령	임 용 예 정일	비고
원 장							
원 감							
교 사							
일반 직급							
기능 직급							
※참고사항							

2.6 기타

부록 6-1.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성과 보고서(예시)

000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운영성과표				
과목	제 2(전)기 제 3(당)기		제 1(당)기 제 2(전)기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 매출				
00 유지원 운영사업수입				
활동조합비수입				
가입비수입				
후원금수입				
납품비용자부담수입				
과년도수입				
행사비수입				
2. 매출원가				
3. 매출총이익				
4. 판매/관리비				
00 유지원 운영사업지출				
행사비지출				
조달원료구매비				
이사파탈중비				
특별위원활동중비				
직원조합원사업비				
연대활동사업비				
비품및소모품구입비				
법인활동비				
유지원 사업자환비				
유지원 지출비				
등불비용지출비				
반환금				
과년도지출				
소모품활동비				
5. 영업이익				
6. 영업이익의수익				
이자수익				
7. 영업이익비용				
지급수수료				
8. 법인세 차감전 이익				
9. 법인(가인)				
10. 당기순이익				

부록 6-2. 사회적협동조합 재무상태표(예시)

000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재무상태표				
과목	제 2(전)기 제 3(당)기		제 1(당)기 제 2(전)기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자산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				
보통예금(현통조합비)				
보통예금(출자금)				
미수금				
선급금				
(2) 제고자산				
2. 비유동자산				
(1) 무자자산				
(2) 유동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1. 유동부채				
미지급금				
선수금				
2.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				
1. 자본금				
출자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				
5.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기타이익잉여금				
미지분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당기 :				
전기 :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부록 6-3. 사회투자자금 지원조건

사회투자자금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지원 * 취약한 사회 과제를 개선하는 수단에 자력가능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지원대상	• 사회적 배려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벤처, 사회적 경제 활동기업단체 •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통합증진목적으로 공공적인 영역역을 확대하는 소셜기업, 미용기업, 공동체 기업, 마을공동체 • 사회적 영향력과 취약한 지역사회 문제 개선에 필요한 소셜임팩트펀드 발행·유통 등 기업
투자대상 및 조건	• 사업내용 :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후연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세부 추진계획 (후 → 수행기간) - '19년 총 융자 규모 : 100억원 - 연간 이자율 : 0%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실 융자 이자율 3% 이내 - 상환기간 : 최대 5년 (최대 2년 기지 한도 분할상환) - 재원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실 지원(후-총자) 대상 조건 (수행기간 → 기입 함) - 용자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용자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용자 : 서울시 내에서 추가환경문해 등 사회문제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 연간 이자율 : 최대 3% (※ 최대 3% 이내에서 수행기간별 책정) - 용자 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용자 : 기업 당 최대 2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용자 : 기업 당 최대 10억원
지원 대상 선정 및 평가	• 지원의 타당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기준을 개발 시행 ※ 별도의 시스템 개발 운영 • 사회적 영향평가, 재무적 상환능력 및 사업종류 등 경영평가 • 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평가심사 담당검토

3. 매입형 유치원 만들기 서식

부록 1.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공고 예시 자료

○○교육청 공고 제 20○○ - 호

20○○년도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공고 <예시 자료>

1. 개요
- 매입형 유치원 추진을 위한 매입 희망 사립유치원을 공모함
-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치원
2. 선정대상: ○개 원(예정)
- 매입대상: 교사(건물), 교지
- ※ 기존 교지원에 대한 고용의무는 승계 안 됨.
3. 개원(예정)일: 20○○년 3월
4. 매입형 유치원 선정
- 가. 신청자격: ○○지역 내 소재하는 자가소유, 단독건물(단독부지), ○○학급 이상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 [후원 유치원 제외]
1. 공유부지(대지권비율)인 경우, 감찰을 주거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2. 건물전체가 동일인 소유여야 하며, 저당권, 유익권(인차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매입 계약 전까지 권리와무관계가 종결되어야 함.
- 나. 신청기간: 20○○. . . 0 ~ . . . () 00시 ~ 00시
- 다. 신청방법: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또는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시(도)교육청 지원과(3층)】
- 라. 제출서류: 「매입형 유치원 공모 신청서」, 등 관계서류(붙임)
- 마.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소송중인 유치원 포함)
5. 매입형 유치원 선정방법
- 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득점 순으로 교육부에 추천
- ※ 지역 내 국·공립 유치원 실태도, 유아 수 추이, 유치원 충원율, 시설안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1차 심사(청량평가): 2~3배수 선정
- 평가방식: 서면평가 + 감점
- 감점: 일방적 폐원(통보) 및 모집중지 등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등

부록 2. 매입형 유치원 신청 서식

매입형 유치원 공모 신청서

* 모든 내용은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설립자	전화번호	(HP)						
	주소							
유치원명			원장명					
주소			연락처					
최초 개원일	(운영기간: 년 월)							
유치원 현황	유아 장·현원	구 분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반	계	
		학급수						
		학성수						
		현원						

- 붙임 1. 유치원 교지, 교사 등 현황 자료(붙임서식 활용) 1부
2. 교지·실습지 지적도 및 교사 평면도(건물 정면 및 측면 사진 포함) 1부
3.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이사 현황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위와 같이 매입형 유치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청 귀하

- 2차 심사(경쟁평가)
- 평가방식: 현장방문 평가
- 후원대상유치원: 1~2차 접수 함께 고득점 순으로 5개 원 선정
- 1~2차 심사접수 합계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동점인 경우나 기타사항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나. 교육부 자료: 선정된 ○개 원을 교육부에 추천 및 자원위원회 운영
- 다. 확정결과 통보: 20○○. ○월 중
6. 매입금액
- 가. 교사(건물), 교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함.
- 교육청 및 확정유치원이 각각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 의뢰
- 나. 감정평가 수수료: 교육청 및 유치원 각각 부담
7. 매입형 유치원 확정 이후 업무 처리 절차
- 가. 매입 관련서 제출(교육청-유치원 교사·교지를 소유한 자)
- 나.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감정평가,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 진행
- 다. 사립유치원 매입 계약, 폐원, 공립유치원 설립
- 확정 결과 및 행정 절차 등에 따라 유치원별로 매입(개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라.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약 및 확정결과 등이 취소될 수 있음.
8. 매입 대금 지급
- 가. 매입 대금은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송금함을 원칙으로 함
- 나. 매입 대금은 20○○.○월 중 지급됨
9. 기타사항
- 가. 매입대상유치원은 행정절차 및 시설보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폐원 인가 전 까지 부작물(간판 등) 제거와 폐기를 등을 처리하여야 함.
- 나. 최종 확정 이후라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유아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불의를 야기할 경우 매입형 유치원 확정 취소될 수 있음.
- 다. 감정평가 시 측량비와 시설물정밀안전검사비는 사립 유치원 설립 주체가 부담함.

20○○. ○. ○.

○ ○ 시(도) 교 육 청

유치원 교지, 교사 등 현황 자료

1. 유치원 교지 현황

교지 면적(㎡)	체육장 활용 면적(㎡)	용지 유형 및 특징

2. 유치원 교사(건물) 현황

건물 준공일 (연월)	건축물 용도	면적			주요 시설	최초 개원일, 설립자변경일
		바닥면적 (㎡)	층수 (층)	연면적 (㎡)		

* 현 유치원의 인가일로, 설립자 변경시 설립자 변경일 기준으로 작성

- 바닥면적(1층면적),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기재

* 주요시설은 중도 신청 유치원의 설립 보유현황(보통교실 ○실, 다목적실 ○실 등)

3. 유아 및 유치원 교직원 조직계획

구분	조직계획
재원 유아	
교직원	

* 재원 유아에 대한 학습권 보장 방안 등

* 교직원에 대한 인내, 이직 교육 지원 등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유치원 건물 사진

1. 정면사진

2. 측면사진

부록 4. 매입형 유치원 선정평가표

유치원명						
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배점표	점수
정량 평가	① 배치여건 (55점)	①-1 (자치구) 공립단설유치원 수	자치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 수			
		①-2 (취학권역) 공립 배치여건 (취학권역 취학대상아동 기준)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대비 공립 배치여건 부족인원 (취학권역 취학대상아동 기준)			
		①-3 (취학권역) 공립 취원율	공립유치원 원아 수/ 전체유치원 원아 수			
		①-4 (행정동) 서민 거주 비율	유치원 소재 행정동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 비율			
		①-5 (통학구역) 취학 대상 아동 수	인근 공립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만3~5세 아동 수			
		①-6 (인근유치원) 공립유치원 거리	인근 공립유치원 직선거리			
		①-7 (인근유치원) 사립유치원 거리	인근 사립유치원 직선거리			
		①-8 (매입유치원) 유치원 총원율	인가정원 대비 2000학년도 원아 수			
		①-9 (매입유치원) 재정투자 효율성	토지 공시지가(㎡당)			
	② 시설여건 (30점)	②-1 교차 및 교사 단독사용 여부	단독필지 및 유치원 전용 건물 여부			
		②-2 건축연면적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②-3 건물노후도	건축물대장상 건축연도			
정성 평가	③ 적합성 (15점)	③-1 종합평가	통학안전, 건물외부환경 등 교육 환경 적합성 및 매입 적정 여부 등 종합평가			
합계						

부록 3. 매입형 유치원 선정 배점 기준

구분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배점기준
정량 평가	① 수용여건 (55점)	①-1 (자치구) 공립단설유치원 수	자치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 수		
		①-2 (취학권역) 공립 배치여건 (취학권역 취학대상아동 기준)	공립 유치원 취학수요 대비 공립 배치여건 부족 인원 (취학권역 취학대상아동 기준)		
		①-3 (취학권역) 공립 취원율	공립유치원 원아 수/ 전체유치원 원아 수		
		①-4 (행정동) 서민 거주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정동 전체 인구		
		①-5 (통학구역) 취학대상 아동 수	인근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만3~5세 아동 수		
		①-6 (인근유치원) 공립유치원 거리	인근 공립유치원 직선거리		
		①-7 (인근유치원) 사립유치원 거리	인근 사립유치원 직선거리		
		①-8 (매입유치원) 유치원 총원율	인가정원 대비 2000학년도 원아 수		
		①-9 (매입유치원) 재정투자 효율성	토지 공시지가(㎡당)		
	② 시설여건 (30점)	②-1 교차 및 교사 단독사용 여부	단독필지 및 유치원 전용 건물 여부		
		②-2 건축연면적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②-3 건물노후도	건축물대장상 건축연도		
정성 평가	③ 적합성 (15점)	③-1 종합평가	통학안전, 건물외부환경 등 교육 환경 적합성 및 매입 적정 여부 등 종합평가		
합계					

부록 5. 매입형 유치원 선정평가표

매입형 유치원 현장평가표

○ 유치원명: ○ 선정위원: (서명)

○ 정성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100점)
적합성 평가	통학안전, 건물외부환경 등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와 매입형 유치원으로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100점 기준으로 평가

평가요소	평가내용
통학환경	
건물외부환경	
지역 적합성	
기타	

※ 뒷면 적합성 평가 요소 및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평가 내용을 기술

국공립 다양화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